

2016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I)



I 중국

주요 변경사항	3
1. 통관제도(수입관리제도) 변경 사항	4
2. 통관제도(수입관리제도) 변경 사항	7
3. 수입 통관 절차 변경 사항-수산동물 수입식품 통관 절차 변경	10
4. 신규 제정 세칙	11
5. 검역제도 변경사항	11
6. 검역제도 추가사항	12
7. 검역제도 변경사항	14

II 홍콩

주요 변경사항	17
1. 품목별 통관제도 : 달걀 수입가이드	18
2. 영유아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	19
3. 對한국 수입규제 동향	20
4. 기타사항	21

III 대만

주요 변경사항	25
제1장 통관·검역제도	26
제1절 통관제도	26
제2절 식품검역제도	34

목 차

C O N T E N T S

제3절 동·식물 제품 검역 규정	59
제4절 주류 및 한약재 검역제도	92
제5절 기타 식품 관련 규정	97
제6절 통관 및 검역 사례	99
제2장 라벨링 제도	118
제1절 식품 라벨링 관련 규정 변경	118
제2절 식품 라벨링 이슈사례	130

IV

일본

주요 변경사항	137
1. 신 식품표시 기준에 의한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138
2. 고추(고춧가루 포함) 잔류농약 기준시 완화 개정	139
3. 기능성 표시식품 가이드 라인 변경	140
4. 유제품 및 식품첨가물 규격기준 개정	141
5. 수입식품 글루텐프리 식품의 표시 감시 강화	142
6. 일본 2015년도 수입식품 검역검사 결과 발표	143
7. 일본 농림수산성 병원식 JAS 규격 신규 제정	145
8. 한국산 대일 수출 참외 전수검사 검사명령 대상 지정	146
9. 대일수출 가능 육류 열처리 가열육 승인업체 리스트	147

V 인도네시아

주요 변경사항	151
제1장 통관검역제도	152
제1절 선적 전 검사제도	152
제2절 냉장냉동식품 수입항 추가	153
제3절 수입관세 납부방법	154
제2장 통관보류, 역류 등 부적합 사례	156
제3장 수출현안	157
제1절 신선농산물 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	157
제2절 축산물 유래 가공식품 수입 시 식약청의 SRP 필요	158

VI 미국

주요 변경사항	161
제1장 제도 변경사항	162
제1절 FSMA 7가지 주요 시행 규정	162
제2절 신선농산물 농약관련 제도	169
제3절 영양표시	170
제2장 수출현안	172

목 차

C O N T E N T S

VII EU

주요 변경사항	177
제1장 통관제도	178
제1절 통관제도 일반	179
제2절 품목별 통관제도	185
제3절 통관시 유의사항	199
제2장 검역제도	200
제3장 관세제도	201
제1절 관세제도 일반	201
제2절 품목별 관세제도	202
제4장 라벨링제도	203
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	203
제2절 라벨링 문제사례(한국산 사례는 없음)	203
제5장 수출현안	205
제1절 수출현안	205

VIII 러시아

주요 변경사항	211
제1절 통관제도	212
제2절 검역제도	236
제3절 관세제도	256
제4절 라벨링제도	295
제5절 수출현안	296

IX 통관문제사례

한국산 농식품 對중국 통관사례문제	301
한국산 농식품 對홍콩 통관사례문제	310
한국산 농식품 對대만 통관사례문제	311
한국산 농식품 對일본 통관사례문제	313
한국산 농식품 對미국 통관사례문제	315
한국산 농식품 對EU 통관사례문제	360

중국

1. 통관제도(수입관리제도) 변경 사항
2. 통관제도(수입관리제도) 변경 사항
3. 수입 통관 절차 변경 사항- 수산동물 수입식품 통관 절차 변경
 4. 신규 제정 세칙
 5. 검역제도 변경사항
 6. 검역제도 추가사항
 7. 검역제도 변경사항
8. 통관 보류 및 억제사항



주요 변경사항

□ 통관제도

-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자동수입 허가관리 농산물 리스트 변경
- 「중화인민공화국화물수출입관리조례」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량 및 신청조건, 수입관세 변경
- 수산식품 통관절차 변경
-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세칙」 신규 제정

□ 검역제도

- 「수출입육류제품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 육류제품 리스트에 삼계탕 추가
- 「진경과일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 수출지역 리스트에 한국 포도 추가
- 「수출입우유제품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 한국 영아조제분유 수입상 및 제품 업데이트

1. 통관제도(수입관리제도) 변경 사항

-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자동수입 허가관리 농산물 리스트 변경

■ 2016년 자동수입 허가관리 농산물 ■

품목	HS코드	비고	
소고기	0201 2000 10	신선 혹은 냉장	
	0201 2000 90		
	0201 3000 10		
	0201 3000 90		
	소고기	0202 2000 10	냉동
		0202 2000 90	
		0202 3000 10	
		0202 3000 90	
	소고기	0206 2100 00	내장 등 기타부위
		0206 2200 00	
		0206 2900 00	
	돼지고기	0203 1200 10	신선 혹은 냉장
0203 1200 90			
0203 1900 10			
0203 1900 90			
돼지고기		0203 2190 10	냉동
		0203 2190 90	
		0203 2200 10	
		0203 2200 90	
		0203 2900 10	
		0203 2900 90	
돼지고기		0206 4100 00	내장 등 기타부위
		0206 4900 00	
양고기		0204 1000 00	신선 혹은 냉장 면양류
		0204 2100 00	
		0204 2200 00	
	0204 2300 00		
	양고기	0204 3000 00	냉동 면양류
		0204 4100 00	
		0204 4200 00	
		0204 4300 00	

품목	HS코드	비고
양고기	0204 5000 00	신선 냉장 냉동 산양
	0206 9000 10	내장 등 기타부위
닭고기	0207 1200 00	냉동
	0207 1411 00	
	0207 1419 00	
	0207 1421 00	냉동 내장 등 기타부위
	0207 1422 00	
	0207 1429 00	
	0504 0021 00	
신선우유	0401 1000 00	설탕 단물질 미 첨가
	0401 2000 00	
	0401 4000 00	
	0401 5000 00	
분유	0402 1000 00	
	0402 2100 00	
	0402 2900 00	
	1901 1000 10	영유아용 조제분유
대두	1201 1000 00	
	1201 9010 00	
	1201 9020 00	
	1201 9030 00	
	1201 9090 00	
유채씨	1205 1010 00	
	1205 1090 00	
	1205 9010 00	
	1205 9090 00	
	1507 1000 00	대두유
	1507 9000 00	
식용유	1509 1000 00	올리브유
	1509 9000 00	
	1510 0000 00	
	1511 1000 00	팜유
	1511 9010 00	
	1511 9020 01	
	1511 9090 00	

품목	HS코드	비고
식용유	1514 1100 00 1514 1900 00 1514 9110 00 1514 9190 00 1514 9900 00	겨자유
대두박	2304 0010 00 2304 0090 00	
카사바	0714 1010 00 0714 1020 00 0714 1030 00	
보리	1003 1000 00 1003 9000 00	
수수(고량)	1007 1000 00 1007 9000 00	
옥수수 주조	2303 3000 10	
설탕	1701 1200 90 1701 1300 90 1701 1400 90 1701 9100 90 1701 9910 90 1701 9920 90 1701 9990 90	
담배	2401 1010 00 2401 1090 00 2401 2010 00 2401 2090 00 2401 3000 00 2402 1000 00 2402 2000 00 2402 9000 01 2402 9000 09 2403 1100 00 2403 1900 00 2403 9100 10 2403 9100 90 2403 9900 10	담배

품목	HS코드	비고
담배	4813 1000 00	담배 종이 필터 등
	4813 2000 00	
	4813 9000 00	
	5601 2210 00	

자료 : <http://www.mofcom.gov.cn/article/b/g/201603/20160301271435.shtml>

2. 통관제도(수입관리제도) 변경 사항

- ‘중화인민공화국화물수출입관리조례’
-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량 및 신청조건, 수입관세 변경

■ 2016년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량과 신청조건 ■

No	품목	할당량	국영무역	신청조건
1	밀	963.6	90%	1) 국영무역업체 2) 2015년 수입 실적이 있는 업체 (수입 대행 미포함) 3) 2014년 또는 2015년 밀 사용량 10만 톤 이상의 밀가루 생산업체 4) 2014년 또는 2015년 밀가루 사용량 5만 톤 이상의 식품 생산업체 5) 수출입 경영권이 있으며 업체 소재지 상무기관에서 발급한 가공무역 생산능력 증명이 있고 밀 혹은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업체
2	옥수수	720	60%	1) 국영무역업체 2) 2015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수입 대행 미포함) 3) 2014년 또는 2015년 옥수수 사용량 5만 톤 이상의 사료 생산업체 4) 2014년 또는 2015년 옥수수 사용량 15만 톤 이상의 기타 생산업체 5) 수출입 경영권이 있으며 업체 소재지 사무기관에서 발급한 가공무역 생산능력 증명이 있고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업체
3	쌀	532 (장립: 266/ 중단립: 266)	50%	1) 국영무역업체 2) 2015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수입 대행 미포함) 3) 식량 도소매자격이 있는 2014년 또는 2015년 매출액 1억 위안 이상 식량업체 4) 2014년 또는 2015년 쌀 사용량 3만 톤 이상의 식품 생산업체 5) 수출입 경영권이 있으며 업체 소재지 상무기관에서 발급한 가공무역 생산능력 증명이 있고 벼와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업체 ※ 장립, 중단립 구분신청

No	품목	할당량	국영무역	신청조건
4	목화	89.4	33%	1) 국영무역업체 2) 2015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수입 대행 미포함) 3) 방적설비 5만 방추 이상의 면방적업체
5	설탕	194.5	70%	1) 국영무역업체 2) 국가비축기능의 중앙업체 3) 2015년 설탕 관세할당이 있으며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4) 일원당가공량 ≥ 600톤, 연간 매출액 ≥ 4.5억 위안인 제당업체 5) 설탕을 원료로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업체
6	양모	28.7		1) 2015년 양모, 섬유모 관세할당이 있고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 신설 가동한 양모, 섬유모 가공능력 5,000톤 이상 업체 2) 2016년 1월 1일 전에 공상관리부서에 등록하고 연도 검사 통과 업체 3) 전년도 세관, 공상, 세무, 품질검험, 외환, 사회보장, 환경보호 등에서 위법기록이 없는 업체 4) “농산물수입관세할당관리임시시행방법”, “2015년 양모, 섬유모 수입 관세할당관리실시세칙”, “2015년 양모, 섬유모 수입국가별관세할당 관리실시세칙”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
7	섬수모	8.0		

자료 : <http://www.mofcom.gov.cn>

■ 2016년 관세쿼터관리 농산물 수입관세 ■

No	품목	HS 코드	할당 내 세율	할당 외 세율	
				최혜국	일반
1	밀	10011100 10011900 10019100 10019900	1	65	180
2	옥수수	10051000 10059000	1	20	180
				65	
3	쌀	10061011 10061019 10061091 10061099 10062010 10062090 10063010 10063090 10064010 10064090	1	65	180
4	목화	52010000 52030000	1	40	125
5	설탕	17011200 17011300 17011400 17019100 17019910 17019920 17019990	15	50	125
6	양모	51011100 51011900 51012100 51012900 51013000 51031010	1	38	50
7	섬수모	51051000 51052100 51052900	3	38	50

자료 : 2016년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세칙

□ 2016년 관세실시방안

-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15.12월 <2016 관세실시방안>을 발표하고 1.1일부터 실시
- 내동대구 등 품목에 대하여 잠정세율 실시
- 한국산 대중 수출관련 품목은 관세협정 실시

3. 수입 통관 절차 변경 사항 - 수산동물 수입식품 통관 절차 변경

- 검역조건
 - 국가질검총국 2011년 총국령 제135호령<수출입수산물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에 근거 한국 관련정부에서 발급하는<대중수출 수산물 위생증명서> 제출 필요.
 - 국가질검총국 2002년 공고 2호 <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진경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 목록> 및 국가질검총국 2004년 공고 11호에 근거 양식 수산 동물 경우에 수입자는 대외무역계약 체결 전에 국가질검총국에 <진경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

○ 통관조건 : AU

Code	명 칭	발급기구
A	입경화물통관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U	합법어획채취제품통관증명 Lawful fish for products clearance certificate	농업부

- ※ 멸종위기 수산물은 농업부에서 발급한 멸종위기물종수입허가증명서 제공
- ※ U 합법어획채취제품통관증명은 비막치어(tooth fish), 눈다랑어(bigeye tunas), 대서양 참다랑어 (atlantic bluefin), 황새치(sword fish)에만 적용

- 통관절차 : 일반식품과 동일 단 통관서류에서 비막치어(tooth fish), 눈다랑어 (bigeye tunas), 대서양 참다랑어(atlantic bluefin), 황새치(sword fish) 농업부 발급 합법어획채취제품통관증명 추가

4. 신규 제정 세칙

-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세칙(2016년)

5. 검역제도 변경사항

- 수출입육류제품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 삼계탕 육류제품 리스트 추가

- 평가심사요구에 부합하는 국가/지역에서 육류제품 리스트(2016.10.8.)

국가	제품 종류 및 협정서 체결일자	비고
한국	삼계탕 (2015년 10월31일 협정서 체결)	<p>등록된 삼계탕 가공업체의 등록번호: 19980476002(가공, 저장), 6430000-00402006-0014(가공, 저장), 2013-0476004(가공, 저장), 6460000-004-1998-0002(가공, 저장), 6430000-004-2009-0002(가공, 저장) 위에 5개 업체가 등록한 제품품목: 삼계탕</p> <p>등록된 닭(도재, 분할, 저장) 공장의 등록 번호: 19900476001, 20060405059, 2006-0405061, 2013-0476033, 6460000-005-1998-0004, 6460000-005-1992-0002 위에 6개 업체가 한국 대중수출 삼계탕 업체에게 닭고기원료를 제공하는 업체인 직접 대중수출 불가</p>

※ 자료 : 질검총국(http://jckspaqj.aqsiq.gov.cn/xz/spxz/201303/t20130329_349307.htm)

6. 검역제도 추가사항

- 진경과일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 한국 포도 수출 허가에 따른 수출지역 리스트 추가

■ 대 중국 수출 검사검역 허가 신선과일 품목 및 수출지역 리스트(2016. 9. 18.) ■

수출국가/지역	과일 품목
태국	타마린드, 체리모야, 파파야, 오렘자, 구아바, 람부탄, 로스애플, 바라밀, 롱콩, 파인애플, 인삼열매, 바나나, 달리아, 야자, 용안, 두리안, 망고, 여지, 망고스틴, 귤, 오렌지, 유자
말레이시아	용안, 망고스틴, 여지, 야자, 수박, 목과, 람부탄
인도네시아	바나나, 용안, 망고스틴, 살락
베트남	망고, 용안, 바나나, 여지, 수박, 람부탄, 바라밀, 옹과
미얀마	용안, 망고스틴, 람부탄, 여지, 망고, 수박, 참외, 모예대추
필리핀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파파야
일본	사과, 배
파키스탄	망고, 감귤류(귤, 오렌지)
인도	망고, 포도
이스라엘	오렌지, 유자, 감귤, 레몬, 자몽
타지키스탄	체리
대만	파인애플, 바나나, 야자, 체리모야, 목과, 파파야, 오렘자, 망고, 구아바, 로스애플, 빈랑나무, 자두나무, 비파나무, 감, 복숭아, 대추, 매실, 옹과, 멜론, 배, 포도, 귤, 유자, 자몽, 레몬, 오렌지
미국	자두나무(캘리포니아주), 체리(워싱턴주,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 아이다호주), 포도(캘리포니아주), 사과, 감귤류(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배(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오리건주), 딸기(캘리포니아주)
캐나다	체리, 블루베리
멕시코	아보카도, 포도, 블랙베리, 산딸기
파나마	바나나

수출국가/지역	과일 품목
스리랑카	바나나
에콰도르	바나나, 망고
콜롬비아	바나나
코스타리카	바나나
우루과이	감귤류(레몬 제외), 블루베리
아르헨티나	오렌지, 자몽, 귤, 사과, 배
칠레	키위, 사과, 포도, 자두나무, 체리, 블루베리, 아보카도
페루	포도, 망고, 감귤류(자몽, 귤 및 그 교잡종, 오렌지 및 레몬), 아보카도
프랑스	사과, 키위
스페인	귤, 오렌지, 자몽, 레몬, 복숭아, 자두나무
이탈리아	키위, 오렌지, 레몬
키프로스	오렌지, 레몬, 자몽, 감귤
벨기에	배
그리스	키위
네덜란드	배
남아공	귤, 오렌지, 자몽, 레몬, 포도, 사과
이집트	감귤류
모로코	감귤류(오렌지, 귤, 클레멘타인, 자몽)
호주	감귤(귤, 오렌지, 레몬, 자몽, 라임, 탄젤로, 단자몽), 망고, 사과(태즈메니아주), 포도, 체리, 유도
뉴질랜드	감귤(귤, 오렌지, 레몬), 사과, 체리, 포도, 키위, 자두나무, 배, 매실, 감
키르기스스탄	체리
북한	허니베리, 블루베리
한국	포도

* 자료 : 질검총국(http://dzwjyjgs.aqsiq.gov.cn/rdgz/201609/t20160918_474179.htm)

7. 검역제도 변경사항

- 수출입우유제품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 한국 수입영아조제분유 수입상 및 제품 업데이트

○ 한국 수입영아조제분유 수입상 및 제품 정보(2016.6 업데이트)

번호	수입상 명칭	분유브랜드
16	成都纽宏进出口贸易有限公司	With MOM(롯데) 慧智妈咪
18	大连泰山贸易有限公司	남양 南阳
49	江苏舜天国际集团机械进出口股份有限公司	임페리얼(남양) 林贝尔
65	青岛索康国际贸易有限公司	아이엠마더(남양) 爱氏妈妈
66	青岛喜恩喜国际贸易有限公司	마더스 케어, All Star, Star 爱智宝、铭道、星贝儿
70	厦门森宝集团有限公司	롯데식품 乐天食品
74	汕头市东凯乐有限公司	매일 每日
85	深圳海王食品有限公司	Babikins(넵투뉴스) 喜安智
91	威海市民史乳业有限公司	산양분유(롯데), 미은지(파스퇴르) 韩羊、美恩智
96	烟台库克进出口有限公司	파스퇴르 帕斯特宝石系列
97	烟台每怡进出口有限公司	매일궁, 매일금전명작 每日宫、每日金典名作
103	浙江农资集团金鸿进出口有限公司	롯데 乐天
144	广州捷唵捷进出口贸易有限公司	파스퇴르 기린아 麒麟儿
181	成都高乐儿母婴用品有限公司	롯데식품 柒宝

* 자료 : 질검총국(http://www.aqsiq.gov.cn/xxgk_13386/xxgkzftl/tzdt/gzdt/201405/t20140529_413978.htm)



2016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I)

홍콩

1. 품목별 통관제도: 달걀 수입가이드
2. 영유아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
3. 對한국 수입규제 동향
4. 기타사항



주요 변경사항

- ❑ 달걀수입가이드 시행('15.12.5)
- ❑ 영유아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

1

품목별 통관제도 : 달걀 수입가이드

- 수입 야생육류, 육류, 가금류 및 달걀류 관리 규정(제132AK장) 내 규정한 달걀류 수입 조치가 2015년 12월 5일부로 기 시행됨. 규정에 따르면 어떠한 수입자라도 하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달걀류의 수입이 불가함
 - 위생증명서가 없을 경우
 - 해당 달걀류가 기 환적되었으나 환적증명서가 없을 경우
 - 위생국주임이 발행한 서면허가서가 없을 경우, 또는
 - 위생국주임이 추가한 조건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 달걀 수입시 반드시 수입전 식품환경위생서 위생주임의 서면허가가 필요
- 달걀류 수입상은 반드시 <식품안전조례>(제 162장)에 근거하여 식품환경위생서 서장으로부터 등록된 식품수입상이어야 함
- 달걀류 수입상은 식품환경위생서 또는 식품안전센터 홈페이지에서 FEHB 270 양식 또는 전자양식인 e-FEHB 270을 사용하여 서면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신청시, 수입상은 달걀류의 홍콩수입전 위생주임에 이하자료를 제출해야 함
 - (a) 해당 수입 달걀류의 종류 및 수량
 - (b) 해당 달걀류의 홍콩도착 예상일 및 운송방법
 - (c) 해당 달걀류가 컨테이너 적재로 운반될 경우 해당 컨테이너 번호 및
 - (d) 해당 수입 달걀류의 운송경로 확인에 필요한 모든 관련 문서
- 기재를 완료한 양식은 우편으로 식품안전센터 식품 수입/수출팀(주소 : 43/F, Queensway Government Offices)에 송부 또는 팩스(852 2521 4784)로 제출하며 신청 획득 후, 관련 서면허가는 신청인에 송부 또는 신청인 직접 수취, 신청비는 무료임
- 서면허가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6개월이며 유효기간내 수입된 달걀류의 총량이 비준된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면허가를 사용하여 1회 이상 운송 가능하므로 별도수입허가증 필요 없음
- 달걀류 수입 서면허가 발급의 경우(근무일 기준) 5일 이내 발급 가능

영유아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

□ 규정 소개

- 영유아 보건, 영유아용 식품 선택 가이드 및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해 개정된 식품 의약(구성 및 라벨링)규정 (개정 규정)은 영아용 조제 분유의 영양 성분과 영아용 조제분유, 유아용 유동식, 유아와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위한 포장 식품의 영양 라벨링을 규정함

□ 주요 내용

- 영아용 조제분유에 들어가는 25가지 영양소(1+25)의 에너지 값과 내용물의 라벨링을 규정함. 유/영아용 포장 식품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1+4) 등 4대 영양소와 비타민 A, 비타민 D에 대한 에너지 값과 내용물의 라벨링 의무
- 영유아를 위한 의료용 특별 조제분유는 개정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라벨이 붙기때문에 영양성분과 영양 라벨링 의무에서 제외됨. 또한 기 시행 중인 영양 라벨링제도 (Nutrition Labelling Scheme)에 따라 소포장 상품 역시 영양 라벨링 의무에서 제외됨 (총 250평방 센티미터 미만의 용기로 포장된 유아용 유동식 또는 100평방 센티미터 미만 면적의 용기로 포장된 유/영아용 포장 식품)
- 개정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최대 \$50,000의 벌금이나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함
www.cfs.gov.hk/english/press/20160613_0549.html

3

對한국 수입규제 동향

□ 전염병과 상호 협정 미체결로 인한 수입 규제 품목

- 2006년에 한국산 생굴에 바이러스가 발생해 수입이 규제된 적이 있음. 또한 생닭 수출의 경우 2014년 5월 2일, 한국 세종시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H5N8형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하여 홍콩 식품안전센터에서 2014년 5월 7일 한국산 달걀 및 가금류의 수입 금지조치 실시하였으나 2016년 3월 7일 수입재개하였음.(2016년 3월 29일 경기도 지역발병한 고병원성 AI로 경기도산 가금류 및 그 부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하였으나 9월 6일부로 해제조치함)

홍콩의 기후는 습기가 많아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되고 기승을 부리는 도시 구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바이러스 침입 전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음. 돼지고기의 경우 2014년 일부지역(전라도 및 제주산)의 돈육 대 홍콩수출 재개되었음. 또한 상호 협정이 계속 미루어졌던 한국산 쇠고기의 경우 2015년 11월 19일자로 한국산 쇠고기의 홍콩 수출과 관련한 검역·위생절차가 마무리되어 수입이 최종 승인되었음

□ 한국 제품에 대한 홍콩의 과거 수입 규제 사례

품목	사유	비고
생굴	바이러스 창궐	2006년 규제 *’16년 현재 별도 규제 없음
달걀 및 가금류	조류 독감	-’14년 5월 규제 - ’16년 3월 7일 수입재개 *’16년 3월 29일 경기도지역 조류독감 발병으로 해당지역 수입 규제하였으나 ’16년 9월6일 해제
돼지고기(生)	구제역 발생	-’14년 4월 9일 일부지역수입재개
쇠고기(生)	상호협정 미체결	2015년 11월 19일 수입 승인

자료 : 홍콩 세관

□ 해외에서 홍콩으로 일괄 수입되기 전 선전 첸하이 보세구에 냉동육 임시보관

- 2016년 4월 27일 선전에서 식품환경위생부(The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FEHD)와 선전출입검역부(the Shenzhen Entry-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Bureau, SZCIQ)는 홍콩에 수입되는 냉동육류/가금류가 홍콩에 일괄적으로 운송되기 전, 선전의 첸하이 보세구(QBPA)에 임시 보관되는 것을 허용하는 업무 협정에 합의했다. 이 조치가 수입업체의 사업과 개발수요(development needs)에 있어 거래와 공급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
- 2012년부터 냉동 육류 수입업체와 냉동 창고 운영자들은 홍콩 내 이용 가능한 냉동 창고가 충분하지 않아 거래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피력 해옴. 그 결과 식품 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중국 무역 당국, FEHD, 선전 CIQ 간 협의가 이루어져 2016년 4월에 업무 협정을 체결함. 협정에 따라 홍콩으로 수입되는 냉동 육류는 홍콩으로 운송되기 전 QBPA에 임시 보관이 가능해짐
- 첸하이에 임시로 보관되었던 냉동 육류가 홍콩으로 들어올 경우, 식품환경위생부장관(Director of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이 발행한 위생증명서가 동반되어야 함. 거래 시 해당 조치를 활용하는 규모는 개별 업체들의 결정에 따르며 정부는 개입하지 않음
- 업무 협정에 따르면, 첸하이를 통해 환적되는 냉동 육류는 이미 홍콩과 수입 협의가 성립되어 있으면서 중국이 동종의 냉동 육류 수출을 허가한 국가/지역에서만 수입 가능. 중국 당국은 첸하이 환적 냉동 육류 조사와 검역에 책임이 있으며, 등록된 냉동 창고의 시설과 온도를 점검하여 냉동 육류의 위생과 안전을 보장해야함
- 수입 야생육류, 육류, 가금류 및 계란 규정(Imported Game, Meat, Poultry and Eggs Regulations (Cap 132AK))에 따르면, 홍콩에서 육류 및 가금류를 수입하는 자는 DFEH가 검증하고 원산지의 발행기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Cap 132AK 상의 환적 육류/가금류에 대한 자격요건으로, 첸하이에서 환적되어 홍

콩에 들어온 모든 냉동 육류 화물은 위생증명서와 함께 첸하이 당국에서 발행한 환적증명서를 동반해야 함. 이는 냉동 육류가 첸하이로 적절하게 수입되었고 그 곳에서 저장되는 동안 어떠한 손상이나 품질의 저하가 없었음을 증명한다. 또한 첸하이 당국은 홍콩으로 수입되는 환적 냉동 육류의 양과 냉동 창고에 남아있는 양을 조사한 후, 공제목록 발행해야함

- 수입업체는 FEHD로부터 환적 냉동 육류 각 화물에 대한 수입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QBPA로부터 환적 냉동 육류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는 반드시 Man Kam To 통제센터를 거쳐 FEHD직원의 조사를 받은 후 홍콩에 들어가야 한다. FEHD 직원은 수입업체의 냉동 창고에서 수입 냉동 육류 컨테이너를 조사할 수 있음. 홍콩으로 수입되는 환적 냉동 육류 각 화물은 이하 수입 관련 서류 필요함
 - a) DFEH가 검증한 원산지의 발행기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사본)
 - b) 첸하이 당국이 발행한 환적증명서(원본)와 공제목록(사본)
 - c) FEHD가 발행한 수입라이센스
 - d) 선적 청구서
 - e) FEHD가 발행한 허가증(해당되는 경우)
 - 수입업체들은 냉동 육류 전량이 홍콩에 수입 완료되는 날부터 최소 2개월 간 위생증명서와 공제목록 원본을 보관해야 함
 - 환적된 냉동 육류는 운송되는 동안 -18°C 이하에서 보관. 냉동 육류가 홍콩에 도착하면 FEHD는 조사를 위해 냉동 육류 샘플을 채취하거나 보관할 수 있음. 조사 결과 냉동육류가 식용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FEHD는 냉동 육류를 압수하거나 원산지로 되돌려보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관련 정보는 첸하이 당국에도 전달됨
 - FEHD는 2016년 6월 20일과 23일에 업무 협정과 관련 시행 조치들을 냉동 육류/가금류 수입업체들에게 공지. FEHD와 SZCIQ는 2016년 7월 11일부터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합의
- http://www.cfs.gov.hk/english/import/files/Guide_to_Frozen_meat_destined_for_Hong_Kong_e.pdf



2016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I)

대만

제1장 통관제도

제2장 라벨링 제도



주요 변경사항

□ 통관제도

- 일반 통관규정 변경
- 원산지 증명서 관련 규정 변경

□ 검역제도

- 식품, 동·식물, 주류 및 한약재, 기타식품 관련규정 개정

□ 라벨링제도

- 식품 및 식품첨가물, 건강식품, 주류 등 라벨링규정 개정
- 식품 영양표기 및 식품 품명표기 규정 개정

제1장 통관·검역제도

제1절 통관제도

1. 일반 통관규정 변동사항

공 고 일	공 고 번 호	수 정 내 용
2015/6/9	部台財關字 제1041012594호	<p><주요내용> 「進出口貨物預行報關處理準則」에 따라 수입화물은 사전 적하목록 신청제를 통하여 수출입 진행. 세관은 사전 신청 수입화물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 관련세금 또는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한 후 사전 통관완료 진행. 사전통관 처리된 화물은 세관기동순찰대가 규정에 의거하여 미리 검사 실시</p> <p><근거조항> 관세법 제 16조 제 3항</p> <p><수정사항> 운송도구수출입통관관리방법 및 세관관리운송업방법상관규범에 따라 수입화물은 세관에 수입화물 적하목록을 사전신고하며, 납세의무자는 통관 시 필요한 각 항목의 증명서를 구비하여 세관에 사전 통관을 신청함</p>
2016/9/13	部授食字 제1051301768호	<p><주요내용> 「식품안전위생관리표준시행세칙(食品安全衛生管理法施行細則)」수정 초안의 주용 내용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첨가물업자는 식품업자등록 플랫폼에 등록 신청 후 등록 자호(字號)를 취득 하여, 사업운영(가공, 제조, 수입 등)을 실시함. 등록 필수 상품정보는 성분, 상품규격서 또는 상품규격을 포함한 검사보고, 상품라벨 등을 포함함. - 식품 및 식품첨가물 관리강화를 위해, 재포장, 분장 또는 기타 가공작업이 필요한 경우 수입 시 최소한 품명, 공장명, 일자표기 및 기타 화물증명 표기를 통해 제품 판별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 전까지 중문 표기하도록 규정함

공 고 일	공 고 번 호	수 정 내 용
		<p><수정사항></p> <p>제 3조 중앙주관기관 허가의 등록자호는 동법 제 8조 제 3항 규정에 의거해, 등록 완성 후 취득한 등록자호 및 상품등록번호 또는 동법 제 18조 규정의 식품첨가물 일련번호, 또는 동법 제 21조 규정 취득의 검사등록 허가번호를 칭함</p> <p>제 4조 위생안전관련시스템은 동 법 제 8조 제 1항 또는 제 2항 규정의 식품우량위생규범준칙 또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준칙을 칭함</p> <p>제 19조 용기 또는 외포장이 있는 식품,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및 식품첨가물원료의 표기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함:</p> <p>3. 수입 시 동법 제 22조 및 제 24조 규정에 따라 중문 표기해야 하며, 재포장, 분장 또는 기타 가공작업을 거쳐야 하는 경우 수입 시 품명, 공장명, 일자 등을 표기하거나 기타 상품을 증명할 수 있는 표기 또는 정보가 있어야 하며, 판매 전까지 중문 표기를 완성해야 함</p> <p>제 22조 식품용 세정제의 표기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함:</p> <p>5. 수입 시 동법 제 27조 규정에 따라 중문 표기해야 하며, 재포장, 분장 또는 기타 가공작업을 거쳐야 하는 경우 수입 시 품명, 공장명, 일자 등을 표기하거나 기타 상품을 증명할 수 있는 표기 또는 정보가 있어야 하며, 판매 전까지 중문 표기를 완성해야 함</p> <p>제 25조 동법 제 26조 제 5목 및 제 27조 제 5목에서 칭하는 원산지(국)은 최종 제조, 가공 또는 조립 국가 또는 지역이며, 원산지(국)의 표기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함</p> <p>1. 수입상품의 원산지(국)은 수입화물원산지인정표준에 의거하며, 상품의 분류, 분장, 포장 또는 라벨 재부착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제조, 가공 또는 배합제조한 최종 국가 또는 지역을 표기해야 함</p> <p>2. 중문 표기의 제조상 주소가 원산지(국)을 상징하는 경우 표기를 면제함</p>

자료 : 대만 재정부 법규 검색 사이트(<http://law-out.mof.gov.tw>)

2. 원산지 · 증명서 · 관련 · 규정 변경사항

□ 원산지증명 해당 규정은 「관세법」 「수입화물원산지인정기준(進口貨物原產地認定標準)」 「원산지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관리방법(原產地證明書及加工證明書管理辦法)」을 표준으로 함

□ 원산지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관리방법(原產地證明書及加工證明書管理辦法)

○ 2016년 7월 14일 수정 발표(經貿字第 10504602790호.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음

수정조항	현행조항	설명
제 1조 본 방법은 무역법 제 20-2 제 4항 규정에 의거해 제정	제 1조 본 방법은 무역법 제 20-2 제 4항 규정에 의거해 제정	
제 2조 원산지설명서는 원산지가 대만인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가 외국인 것으로 분류함 원산지가 외국인 원산지증명서는 외화의 재수출 원산지증명서와 화물이 제 3국에서 직접 수입국에 수출되는 원산지증명서로 나뉨 외화가 대만에서 가공 후 재수출 시 그 가공이 원산지가 대만인 경우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대만 가공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함 원산지증명서 또는 가공증명서 신청 시, 그 신청서의 종류, 내용 및 필수 기재사항은 경제부 국제무역국에서 각 항목의 제품 또는 용도에 따라 별도 제정함	제 2조 원산지설명서는 원산지가 대만인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가 외국인 것으로 분류함. 원산지가 외국인 원산지증명서는 외화의 재수출 원산지증명서와 화물이 제 3국에서 직접 수입국에 수출되는 원산지증명서로 나뉨 제 7조 외화가 대만에서 가공 후 재수출 시 그 가공이 제 3조 제 1항 제 2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대만 가공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함 제 16조 원산지가 대만인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함: 1. 신청인, 수출자 및 제조상의 성명, 주소, 신분증 번호, 업체의 경우 명칭, 주소 및 사업자번호 2. 외국 수입자 명칭 및 주소 3. 품목분류번호, 명칭 및 수량 4. 수출항 및 목적지 국가명과 항구 원산지가 외국인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함: 1. 신청인, 수출자 및 제조상의 성명, 주소, 신분증번호, 업체의 경우 명칭, 주	제 3항 제 7조 수정 제 4항 제 16조 및 제 21조 수정 신청서의 관련 사항을 국제무역국에서 제정하도록 명문화 함

수정조항	현행조항	설명
	<p>소 및 사업자번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외국 수입자 명칭 및 주소 3. 품목분류번호, 명칭 및 수량 4. 수출항 및 목적지 국가명과 항구 또는 환적항 5. 원산국 6. 외화 재수출의 경우 원 수입화물신고서번호 또는 기타 국제무역국 허가의 수입관련 증명서류. 제 3국에서 직접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그 원산국 또는 제3국의 원산지증명서번호 및 제 3국의 B/L 번호 또는 수출입지의 화물운송장번호 <p>원산지증명서는 발행번호 및 일자가 있어야 함</p> <p>원산지증명서가 2페이지 이상의 경우 날인을 찍어야 함</p> <p>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국제무역국에서 항목 또는 용도에 따라 별도 제정함</p> <p>제 21조 가공증명서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 수출자 또는 가공업체의 성명, 주소, 신분증번호, 업체의 경우 그 명칭 주소 및 사업자번호 2. 외국수입자 명칭 및 주소 3. 품목분류번호, 명칭 및 수량 4. 수출항 및 목적지 국가명과 항구 5. 원산국 6. 원산국의 원산지증명서번호, 원 수입화물신고서번호 또는 기타 국제무역국 허가의 관련 수입증명서류 <p>가공증명서는 발행번호 및 일자가 있어야 하며, 가공증명서가 2페이지 이상의 경우 날인을 찍어야 함.</p> <p>가공증명서의 규격은 국제무역국에서 제정함</p>	
제 5조 제 3조 제 1항 제 2목에서 칭하는 실질 변형은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	제 5조 제 3조 제 1항 제 2목에서 칭하는 실질 변형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것	

수정조항	현행조항	설명
<p>하는 것을 이름(국제무역국이 수입국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또는 제품의 특성, 특정구역에 한해, 별도 제정한 경우는 제외함)</p> <p>1. 원재료를 가공 또는 제조 후 생산된 제품과 그 원재료가 속한 대만 세관수입세칙의 앞자리 6개 숫자가 상이한 경우</p> <p>2. 제품의 가공 또는 제조 후 품목번호는 변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율이 35%를 초과하거나 특정제품이 국제무역국 공고의 주요제작과정에 부합하는 경우 부가가치율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음: 【제품수출가격 (F.O.B.) - 직간접수입원재료 및 부품가격 (C.I.F.)】 / 【제품수출가격 (F.O.B.)】。</p> <p>제품이 단지 다음의 작업을 거친 경우 실질 변형으로 간주함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송 또는 저장기간에 필요한 보존 작업 2. 제품의 판매 또는 선적을 위한 분류, 개별포장, 포장, 코드 추가, 라벨 재부착 등 3. 제품의 조합 또는 혼합작업으로 인해 조합 또는 혼합 후 제품 특성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4. 간단한 분할 또는 접합, 조립, 조합 등 가공작업 5. 검측, 간단한 건조, 희석 또는 농축 작업으로 그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경우 	<p>을 이름(국제무역국이 수입국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또는 제품의 특성, 특정구역에 한해, 별도 제정한 경우는 제외함)</p> <p>1. 원재료를 가공 또는 제조 후 생산된 제품과 그 원재료가 속한 대만 세관수입세칙의 앞자리 6개 숫자가 상이한 경우</p> <p>2. 제품의 가공 또는 제조 후 품목번호는 변하지 않았으나, 주요제작과정을 거쳤거나, 부가가치율이 35%를 초과한 경우 부가가치율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음: 【제품수출가격 (F.O.B.) - 직간접수입원재료 및 부품가격 (C.I.F.)】 / 【제품수출가격 (F.O.B.)】。</p> <p>제 1항 제품이 단지 다음의 작업을 거친 경우 실질 변형작업으로 인정하지 않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송 또는 저장기간에 필요한 보존 작업 2. 제품의 판매 또는 선적을 위한 분류, 개별포장, 포장, 코드 추가, 라벨 재부착 등 3. 제품의 조합 또는 혼합작업으로 인해 조합 또는 혼합 후 제품 특성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4. 간단한 분할 또는 접합, 조립, 조합 등 가공작업 5. 검측, 간단한 건조, 희석 또는 농축 작업으로 그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경우 	<p>실무적으로 제 1항 제 2목의 「주요 제작과정」의 인정에 일정한 표준이 없어, 특정제품이 국제무역국 공고의 주요제작과정을 거친 경우 실질 변형으로 인정함</p>
<p>제 6조 외화 재수출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서류상 기재되어 있는 원산국을 원산지로 삼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산국원산지증명서 2. 원 수입화물신고서 복사본 <p>제품이 제3국에서 직접 수입국으로 수출될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원국원산지증명서 기재의 원산국을 원산지로 삼음</p>	<p>제 6조 외화 재수출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서류상 기재되어 있는 원산국을 원산지로 삼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산국원산지증명서 2. 원 수입화물신고서 복사본 3. 기타 국제무역국 허가의 관련 수입증명서류 <p>제품이 제3국에서 직접 수입국으로 수출될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원국원산지증명서 기재의 원산국을 원산지로 삼음</p>	<p>실무 고려 및 기타 구체적으로 외화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없어, 제 3목 현행조항 삭제</p>

수정조항	현행조항	설명
<p>제 17조 외화 재수출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제 21조 제1항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외에 제품 세관통관 완료 후 진행, 다음 자료를 구비하여 신청. 단 작업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및 검색하여야 하는 자료는 이를 제한하지 않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 2. 원산국원산지증명서 또는 원 수입화물 신고서 3. 수출화물신고서 4. 기타 규정에 의거해 첨부해야하는 서류 전항 제 2목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제품설명란 또는 각주의 생산국별 수출화물신고증명서, 작업시스템 검색가능 제품명칭란에 기재되어 있는 원산국별 수출화물신고서로 대체 	<p>제 18조 외화 재수출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제 23조 제1항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외에 제품 세관통관 완료 후 진행, 다음 자료를 구비하여 신청. 단 작업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및 검색하여야 하는 자료는 이를 제한하지 않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산지증명서신청서 2. 세관신고 원 수입화물신고서 복사본 또는 기타 경제무역국 허가 관련 수입 증명서류 3. 세관신고 수출화물신고서 복사본 4. 기타 규정에 의거해 첨부해야하는 서류 	<p>「제품설명란 또는 각주의 생산국별 수출화물신고증명서」와 「작업시스템 검색가능 제품명칭란에 기재되어 있는 원산국별 수출화물신고서 대체」는 외화 재수출 원산지증명의 증명자료로 함.</p>
<p>제 18조 제 3국에서 직접 수입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다음 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 2. 원산국 또는 제 3국의 원산지증명서 복사본 3. 제 3국의 B/L 복사본 또는 수출입지의 화물운송장 복사본 4. 기타 규정에 의거해 첨부해야 하는 서류 	<p>제 19조 제 3국에서 직접 수입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다음 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산지증명서신청서 2. 원산국 또는 제 3국의 원산지증명서 복사본 3. 제 3국의 B/L 복사본 또는 수출입지의 화물운송장 복사본 4. 기타 규정에 의거, 첨부해야 하는 서류 	
<p>제 19조 외화가 대만 항구에서 타국으로 환적될 경우 신청인은 외화 재수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품 세관통관완료 후 진행,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함. 단 작업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및 검색하여야 하는 자료는 이를 제한하지 않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 2. 세관 환적신고서 3. 원 수출국산지증명서 4. 기타 국제무역국 특별 허가 관련 증명자료 	<p>제 20조 외화가 대만 항구에서 타국으로 환적될 경우 신청인은 외화 재수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품 세관통관완료 후 진행,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함. 단 작업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및 검색하여야 하는 자료는 이를 제한하지 않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이 원산지인 원산지증명서신청서 2. 세관 신고 또는 통보 환적신고서 복사본 3. 원 수출국산지증명서 복사본 4. 기타 국제무역국 특별 허가 관련 증명자료 	<p>「세관의 환적신고서」와 「원수출국산지증명서」는 원본 또는 복사본 모두 첨부 가능</p>

수정조항	현행조항	설명
<p>제 20조 가공증명서 신청은 제 21조 제 1항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제품 세관통관완료 후 진행, 신청 시 다음 자료를 구비하여 발행부서에 신청함. 단 작업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및 검색하여야 하는 자료는 이를 제한하지 않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 2. 원산국의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 수입화물 신고서 3. 수출화물신고서 또는 기타 관련 수출 증명 서류 	<p>제 22조 가공증명서 신청은 제 23조 제 1항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제품 세관통관완료 후 진행, 신청 시 다음 자료를 구비하여 발행부서에 신청함. 단 작업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및 검색하여야 하는 자료는 이를 제한하지 않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공증명서 신청서 2. 원산국의 원산지증명서 복사본, 원 수입화물신고서 복사본 또는 기타 국제무역국 허가 관련 수입증명서류 3. 세관신고 수출화물신고서 복사본 또는 기타 관련 수출증명서류 4. 기타 규정에 의거, 첨부해야 하는 서류 	
<p>제 21조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인은 제품 세관통관완료 전 원산지가 대만인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가 외국인 원산지 증명서 또는 가공증명서를 신청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국 정부 요구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또는 가공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원산지증명서 또는 가공증명서가 반드시 화물에 함께 항공에 첨부되어야 하거나 화물 이미 세관반입신청하였으나, 수출화물신고서 미통관 완료, 또는 운송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3. 우량기업인증 및 관리방법에 의거해 세관에 우량기업 비준, 신청한 경우 전항의 신청은 다음 자료를 구비하여 발행부서에 신청함 단 작업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및 검색하여야 하는 자료는 이를 제한하지 않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 2. 수출입업체등록, 회사등록, 상업등록 증명 서류 복사본 3. 전항 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증명서류 4. 상업송장 또는 교역체결서류 5. 외화 재수출에 속하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가공증명서, 별도 원산국산지증 	<p>제 23조 다음 사항의 경우 신청인은 제품이 세관 통관 전 원산지가 대만인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가 외국인 원산지 증명 또는 가공증명서를 신청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국 정부 요구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또는 가공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원산지증명서 또는 가공증명서가 반드시 화물에 함께 운송진행되어야 하거나 화물 이미 세관반입신청하였으나, 수출화물신고서 미통관 완료, 또는 운송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3. 우량기업인증 및 관리방법에 의거해 세관에 우량기업 비준, 신청한 경우 4. 기타 국제무역국 공고 또는 특별허가의 경우 <p>전항의 신청은 다음 자료를 구비하여 발행부서에 신청함</p> <p>단 작업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및 검색하여야 하는 자료는 이를 제한하지 않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산지증명서 또는 가공증명서신청서 2. 수출입업체등록, 회사등록, 상업등록 증명서류 복사본 또는 기타 국제무역국 지정의 관련 서류 3. 전항 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증명서류 	<p>제 2항 제 2목 원산지증명서 또는 가공증명서가 반드시 화물과 함께 운송,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 해상운송이 아닌 항공운송에 해당, 문구 삭제함</p>

수정조항	현행조항	설명
<p>명서 또는 원 수입화물신고서 복사본을 첨부해야 함</p> <p>6. 기타 규정에 의거해 첨부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은 전조항 원산지증명서 또는 가공증명서 발행 후 30일 이내 또는 국제무역국 공고 기간 내 작업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세관통관 수출화물번호 또는 항차, 혹은 관련 수출증명서류를 구비하여 발행부서에 신청을 완료함. 정부 공보에 등록 게시함</p>	<p>4. 상업송장 또는 교역체결서류</p> <p>5. 외화 재수출에 속하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가공증명서, 별도 원산국산지증명서 또는 원수입화물신고서 복사본을 첨부해야 함</p> <p>6. 기타 규정에 의거, 첨부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은 전조항 원산지증명서 또는 가공증명서 발행 후 30일 이내 또는 국제무역국 공고 기간 내 작업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세관통관 수출화물번호 또는 항차, 혹은 관련 수출증명서류를 구비하여 발행부서에 신청을 완료함. 정부공보에 등록, 게시</p>	
<p>제 23조 신청인은 제품 수출통관완료 90일 이내에 제 16조에서 제 20조 규정에 의거,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원산지증명서 또는 가공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함. 단 작업시스템을 통해 검색해야하는 자료는 이를 제한하지 않음</p> <p>원산지증명서 또는 가공증명서의 수출자 명칭란에 신청인 또는 수출화물 신고서의 매입자 이외 제 3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본 법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리, 신청인과 제 3자 간 교역관련 증명서류 복사본을 첨부, 또는 별도 국제무역국 특별 허가 문서를 첨부하여 처리함</p> <p>제 1항 신청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세관 발행수출화물신고 증명용서류를 첨부하여 국제무역국에 특별 허가를 신청함</p> <p>동일 수출화물신고서의 일괄 원산지 신청은 첫 번째 원산지 증명을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단 국제무역국 특별 허가의 경우 제한하지 않음</p>	<p>제 25조 신청인이 제품 수출통관완료 60일 후 원산지증명서 또는 가공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세관발행 수출화물신고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단 작업시스템을 통해 검색해야하는 자료는 이를 제한하지 않음</p>	<p>90일 초과인 경우 특별 허가규정을 통해 국제무역국에 신청하도록 함</p> <p>수출자가 신청한 원산지증명서가 일괄수출 화물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분할 신청 시를 고려하여 그 기한을 15일 이내로 함</p>

제2절 식품검역제도

1.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개정

- 식품안전위생관리법(2015년 12월 16일 제 41조, 48조항 수정 및 제 15-1조 추가)

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주요 개정 부분 Ⅰ

개정 조항	개정 내용
제 15-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주관기관은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하여 그 제조, 가공, 조합의 방식 및 조건, 식용부위, 사용량, 제작가능 상품형태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규정 제한 - 전 항의 제한 원료의 품목 및 기타 제한 사항은 중앙주관기관 공고에 따름
제 4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할시, 현 주관기관은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도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 및 식품용 세정제가 본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아래 조치를 취하며, 업체는 이에 따라야 하며 방해 또는 거부할 수 없음 1) 제조, 가공, 조합, 포장, 운송, 저축, 판매 장소 등 현장조사 및 샘플검사를 집행함 2) 전 항의 현장조사 및 샘플검사 시 업자는 원료 또는 상품의 근거 및 수량, 작업, 품질보증, 판매대상, 금액, 기타 보증자료, 증명서 또는 기록 등을 제공하여야 함 3)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도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 및 식품용 세정제가 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봉쇄함 4) 제 8조 제 1항, 제 15조 제 1항, 제 4항, 제 16조를 위반할 경우 중앙주관기관은 제 17조, 제 18조 또는 제 19조 규정에 의해 식품업자로 하여금 작업 중단 및 판매 중지를 명하고 동 상품공급을 봉쇄함 5) 식품중독사건 신고 확보 시 동 식품업자에 대하여 기한 내 개선 또는 주관기관인 인정하는 기구의 관련 식품종사자를 파견하여 최소 4시간 이상의 식중독방지 위생 강습을 하도록 함. 조사기간 내 작업 중단, 판매중지 및 소독을 실시하며 동 상품공급을 봉쇄함
제 4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행위의 경우 기한 내 개선명령을 내리며,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신대만 달러 3만원 이상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사항이 중대한 경우 폐업, 일정기간 휴업, 회사,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등기 사항에 대하여 폐지하며, 식품업자의 등록 역시 폐지함. 등록폐지의 경우 1년 내 신규등록이 불가함 1) 제 7조 제1항 규정인 식품안전감측계획, 제 2항 또는 제 3항 규정 실험실 미설치로 규정 위반의 경우

개정 조항	개정 내용
	2) 제 8조 제 3항 규정인 미등록 또는 제 8조 제 5항 규정인 인증 미취득으로 규정 위반의 경우 3) 제 9조 제1항 규정인 식품의 이력추적관리시스템 미구축으로 규정 위반의 경우 4) 제 9조 제 2항 규정인 전자 계산서 미발행으로 규정 위반의 경우 5) 제 9조 제 3항 규정인 전자신청 또는 중앙주관기관 제정 방식 및 규격에 의한 신청 위반의 경우 6) 제 10조 제 3항 규정 위반의 경우 7) 제 17조 또는 제 19조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표준 규정 위반의 경우 8) 식품업자가 판매한 상품이 제 18조 규정식품첨가물 규격 및 그 사용 범위 및 함량의 규정 위반의 경우 9) 제 22조 제 4항 또는 제24조 제 3항 규정인 직할 주관 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규정 위반의 경우 10) 제35조 제 4항 규정인 상품성분 보고 및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규정 위반의 경우 11) 제 15조-1 제 2항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제한 사항 규정 위반의 경우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44조 제 1항 벌금처벌표준(食品安全衛生管理法第四十四條第一項罰鍰裁罰標準)

- 2016년 5월 12일 衛生福利部部授食字第1052000998 호에 따라 전문 제 9조 제정, 발표됨. 동 표준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44조 제 2항에 의거해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1항 제1목, 제 2목, 제 6목, 제 8목, 제 9목 또는 제 16조 제 2목에서 제 4목 위반 시 기준

처벌 조항	위반 사실	처벌내용	벌금(NTD)	비고
동법 제 44조 제 1항 제 2목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며, 제조, 가공, 조합,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입, 수출, 증여, 진열을 진행함 1) 변질 또는 부패 2) 미성숙으로 인한 인체건강에 유해 3) 방사능오염으로 그 함량이 안전허용치를 초과	NTD 6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벌금	위반횟수에 따른 기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1회: 6만원 2) 2회: 30만원 3) 3회: 90만원 4) 4회: 150만원 5) 5회이상:	위반 횟수: 주관기관이 확보한 위반 사실 발견 당일부터 이전 12개월 내 동일한 조항 위반

처벌 조항	위반 사실	처벌내용	벌금(NTD)	비고
	4) 유효일자 초과 5) 국내에 식용으로 공급된 적이 없으며, 무해함이 증명되지 않음 2. 식품도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 식품용 세정제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며, 제조, 판매, 수입, 수출 또는 사용함 1) 불량 화학작용 생성이 용이한 것 2) 건강에 유해한 것 3) 기타 위험평가를 거쳐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		250만원	사실 횡수 기준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1항 제3목, 제 7목, 제 10목 또는 제 16조 제 1목 위반시 기준

처벌조항	위반사실	처벌 내용	벌금(NTD)	각주
동법 제 44조 제 1항 제 2목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며, 제조, 가공, 조합,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입, 수출, 증여, 진열을 진행함 1) 독성 또는 인체건강에 유해한 물질 또는 이물질 함유 2) 위조품 3) 중앙주관기관 미허가 첨가물 첨가 2. 식품도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 식품용 세정제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며, 제조, 판매, 수입, 수출 또는 사용함 1) 독성 함유한 것	NTD 6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벌금	위반횡수에 따른 기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1회: 12만원 2) 2회: 24만원 3) 3회: 36만원 4) 4회: 50만원 5) 5회이상: 65만원	위반 횡수: 주관기관이 확보한 위반 사실 발견 당일부터 이전 12개월 내 동일한 조항 위반 사실 횡수 기준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1항 제4목 위반 시 기준

처벌조항	위반사실	처벌내용	벌금(NTD)	각주
동법 제 44조 제 1항 제 2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병원성물질에 오염되거나 유행병 역학조사를 거쳐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인을 포함한 경우에 제조, 가공, 조합,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입, 수출, 증여, 진열을 진행함	NTD6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벌금	위반횟수에 따른 기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1회: 6만원 2) 2회: 30만원 3) 3회: 60만원 4) 4회: 100만원 5) 5회이상: 170만원	위반 횟수: 주 관기관이 확보한 위반사실 발견 당일부터 이전 12개월 내 동일한 조항 위반 사실 횟수 기준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1항 제5목 또는 제 4항 위반 시 기준

처벌조항	위반사실	처벌내용	처벌기준	각주
동법 제 44조 제 1항 제 2목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다음에 해당하며, 제조, 가공, 조합,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입, 수출, 증여, 진열을 진행함: 잔류농약 또는 동물용 약물함량이 안전허용치를 초과 2. 국내외 육류 및 기타 관련제품에 중앙주관기관 위험평가를 거친 안전허용량 표준을 제외, 베타 작용제(β -agonist) 검출	NTD6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벌금	위반횟수에 따른 기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1회: 6만원 2) 2회: 12만원 3) 3회: 24만원 4) 4회: 36만원 5) 5회이상: 50만원	위반 횟수: 주 관 기관이 확보한 위반 사실 발견 당일부터 이전 12개월 내 동일한 조항 위반 사실 횟수 기준

2. 「식품 및 관련 상품 수입검사 방법(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 개정

- 2001년 12월 14일 행정원 위생서에서 제24조 공포 후 여러 차례 수정 발표됨
-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기구, 식품용기, 식품포장 또는 식품용 세정제 등 상품을 수입할 시 적용되는 위생안전 및 품질 검사 관련 기본 수입규정임
- 2016년 10월 11일 F01, F02 수입규정 항목이 추가 제정발표 됨(部授食字第

1051303198호) => F01, F02 수입규정은 행정원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의 관리하에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검사방법조문(輸入食品及商品相關驗辦法條文)」의 규정에 따라 수입됨

Ⅱ 수입규정 설명 Ⅱ

규정 번호	규정 내용
F01	수입상품은 행정원 위생복지부가 발부한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검사방법조문(輸入食品及商品相關驗辦法條文)」의 규정에 따라 경제부 표준 검역국에 수입 검사를 신청함
F02	수입상품이 속한 식품류 또는 함유된 식품은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검사방법조문(輸入食品及商品相關驗辦法條文)」의 규정에 따라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 수입 검사를 신청함
827	(1)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시 F01규정에 따라 처리함. (2) 의약품 수입 시 503규정에 따라 처리함. (3) 일반 공업용 유지 수입 시 251규정에 따라 처리함. (4) 바이오디젤 용 유지 수입 시 255규정에 따라 처리함. (5) 사료 및 사료첨가물 수입 시 404규정에 따라 처리함. (6) 수출입업체 등록 방법에 의거해 등록된 수입자가 상술 주관기관에 수입허가 문서를 신청해야 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지 수입 시 경제부 국제무역국에 수입허가 문서를 신청해야 함 (7) 본 항 물품이 주관기관의 수입허가 문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수입을 허용하지 않음
831	(1) 식품첨가물 또는 비식품첨가물의 식품원료 수입시 508 규정에 따라 처리함. (2) 의약품 수입 시 503규정에 따라 처리함. (3) 일반 공업용 유지 수입 시 251규정에 따라 처리함. (4) 바이오디젤 용 유지 수입 시 255규정에 따라 처리함. (5) 수출입업체 등록 방법에 의거해 등록된 수입자가 상술 주관기관에 수입허가 문서를 신청해야 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지 수입 시 경제부 국제무역국에 수입허가 문서를 신청해야 함 (6) 본 항 물품이 주관기관의 수입허가 문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수입을 허용하지 않음
MWO	중국 상품은 수입 불가

〈F01, F02 수입규정 추가항목〉

ccc code	품 명	수입 규정
0106.20.20.10-3	Soft-shell turtle (terrapin), live, and fry	F02
0302.89.92.10-6	Shark's tail, fresh or chilled	F01
0302.89.92.90-9	Tails and bones of fish under this heading, edible, fresh or chilled	F01
0302.89.94.20-2	Upper lobe of shark's caudal fin, fresh or chilled	F01
0303.89.92.10-5	Shark's tail, frozen	F01
0303.89.92.90-8	Tails and bones of fish under this heading, edible, frozen	F01
0303.89.94.20-1	Upper lobe of shark's caudal fin, frozen	F01
0304.99.90.21-1	Atlantic and Pacific bluefin tunas (<i>Thunnus thynnus</i> , <i>Thunnus orientalis</i>) meat (whether or not minced), frozen	F01
0304.99.90.22-0	Southern bluefin tuna (<i>Thunnus maccoyii</i>) meat (whether or not minced), frozen	F01
0304.99.90.23-9	Bigeye tuna (<i>Thunnus obesus</i>) meat (whether or not minced), frozen	F01
0304.99.90.99-8	Other fish meat (whether or not minced), frozen	F01
0305.72.00.10-3	Shark's tail, smoked, dried, or salted	F01
0305.72.00.90-6	Edible fish heads, tails and maws	F01
0305.79.00.10-6	Upper lobe of shark's caudal fin, smoked, dried, or salted	F01
0305.79.00.90-9	Other edible fish offal	F01
0704.90.90.11-8	Genetically modified Colza (<i>Brassica napus</i>), fresh or chilled	F01
0704.90.90.12-7	Non-genetically modified Colza, fresh or chilled	F01
0704.90.90.90-2	Other Kohlrabi, kale and similar edible brassica, fresh or chilled	F01
0709.99.10.10-2	Genetically modified sweet corn, fresh or chilled	F01

ccc code	품 명	수입 규정
0709.99.10.20-0	Non-genetically modified sweet corn, fresh or chilled	F01
0710.40.00.10-1	Genetically modified sweet corn, frozen	F01
0710.40.00.20-9	Non-genetically modified sweet corn, frozen	F01
0710.80.90.41-6	Genetically modified Colza (Brassica napus), frozen	F01
0710.80.90.42-5	Non-genetically modified Colza, frozen	F01
0712.90.29.10-5	Genetically modified other sweet corn, dried	F01
0712.90.29.20-3	Non-genetically modified other sweet corn, dried	F01
0908.22.00.00-7	Mace, crushed or ground	F01
1205.10.00.10-7	Genetically modified low erucic acid rape or colza (Brassica napus) seeds, whether or not broken	F01
1205.10.00.20-5	Non-genetically modified low erucic acid rape or colza seeds, whether or not broken	F01
1205.90.00.10-0	Other genetically modified rape or colza (Brassica napus) seeds, whether or not broken	F01
1205.90.00.20-8	Other non-genetically modified rape or colza seeds, whether or not broken	F01
1207.60.00.10-4	Safflower seeds	F02
1207.99.90.00-2	Other oil seeds and oleaginous fruits, whether or not broken	F02
1209.21.00.00-2	Lucerne (alfalfa) seeds	F02
1210.20.00.00-0	Hop cones, ground, powdered or in the form of pellets ; lupulin	F02
1212.99.80.00-7	Apricot , peach (including nectarine) or plum stones and kernels	F02
1212.91.00.10-0	Genetically modified sugar beet	F01
1212.91.00.20-8	Non-genetically modified sugar beet	F01
1401.90.00.50-3	Bamboo leaves, bamboo sheaths	F02

ccc code	품 명	수입 규정
1404.90.20.00-7	Vegetable shell flour	F02
1404.90.99.90-4	Other vegetable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F02
1801.00.10.00-7	Cocoa beans, whole or broken, raw	F01
2106.90.91.10-8	Coffee creamer	F01
2106.90.91.20-6	preparations of soybeans protein	F01
2106.90.56.00-3	Morinda citrifolia in capsule form	F01
1207.60.00.10-4	Safflower seeds	F02
1212.99.80.00-7	Apricot , peach (including nectarine) or plum stones and kernels	F02
1801.00.10.00-7	Cocoa beans, whole or broken, raw	F01
2201.90.90.90-6	Other waters,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nor flavoured	F01
2202.90.17.00-4	Morinda citrifolia juice drink, unfermented	F01
2202.90.27.00-2	Morinda citrifolia drink, unfermented, soft	F01
2853.00.40.00-6	Distilled or conductivity water and water of similar purity	F02
2906.13.10.00-4	Sterols	F02
3301.29.90.00-8	Other essential oils other than those of citrus fruit	F02
3802.10.00.00-2	Activated carbon	F02
3824.90.99.80-4	anti-offset spray powder	F02
3924.10.00.10-3	Bowls or plates, of plastics	F02
4419.00.00.29-4	Other chopsticks, of bamboo or wood	F02
9806.10.00.33-7	Fresh milk (excluding raw milk and milk of goat and sheep), not concentrated and unsweetened,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6% but not exceeding 10%, of Item No. 0401.40.10.00	F01

ccc code	품 명	수입 규정
9806.10.00.34-6	Fresh milk (excluding raw milk and milk of goat and sheep), not concentrated and unsweetened,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10%, of Item No. 0401.50.10.00	F01
9806.10.00.35-5	Longlife milk (excluding raw milk and milk of goat and sheep), not concentrated and unsweetened,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6% but not exceeding 10%, of Item No. 0401.40.20.00	F01
9806.10.00.36-4	Longlife milk (excluding raw milk and milk of goat and sheep), not concentrated and unsweetened,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10%, of Item No. 0401.50.20.00	F01
9807.10.00.11-2	Seed of ground-nuts, in shell, of Item No. 1202.30.10.00	F01
9807.10.00.12-1	Ground-nuts, in shell, of Item No. 1202.41.00.00	F01
9807.20.00.11-0	Seed of ground-nuts, shelled, of Item No. 1202.30.20.00	F01
9807.20.00.12-9	Ground-nuts, shelled, whether or not broken, of Item No. 1202.42.00.00	F01

〈F01 또는 508 규정이 포함된 복합형 수입규정으로 변경〉

ccc code	품 명	변경 규정
1501.10.00.00-0	Pig lard, other than that of heading 02.09 or 15.03	827
1501.90.00.00-3	Poultry fat, other than that of heading 02.09 or 15.03	827
1502.10.10.00-7	Fats of bovine animals, sheep or goats, rendered, acid value not exceeding 1, other than those of heading 15.03	827
1502.10.20.00-5	Fats of bovine animals, sheep or goats, rendered, acid value exceeding 1, other than those of heading 15.03	827
1502.90.00.00-2	Fats of bovine animals, sheep or goats, unrender, other than those of heading 15.03	827
1503.00.11.00-7	Lard stearin, oleostearin and tallow stearin, acid value not exceeding 1	827

ccc code	품 명	변경 규정
1503.00.12.00-6	Lard stearin, oleostearin and tallow stearin, acid value exceeding 1	827
1503.00.21.00-5	Lard oil, oleo oil and tallow oil, acid value not exceeding 1	827
1503.00.22.00-4	Lard oil, oleo oil and tallow oil, acid value exceeding 1	827
1504.10.00.00-7	Fish-liver oils and their fractions	827
1504.20.00.00-5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fish, other than liver oils	827
1504.30.00.00-3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marine mammals	827
1506.00.10.00-5	Oil, egg-yolk	827
1506.00.20.00-3	Bone-marrow oil	827
1506.00.90.10-6	Fat of soft-shell turtle (terrapin)	827
1506.00.90.90-9	Other animal oils and fats	827
1507.10.00.00-4	Crude soy-bean oil ,whether or not degummed	827
1507.90.00.00-7	Refined soybean oil and its fractions	827
1508.10.00.00-3	Crude ground-nut (peanut) oil	827
1508.90.00.00-6	Refined ground-nut (peanut) oil and its fractions	827
1509.10.00.00-2	Virgin olive oil	827
1509.90.00.00-5	Refined olive oil and its fractions	827
1510.00.00.00-1	Other oils and their fractions, obtained solely from olive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including blends of these oils or fractions with oils or fractions of heading 15, 09	827
1511.10.00.00-8	Crude palm oil	827
1511.90.00.00-1	Refined palm oil and its fractions	827
1512.11.10.00-4	Crude sunflower-seed oil	827
1512.11.20.00-2	Crude safflower oil	827

ccc code	품 명	변경 규정
1512,19,10,00-6	Refined sunflower-seed oil and its fractions	827
1512,19,20,00-4	Refined safflower oil and its fractions	827
1512,21,00,00-4	Crude cotton-seed oil, whether or not gossypol has been removed	827
1512,29,00,00-6	Refined cotton-seed oil and its fractions	827
1513,11,00,00-5	Crude coconut (copra) oil	827
1513,19,00,00-7	Refined coconut (copra) oil and its fractions	827
1513,21,10,00-1	Crude palm kernel oil	827
1513,21,20,00-9	Crude babassu oil	827
1513,29,10,00-3	Refined palm kernel oil and its fractions	827
1513,29,20,00-1	Refined babassu oil and its fractions	827
1514,11,00,10-2	Crude rape or colza oil of low erucic acid	827
1514,19,00,00-6	Refinedrapeorcolzaoilanditsfractionsoflowerucicacid	827
1514,91,10,00-5	Other crude rape or colza oil	827
1514,91,20,00-3	Crude mustard oil	827
1514,99,10,00-7	Other refined rape or colza oil and its fractions	827
1514,99,20,00-5	Refined mustard oil and fractions thereof	827
1515,11,00,00-3	Crude linseed oil	827
1515,19,00,00-5	Refined linseed oil and its fractions	827
1515,21,00,00-1	Crude maize (corn) oil	827
1515,29,00,00-3	Maize (corn) oil and its fractions	827
1515,30,00,00-0	Castor oil and its fractions	828
1515,50,00,00-5	Sesame oil and its fractions	827
1515,90,90,90-9	Other fixed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827

ccc code	품 명	변경 규정
1516,10,11,00-0	Hydrogenated (hardened) animal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acid value not exceeding 1	827
1516,10,12,00-9	Hardened fish oil, acid value not exceeding 1	827
1516,10,21,00-8	Hydrogenated (hardened) animal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acid value exceeding 1	827
1516,10,22,00-7	Hardened fish oil acid value exceeding 1	827
1516,20,11,00-8	Hydrogenated (hardened)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acid value not exceeding 0,6	827
1516,20,12,00-7	Hydrogenated palm oil and hydrogenated palm kernel oil, acid value not exceeding 0,6	827
1516,20,20,00-7	Hydrogenated (hardened)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acid value exceeding 0,6	827
1517,10,00,00-2	Margarine, excluding liquid margarine	830
1517,90,10,00-3	Liquid margarine	830
1517,90,20,00-1	Shortening	830
1517,90,90,00-6	Other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or vegetable fats or oils, other than edible fats or oils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15,16	830
1518,00,10,00-1	Boiled linseed oil	830
1518,00,20,00-9	Dehydrated castor oil	831
1518,00,30,00-7	Linoxyn	830
1518,00,40,00-5	Epoxy soy-bean oil	830
1518,00,90,00-4	Other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boiled, oxidised, dehydrated, sulphurised, blown, polymerised by heat in vacuum or in inert gas or otherwise chemically modified, excluding those of heading No.15,16	830
1520,00,00,00-9	Glycerol, crude; glycerol waters and glycerol lyes	831

ccc code	품 명	변경 규정
1521.10.00.00-6	Vegetable waxes, whether or not refined or coloured	831
1521.90.10.00-7	Bees wax (yellow wax), whether or not refined or coloured	830
1905.90.10.00-3	Empty cachets of all kinds suitable for pharmaceutical use	821
2811.29.90.10-1	Nitrous Oxide	529
3001.90.40.90-7	Other glands and other organs, dried, whether or not powdered	821
3002.10.00.20-6	Plasma	821
3002.10.00.90-1	Other blood fractions and modified immunological products, whether or not obtained by means of biotechnological process	823
3002.90.90.90-5	Human blood; animal blood prepared for therapeutic, prophylactic or diagnostic uses; toxins, cultures of micro-organisms (excluding yeasts) and similar products	824
9602.00.41.00-5	Capsules for pharmaceutical products	821
9807.30.00.10-9	Crude ground-nut (peanut) oil, of Item No. 1508.10.00.00	827
9807.30.00.20-7	Refined ground-nut (peanut) oil and its fractions, of Item No. 1508.9~0.00.00	827

〈F01 또는 F02에서 다른 규정으로 변경〉

ccc code	품 명	기존 규정	변경 규정
1501.10.00.00-0	Pig lard, other than that of heading 02.09 or 15.03	F02	827
1501.90.00.00-3	Poultry fat, other than that of heading 02.09 or 15.03	F02	827
1502.10.10.00-7	Fats of bovine animals, sheep or goats, rendered, acid value not exceeding 1, other than those of heading 15.03	F02	827
1502.10.20.00-5	Fats of bovine animals, sheep or goats, rendered, acid value exceeding 1, other than those of	F02	827

ccc code	품 명	기존규정	변경 규정
	heading 15.03		
1502.90.00.00-2	Fats of bovine animals, sheep or goats, unrender, other than those of heading 15.03	F02	827
1503.00.11.00-7	Lardstearin,oleostearinandtallowstearin,acidvaluenotexceeding1	F02	827
1503.00.12.00-6	Lard stearin, oleostearin and tallow stearin, acid value exceeding 1	F02	827
1503.00.21.00-5	Lard oil, oleo oil and tallow oil, acid value not exceeding 1	F02	827
1503.00.22.00-4	Lard oil, oleo oil and tallow oil, acid value exceeding 1	F02	827
1504.10.00.00-7	Fish-liver oils and their fractions	F02	827
1504.20.00.00-5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fish, other than liver oils	F02	827
1504.30.00.00-3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marine mammals	F02	827
1506.00.10.00-5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marinemammals	F02	827
1506.00.20.00-3	Bone-marrow oil	F02	827
1506.00.90.10-6	Fat of soft-shell turtle (terrapin)	F02	827
1506.00.90.90-9	Other animal oils and fats	B01, F02	827, B01
1507.10.00.00-4	Crude soy-bean oil, whether or not degummed	F02, MWO	827, MWO
1507.90.00.00-7	Refined soybean oil and its fractions	F02, MWO	827, MWO
1508.10.00.00-3	Crude ground-nut (peanut) oil	F02, MWO	827, MWO
1508.90.00.00-6	Refined ground-nut (peanut) oil and its fractions	F02, MWO	827, MWO

ccc code	품 명	기존규정	변경 규정
1509,10,00,00-2	Virgin olive oil	F02	827
1509,90,00,00-5	Refined olive oil and its fractions	F02	827
1510,00,00,00-1	Other oils and their fractions, obtained solely from olive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including blends of these oils or fractions with oils or fractions of heading 15, 09	F02	827
1511,10,00,00-8	Crude palm oil	F02	827
1511,90,00,00-1	Refined palm oil and its fractions	F02	827
1512,11,10,00-4	Crude sunflower-seed oil	F02	827
1512,11,20,00-2	Crude safflower oil	F02	827
1512,19,10,00-6	Refined sunflower-seed oil and its fractions	F02	827
1512,19,20,00-4	Refined safflower oil and its fractions	F02	827
1512,21,00,00-4	Crude cotton-seed oil, whether or not gossypol has been removed	F02	827
1512,29,00,00-6	Refined cotton-seed oil and its fractions	F02	827
1513,11,00,00-5	Crude coconut (copra) oil	F02	827
1513,19,00,00-7	Refined coconut (copra) oil and its fractions	F02	827
1513,21,10,00-1	Crude palm kernel oil	F02	827
1513,21,20,00-9	Crude babassu oil	F02	827
1513,29,10,00-3	Refined palm kernel oil and its fractions	F02	827
1513,29,20,00-1	Refined babassu oil and its fractions	F02	827
1514,11,00,10-2	Crude rape or colza oil of low erucic acid	F02	827
1514,19,00,00-6	Refined rape or colza oil and its fractions of low erucic acid	F02	827
1514,91,10,00-5	Other crude rape or colza oil	F02	827
1514,91,20,00-3	Crude mustard oil	F02	827
1514,99,10,00-7	Other refined rape or colza oil and its fractions	F02	827
1514,99,20,00-5	Refined mustard oil and fractions thereof	F02	827

ccc code	품 명	기존규정	변경 규정
1515.11.00.00-3	Crude linseed oil	F02	827
1515.19.00.00-5	Refined linseed oil and its fractions	F02	827
1515.21.00.00-1	Crude maize (corn) oil	F02, MWO	827, MWO
1515.29.00.00-3	Maize (corn) oil and its fractions	F02, MWO	827, MWO
1515.30.00.00-0	Castor oil and its fractions	508	828
1515.50.00.00-5	Sesame oil and its fractions	F02	827
1515.90.90.90-9	Other fixed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F02	827
1516.10.11.00-0	Hydrogenated (hardened) animal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acid value not exceeding 1	F02	827
1516.10.12.00-9	Hardened fish oil, acid value not exceeding 1	F02	827
1516.10.21.00-8	Hydrogenated (hardened) animal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acid value exceeding 1	F02	827
1516.10.22.00-7	Hardened fish oil acid value exceeding 1	F02	827
1516.20.11.00-8	Hydrogenated (hardened)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acid value not exceeding 0,6	F02	827
1516.20.12.00-7	Hydrogenatedpalmoilandhydrogenatedpalm kernel oil, acid value not exceeding 0,6	F02	827
1516.20.20.00-7	Hydrogenated (hardened)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acid value exceeding 0,6	F02	827
1517.10.00.00-2	Margarine, excluding liquid margarine	F02	830
1517.90.10.00-3	Liquid margarine	F02	830
1517.90.20.00-1	Shortening	F02	830
1517.90.90.00-6	Other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or vegetable fats or oils, other than edible fats or oils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15.16	F02	830
1518.00.10.00-1	Boiled linseed oil		830

ccc code	품 명	기존규정	변경 규정
1518.00.20.00-9	Dehydrated castor oil		831
1518.00.30.00-7	Linnoxyn		830
1518.00.40.00-5	Epoxy soy-bean oil		830
1518.00.90.00-4	Other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boiled, oxidised, dehydrated, sulphurised, blown, polymerised by heat in vacuum or in inert gas or otherwise chemically modified, excluding those of heading No.15.16		830
1520.00.00.00-9	Glycerol, crude; glycerol waters and glycerol lyes		831
1521.10.00.00-6	Vegetable waxes, whether or not refined or coloured	508	831
1521.90.10.00-7	Bees wax (yellow wax), whether or not refined or coloured	MW0	830, MW0
9807.30.00.10-9	Crude ground-nut (peanut) oil, of Item No 1508.10.00.00	F02	827, MW0
9807.30.00.20-7	Refined ground-nut (peanut) oil and its fractions, of Item No. 1508.90.00.00	F02	827, MW0

□ 수입검사 검역비용 수정

- 「規費法(지불비용법)」 제10조 1항에 의거하여 「수입식품 및 관련제품검사 비용표준」 규정에 따라 검사비용 산출
 - 2015년 6월 11일 「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검사 비용표준(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規費收費標準)」 규정 전문 5조 수정 발표
 - 2016년 5월 25일 제 <지불 비용법> 제 12조 규정 수정 발표됨(總統華總一義字제 10500046001호)) 수정 내용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징수해야하는 검험검역비용을 면제, 감량, 수수료 징수를 중지 함(1. 학교 또는 교육 선도 업무 2. 학교 간 협조 사항 3. 중대 재해지역 재민이 재해로 인해 증가한 검험검역비용 4. 긴급재난구조 처리로 인해

부담된 검험검역비용 5. 노인, 심신장애자, 저소득층, 학생 신분 증명 문건 6. 국제 간 협약, 협정 또는 우대국원칙 7. 기타 법률 규정 면제, 감형, 또는 수수료 징수 중지의 경우

3. 식품 및 관련 상품 수입검사 작업요점(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作業要點) 개정

- 2016년 8월 11일 FDA北字제1052002283호 발표에 따라 기존 「수입식품검사작업요점(輸入食品查驗作業要點)」을 「식품 및 관련식품 수입검사작업 요점(食品及相關食品輸入查驗作業要點)」으로 수정 변경하며, 즉시 시행됨. 수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 1장 총칙 : 1)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는 식품 및 관련 상품의 수입검사 효율 제고와 검사작업의 일치성 확보를 위하여 본 작업요점을 제정하며 2) 적용범위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30조 공고에 따름
- 제 2장 검사작업: 1) 식품용기 또는 기구 수입 시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병합하여 일괄 검사 처리함((1) 도자기 식기 및 주방도구: 수입신고서와 상품분류(주전자(鍬), 반(盤), 그릇, 접시 및 기타 5대 분류)가 동일하며, 용기 또는 도구와 식품접촉면의 유약 표면색이 동일할 경우 (2) 플라스틱 용기 또는 도구: 수입신고서, 상품분류, 상품명칭, 재질 및 식품접촉면의 색이 동일할 경우) 2) 벌크화물 선적의 동일항차 대량 곡물의 검사작업은 다음과 같음((1) 동일 상품분류·품명으로, 샘플을 분리 추출할 수 없을 경우 관련 신고의무인은 검사 신청 후 병합하여 일괄 검사함. 상품을 분리하여 두 곳 이상 항구에서 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는 엄격한 감시 하에 집행함 (2) 임시 현장검사 및 강화 샘플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세관 적하목록 및 선실도를 재 첨부하여야 함 (3) 임시 현장검사 및 강화 샘플 검사는 첫 번째 하역 항구의 검사 기관이 집행하며, 검사 결과는 병합하여 일괄 검사 방식의 상품으로 적용함) (4) 검사결과 부적합하나, 이미 하역하여 창고에 반입, 격리가 불가할 경우, 이 창고 내의 상품은 부적합 것으로 판단함)
- 제 3장 임시현장검사 및 강화샘플검사: 1) 검사기관은 임시현장검사 및 강화샘플검사

집행 시 신고의무인 또는 그 위탁 대리인 입회하에 진행함. 검사원은 샘플 추출 후 즉시 신고의무인 또는 그 위탁대리인이 샘플증명서에 서명하도록 함 2) 검사기관은 입시현장 조사 및 강화샘플 검사 집행 시 식품 및 관련 상품의 검사 수량 및 샘플 수량표에 따라 진행하며, 국경검사 자동화관리정보시스템 중간항목에 대하여 샘플을 추출함. 단 검사원이 동일한 검사 신청화물의 기타 항목에서 위생안전이 우려되는 상품을 발견할 경우 항만사무소 책임자를 통하여 추가 추출 또는 기타 항목에 대하여 변경 샘플 추출을 진행함

- 제 4장 검사결과: 1) 수입상품 검사결과 부적합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1) 병합하여 일괄검사한 활, 신선 또는 냉장 수산품이 부적합할 경우 중간항목에서 추출한 것과 동일 집단상품 모두 부적합으로 판단함 (2) 활, 신선 또는 냉장 수산품 이외의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 동일 집단상품 모두 부적합으로 판단함)
- 제 5장 서약서 제출 후 선행통관: 1) 수입상품의 선 통관 작업은 다음과 같음((1) 병합하여 일괄 검사한 활, 신선 또는 냉장 수산품은 중간항목에서 추출한 것과 동일 집단상품에 대하여 서약서 제출 후 선 통관 진행함 (2) 활, 신선 또는 냉장수산품 이외의 상품 역시 동일함 (3) 서약서 제출 후 선 통관 상품의 반입 장소는 두 곳에 한 하며 검사기관 필요 시 제한받지 않음 (4) 활물수산물으로 복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 의무인은 선 통관 신청 시 복원지점의 평면도를 함께 제출해야 함) 2) 선 통관 상품이 검사시간 5일을 초과, 변질 부패되기 쉬운 것으로 인정된 경우 검사기관은 반입 장소의 지방위생기관에 검사상품의 보관 상황에 대하여 통지해야 함 3) 선 통관 상품이 검사를 거쳐 부적합 판단 시 검사기관은 신청의무인 소재지 및 상품반입장소의 위생기관에 통지해야 함
- 제 6장 수입 시 증문 라벨 면제: 1) 식품, 식품첨가물 및 식품용 청결제, 도구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검사기관은 증문 라벨부착을 면제함((1) 국내 상품의 재수입 (2) 개인사용상품 (3) 신청의무인이 상품 수입 후 재포장, 개별 포장 또는 기타 가공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신청한 경우) 2) 전항 신청의무인이 상품 수입 후 재포장, 개별 포장 또는 기타 가공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신청한 경우 상품 수입후의 사용상황과 신청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것이 적발될 경우 불성실 신고로 처리함

〈식품 및 관련 상품의 검사수량 및 샘플수량〉

<p>검사 수</p>	<p>1. 컨테이너의 경우 컨테이너 검사수량은 다음과 같음</p> <p>1) 소맥, 대맥, 옥수수, 쌀, 수수 및 대두: 30대 이하의 경우 1대, 30대 증가 시 마다 1대 씩 추가, 30대 미만일 경우 30대로 간주함</p> <p>2) 소맥, 대맥, 옥수수, 쌀, 수수 및 대두 이외의 상품: 10대 이하의 경우 1대, 10대 증가 시 마다 1대 씩 추가, 10대 미만일 경우 10대로 간주함</p> <p>2. 상품의 검사건수는 다음과 같음</p> <table border="1" data-bbox="394 568 992 1034"> <thead> <tr> <th>총 건수</th> <th>검사 건수</th> </tr> </thead> <tbody> <tr> <td>1건에서 30건</td> <td>1건</td> </tr> <tr> <td>31건에서 60건</td> <td>2건</td> </tr> <tr> <td>61건에서 100건</td> <td>3건</td> </tr> <tr> <td>101건에서 500건</td> <td>4건</td> </tr> <tr> <td>501건에서 1000건</td> <td>5건</td> </tr> <tr> <td>1001건에서 1500건</td> <td>6건</td> </tr> <tr> <td>1501건에서 2000건</td> <td>7건</td> </tr> <tr> <td>2001건에서 2500건</td> <td>8건</td> </tr> <tr> <td>2501건에서 3000건</td> <td>9건</td> </tr> <tr> <td>3001건에서 3500건</td> <td>10건</td> </tr> <tr> <td>3501건 이상</td> <td>15건</td> </tr> </tbody> </table> <p>3. 벌크화물선 대량곡물의 경우 각 선실 모두 검사하며, 사방 네 곳 모두 추출검사</p> <p>4. 무포장 컨테이너선 대량곡물의 경우 검사 시 임시 네 곳의 샘플 추출, 필요 시 추가함</p> <p>5. 검사원에 의해 위생안전위험 또는 필요가 인정될 경우 항만사무소 책임자를 통하여 참작 추가함</p>	총 건수	검사 건수	1건에서 30건	1건	31건에서 60건	2건	61건에서 100건	3건	101건에서 500건	4건	501건에서 1000건	5건	1001건에서 1500건	6건	1501건에서 2000건	7건	2001건에서 2500건	8건	2501건에서 3000건	9건	3001건에서 3500건	10건	3501건 이상	15건
총 건수	검사 건수																								
1건에서 30건	1건																								
31건에서 60건	2건																								
61건에서 100건	3건																								
101건에서 500건	4건																								
501건에서 1000건	5건																								
1001건에서 1500건	6건																								
1501건에서 2000건	7건																								
2001건에서 2500건	8건																								
2501건에서 3000건	9건																								
3001건에서 3500건	10건																								
3501건 이상	15건																								
<p>샘플 수</p>	<p>1. 각 상품의 종류 별 추출수량은 다음과 같으며, 검사항목은 필요시 참작 추가함</p> <p>1) 벌크선 및 무포장 컨테이너선의 대량곡물, 벌크오일: 2kg</p> <p>2) 고체식품: 600g, 고액체 혼합 또는 액체 식품: 1kg</p> <p>3) 식품첨가물: 500g</p> <p>4) 일회용 젓가락: 100매</p> <p>5) 도자기 식기 및 주방도구: 2건</p> <p>6) 플라스틱 용기: 20건</p> <p>7) 식품위생표준 별도 규정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름</p> <p>2. 수입상품이 하기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의무인은 샘플 수의 감량 요청</p> <p>1) 식품 및 식품첨가물: 중량이 10kg이하이거나 매 kg마다 신대만달러 천원 이상일 경우(관세지급필가격 기준)</p> <p>2) 식품 및 식품첨가물이외의 상품: 건수가 전항 샘플 수량의 5배 이하의 경우이거나 매 건 신대만달러 천원 이상일 경우(관세지급필가격 기준)</p> <p>3. 미생물 검사의 경우 샘플은 소포장 상태로 진행함</p>																								

4. 식품첨가물 수입규정 강화

□ 식품첨가물의 수입은 수입규정 508 규정에 따라 진행 처리함

규정 번호	규정 내용
508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첨가물 수입 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 (1) 위생복지부 발표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사용량 및 규격 표준]의 단일 식품첨가물(향료 제외)수입 시, 위생복지부 발행의 식품첨가물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아울러 F01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 (2) 향료 및 복합 식품첨가물에 속할 경우 F01 규정에 따라 처리함. 2. 비식품첨가물의 식품원료 수입 시 F01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 3. 식품첨가물이 샘플, 증여품에 속할 경우 위생복지부 발행의 [식품수입 동의서 신청서(식품, 첨가물 샘플)]를 첨부해야 함. 4. 식품 및 식품첨가물 가공 용도가 아닌 경우 수입신고서에 전용코드번호 DH99999999508를 기재, 상술 규정 처리를 면제함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용도에 속하는 경우 <식품 및 관련 상품의 수입 검사방법> 규정에 따르며, 식품약품관리서에 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2016년 7월 14일 수입규정 508 해당 항목이 추가 발표됨(部授食字제1051301746호) 추가 품목은 다음과 같음
 - 식품 및 식품첨가물(향료제외) 용도의 경우, <식품 및 관련 상품 수입 검사방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식품약품관리서에 관련식품의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함. 2016년 3월 31일 상품분류 F01에 해당하는 항목이 추가 발표 됨(部授食字제 1051300638호)

〈수입규정 508 해당 항목이 추가 발표〉

CCC 코드	품 명	수입규정
2510.20.00.00-5	Natural calcium phosphates, natural aluminium calcium phosphates and phosphatic chalk, ground	508
2901.29.90.00-4	Other acyclic hydrocarbons, unsaturated	508
2902.19.00.90-5	Other cyclanes, cyclenes and cycloterpenes	508
2905.12.10.00-6	Propan-1-ol (propyl alcohol)	508
2905.13.00.00-7	Butan-1-ol (n-butyl alcohol)	508
2905.14.10.00-4	Isobutyl alcohol	508
2905.14.90.00-7	Other butanols	508
2905.16.00.00-4	Octanol (octyl alcohol) and isomers thereof	508
2905.19.50.00-0	Pentanol (amyl alcohol) and isomers thereof	508
2905.19.90.90-3	Other saturated monohydric alcohols	508
2905.29.90.90-1	Other unsaturated monohydric alcohols	508
2905.32.00.00-4	Propylene glycol (propane-1,2-diol)	508
2905.42.00.00-2	Pentaerythritol	508
2905.59.90.90-4	Othe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of acyclic alcohols	508
2906.19.10.00-8	Borneol, champhor baroos	508
2906.19.20.00-6	Terpineols	508
2906.19.90.00-1	Other cyclanic, cyclenic or cycloterpenic alcohol and cyclic alcohols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508
2907.19.00.90-0	Other monophenols and their salts	508
2909.20.90.00-5	Other cyclanic, cyclenic or cycloterpenic ethers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508
2909.49.99.00-3	Other ether alcohols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508

CCC 코드	품 명	수입규정
2909.60.20.00-1	Alcohol peroxides, ether peroxides, ketone peroxides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for perfumery purposes	508
2912.12.00.00-9	Ethanal (acetaldehyde)	508
2912.49.90.00-7	Aldehyde-ethers, aldehyde-phenols and aldehydes with other oxygen function	508
2914.19.00.00-0	Acyclic ketones without other oxygen function, n. e. s.	508
2914.29.10.00-6	Camphor	508
2914.29.90.00-9	Other cyclanic, cyclenic or cycloterpenic ketones without other oxygen function	508
2914.39.00.90-7	Other aromatic ketones without other oxygen function	508
2914.50.00.00-0	Ketone-phenols and ketones with other oxygen function	508
2915.70.21.00-0	Palmitic acid	508
2915.70.22.00-9	Salts and esters of palmitic acid	508
2915.90.30.00-5	Lauric acid	508
2915.90.40.00-3	Myristic acid	508
2915.90.60.00-8	Esters of lauric acid and myristic acid	508
2916.11.20.00-2	Salts of acrylic acid	508
2916.14.90.00-4	Other esters of methacrylic acid	508
2916.31.00.10-0	Benzoic acid ethyl ester (Ethyl benzoate)	508
2916.39.11.40-3	2-phenylethyl phenylacetate	508
2917.13.00.00-3	Azelaic acid, sebacic acid, their salts and esters	508
2918.19.90.10-5	2,2-Diphenyl-2-hydroxyacetic acid	508
2918.99.00.90-0	Other carboxylic acids with additional oxygen function and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and peroxyacids;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508

CCC 코드	품 명	수입규정
2921.11.00.30-3	Dimethylamine or trimethylamine and their salts	508
2922.49.10.00-2	DL-phenyl glycine	508
2922.49.20.00-0	Mefenamic acid (N-(2,3-xylyl) anthranilic acid); (2-[(2,3-Dimethylphenyl)amino]-benzoic acid)	508
2925.19.90.00-8	Other imid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508
2929.90.00.20-1	Sodium cyclamate	508
2930.20.90.00-8	Thiocarbamates and other dithio carbamates	508
2930.90.20.00-8	D, L-hydroxy analog of D, L-methionine	508
2930.90.40.00-4	Cysteine	508
2930.90.59.00-2	Other dithiocarbonates (xanthates)	508
2932.12.00.00-5	2-Furaldehyde (furfuraldehyde)	508
2932.13.10.00-2	Furfuryl alcohol	508
2932.19.10.00-6	Furan	508
2933.19.00.90-8	Other compounds containing an unfused pyrazole ring (whether or not hydrogenated) in the structure	508
2933.99.10.00-8	Indole	508
2933.99.90.30-5	3-Quinuclidinyl benzilate	508
2934.10.00.00-5	Compounds containing an unfused thiazole ring (whether or not hydrogenated) in the structure	508
2934.20.90.00-4	Other compounds containing a benzothiazole ring-system (whether or not hydrogenated), not further fused	508
2939.30.10.00-4	Caffeine Anhydrous (3,7-Dihydro-1,3,7-trimethyl-1H-purine-2,6-dione)	834
2939.30.20.00-2	Caffeine Monohydrate (3,7-Dihydro-1,3,7-trimethyl-1H-purine-2,6-dione monohydrate)	834
3204.12.20.00-0	Preparations based on acid dyes	508

CCC 코드	품 명	수입규정
3204,17,20,00-5	Preparations based on synthetic organic pigments	508
3204,19,91,90-8	Other synthetic organic colouring matter,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including mixtures of colouring matter of two or more of the subheadings Nos. 3204,11 3204,19)	508
3204,90,00,00-9	Other synthetic organic products of a kind used as luminophore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508
3205,00,20,00-3	Preparations as specified in Note 3 to this Chapter based on colour lakes	508
3206,19,00,00-5	Other pigments and preparations based on titanium dioxide	508
3301,12,00,00-6	Orange oil	508
3301,13,00,00-5	Lemon oil	508
3301,19,00,00-9	Other essential oils of citrus fruit	508
3301,25,00,00-1	Essential oil of other mints	508
3301,30,00,00-4	Resinoids	508
3301,90,90,00-2	Other concentrates of essential oils in fats, in fixed oils, in waxes or the like, obtained by enfleurage or maceration; terpenic by-products of the deterpenation of essential oils; aqueous distillates and aqueous solutions of essential oils	508
3302,10,10,00-5	Compound alcoholic preparations based on odoriferous substance, of a kind used for the manufacture of beverages, with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0,5% vol	508
3302,90,00,00-0	Other mixtures of odoriferous substances and mixtures (including alcoholic solutions) with a basis of one or more of these substances, of a kind used as raw materials in industry	508
3402,11,00,00-5	Anionic,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508
3402,20,00,00-4	Surface-active preparations, washing preparations and cleaning preparations, put up for retail sale	508
3402,90,00,00-9	Other surface-active preparations, washing preparations and cleaning preparations	508

CCC 코드	품 명	수입규정
3404.20.00.00-2	Poly(oxyethylene) (polyethylene glycol) wax	508
3404.90.90.90-9	Other artificial waxes and prepared waxes	508
3802.90.19.00-4	Other activated natural mineral products	508
3807.00.10.00-7	Wood tar oil; wood creosote	508
3823.11.00.00-6	Stearic acid	508
3824.90.12.00-5	Fusel oil	508
3905.91.00.00-0	Copolymers of other vinyl esters or other vinyl copolymers, in primary forms	508

제3절 동·식물 제품 검역 규정

1.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기준(動物用藥殘留標準)」 개정 공고

(部授食字第1051300758호 2016년 3월 18일 공포) 기존 「가금축산 상품의 잔류농약 허용기준(禽畜產品中殘留農藥限量標準)」에서 「동물상품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으로 명칭 변경됨

2. 「동물 및 동물제품 수입검역조건(動物及動物產品輸入檢疫條件)」 개정

(農防字第1051481533號, 2016년 5월 26일 공포/農防字第1051481675號, 2016년 6월 15일 공포/農防字第1051481822號, 2016년 7월 4일)

조류 및 새끼, 알의 수입검역 조건 및 미국에서 수입되는 조류 및 새끼, 알의 검역 조건 제한사항

○ 수출 전 3개월 또는 부화 후 수의사 책임 하에 질병 진단과 정기적으로 검역이 실시되는 사육장소에서 사육되어야 함. 사육장소는 과거 1년간 가금류 콜레라 등의 질병

이 발병한 지역이 아니어야 하며, 과거 6개월간 H5, H7 가금류 인플루엔자등이 발병하지 않았어야 함

- 조류 및 새끼, 알의 수입 시 청결한 용기에 밀봉 선적, 운송하여야 하며, 운송 중 고병원성 가금류 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에서 환적할 수 없으며, 운송 중 사료 및 기타 조류를 추가 선적할 수 없음. 아울러 세계 동물 위생 조직의 육상동물위생법전 및 국제 항공협회의 운수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단 밀폐식 컨테이너 운송 동물 상품수입검역작업방법 규정에 따라 밀폐식 컨테이너 운송의 알은 운송 중 고병원성 가금류 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의 환적 운송도구를 이용할 수 있음.
- 수입 시 미국 농업부 위탁 수의사 서명, 미국동식물방역검역국 서명의 동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함
- 미국에서 수입되는 조류 및 새끼, 알 등의 수입 시 상기 사항과 동일

□ 수입 금지 동물(단 연구목적의 경우 중앙주관기관 승인 하에 수입 가능)

- 박쥐과 동물, 광우병 발생국가(지역)의 소, 구제역, 우역, 소 흥막폐염 또는 아프리카 돼지인플루엔자 감염 동물, 구제역발병 지역의 상아류 동물, 마비저 발병 지역의 단일 발굽 동물, 고병원성 가금류 유행성 인플루엔자 발병 지역의 가금류 동물, 중앙기관 공고의 동물 전염병 지역 또는 국제동물 위생조직, 기타 국제기구 공고 동물전염병지역의 동물

□ 파라과이 수입 냉동, 냉장 식용 소고기 검역조건

- 파라과이 출생, 사육, 도축된 소에 한함
- 도축 후 직접 산지 도축장에서 운송되며, 중도에 기타 동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함. 운송 후 기타 동물과 분리 보관 후 24시간 이상 관찰, 3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도축 전까지 구제역, 우역, 우흥막폐염 발생 목장에서 사육되지 않아야 함. 수출 전 12개월 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목장 내 동물이 구제역, 우역 등의 질병에 노출되지 않아야 함

- 도축 후 섭씨 4도 이상 10도 이하에서 24시간 이상 36시간 이내 조건 하에서 숙성하여야 하며, 숙성 후 제 10에서 제 12 늑골 사이의 고기 산도는 5.8 이하여야 함. 수입 소고기의 산도 역시 5.8이하여야 함. 뼈, 혈액, 임파조직을 제거하여야 함
- 도축 후 가공 기간 내의 작업에 파라과이 정부기관의 인증이 필요하며, 처리 및 운송 기간은 대만 위생상관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검약국 검사에 적합 판전을 받아야 함. 규정 위반 시 반송 또는 폐기에 처함

3. 「수입 식물 및 식물제품 방역검역방법(中華民國輸入植物或植物產品檢疫規定)」 개정

□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공고(문서번호 : 農防字第1051492993A號)

문서발송일자 : 2016년 3월 18일

- 식물방역검역법 제4조 제1항(植物防檢疫法 第4條 第1項) 제1호 에 의거 ‘수입 금지되는 식물 또는 식물상품의 명칭 및 그 소속, 국가 또는 지역, 금지원인’ 규정
- 중화민국 식물 또는 식물상품규정(中華民國輸入植物或植物產品檢疫規定)」 부분 규정 수정
- 수정 규정 시행일(실효일) :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
- 주요 수정 사항
 - 규정 갑의 금지 수입식물 및 식물 상품 제1번 제2항 「국가 또는 지역」란에 「류추, 를 「일본(오키나와현, 가고시마현, 사쓰난제도 및 도쿄都 오가사와제도)」으로 수정함
 - 규정 갑의 금지 수입식물 및 식물 상품 제1번 제28항 「식물 명칭 및 그 소속」란에 캐슈넛, 판올(약밤), 헤이즐넛, 너도밤나무 및 미국 참나무의 신선 열매를 배제함
 - 규정 갑의 금지 수입식물 및 식물 상품 제1번 제29항, 제35항, 제37항에서 39항, 제42항, 제52항의 「식물 명칭 및 그 소속」란 규정에 캐슈넛을 배제함
 - 규정 갑의 금지 수입식물 및 식물 상품 제1번 제29항 「식물 명칭 및 그 소속」란에 76종 퀸즐랜드과실파리의 숙주를 신규 추가
 - 규정 갑의 금지 수입식물 및 식물 상품 제1번 제35항 「식물 명칭 및 구 소속위치」

- 란에 44종 복숭아과실파리의 숙주를 신규 추가
- 규정 값의 금지 수입식물 및 식물 상품 제1번 제55항 포도피어스병균(*xylella fastidiosa*) 검역규정을 삭제하고, 규정 을의 조건적 수입 식물 또는 식물상품 제 1번 38항에 포도피어스병균(*xylella fastidiosa*) 검역규정을 삽입하고 이란, 터키, 이탈리아 및 캐나다 등 발생지역을 추가 적용함. 또한 숙주 식물의 범위를 정함
 - 규정 을의 조건적 수입 식물 또는 식물상품 제1번 제37항 세균성구명병 (*pseudomonas syringae* pv.*syringae*) 규정을 신규 추가하고 일본 및 중국산 배접수는 <일본산 배접수 수입 검역조건> 및 <중국산 배접수 수입 검역조건>의 각각의 조건에 근거하여 수입하며, 또한 <일본산 배접수 수입 조건>을 신규 정함
 - 규정 을의 조건적 수입 식물 또는 식물상품 제2번 제66항 베트남산 백용과 (*hylocereus undatus*)의 검역조건을 신규 추가함. 또한 <베트남산 백용과 신선 과실 수입 검역조건>을 신규 정함

□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공고(문서번호 : 農防字第1051494048A號)**

문서발송일자 : 2016년 9월 29일

- 식물방역검역법제14조 1항 규정에 의거해 수입 금지 식물 및 식물상품 제한 및 조건성 수입 금지 식물 및 식물상품의 검역 조건을 규정함 (식물의 명칭 및 그 부위, 국가 및 지역, 수입검역국가 및 지역별 규정)
- 한국을 화상병(Fire blight) 구역으로 추가 규정함. 한국 농산품은 수입이 잠정 금지된 품목은 아래와 같음
- 수정 규정 시행일(실효일) : 2016년 10월 1일

〈수입 금지된 한국산 농산품〉

품 목	사 유
감귤속(<i>Citrus</i> spp.), 금귤속(<i>Fortunella</i> spp.), 탕자나무속(<i>Poncirus</i> spp.) 식물 전부와 부분(꽃, 과실, 종자 제외)	감귤온주위축병(<i>Satsuma dwarf virus</i>)
<p>다음 식물의 전부 및 부분(꽃, 과실, 종자, 직경 3CM 이하의 가지 및 뿌리 최대 직경이 3CM 이하의 종묘 제외):</p> <p>관상수속(<i>Acer</i> spp.), 칠엽수속(<i>Aesculus</i> spp.), 오리나무속(<i>Alnus</i> spp.), 자작나무속(<i>Betula</i> spp.), 감귤속(<i>Citrus</i> spp.), 보리수나무속(<i>Elaeagnus angustifolia</i>), 물푸레속(<i>Fraxinus</i> spp.), 히비스커스속(<i>Hibiscus</i> spp.), 튜립나무속(<i>Liriodendron tulipifera</i>), 사과속(<i>Malus</i> spp.), 멜리아속(<i>Melia</i> spp.), 뽕나무속(<i>Morus</i> spp.), 오동나무속(<i>Paulownia fortunei</i>), 버즘나무속(<i>Platanus</i> spp.), 사시나무속(<i>Populus</i> spp.), 벚나무속(<i>Prunus</i> spp.), 배속(<i>Pyrus</i> spp.), 아카시아속(<i>Robinia</i> spp.), 장미속(<i>Rosa</i> spp.), <i>Salix</i> spp., 회화나무속(<i>Sophora</i> spp.), 느릅나무속(<i>Ulmus</i> spp.)</p>	Asian longhorned beetle, Anoplophora glabripennis (Motschulsky)
<p>아로니아(<i>Aronia arbutifolia</i>), 일본베고니아(<i>Chaenomeles japonica</i>), 산당화(<i>Chaenomeles speciosa</i>), 층층나무속(<i>Cornus mas</i>), 산사나무속(<i>Crataegus</i> spp.), 마르멜로(<i>Cydonia oblonga</i>), 사과속(<i>Malus</i> spp.), 대추야자(<i>Phoenix dactylifera</i>), 미국자두(<i>Prunus americana</i>), 살구(<i>Prunus armeniaca</i>), 서양자두(<i>Prunus domestica</i>), 아몬드(<i>Prunus dulcis</i> = <i>P. amygdalus</i>), 매실(<i>Prunus mume</i>), 자두(<i>Prunus persica</i>), 복숭아(<i>Prunus salicina</i>), 배속(<i>Pyrus</i> spp.), 장미속(<i>Rosa</i> spp.), 마가목 (<i>Sorbus aucuparia</i>), 당마가목(<i>Sorbus commixta</i>), 대추(<i>Ziziphus jujuba</i>)</p>	복숭아심식나방 총해(<i>Carposina sasakii</i> Matsumura = <i>Carposina niponensis</i> Walsingham)
<p>다음 식물의 전부 및 부분(과실, 종자제외) :</p> <p>채진목속(<i>Amelanchier</i> spp.), 아로니아속(<i>Aronia</i> spp.), 모과나무속(<i>Chaenomeles</i> spp.), 섬개야광나무속(<i>Cotoneaster</i> spp.), 장미과 일종(<i>Crataegomespilus</i> spp.), 산사나무속(<i>Crataegus</i> spp.), 마르멜로속(<i>Cydonia</i> spp.), <i>Dichotomanthes</i> spp., <i>Docynia</i> spp., 비파(<i>Eriobotrya japonica</i>), 사과속(<i>Malus</i> spp.), 서양모과속(<i>Mespilus</i> spp.), <i>Osteomeles</i> spp., <i>Peraphyllum</i> spp.), 홍가시나무속(<i>Photinia</i> spp., <i>Heteromeles</i> spp.), 자두속(<i>Prunus</i> spp.), 파라칸타속(<i>Pyracantha</i> spp.), 배속(<i>Pyrus</i> spp.), 다정큼나무속(<i>Raphiolepis</i> spp.), 산딸기속(<i>Rubus</i> spp.), 마가목속(<i>Sorbus</i> spp.), 조팝나무속(<i>Spiraea</i> spp.), 스트란베시아속(<i>Stranvaesia</i> spp.)</p>	화상병(<i>Erwinia amylovora</i> (Burrill) Winslow et al.)

4. 「수입식물검역실시품목(應實施輸入植物檢疫品目)」 개정

(農授防字제1051493906A호, 2016년 8월 5일 공포, 효력발생)

- 식물방역검역법 제 13-1조 제 1항 규정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다음과 같음

CCC CODE	상품명
07049090118	Genetically modified Colza (Brassica napus), fresh or chilled
07049090127	Non-genetically modified Colza, fresh or chilled
07049090902	Other Kohlrabi, kale and similar edible brassica, fresh or chilled
07099910102	Genetically modified sweet corn, fresh or chilled
07099910200	Non-genetically modified sweet corn, fresh or chilled
07129029105	Genetically modified other sweet corn, dried
07129029203	Non-genetically modified other sweet corn, dried
07149091106	Lotus roots, fresh, chilled or dried
12051000107	Genetically modified low erucic acid rape or colza (Brassica napus) seeds, whether or not broken
12051000205	Non-genetically modified low erucic acid rape or colza seeds, whether or not broken
12059000100	Other genetically modified rape or colza (Brassica napus) seeds, whether or not broken
12059000208	Other non-genetically modified rape or colza seeds, whether or not broken
12129100100	Genetically modified sugar beet
12129100208	Non-genetically modified sugar beet
98071000112	Seed of ground-nuts, in shell , of Item No. 1202.30.10.00
98071000121	ground-nuts, in shell, of Item No. 1202.41.00.00
98072000110	Seed of ground-nuts, shelled , of Item No. 1202.30.20.00
98072000129	ground-nuts, shelled, whether or not broken, of Item No.1202.42.00.00

5. 「식용소·양기름 위생표준(食用牛羊脂衛生標準)」 제정

- 신규 제정 배경 : 2014년 발생한 대규모 식품안전문제인 “사료용 식용유 사건”을 계기로 국내 식품안전 및 동물유(油) 원료 관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 대만 위생국은 2015년 7월 16일 <식용돼지기름위생표준>이 발표하였고, 이어 2016년 3월 23일 <식용소·양기름위생표준>을 발표함
- 관련 규정 : 식용 소, 양기름 상품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 「판매식품, 판매용 세척제 및 그 용구, 용기 또는 포장은 위생관리안전 및 품질 표준에 부합해야 함 ; 그 표준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규정에 근거하여 <식용소·양기름위생표준안>을 제정함
- 문서공포일자 : 2016년 3월 23일, 문서번호 : 衛生福利部授食字第 1051300883號
시행일자 : 문서 공포일을 기준으로 함

조문 내용	설 명
제1조 본 표준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다.	본 표준의 기준 근거
제2조 식용소, 양기름의 원료원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도축 시 건강한 소 또는 양으로부터 취득한 청결한 것이어야 하며 식용용 지방조직으로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뼈나 근육이 포함된 지방부위는 달인 후 식용 소, 양기름으로 사용해야한다	식용소, 양기름 원료원에 대한 규정
제3조 식용소, 양기름은 좋은 색택을 갖추어야 하고(회백색에서 담황색), 이상한 맛 및 산패된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	식용소, 양기름의 일반성 상태 규정
제4조 식용소, 양기름의 산가(酸價)는 2.5mg/KOH/g fat 이하로 규정하고, 그 위생안전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내 정해진 기타 관련 표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식용소, 양기름의 산가 및 그에 부합하는 기타 관련 표준에 대한 규정
제 5조 본 표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6. 「식용 돼지기름 위생표준(食用豬脂衛生標準)」 제정

-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의 제 17조 규정에 의함
- 식용돼지기름의 원료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도축 시 건강한 돼지에서 취한 깨끗한 식용 가능한 조직이어야 함. 단 내장기관, 뇌, 척수 및 혈관은 포함하지 않음. 좋은 색을 띄고 있어야 하며, 이미·이취나 부패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함
- 식용 돼지기름의 산가는 2.0mg KOH/g fat 이하여야 함. 단 정제과정(탈산, 탈색 혹은 탈취 등)을 거친 식용 돈지의 산가는 1.3mg KOH/g fat 이하여야 함. 그 위생 안전은 별도로 식품안전위생 관리법의 기타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7. 「동물제품 농약 잔류량 제한 기준(動物產品中農藥殘留容許量標準)」 개정

-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2항에 따름
- 본 기준의 산출은 농약 자체 및 그 독성이 있는 대사제품을 포함하며 시판형태의 중량을 기준으로 산출함
- 「동물제품 중 농약 잔류량 허용기준(動物產品中農藥殘留容許量標準)」
 - 문서공포일자 : 2016년 3월 18일, 문서번호 : 部授食字第1051300758號
시행일자 : 문서 공포일을 기준으로 함
 - 본 규정의 명칭을 《동물상품중농약잔류허용량표준(動物產品中農藥殘留容許量標準)》으로 변경함
 - 본 규정 내용 중 「식품위생관리법」을 「식품안전위생관리법」으로, 「잔류제한량」을 「

잔류허용량」으로, 「축산류」을 「동물류」로 변경함

- 벌꿀 상품 내 “카벤다짐(Carbendazim)”, “이프로다이온(IProdione)” 잔류농약허용량 신규제정
- 벌꿀, 로얄젤리 상품 내 “플루바리네이트 (fluvalinate)” 잔류 농약 허용량 신규 제정

Ⅰ 추가 잔류 농약 및 허용량 Ⅰ

영문명	중문명	부위	동물 종류	잔류 허용량
Carbendazim	貝芬替	근육	소, 면양, 새	0.1ppm
Carbendazim	貝芬替	젖	소, 면양, 새	0.1ppm
Carbendazim	貝芬替	지방	닭	0.1ppm
Carbendazim	貝芬替	알	닭	0.1ppm
Carbendazim	貝芬替	꿀	벌	0.05ppm
Fluvalinate	福化利	꿀, 로열젤리	벌	0.05ppm
Iprodione	依普同	꿀	벌	0.05ppm

Ⅰ 동물제품 잔류농약 허용량 Ⅰ

영문명	중문명	부위	동물 종류	잔류 허용량(ppm)
2,4-D	二、四地	근육	가축	0.05
		젖	가축	0.05
		유제품	가축	0.05
		알	가축	0.05
Acephate	毆殺松	근육	소, 돼지, 조류	0.1
		지방		0.1
		젖	소, 돼지, 조류	0.1
		알	소, 돼지, 조류	0.1
Aldicarb	得滅克	근육	가축	0.01
		젖	가축	0.01
Aldrin & Dieldrin	阿特靈及地特靈	근육	가축	0.2 (脂肪基準)
		젖	가축	0.006
		알	가축	0.1

영문명	중문명	부위	동물 종류	잔류 허용량(ppm)
Amitraz	三亞蟻	근육	소, 돼지	0.05
		내장		0.2
		근육	면양	0.1
		내장		0.2
		젖		0.01
Azocyclotin	亞環錫	근육	가축	0.2
		젖	가축	0.05
		유제품	가축	0.05
Bendiocarb	免敵克	근육, 내장(신장제외), 지방	소	0.05
		신장		0.2
		젖	소	0.05
		근육, 내장, 지방	가축	0.05
		알	가축	0.05
Carbaryl	加保利	근육	소, 산양, 면양	0.2
		젖, 유제품	소, 산양, 면양	0.1
		근육	가축	0.5
		가축		5
		알	가축	0.5
Carbendazim	貝芬替	근육	소, 면양, 조류	0.1
		젖	소, 면양, 조류	0.1
		지방	닭	0.1
		알	닭	0.1
		꿀	벌	0.05
Carbofuran	加保扶	근육, 내장, 지방	소, 돼지, 말, 산양, 면양	0.05
		젖	소, 돼지, 말, 산양, 면양	0.05
Chinomethionat	蟬離丹	근육	가축	0.05
		젖	가축	0.01
Chlordane	克氯丹	근육	가축	0.05 (脂肪基準)
		젖	가축	0.002
		근육	조류	0.5 (脂肪基準)
		알	조류	0.02
Chlorfenvinphos	克芬松	근육	가축	0.2 (脂肪基準)
		젖	소, 산양, 면양	0.008

영문명	중문명	부위	동물 종류	잔류 허용량(ppm)
Chloromequat	克滅刈	젓	소, 산양, 면양	0.1
		유제품	소, 산양, 면양	0.1
Chlorpyrifos	陶斯松	근육	소	2 (脂肪基準)
		근육	면양	0.2 (脂肪基準)
		젓	면양	0.01
		근육	닭	0.1 (脂肪基準)
		근육	칠면조	0.2 (脂肪基準)
		알	칠면조	0.05
Chlorpyrifos-methyl	甲基陶斯松	근육, 내장, 지방	소, 닭	0.05
		젓	소, 닭	0.01
		알	소, 닭	0.05
Clofentezine	克芬蟎	근육	소	0.05
		내장		0.1
		젓		0.01
		근육, 내장	가축	0.05
		알	가축	0.05
Cyhexatin	錫蟎丹	근육	가축	0.2
		젓, 유제품	가축	0.05
Cypermethrin	賽滅寧	근육	가축	0.2 (脂肪基準)
		내장		0.05
		젓	가축	0.05
		근육	가축	0.05
		알	가축	0.05
Cyromazine	賽滅淨	근육	면양, 조류	0.05
		젓	면양, 조류	0.01
		알	면양, 조류	0.2
DDT	滴滴涕	근육	가축	5 (脂肪基準)
		젓	가축	0.05
		알	가축	0.5
Deltamethrin	第滅寧	근육	가축	0.5 (脂肪基準)
		내장		0.05
		젓	가축	0.02
		근육, 내장	조류	0.01
		알	조류	0.01

영문명	중문명	부위	동물 종류	잔류 허용량(ppm)
Diazinon	大利松	근육	소, 돼지, 면양	0.7 (脂肪基準)
		젖	소, 돼지, 면양	0.02
Dichlorvos	二氯松	근육	소, 돼지, 산양, 면양, 조류	0.05
		젖	소, 돼지, 산양, 면양, 조류	0.02
		알	소, 돼지, 산양, 면양, 조류	0.05
Diflubenzuron	二福隆	근육, 내장	가축	0.05
		젖	가축	0.05
		근육	조류	0.05
		알	조류	0.05
Dimethipin	穫菱得	근육, 내장	가축, 조류	0.02
		젖	가축, 조류	0.02
		알	가축, 조류	0.02
Diquat	大刈特	근육, 내장	가축	0.05
		젖	가축	0.01
		알	가축	0.05
Edifenphos	護粒松	근육, 내장	소, 조류	0.02
		젖	소, 조류	0.01
		알	소, 조류	0.01
Endosulfan	安殺番	근육	가축	0.1 (脂肪基準)
		젖	가축	0.004
Endrin	安特靈	근육	가축	0.1 (脂肪基準)
		젖	가축	0.0008
		근육	조류	1 (脂肪基準)
		알	조류	0.2
Ethion	愛殺松	근육	소	2.5 (脂肪基準)
		내장		1
		근육	돼지, 말, 산양, 면양, 조류	0.2 (脂肪基準)
		내장		0.2
		젖	돼지, 말, 산양, 면양, 조류	0.02
		알		0.2
Etrimfos	益多松	근육, 내장	소	0.01
		젖	소	0.01
		근육	조류	0.02
		알	조류	0.01

영문명	중문명	부위	동물 종류	잔류 허용량(ppm)
Fenbutatin Oxide	芬佈錫	근육	소, 돼지, 말, 산양, 면양	0.02
		신장, 간		0.2
		젖	소, 돼지, 말, 산양, 면양	0.02
Fenitrothion	撲滅松	근육	가축	0.05 (脂肪基準)
		젖	가축	0.002
Fensulfothion	繁福松	근육	소, 산양, 면양	0.02 (脂肪基準)
		내장		0.02
Fenthion	芬殺松	근육	가축	2 (脂肪基準)
		젖	가축	0.05
Fenvalerate	芬化利	근육	가축	1 (脂肪基準)
		내장		0.02
		젖	가축	0.1
Flusilazole	護矽得	근육, 지방	소	0.01
		내장		0.02
		젖		0.01
		근육, 내장	닭	0.01
		알		0.01
Fluvalinate	福化利	꿀, 로열젤리	벌	0.05
Glyphosate	嘉磷塞	근육	소, 돼지, 조	0.1
		내장	소	2
		젖		0.1
		내장	돼지	1
		알	돼지	0.1
Heptachlor	飛佈達	근육	가축, 조류	0.2 (脂肪基準)
		젖	가축, 조류	0.006
		알	가축, 조류	0.05
Isofenphos	亞芬松	근육	가축	0.02 (脂肪基準)
		내장, 지방(유지 제외)	가축	0.02
		근육	조류	0.02 (脂肪基準)
		내장, 지방		0.02
		젖	조류	0.01
Iprodione	依普同	꿀	벌	0.05
Lindane	靈丹	근육	소, 돼지, 면양	2 (脂肪基準)
		젖	소, 돼지, 면양	0.01

영문명	중문명	부위	동물 종류	잔류 허용량(ppm)
		근육	조류	0.7 (脂肪基準)
		알	조류	0.1
Mecarbam	滅加松	근육, 내장	소	0.01
		젓		0.01
Methacrifos	滅克松	젓	소	0.01
		근육	조류	0.01 (脂肪基準)
		알	조류	0.01
Methamidophos	達馬松	근육	소, 산양, 면양	0.01
		지방		0.01
		젓	소, 산양, 면양	0.01
Methidathion	滅大松	근육, 내장, 지방	소, 돼지, 조류	0.02
		근육, 지방		면양
		내장		0.002
		알	면양	0.02
		젓	면양	0.0008
Methiocarb	滅賜克	근육	가축, 조류	0.05
		젓	가축, 조류	0.05
		알	가축, 조류	0.05
Methomyl	納乃得	근육	가축	0.02
		젓	가축	0.02
Methoprene	美賜平	근육	가축	0.2 (脂肪基準)
		내장		0.1
		젓	소	0.05
		알	소	0.05
Monocrotophos	亞素靈	근육, 내장	소, 돼지, 산양, 면양, 조류	0.02
		젓	소, 돼지, 산양, 면양, 조류	0.002
		유제품	소, 돼지, 산양, 면양, 조류	0.02
		알	소, 돼지, 산양, 면양, 조류	0.02
Paraquat	巴拉劑	근육	소, 돼지, 면양	0.05
		신장		0.5
		내장(신장제외)		0.05
		젓	소, 돼지, 면양	0.01
		알	소, 돼지, 면양	0.01
Permethrin	百滅寧	근육	가축	1 (脂肪基準)

영문명	중문명	부위	동물 종류	잔류 허용량(ppm)
		내장		0.1
		젖	가축	0.1
		근육	조류	0.1
		알	조류	0.1
Phenthoate	賽達松	근육	소	0.05
		젖	소	0.01
		알	소	0.05
Phorate	福瑞松	근육	가축	0.05
		젖	가축	0.05
		알	가축	0.05
Phosalone	裕必松	근육	면양	0.05
		지방		0.5
Phosmet	益滅松	근육	소	1 (脂肪基準)
		젖	소	0.02
Phoxim	巴賽松	근육	소	0.2 (脂肪基準)
		근육	면양	0.5 (脂肪基準)
		젖	면양	0.05
Pirimicarb	比加普	근육	가축	0.05
		젖	가축	0.05
		알	가축	0.05
Pirimiphos-methyl	亞特松	근육	가축	0.05
		젖	가축	0.05
			어포	8
		알	어포	0.05
Prochloraz	撲克拉	근육	소	0.1
		내장		5
		지방		0.5
		젖	소	0.1
Propargite	毘蟎多	근육	가축, 조류	0.1 (脂肪基準)
		젖	가축, 조류	0.1
		알	가축, 조류	0.1
Propiconazole	普克利	근육, 내장	가축	0.05
		젖	가축	0.01
		근육	조류	0.05

영문명	중문명	부위	동물 종류	잔류 허용량(ppm)
Propoxur	安丹	알	조류	0.05
		근육	가축	0.05
		젖	가축	0.05
Pyrethrins	除蟲菊精		어포	3
Spinosad	賜諾殺	근육, 신장	소	2
		지방		3
		신장, 젖		1
		유지		5
		근육	돼지, 기타 포유류동물 (해양 포유류 동물 제외)	1
		지방		2
		기타식용부위		0.5
		근육	조류	0.02
		지방		0.4
		기타식용부위		0.05
알	0.05			
Terbufos	托福松	근육, 내장	소, 닭	0.05
		젖	소	0.01
		알	소	0.01
Thiabendazole	腐絶	근육, 내장	소, 돼지, 말, 산양, 면양	0.1
		젖	소, 돼지, 말, 산양, 면양	0.1
Thiophanate-methyl	甲基多保淨	근육	닭	0.1
Triadimefon	三泰芬	근육	가축, 조류	0.1
		젖	가축, 조류	0.1
		알	가축, 조류	0.1
Trichlorfon	三氯松	근육, 내장, 지방	소, 돼지	0.1
		근육	면양	0.1
		젖	면양	0.05
Vinclozolin	免克寧	근육	소	0.05
		젖		0.05
		근육	닭	0.05
		알		0.05

- 각주: 1. 본 표의 내장은 식용 가능 부위를 지칭함
 2. 유제품의 유지함량이 2%미만의 경우 그 잔류농약 허용량은 원래 젖 잔류 허용량의 반으로 함
 3. 유제품의 유지함량이 2% 또는 이상의 경우, 지방을 기준으로 하며, 그 잔류농약 허용량은 원래 젖 잔류 허용량의 25배로 함

8. 「농약잔류허용량표준(農藥殘留容許量標準)」 개정

(2016년 7월 14일 部授食字第1051302070號令 시행 공포)

- 본 기준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제정함
- 본 기준에서 칭하는 허용량 및 실측 잔류 농약량은 시판형태의 중량을 산출기준으로 하며, 잔류농약의 검역은 농약 자체 및 함유하고 있는 대사산물을 포함함
- 축산·수산품을 제외한 식품의 잔류 농약량은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표에 부합하여야 하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아래 표에 열거되지 않은 항목은 검출되지 않아야 함
- 본 기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Ⅰ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량 Ⅰ

농약명칭	작물명	허용량(ppm)	용도
1-methylcyclopropene	감	0.01	성장촉진제
	배	0.01	성장촉진제
	사과	0.01	성장촉진제
Acequinocyl	산사	0.5	살비제
	자두	0.5	살비제
	은행	0.5	살비제
	감귤류	0.2	살비제
	마르멜로	0.5	살비제
	앵두	0.5	살비제
	자스민	10	살비제
Acetamiprid	십자꽃과 작은잎 채소류	2	살충제
	대두	1	살충제
	렌틸콩(건조)	1	살충제
	묘미초	0.5	살충제
	각지콩(건조)	1	살충제

농약명칭	작물명	허용량(ppm)	용도
	양우영잎	2	살충제
	람부탄	1	살충제
	팔	1	살충제
	갓끈동부(건조)	1	살충제
	아티초크	2	살충제
	땅콩	1	살충제
	녹두	1	살충제
	활엽대두근	0.5	살충제
	누에콩	1	살충제
Acrinathrin	자스민	2	살비제
Boscalid	감귤	5	살균제
	블랙커런트	4	살균제
Carfentrazone-ethyl	옥수수	0.1	제초제
	감귤류	0.1	제초제
	감자	0.1	제초제
	흙	0.1	제초제
	블루베리	0.1	제초제
	복분자	0.1	제초제
	체리	0.1	제초제
	헤이즐넛	0.1	제초제
Chlorantraniliprole	백풍채	3.0	살충제
	깍지콩	0.3	살충제
	만수국	3.0	살충제
	팔	0.3	살충제
	홍풍채	3.0	살충제
	참죽	3.0	살충제
	썩갓	3.0	살충제
	갓끈동부	0.3	살충제
	땅콩	0.3	살충제
	녹두	0.3	살충제
	동부	0.3	살충제
Chlorothalonil	아몬드	0.05	살균제
	헤이즐넛	0.05	살균제
	인삼(신선)	1.5	살균제
	십자꽃과 작은잎 채소류	5	살균제
	기타작은잎 채소류	2	살균제

농약명칭	작물명	허용량(ppm)	용도
	기타근경채소류(인삼제외)	0.5	살균제
Chromafenozide	양파	0.05	살충제
	샬롯	1.0	살충제
	마늘	0.05	살충제
	염교	1.0	살충제
Cyazofamid	십자꽃과 작은잎 채소류	1	살균제
	아스파라거스	1	살균제
Cyflumetofen	아몬드	0.01	살비제
	호두	0.01	살비제
Cyhalothrin	마늘	0.04	살충제
Cymoxanil	십자꽃과 작은잎 채소류	1	살균제
	쭈갓	1	살균제
	우엉	0.1	살균제
	백풍채	1	살균제
	양우엉잎	1	살균제
	선모	0.1	살균제
Cyproconazole	양파	0.05	살균제
	샬롯	0.02	살균제
	마늘	0.05	살균제
	염교	0.2	살균제
Cyromazine	마늘	0.2	살충제
	염교	0.2	살충제
Deltamethrin	렌틸콩(건조)	0.1	살충제
	땅콩	0.1	살충제
	팥	0.1	살충제
	갓끈동부	0.1	살충제
	선모	0.05	살충제
	녹두	0.1	살충제
	누에콩	0.1	살충제
Difenoconazole	사과	1.0	살균제
	감귤류	0.6	살균제
	배	1	살균제
Dimethoate	십자꽃과 작은잎 채소류	1	살충제
Dimethomorph	인삼(신선)	0.9	살균제
	양파	0.6	살균제
	십자꽃과 작은잎 채소류	2.5	살균제

농약명칭	작물명	허용량(ppm)	용도
Dithianon	배	1	살균제
Ethiprole	사과	1	살충제
Ethoprophos	기타(사과류)	0.01	살선충제
	기타(곡류)	0.01	살선충제
	기타(차류)	0.05	살선충제
Fenazaquin	구아바	0.1	살비제
	스타푸루트	0.1	살비제
	포도	0.1	살비제
	왁스애플	0.1	살비제
	과채류	0.1	살비제
	패션푸루트	0.5	살비제
	구기자	0.1	살비제
	딸기	0.1	살비제
	토마토	0.1	살비제
	아보카도	0.5	살비제
	고추	0.1	살비제
	파리	0.1	살비제
	Fenitrothion	감귤류	0.5
Fenvalerate	과채류	0.2	살충제
	백합	5	살충제
	로젤	0.5	살충제
	가지	0.5	살충제
	파프리카	0.5	살충제
	토마토	0.5	살충제
	고추	0.5	살충제
	파리	0.5	살충제
	연꽃	5	살충제
Flazasulfuron	감귤류	0.2	살초제
Fluazinam	산사	0.5	살균제
	자두	0.5	살균제
	은행	0.5	살균제
	앵두	0.5	살균제
Fluopicolide	바질	3	살균제
Fluopyram	파파야	0.8	살균제
	망고	0.8	살균제
	무화과	2	살균제

농약명칭	작물명	허용량(ppm)	용도
	석류	2	살균제
	스타푸루트	2	살균제
	아보카도	0.8	살균제
	연무	2	살균제
Flupyradifurone	대두	0.5	살충제
	대맥	3	살충제
	소맥	1.5	살충제
	상추	9	살충제
	옥수수	0.05	살충제
	아몬드	0.02	살충제
	커피콩	0.5	살충제
	브로콜리	3	살충제
	컬리플라워	3	살충제
	감귤류	1	살충제
	호두	0.02	살충제
	무	0.1	살충제
	딸기	1	살충제
	감자	0.05	살충제
	고량	1.5	살충제
	흙	6	살충제
	배	0.6	살충제
	후추	1	살충제
	토마토	1	살충제
	상추	3	살충제
	시금치	9	살충제
	땅콩	0.04	살충제
	포도	3	살충제
	고추	1	살충제
	완두(신선)	3	살충제
	완두(건조)	2	살충제
	블루베리	4	살충제
	사과	0.5	살충제
	포도	0.1	살충제
	Flutolanil	콩	1
깍지콩(신선)		1	살균제
깍지콩(건조)		0.05	살균제

농약명칭	작물명	허용량(ppm)	용도
	왁스콩	1	살균제
	팥	0.05	살균제
	갯끈동부(신선)	1	살균제
	갯끈동부(건조)	0.05	살균제
	강낭콩	1	살균제
	완두	1	살균제
	녹두	0.05	살균제
	동부(신선)	1	살균제
	동부(건조)	0.05	살균제
	날개콩	1	살균제
	누에콩	1	살균제
	가르반조콩	1	살균제
Fluxapyroxad	블루베리	5	살균제
	아몬드	0.05	살균제
Formetanate	감자	0.05	살비제
	연자	0.05	살비제
	연근	0.05	살비제
	대두	0.1	살비제
	렌틸콩(건조)	0.1	살비제
	과채류	0.3	살비제
	백합	2	살비제
	땅콩	0.1	살비제
	금잔화	2	살비제
	갯끈동부(건조)	0.1	살비제
	포도	0.4	살비제
	녹두	0.1	살비제
	연무	0.4	살비제
난화	2	살비제	
Imazapic	대두	0.4	제초제
Isoprothiolane	산사	0.1	살균제
	은행	0.1	살균제
	비파	0.1	살균제
	사과	0.1	살균제
	앵두	0.1	살균제
Isoxaflutole	대두	0.05	제초제
Kasugamycin	쌀류	0.2	살균제

농약명칭	작물명	허용량(ppm)	용도
Kresoxim-methyl	양파	0.3	살균제
	마늘	0.3	살균제
	염교	0.3	살균제
Lufenuron	양파	0.5	살충제
	마늘	0.5	살충제
	염교	0.5	살충제
Metalaxyl	부추	5	살균제
	샬롯	5	살균제
Metconazole	바나나	0.1	살균제
Metolachlor	완두	0.3	살초제
	블루베리	0.15	살초제
Metrafenone	배과류	1	살균제
Procymidone	깨	2	살균제
	토마토	2	살균제
Profenophos	백합	0.5	살충제
Pyraclostrobin	샬롯	2	살균제
	배과류	1	살균제
	염교	2	살균제
Pyraflufen-ethyl	감귤류	0.1	제초제
Pyribencarb	감귤	5	살균제
	차	20	살균제
	사과	2	살균제
	배	2	살균제
Pyriproxyfen	오이	0.2	살충제
	아스파라거스	3	살충제
Quinalphos	기타(사과류)	0.01	살충제
	기타(곡류)	0.02	살충제
	기타(차류)	0.05	살충제
Spinetoram	십자꽃과 작은잎 채소류	2	살충제
	렌틸콩(건조)	0.05	살충제
	우엉	0.02	살충제
	묘미초	0.02	살충제
	깨	0.05	살충제
	땅콩	0.05	살충제
	부추	2	살충제
샬롯	2	살충제	

농약명칭	작물명	허용량(ppm)	용도
	상추	2	살충제
	엽용완두	2	살충제
	연자	0.05	살충제
	연근	0.02	살충제
	아스파라거스	2	살충제
	활엽대두근	0.02	살충제
Spinosad	우엉	0.1	살충제
	백합	0.3	살충제
	백합인경	0.1	살충제
	묘미초	0.1	살충제
	장미(건조)	1	살충제
	장미(신선)	0.3	살충제
	깍지콩(건조)	0.02	살충제
	팽이버섯	0.3	살충제
	팔	0.02	살충제
	자스민(건조)	1	살충제
	자스민(신선)	0.3	살충제
	아카시아	1	살충제
	갯끈동부	0.02	살충제
	꽃생강	0.3	살충제
	국화(건조)	1	살충제
	국화(신선)	0.3	살충제
	선모	0.1	살충제
	녹두	0.02	살충제
	마늘	0.1	살충제
	파리	0.3	살충제
	연자	0.02	살충제
	연꽃(건조)	1	살충제
	연꽃(신선)	0.3	살충제
	연근	0.1	살충제
	타마릴로	0.3	살충제
	난화	0.3	살충제
누에콩	0.02	살충제	
Spiromesifen	딸기	1	살충제
Sulfoxaflor	대맥	0.6	살충제
	소맥	0.2	살충제

농약명칭	작물명	허용량(ppm)	용도
	작은잎채소류	3	살충제
	과채류	1.5	살충제
	컬리플라워	0.1	살충제
	양파	0.01	살충제
	당근	0.05	살충제
	포도	2	살충제
	포도(건조)	6	살충제
	고추(건조)	15	살충제
Tebufenozide	양파	0.05	살충제
	마늘	0.05	살충제
	염교	0.05	살충제
Tebufenpyrad	감귤류	0.5	살비제
Teflubenzuron	커피콩	0.5	살충제
	대두	0.05	살충제
	옥수수	0.1	살충제
Thiamethoxam	십자꽃과 작은잎 채소류	2	살충제
Thiodicarb	대두	0.5	살충제
	렌틸콩(건조)	0.5	살충제
	커민	1	살충제
	팥	0.1	살충제
	갓끈동부(건조)	0.5	살충제
	녹두	0.5	살충제
Tolfenpyrad	십자꽃과 작은잎 채소류	0.5	살충제
	감귤	0.5	살충제
	배	1	살충제

9. 「농산물의 중금속 제한 기준(蔬果植物類重金屬限量標準)」 제정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소, 과일 및 허브류 중금속 제한량 표준(蔬果植物類重金屬限量標準)을 제정함

적용대상 : 채소, 과일, 허브류

☐ 본 기준은 2016.2.4.부터 시행함

☐ 적용대상의 중금속 제한 허용치

Ⅰ 납 Ⅰ

농산물 분류	납	적용범위
잎 채소류	0.3 ppm 이하	배추속 채소류의 잎 채소류에도 적용
배추속 채소류	0.3 ppm 이하	양배추, 콜라비,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방울 양배추에 적용 배추속 잎 채소류에는 적용되지 않음
뿌리채소류	0.1 ppm 이하	머리 부분 및 흙을 제거한 완제품에 적용, 감자의 경우 껍질 제거 후 적용 샐러리악에는 적용되지 않음
인경채소류	0.1 ppm 이하	양파, 마늘 제거한 뿌리 부분 및 흙, 벗겨지기 쉬운 껍질
과실 채소류	0.1 ppm 이하	줄기를 제거한 과실 채소류 사탕옥수수, 옥수수의 껍질 부분은 포함하지 않음
콩과 채소류	0.2 ppm 이하	식용가능 콩각지 포함
콩류	0.2 ppm 이하	건조형태로 채취한 건조 콩류
땅콩	0.2 ppm 이하	-
딸기류 및 소형과일	0.2 ppm 이하	-
기타 채소 및 과일류	0.1 ppm 이하	-
허브 및 향신료	0.3 ppm 이하	-

Ⅱ 카드뮴 Ⅱ

농산품 분류	카드뮴	적용범위
잎 채소류	0.2 ppm 이하	배추속 채소류의 잎 채소류에도 적용
배추속 채소류	0.05 ppm 이하	양배추, 콜라비,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방울 양배추에 적용 배추속 잎 채소류에는 적용되지 않음
뿌리채소류	0.1 ppm 이하	머리 부분 및 흙을 제거한 완제품에 적용, 감자의 경우 껍질 제거 후 적용 샐러리악 및 파스닙에는 적용되지 않음
샐러리악 및 파스닙	0.2 ppm 이하	
줄기채소류	0.1 ppm 이하	대황은 줄기에 한하여 적용, 아티초크는 화두에 한해 적용 샐러리와 아스파라거스는 흙 제거 후 적용
인경채소류	0.05 ppm 이하	양파, 마늘 제거한 뿌리 부분 및 흙, 벗겨지기 쉬운 껍질
과실 채소류	0.05 ppm 이하	줄기를 제거한 과실 채소류 사탕옥수수, 옥수수의 껍질 부분은 포함하지 않음
콩과 채소류	0.1 ppm 이하	식용가능 콩각지 포함
콩류	0.1 ppm 이하	건조형태로 채취한 건조 콩류 대두에는 적용되지 않음
대두	0.2 ppm 이하	-
땅콩	0.2 ppm 이하	-
기타 채소 및 과일류	0.05 ppm 이하	-
허브 및 향신료	0.2 ppm 이하	-

자료 : 대만 행정원 위생복지부(衛生福利部)

쌀의 중금속 허용치 : 수은 0.05ppm이하, 카드뮴 0.4ppm이하, 납0.2ppm이하

식용 버섯류의 중금속 허용치 : 카드뮴 2ppm이하, 납3ppm이하

10. 「한국산 복숭아심식나방 기주식물의 수입검역조건 (南韓産桃蛀果蛾寄主鮮果實輸入檢疫條件)」 개정

□ 행정원 농업위원회 農防字第1051493893A호 공고에 따라, 한국산 복숭아 심식 나방 기주식물의 수입은 하기 수입검역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2016년 8월 11일부로 시행됨

- 한국산 사과속(Malus spp.), 배속(Pyrus spp.), 자두속(Prunus persica) 등 신선 과실의 수입에 동 규정을 적용하며, 기타 한국산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sasakii) 기주식물의 신선과실은 대만 수입을 금지함

품 목	사 유
아로니아(Aronia arbutifolia), 일본베고니아(Chaenomeles japonica), 산당화(Chaenomeles speciosa), 층층나무속(Cornus mas), 산사나무속(Crataegus spp.), 마르멜로(Cydonia oblonga), 사과속(Malus spp.), 대추야자(Phoenix dactylifera), 미국자두(Prunus americana), 살구(Prunus armeniaca), 서양자두(Prunus domestica), 아몬드(Prunus dulcis=P. amygdalus), 매실(Prunus mume), 자두(Prunus persica), 복숭아(Prunus salicina), 배속(Pyrus spp.), 장미속(Rosa spp.), 마가목 (Sorbus aucuparia), 당마가목(Sorbus commixta), 대추(Ziziphus jujuba)	복숭아심식나방 총해(Carposina sasakii Matsumura= Carposina niponensis Walsingham)

- 과실 공급과수원 관련 규정
 - 대만수입의 신선과실 생산자는 그 공급과수원에 생산기간 동안 반드시 복숭아심식나방에 대한 엄격한 병충해예방조치를 실시해야하며 치료처방을 기록해야 함
 - 한국 지방정부 책임기관은 지역 내 생산자의 치료처방 조치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치료처방은 한국농업진흥청의 유해생물치료처방 일정과 일치해야 함. 치료처방 일정은 연간 검역조사 시 대만식품검역기관에 제공하여 검역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함
 - 대만수입의 배속 과실은 반드시 유과(幼果)직경이 2.5CM 미만일 때 밀봉해야 함
 - 대만수입의 사과 및 자두속 과실 공급과수원은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함

- 1) 매년 복숭아심식나방 활동기간에 걸이식 페로몬 유인장치를 설치해야 함(높이 1.5M 제한, 유인제 성분 Z7-20-11Kt 함유). 헥타르 당 최소 1개의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1 헥타르 이하의 경우 1헥타르로 간주함. 적어도 2주에 한번 복숭아심식나방의 발생을 조사, 단일 유인장치에 3마리 이상의 복숭아심식나방이 탐지될 경우 즉시 다른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함. 페로몬 유인요소는 정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관련 예방조치는 참조용으로 기록해야 함
- 2) 채취 전 10일에서 15일 사이 조사를 진행하며, 과수원 면적 1헥타르 이하의 경우 적어도 10그루, 1헥타르 이상의 경우 0.5헥타르 당(0.5헥타르 미만에서 0.5헥타르 이상) 적어도 5그루 추가조사, 한 그루 당 적어도 20개 과실을 조사함.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될 경우 생산기에 생산된 이 과수원의 과실 수입을 금지하며, 경작지조사는 참조용으로 기록해야 함
- 3) 한국 농림수산물식품부 또는 대만식품검역기관의 검역인원은 대만수입의 신선과실 공급과수원에서 과실 채취 후 포장, 운송과정 중 복숭아심식나방의 예방조치 관련사항을 조사하여야 함
- 4) 공급과수원은 한국식물검역기관에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등록상세리스트는 포장작업장에서 제작, 연간 조사 시 대만식물검역기관 검역인원에 제공하여야 함. 등록 상세리스트는 생산자 성명, 주소, 생산과실종류 및 총식면적 등의 자료 포함

○ 포장작업장

- 대만수입의 과실 포장작업장은 포장기간 동안 한국식물검역기관 소속관할사무소에 허가 신청
- 포장작업장 시설 및 인원
 - 1) 대만수입의 과실은 채취에서 포장 후까지 적정온도의 냉장창고 또는 밀폐식 저장고에 보존하며, 복숭아심식나방의 감염을 예방
 - 2) 포장작업장은 매년 5월에서 10월 동안, 지름 1.6MM이하의 거즈 장치가 있는 병충해시설(창문, 통풍구 유)을 갖추어야 함. 출입구 또는 문은 아래쪽으로 바람이 통하는 풍령 또는 플라스틱 문발 또는 기타 방충시설이 구비되어야 함
 - 3) 포장작업장은 신선과실 선별 설비를 구비하고, 일사광선이 충분하여 신선과실의 선별 및 조사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함
 - 4) 포장작업장 내 적어도 2개의 비 페로몬 유인장치를 설치, 복숭아심식나방의 발

생을 탐지하고, 발견 시 포장작업을 중지, 원인 규명과 개선 후 작업을 재개함.
 관련 중지사항은 대만식물검역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5) 포장작업장에 적어도 1명 이상의 한국식물검역기관 훈련과정을 이수한 인원(복숭아심식나방 감염 과실을 식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상주, 선별작업 전 과정에 참여 검사함

- 포장작업장의 작업

- 1) 포장작업장 내 모든 대만수입의 과실은 반드시 대만식물검역기관인증의 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한국 국내시장판매용 또는 제 3국 수출용 신선과실과 구별, 저온창고에 보관하여야 함
- 2) 매년 5월에서 10월, 배속 과실이 포장작업장 반입 전 밀봉사항을 검사하며, 종이봉지 입구가 밀봉되지 않거나 파손 또는 종이봉지와 과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포장작업장 반입 금지
- 3) 매년 11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배속 과실이 포장작업장 반입 전 다음 방식에 따라 봉지를 제거해야 함:
 - 가. 봉지 제거작업은 반드시 포장작업장 내 전문 인력 감독 하에 진행함
 - 나. 전문인력은 과수원 명칭, 일자 및 수량을 포함한 제거작업 과정을 참조용으로 기록, 포장작업장에 비축함
 - 다. 봉지제거 후 배속 과실은 적정 저온냉장 창고 또는 밀폐식 저장고에 보존함
 - 라. 포장작업 전 봉지제거 후 배속 과실이 봉지제거 작업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기록이 불완전할 경우 포장작업장 반입 금지
- 4) 포장작업장은 매일 선별 및 포장작업 진행 전 반드시 청소 및 살충제 분무를 통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 5) 매년 5월에서 10월까지 대만수입의 신선과실 포장진행 시 제 3국수출용 또는 한국 국내시장판매용 포장작업과 동시에 진행해서 안됨
- 6) 한국식품검역기관 검역인원 또는 위탁지방정부검역인원은 반드시 신선과실의 선별 및 포장작업을 감시하여야 함
- 7) 포장진행 중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될 경우 동일 집단 전체과실 수입 금지 외에, 이 과수원에서 생산기에 생산한 신선과실의 대만수입 금지
- 8) 폐과실은 용기에 담아 매일 작업장 밖으로 옮겨 폐기 또는 소각

- 9) 포장작업장이 매년 5월에서 10월까지 한국식물검역기관의 허가를 받은 방충설비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일몰 후 관련 포장작업을 해서는 안됨
- 포장작업장은 과수원의 복숭아심식나무 감측, 경작지조사, 예방조치기록 및 매년 11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의 봉지제거작업 기록을 비축, 연간조사 시 대만식물검역기관 검역인원이 확인하도록 함
 - 포장작업장은 한국식물검역기관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한국식물검역기관은 책자화(포장작업장 명칭 및 주소, 책임자 및 포장 신선과일종류 포함)하여 연간조사 전 대만식물검역기관에 제공. 신선과일의 대만수입 기간 내 만약 포장작업장을 추가할 경우 한국식물검역기관은 즉각 업데이트 목록을 대만식물검역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필요 시 대만식물검역기관은 인원을 파견하여 추가 작업장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모든 비용은 한국에서 부담함
 - 포장재료
 - 1) 포장상자마다 대만수입의 신선과실명칭 및 포장작업장명칭 및 코드 표기
 - 2) 포장상자에 원지름 1.6MM이하 거즈가 있는 통풍구가 있어야 하며, 밀폐식 도구를 통하여 운송
 - 포장작업장은 검역 후 신선과실의 2차 해충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함
 - 1) 포장완료 신선과실은 야외에 방치해서 안되며, 직접 노출상태로 두어서 안됨
 - 2) 저장장소로의 운송과정에 원지름 1.6M이하의 거즈, 범포 또는 기타 방충 가능한 재료로 덮어야 함
 - 3) 검역합격 신선과실 저장고 내 검역을 거치지 않은 신선과실을 저장해서는 안됨
- 원산지 조사
- 한국식물검역기관은 매년 조사 전 1개월 정식으로 서신을 통해 대만식물검역기관에 인력파견 요청, 대만수입의 신선과실 공급과수원, 포장작업장 및 수출검역작업 등 조사를 집행하도록 하며, 포장작업장 리스트 제공
 - 다음 사항에 부합할 경우 한국식물검역기관은 대만식물검역기간 위탁 하에 검역조사 작업 집행
 - 1) 신선과실이 1년 전 대만식물검역기관의 검역조사작업 집행을 거친 경우
 - 2) 전 분기 신선과실의 수출과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 미 발견, 대만 수입금지 유해생물원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 3) 한국식물검역기관원은 대리 검역조사 집행 시 조사 후 1개월 내 조사보고서를 대만식물검역기관에 제공해야 함
- 4) 모든 검사 비용은 한국에서 부담

○ 수출 검역

- 한국식물검역기관은 대만식물검역기관에 연간 산지조사 요청 제출, 포장작업장 리스트 제공 후 생산기에 대만수입의 과실 검역조사 실시
- 선별작업 기간에 한국식물검역기관의 검역인원 또는 위탁지방정부 검역인원은 포장작업장 내 폐기과일 처리를 지도하며, 폐기과실은 용기에 담아 매일 작업장 밖으로 옮겨 폐기 또는 소각
- 포장작업 후 한국식물검역기관의 검역인원 또는 위탁지방정부의 검역인원은 대만수입의 신선과실 한 집단 당 총 상자 수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어도 2% 샘플을 추출 조사, 샘플추출 상자 내 모든 과실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용은 증가
- 수출검역 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될 경우 대만수입 금지, 검역 재신청해야 함. 생산기에 이 과수원에서 생산한 과실은 대만수입 금지
- 수출검역 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될 경우 이 포장작업장에서 이미 포장 완료한 신선과실의 대만수입 잠정 중지.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확인 후 검역작업 재개, 작업중지사항은 즉시 대만식물검역기관에 통지
- 검역합격 신선과실에 대해 한국식물검역기관은 수출검역증명서 상 복숭아심식나방 및 기타 대만식물검역기관 지정 유해생물 미감역 정보를 반드시 표기, 검역일자, 포장작업장 명칭 등 자료기재
- 검역합격 후 14일 내 선적되지 않은 신선과실은 반드시 재검사하며 수출식물검역 증명서 재발행 후 대만수입 재개

○ 재선적 보호규정

- 제3 지역 재선적 신선과실은 반드시 대만 [식물 또는 식물제품 운송 도중 특정병충해지역으로부터 수입 시 검역작업방법] 규정에 부합해야 함

○ 수입검역

- 수입검역 순서, 방법 및 샘플추출은 대만식물방역검역법 및 관련 검역규정에 따름
- 한국식물검역기관 발행 식물검역증명서 미 첨부 또는 증명서 상 관련 사항이 본 검

역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선과실 수입금지

- 신선과실 포장상자 표기가 본 검역조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지
- 수입항구 임시현장검사 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 될 경우 이 과실 전체 집단 반환 또는 소각
- 대만식물검역기관은 수입검역 시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될 경우 한국식물검역기관에 통보, 과실의 식물검역증명서 사본, 포장상세자료, 해충사진 및 검정보고서 등 관련자료 제공

○ 수출작업 잠정중단 및 회복

- 한국식물검역기관은 대만검역기관의 제 1차 복숭아심식나방 발견 통보 후 즉각 이 과실종류의 대만수입검역 잠정중단
- 검역중단 전 이미 식물검역증명서가 발행된 동 종류의 신선과실은 익일부터 7일 내 대만수입선적 잠정중단, 수입검역 시행 후 기간 동안 발견될 경우 전항 제 4목 및 5목 규정에 따라 처리함
- 한국식물검역기관은 조사 및 개선조치 진행관련 결과보고를 대만식물검역기관에 제공
- 조사결과 개선이 필요할 경우 한국식물검역기관은 개선확인 보고서를 제출, 대만식물검역기관은 인력을 파견, 실제 개선조치 이행 확인, 모든 비용은 한국에서 부담함
- 대만식물검역기관 심사를 거쳐 한국식물검역기관의 보고에 따라 개선조치 확인의 신선과실 수입중단 조치 취소
- 동일 생산기(7월1일에서 다음해 6월 30일) 한국생산 대만수입의 신선과실에서 두 번째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될 경우 대만식물검역기관은 전항 제 4목 및 제 5목 규정에 따라 처리, 한국산 신선과실의 대만수입 전면금지, 제 1목에서 제 5목 규정 적용

제4절 주류 및 한약재 검역제도

1. 「수입주류검사관리방법(進口酒類查驗管理辦法)」 개정

- 주류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 1월 7일 「담배 주류 관리법」을 수정 공표하였고 수입주류와 관련한 제39조 3항이 추가됨
- 수입주류는 위생기준에 따라 중앙주요기관이 집행하는 검험에 부합해야 수입이 가능함
- 2005년 7월 27일에 「수입주류검사방법」을 공포, 2015년 5월 1일 「수입주류검사관리방법(進口酒類查驗管理辦法)」으로 명칭 변경, 전문 22조 수정 발표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수입주류의 검험은 본 규정에 근거함
 - 수입주류의 경우 반드시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자가용 주류 및 수입량이 5리터를 초과하지 않거나, 관세법 제 49조에 해당하는 주류, 주조 이외 용도의 미 변질 주정 등에 한하여 검사를 면제함
 - <수입주류검사관리방법> 제 10조 제 1항 내 아래 항목을 추가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항 목	금 액(단위: NTD)
산화 시간	1,500
황산 채도 테스트	1,000
고형물	1,500
사이안화물	1,500
가소제(DBP, DEHP, DINP)	5,000
색소	1,300

- 2015년 12월 29일 재정부령(台財庫字第10403800460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수입주류의 일반검사 항목표가 아래와 같이 시행됨

주류 종류		검사 항목
1. 맥주류		이산화황
2. 과일양조주류	포도주	이산화황
	기타과일주	메탄올, 이산화황
3. 곡류양조주류		메탄올, 납, 이산화황
4. 기타양조주류		메탄올, 납, 이산화황
5. 증류주류	포도 브랜디	메탄올
	위스키	메탄올
	백주	메탄올, 납,
	미주	메탄올, 납, 이산화황
	기타증류주	메탄올
6. 혼성주류(Liqueur)		메탄올, 납
7. 요리용주류		메탄올, 납, 이산화황
8. 식용주정		메탄올, 납, 황산채도테스트, 산화시간, 고형물함량, 시안화물(카사바원료인것)
9. 기타 주류		메탄올, 납, 이산화황

2. 수입 한약재 관련 규정 개정

- 대만 위생복지부 中醫藥司는 「약사법」 제 71-1조에 의거하여 9월 23일 「한약재 수입검사 관련 검사 실시 규정(應施輸入查驗中藥材之相關查驗規定)」수정초안을 발표
- 한약재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인삼, 서양삼, 황련, 방풍 및 진피 5개 항목 약재를 추가하여 2016년 12월 12일부터 국경(변경) 검역검사가 실시되며 중금속, 잔류농약 함량 합격 후 통관 진행됨

□ **관련문서** : 衛部中字제1051861337호

□ **수입검사 시 준비해야 할 문건 내역** : 검사신청, 종약상 허가자격증 복사본, 수입 신고서, 중앙위생주관기관이 공고한 검사실험실 또는 농약우수제조준칙에 부합하는 농약제조공장, 수출국 주관기관이 제출한 검사 기관의 증명, 기타중앙위생 주관기관이 공고한 문건

- 수입검사 관할 및 검사 지점 :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 약물관리서
- 수입검사방법 : 중금속 측정법, 농약잔류검측법, 이산화황검사법, 아플라톡신 검측법 및 식품중 잔류농약검사방법- 다종잔류분석방법
- 샘플링 검사규정 : 『수입약물변경샘플링검사방법(輸入藥物邊境抽查驗辦法)』에 의거
- 라벨링 : 품명, 제조사 명칭 및 주소, 생산번호 등 표기
- 샘플링 검사수량 : 10CTN이하 (1CTN 검사), 10~50CTN(2CTN), 매 50CTN 증가 시 추가 1CTN 개봉, 매 50C/T이하 2C/T 검사, 51C/T~500C/T 50C/T 검사, 500C/T 이상 15C/T 검사

▣ 한약재 수입 검사 대상 목록(추가항목 포함) ▣

CCC CODE	품 명	검사 방식	수입규정
0813.40.31.00-2	홍대추 (중약재용포함)	일반샘플링검사	H02
1211.90.13.00-9	두충	일반샘플링검사	H01
1211.90.20.00-0	복령	일반샘플링검사	H01
1211.90.21.00-9	복령 절편	일반샘플링검사	H01
1211.90.22.00-8	방형 복령, 복신, 복령겉질	일반샘플링검사	H01
1211.90.25.00-5	천궁	일반샘플링검사	H01
1211.90.30.00-8	백출	일반샘플링검사	H01
1211.90.44.00-2	백작약	일반샘플링검사	H01
1211.90.49.00-7	지황	일반샘플링검사	H01

CCC CODE	품 명	검사 방식	수입규정
1211.90.50.00-3	향기, 홍기	일반샘플링검사	H01
1211.90.54.00-9	당귀	일반샘플링검사	H01
1211.90.55.00-8	서귀각, 소귀미	일반샘플링검사	H01
1211.90.56.00-7	박미각편	일반샘플링검사	H01
1211.90.61.00-0	백작약	일반샘플링검사	H01
1211.90.70.00-9	감초뿌리	일반샘플링검사	H02
0906.19.00.00-4	계피 및 기타 계피	일반샘플링검사	H02
0906.20.00.00-1	계피 (잘게 부순 것)	일반샘플링검사	H02
0906.11.00.00-2	계피 (부수지 않은 것)	일반샘플링검사	H02
1211.90.43.00-3	시호	일반샘플링검사	H01
1211.90.46.00-0	황금	일반샘플링검사	H01
1211.90.37.00-1	반하	일반샘플링검사	H01
1211.90.41.00-5	우슬, 천우슬, 두우슬	일반샘플링검사	H01
1211.90.23.00-7	대황	일반샘플링검사	H01
1211.90.52.00-1	방풍	문서완비 및 규정 부합여부 심사	H01
1211.90.24.00-6	황련	문서완비 및 규정 부합여부 심사	H01
1211.90.36.00-2	호황련	문서완비 및 규정 부합여부 심사	H01
1211.20.10.00-7	길림인삼(삼수, 삼줄기, 삼 썬편 포함)	문서완비 및 규정 부합여부 심사	H01
1211.20.21.00-4	고려홍삼(삼수, 삼줄기, 삼 썬편 포함)	문서완비 및 규정 부합여부 심사	H01
1211.20.22.00-3	고려백삼(삼수, 삼줄기, 삼 썬편 포함)	문서완비 및 규정 부합여부 심사	H01
1211.20.31.00-2	일본홍삼(삼수, 삼줄기, 삼 썬편 포함)	문서완비 및 규정 부합여부 심사	H01

CCC CODE	품 명	검사 방식	수입규정
1211.20.32.00-1	일본백삼(삼수, 삼줄기, 삼 채편 포함)	문서완비 및 규정 부합여부 심사	H01
1211.20.90.00-0	기타 인삼뿌리	문서완비 및 규정 부합여부 심사	H01
0814.00.00.10-4	굴피(진피포함)	문서완비 및 규정 부합여부 심사	H02
1211.20.41.00-0	포삼	문서완비 및 규정 부합여부 심사	H02
1211.20.42.00-9	포삼꼬리, 수염, 인삼뿌리	문서완비 및 규정 부합여부 심사	H02
1211.20.43.00-8	인삼뿌리, 수염	문서완비 및 규정 부합여부 심사	H02
수입규정 H01:	위생복지부 공고의 수입 검역검사 한약재는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 발행의 수입허가증 통지 후 수입해야 함		
수입규정 H02:	본 항의 부분 한약재는 위생복지부 공고 수입 검역검사 한약재로,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 발행의 수입허가증 통지 후 수입해야 함		

제5절 기타 식품 관련 규정

1. 냉동 식품류 위생기준 개정

□ 냉동 식품류의 위생기준(冷凍食品類衛生標準) (2013.8.20 수정)

- 제품은 고유의 맛과 색을 보존하고 부패, 변색, 악취, 이취, 오염, 곰팡이, 국제적 이슈, 기생충이 없어야 함
- 냉동식품 분류별 위생기준은 아래와 같음

식품 분류	일반세균수 (CFU/g)	대장균수 (MPN/g)	병원성대장균수 (MPN/g)	VBN 측정치 (mg/100 g)
냉동 어패류 (생식용 어패류 제외)	300만 이하		10 이하	25 이하 (판새류는 50 이하)
냉동 생식용 어패류	100,000 이하	10 이하	음성	15 이하
냉동 과일류	100,000 이하		10 이하	
냉동 채소류	직접식용 : 100,000 이하		10 이하	
	조리필요 : 300만 이하		10 이하	
냉동 식품 (조리 불필요)	10,000 이하	10 이하	음성	
냉동 식품 (조리 필요)	냉동 전 열처리 된 것: 100,000 이하	10 이하	음성	15 이하
	냉동 전 열처리 안된 것: 300만 이하		50이하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

2. 식품별 방사능 허용기준 개정

-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 2항에 따라, 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는 1월 18일 「식품 원자진 또는 방사능오염물질 안전허용량 표준(食品原子塵或放射能汚染安全容許量標準)」 수정안 발표
 - 2008년 7월 1일 제정된 동 규정은 소련 체르노빌 사고 이후 제정된 것으로 현재 방사능 오염의 정도에 따라 새로운 규정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원자진 및 방사능오염물질 표준 수치를 하향 조정하여 일본 수입 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 《유류(乳) 및 유제품》 및 《영아식품》 중 cesium(세슘)134 및 cesium137 제한 표준 수치 하향 조정
- 《기타식품》 중 iodine(아디오딘)131 및 cesium134, cesium137 제한 표준 수치 하향 조정
- 《음료 및 포장수》를 신규 별도 분리하여 iodine(아디오딘)131 및 cesium 134, cesium137의 제한 표준 수치를 하향 조정
- 기타식품 : 표고, 해조류, 멸치, 김, 조개류 및 채소류 등 건조, 농축 식품도 포함
- 티백 등 차제품은 《음료 및 포장수》 제한 수치 기준에 포함
- 시행일 : 2016.1.18.(발표일 기준)

■ 방사능 오염 물질 제한 수치 ■

식품종류 \ 방사능물질	I-131(아이오딘)	Cs-134, Cs137 (세슘)
우유 및 유제품	55Bq/kg	50Bq/kg
유아용 식품	55Bq/kg	50Bq/kg
음료 및 물(포장)	100Bq/kg	10Bq/kg
기타식품	100Bq/kg	100Bq/kg

- 주: 1) 탈수 또는 농축 형태로 인해 수분 첨가 후 식용 가능한 원료(예를 들어 버섯, 해초류, 생선, 어패류 및 채소)는 수분 첨가 후의 직접적 식용상태에 '기타식품'의 제한량을 적용함. 단 김, 건조멸치, 건조오징어, 건포도 등 건조상태 곧 직접 식용상태의 경우 기타식품의 제한량을 적용함
 2) 찻잎은 식용상태의 조건(차를 물에 우려낸 후) 하에 '음료 및 물(포장)'의 제한량을 적용

제6절 통관 및 검역 사례

1. 최근 검역 사례

□ 2015년도 대만 수입식품 검역 불합격 통계

검역 건수(전년대비)	샘플링 검사수(비율)	불합격 건수(비율)	검출 최대 국가
640,012(▲3.85%)	50,152(7.84%)	952(1.9%)	일본(횡수 기준)/미국(중량 기준)

○ 2015년도 대만 불합격 제품 종류별 상위 5종 및 그 항목

순위	제품 종류	대상 건수	검역 건수(비율 %)	불합격 건수(비율 %)	주요불합격 검역항목	주요 항목	국가
1	채소	29,398	3,469(11.80)	234(6.75)	잔류 농약	배추, 파, 바질 백합	한국, 일본
2	식품용기	90,696	2,751(3.03)	196(7.12)	내열온도	PP재질 용기	일본

순위	제품 종류	대상 건수	검역 건수(비율 %)	불합격 건수 (비율 %)	주요불합격 검역항목	주요 항목	국가
3	과일	25,209	2,787(11.06)	6126 (4.52)	잔류 농약	밀감, 체리	일본, 미국
4	차류	8,885	3,857(43.41)	124 (3.21)	잔류 농약	홍차	베트남, 인도
5	소스류	34,196	2,638(7.71)	33 (1.25)	방부제	각종 소스류	한국, 베트남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2015년 수입식품 검역결과 부적격 수량과 비율이 매년 상승

- 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에 따르면 2015년 수입식품 검역결과 부적격 수량과 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샘플검사 5만 건 중 불합격율은 1.98%로 2014년의 1.36%보다 증가함
 - 품목별로 신선채소, 식품용기, 신선과일, 찻잎 및 소스류의 순이었으며, 위반 내용은 주로 잔류농약의 기준량 초과인 것으로 나타남
 - 불합격 1위 품목인 신선채소의 경우 총 234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음(6.75% 비율) 신선 채소의 경우 2012년 불합격 품목 3위였으나, 매년 수입량 증가에 따라 샘플 검사가 강화되었으며, 이에 2013년 2위 이후 2014년과 2015년 모두 제일 많은 불합격 판정을 받음
 - 신선채소 수입국가 별로는 일본과 한국이, 세부품목별로 배추, 파, 바질, 백합인 것으로 나타남. 일본은 3개 항목(백합, 밀감 등)에 있어 불합격 판정을 받아, 1위를 기록하였으며, 한국(배추)과 베트남이 2개 항목, 미국, 인도가 1개 항목에 대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음. 현재 신선채소의 검역검사 비율은 20~50%로, 일반 식품(2~20%)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 하에 수입 진행되고 있음
- 식품약물관리서는 불합격율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은 식품 수입량 증가 외에, 채소과일에 대한 농약 검사항목 증가에 의한 것으로 설명함
 - 2015년 배추 및 찻잎의 잔류농약 검출을 통하여 현 실정에 맞는 법규제정 필요에 따라 실제 2016년에 들어, 이미 3회에 걸쳐 「잔류농약 허용량표준」이 수정되었

- 음. 현재 최종 수정일은 2016년 7월 14일이나, 식품약품관리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정 예고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식품약품관리서는 8월 8일 수정 공고를 통하여 14종 농약을 추가 제정하여 86종 채소과일 및 곡류 등 농산품에 대하여 잔류농약 허용량을 제공할 예정이며, 잡곡류, 작은잎 채소류, 향신류식물 및 기타 초목본식물에 대한 기준도 제정할 것으로 예정함. 9월 22일 25종 채소과일에 대하여 8종의 농약허용량을 추가 제정할 것으로 추가 공고함 (7월 14일 部授食字 제1051302070호에 따라 수정 발표된 잔류농약 허용량은 첨부와 같음.)
 - 현재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15조 제 1항 제 5목 규정에 의거해 위반 시에는 동법 제 44조 제 1항 제 2목에 따라 신대만달러 6만원 이상 2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
 - 금지농약은 다음과 같음

농약 명칭(중문)	영문 명칭	농약 명칭(중문)	영문 명칭
有機水銀劑	Organic mercury	飛佈達	Heptachlor
安特靈	Endrin	阿特靈	Aldrin
滴滴涕	DDT	地特靈	Dieldrin
蟲必死	BHC	福賜松	Leptophos
護谷, 護谷殺丹, 護得壯, 丁拉護谷	Nitrofen	二溴氯丙烷	DBCP
克氯苯	Chlorobenzilate	毒殺芬	Toxaphene
二溴乙烷	EDB	五氯酚鈉	PCP-Na
達諾殺	Dinoseb	靈丹	γ-BHC (Lindane)
滴滴	Dichloropropane-Dichloropropene	氰乃淨	Cyanazine
四氯丹	Captafol	樂乃淨	Fenchlorphos
福爾培	Folpet	亞拉生長素	Daminozide
五氯硝苯	PCNB	錫蟎丹	Cyhexatin
大脫蟎	Dinobuton	白粉克	Dinocap
得滅克	Aldicarb	全滅草	Chlornitrofen, CNP

2. 주요 국가별 검역 사례

□ 한국산 통관 이슈 사례

- 플라스틱 용기 내열온도 이상으로 인한 불합격 처리
 - 타이베이 세관의 국경조사에 따르면 한국산 플라스틱 용기의 내열온도 테스트 결과 변형이상이 확인되어, 전면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됨.

Ⅰ 검역규정 불합격 용기 사례 Ⅰ

수입코드	3924.10.00.20-1
불합격 사항	내열온도 테스트 결과 변형
근거 법규	본 제품의 내열온도 테스트 결과, 표기 상의 내열온도와 실제 내열온도가 일치하지 않아,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8조 규정」 위반
검역 중량	40kg
처리 방식	불합격된 상품 반송 또는 폐기
발표 일자	2016. 06. 07
검역 일자	2016. 05. 03

수입코드	3924.90.00.30-2
불합격 사항	내열온도 테스트 결과 변형
근거 법규	본 제품의 내열온도 테스트 결과, 표기 상의 내열온도와 실제 내열온도가 일치하지 않아,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8조 규정」 위반
검역 중량	135.27kg
처리 방식	불합격된 상품 반송 또는 폐기
발표 일자	2016. 10. 04
검역 일자	2016. 09. 07

- 플라스틱 재질 용기 표기 관련 규정 강화
 - 「식품도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의 표기필수사항(應標示之食品器具、食品容器或包裝

品項)』 수정 및 「식품도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 표기관련규정(食品器具、食品容器或包裝標示相關規定)』 제정안이 2016년 4월 18일 발표됨.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6조 제 8목에 의거해 제정, 수정된 동 규정에 따르면 추후 판매 유통되는 식품기구, 식품용기 및 포장의 접촉면이 플라스틱 재질일 경우 반드시 그 재질명칭 및 내열온도를 표기하여야 함.
- 상기 표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강제 회수조치, 개선권고하며 기한 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신대만 달러 3만원에서 300만원 벌금형에 처함. 또한 내열온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 역시 회수조치, 개선권고하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신대만 달러 4만원에서 400만원의 벌금에 처함
- 최근 한국산 플라스틱 용기 수입 증가와 더불어 검역 시 불합격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 규정 강화발표로 인하여 한국 수출업체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동 규정은 2017년 7월 1일 시행 예정

○ 표고버섯 밀수 적발

- 2016년 7월 26일 지룽 관세국은 중국 샤먼에서 선적된 40피트 컨테이너를 수상히 여겨 검사를 실시. 적하목록 상 화물명은 차기(TEA TABLE)로 되어 있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밀수 중국 건조 표고버섯이 선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밀수 표고버섯은 총 6,000KG으로 시가 NTD 1,200만원에 해당함
- 대만 지룽관세국에 따르면 금번 적발된 밀수 표고버섯은 소형 버섯으로, 일반적으로 중국 표고버섯의 크기가 작아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밀수 시도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함(2016/7/26 중앙통신사 CNA 보도)

○ 대만 가오슝 관세국 밀수 담배 반입 적발

- 가오슝 관세국은 9월 2일 경찰견 탐지 및 X-Ray검사를 통해 밀수 담배를 적발함. 적발된 담배는 M&M 브랜드의 담배 1,588 상자(79만 4천갑), 시가 NTD 3,600만원에 상당함
- 이어 9월 26일 가오슝 16번 부두에서 2,195 상자 총 109만 7500갑의 밀수 담배를 적발(시가 NTD 5,000만원), 이는 가오슝 세관 역대 최대 밀수 담배량인 것으로 나타남. 관세국은 22대 20피트 컨테이너 중 6대 컨테이너를 수상히 여겨 조사한 결과, 수입허가를 거치지 않은 M&M 브랜드 담배가 밀수 선적되어 있는 것을

적발함. 관세국은 배후 불법 그룹에 대한 조사 및 감시조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힘(2016/9/26 중앙통신사 CNA 보도)

- 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도 연간 조사결과 담배주류관리법 위반건수는 총 3,851건 (밀수 담배 주류 적발건 3,139건, 기타 712건)으로 위반 담배는 1,055만 1,678갑, 주류는 58만 709.96ML로 시가 NTD5억 4,121만 6,472원에 상당함. 상기 수치는 2014년 대비 담배는 37.58%(635만 1,800갑 감소), 주류는 32.01%(27만 3,408ML 감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6년 1월에서 9월까지 세관, 지방정부, 행정원 및 내정부 동의하에 집행된 적발업무를 통해 총 803.98만 갑의 밀수 담배가 확보됨. 9월 한 달 동안 237.39 만갑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5.43갑이 증가한 수치임.
- 현재 담배주류관리법 제 45조 규정에 의거해 밀수담배 및 주류 수입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NTD 2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동법 제 46조 규정에 따라 밀수 담배와 주류의 판매, 운송, 이전 또는 저장 시 NTD 3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단 적발 당시 현금가치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1배 이상 5배 이하 벌금형, 최고액 600만원으로 제한함. 또한 동법 제 57조 규정에 따라 확보된 밀수 담배 및 주류, 밀수 담배 및 주류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반완성품, 도구 및 주류 용기는 소유자와 관계없이 몰수 조치 함
- 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방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발업무를 실시할 계획
 - 1) 국경검사(변경검사): 세관밀수검사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컨테이너를 선별 감시, 샘플 확인강화, 밀수 의심 해안 지점 정보 수집 및 컨테이너 작업장 종사인원과 의 공조 강화 통하여 컨테이너의 이력추적 검사집행을 구현함
 - 2) 시판제품 조사: 수입담배제품 대조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수입신고서 중복사용을 예방하며, 저가 담배제품 유통 검사강화를 위해 야시장, 빈랑판매점, 전통시장 등의 판매장소를 주 검사대상으로 함. 또한 담배제품이 저장되어 있는 대형 창고 등 장소정보를 수집함
 - 3) 검사효율 제고: 밀수상황공유 플랫폼을 통하여 각 검사기관이 위법 담배제품의 불법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담배제품의 통관자료를 확보, 그 수입량 및 판매량의 차이를 대조, 고위험 대상군을 선별하고 형사 수단을 통해 증거를 수집함. 또한 교육훈련 및 좌담회 등 방식을 통해 검사인력의 전문성 고취

□ 한국산 검역 이슈 사례

○ 한국산 김 공업용 염산 검출 루머

- 대만 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한국산 김에서 공업용 염산이 검출되었다는 루머 양산. 2014년 일본 정부가 한국산 김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하였으며, 원인이 공업용 염산 검출로 밝혀졌다는 미확인 정보가 유포됨
- 한국산 김은(CCC 코드 1212기준) 2015년 560,489kg이 수입되었으며(전년대비 68.5% 증가) 2015년 대만 내 수입량은 중국, 태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며, 매년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임
- 다만 공업용 염산 검출 루머로 인하여 실제 수입 업체에 확인 및 증명 요청,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함.
- 대만 식품약품관리서는 2016년 5월 24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하여 관련 루머에 대하여 실체가 없으며, 현재까지 한국산 김의 염산 검출 신고 미확인 및 수입 검역 시 부적격 사례 없음을 강조함. 일부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 및 업체 간 쟁의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16년 한국산 주요 검역 불합격 사례

발표일 (검역일)	품명	CCC CODE	불합격사유	법정 제한 표준	중량	처리
2/3 (1/5)	신선 배	98180000004	잔류농약 Methidathion 0.06ppm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 법 제 15조 위반	16,200	반송 혹은 폐기
4/14 (3/17)	고춧가루	09042190003	잔류농약 tebuconazole0.13ppm 검출	0.05ppm	120kg	반송 혹은 폐기
6/23 (5/8)	포도씨유	15159090909	동엽록소 0.15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 법 제 18조 위반	15kg	반송 혹은 폐기
7/22 (6/23)	신선 파프리카	07096000001	잔류농약 clothianidin 0.08ppm 검출	0.05ppm	15kg	반송 혹은 폐기
7/22 (6/25)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프로니카미드 0.04ppm 검출	0.01ppm		반송 혹은 폐기
8/18 (7/22)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디나콜나졸 0.01ppm, 메트코나졸 0.03ppm 검출	디나콜나졸 검출 미허용. 메트코나졸 0.01ppm	20,000	반송 혹은 폐기

발표일 (검역일)	품명	CCC CODE	불합격사유	법정 제한 표준	중량	처리
8/18 (7/23)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프로니카미드 0.02ppm 검출	0.01ppm	15,750	반송 혹은 폐기
8/25 (7/23)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디나콜나졸 0.04ppm, 메트코나졸 0.12ppm 검출	디나콜나졸 검출 미허용, 메트코나졸 0.01ppm	19,000	반송 혹은 폐기
9/15 (8/14)	배추	07049010008	디니콘나졸 0.04ppm 메토코나졸 0.16ppm	디나콜나졸 검출 미허용, 메트코나졸 0.01ppm	16,170	반송 혹은 폐기
9/15 (8/20)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에토펜플록스 0.06ppm 검출	에토펜플록스 검출 미허용	15,750	반송 혹은 폐기
9/22 (8/27)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디나콜나졸 0.04ppm, 메트코나졸 0.01ppm, 에토펜플록스 0.05ppm, 아미설부롬 0.12ppm, 파목사돈 0.02ppm 검출	디나콜나졸, 에토펜플록스, 아미설부롬 검출 미허용, 메트코나졸, 파목사돈 0.01ppm	15,750	반송 혹은 폐기
9/22 (8/27)	배추	07049010008	메트코나졸 0.06ppm	0.01ppm	15,750	반송 혹은 폐기
10/13 (9/16)	신선 멜론	08071910002	잔류농약 Pyridaben 0.02ppm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 법 제 15조 위반	6,400kg	반송 혹은 폐기
10/13 (9/15)	치킨양념 소스	21039090905	방부제 Ethyl p-Hydroxybenzoate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 법 제 18조 위반	160kg	반송 혹은 폐기
11/24 (10/23)	간장	21031090001	방부제 p-Hydroxybenzoate 0.11 g/kg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 법 제 15조 위반	885kg	반송 혹은 폐기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미국 및 캐나다 식품에 대한 규제

○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

- 2015년 2월 캐나다에서 소 해면상뇌증(BSE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됨에 따라, 다만 내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 2월 22일 식품약물관리서는 안전이 증명될

- 때까지 캐나다산 소고기 및 관련 제품의 검역을 잠정 중단할 것으로 발표함
- 2016년 7월 8일 대만정부가 캐나다 산 소고기 수입검역신청 전면재개를 발표, 9월 2일 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가 수입검사를 실시(총 중량 1144.6kg), 라벨 표기 및 샘플 검사, 서류 확인 후 수입허가를 통지함으로써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우려와 반발을 삼
 - 식품약물관리서 식품조에 따르면 캐나다산 소고기의 경우 소고기 주 수입국이 아니며, 2012년에서 2015년 총 수입량이 2,700 톤에 불과, 전체 소고기 수입량의 0.7%에 불과하며 향후 대만은 소고기 수입 시 반드시 아래 조건들이 부합되어야만 대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함
 - 1) 수의사가 도살 전 건강한 소로 인정을 해야 하며, 병이 있거나 광우병의 의심되는 질병의 소로 판명되어서는 안 됨
 - 2) 30개월 이하의 소이어야 함
 - 3) 도살 시 모든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된 상태어야 함
 - 4) 對대만 수출이 허가된 공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 5) 관련 매 상품은 수출국 정부기관 소속 수의사의 감독 하에 생산하여야 하며, 對대만 규정에 부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6) 관련 매 상품 캐나다 정부 소속 수의사가 발부한 위생 증명을 첨부해야함
 - 이에 소비자문교기금회는 2015년 2월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해면상뇌증은 광우병의 전형으로, 이 병의 잠복기가 최장 7년에 달하므로 1년 반만의 수입 재개 발표에 문제를 제기함. 또한 정부의 검역이 문서상에 그칠 뿐, 뼈있는 소고기 수입 금지조건인 척수 및 신경조직을 포함하고 있는지 실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함
- 미국산 가금류 수입검역조건 공고
- 2016년 8월 19일 미국산 가금류 수입검역조건 공고에 따라 가금류의 수입 후 격리검역을 실시하며 동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農防字제 1051482158호)
 - 관련 수입업자는 중앙주관기관의 동의문서를 취득, 수입동물검역기관에 수입검역 조건에 따라 검역검사를 신청함
 - 대만중앙주관기관 공고의 고병원성 가금류 인플루엔자 및 뉴캐슬병(Newcastle disease) 미 발생 지역에서 수입하는 가금류에 한함

- 수입 가금류는(닭, 칠면조, 꿩, 메추라기, 자고, 공작, 타조, 예뮤 등) 다음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 1) 수출 전 3개월 또는 부화일로부터, 수의사 책임 하에 질병 진단 및 정기점검을 받은 사육장에서 사육
 - 2) 사육장은 과거 1년 간 뉴캐슬병, 가금류 결핵 등의 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과거 6개월간 H5 및 H7 가금류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3) 수출 전 미국농업부 위탁 수의사 감독하에 격리검역을 실시, 기간 동안 질병 미 발생, 검역 샘플 검사 수량은 20마리를 기준으로 하며, 20마리 미만의 경우 전 수 검사함
 - 4) 사육장소에서 운송되어 수입국에 도착 전까지 기타 가금류와 접촉해서는 안되며, 수입 시 미국농업부 위탁 수의사 발행의 동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서 상에 수출국 발행 기관 및 인원, 검역물 식별 정보, 원산지, 목적지, 검역결과 등이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수금류의(오리, 거위, 백조, 원앙, 펭귄, 왜가리, 황새, 크레인, 펠리컨 등) 수입은 상기 규정과 동일함
- 수출국정부 인증 소독약품으로 소독한 용기에 밀봉 선적하며, 운송 도중 고병원성 가금류 인플루엔자 지역 항구 또는 공항에서 재선적할 수 없음. 도중 사료, 기타 가금류 등을 추가 선적할 수 없으며 IATA의 활동물 운송 및 재선적 규정에 부합해야 함
- 수입 전 수입동물검역기관에 격리장소를 신청, 수입을 시행하며 장소에 수입 후 10일간 격리하여 검역을 진행, 검역은 중앙주관 별도공고 시행일자에 따름

○ 2016년 미국산 주요 검역 불합격 사례

발표일 (검역일)	수출국	품명	CCC CODE	불합격사유	법정 제한 표준	중량	처리
3/1 (1/28)	미국	시금치	07097000009	잔류농약 Flonicamid 0.36ppm, 카드뮴 0.3ppm 검출	0.01ppm/ 0.2ppm	17.34kg	반송 혹은 폐기
3/23 (2/6)	미국	자몽	08054091107	잔류농약 Tolfenpyrad 0.07 ppm 검출	0.01ppm	22,861kg	반송 혹은 폐기
4/27 (3/25)	미국	냉동육 (소고기)	02013010900	Ractopamine 0.02ppm 검출	0.01ppm	3,465kg	반송 혹은 폐기

발표일 (검역일)	수출국	품명	CCC CODE	불합격사유	법정 제한 표준	중량	처리
5/31 (4/15)	미국	샐러리	070940000060	잔류농약 Flonicamid 0.02ppm 검출	0.01ppm	17,418kg	반송 혹은 폐기
6/28 (6/02)	미국	복숭아	08093000105	잔류농약 Quinoxifen 0.03 ppm 검출	0.01ppm	2,288kg	반송 혹은 폐기
9/13 (8/18)	미국	냉동육 (소갈비)	02023090109	Ractopamine 0.02 ppm 검출	0.01ppm	17,194kg	반송 혹은 폐기
9/13 (8/5)	미국	블루베리	08119029007	잔류농약 Phosmet 0.03ppm 검출	0.01ppm	22,032kg	반송 혹은 폐기
4/12 (3/14)	캐나다	크릴 오일	15179090006	구리 14.2 ppm, 비 소 5.8 ppm 검출	0.4ppm/ 0.1ppm)	20kg	반송 혹은 폐기
5/17 (4/16)	캐나다	꿀	03071190008	카드뮴 0.3ppm 검출	0.2ppm	108kg	반송 혹은 폐기
7/12 (6/15)	캐나다	귀리	11042210005	잔류농약 glyphosate 0.3ppm 검출	-	42,400	반송 혹은 폐기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일본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 강화

○ 방사능 물질 검출 일본식품 종류별 건수

종류	누적 검역 건수 (2011/3/15~2016/9/29)	미량 검출 식품 건수	비율
수산식품	27,767	34	0.12
과일	7,633	6	0.09
야채	3,915	2	0.07
유제품	3,011	2	0.09
광천수	721	0	0
유아용 제품	8,510	1	0.02
해초류	2,324	0	0
쌀	212	0	0
가공식품(차포함)	37,850	170	0.45
합계	91,943	215	0.23

○ 방사능 물질 검출 사례(2015~2016)

일자	품명	I-131 (Bq/kg)	Cs-134 (Bq/kg)	Cs137 (Bq/kg)	Cs-134+Cs137 (Bq/kg)
2015/1/22	마차	-	6.8	17.8	24.7
2015/1/29	벚꽃잎차	-	1.2	3.0	4.2
2015/4/24	냉동청상아리	-	-	0.34	0.34
2015/5/13	호지차분말	-	-	2.48	2.48
2015/6/16	호지차	-	3.7	15.1	18.8
2015/6/16	마차현미혼합차	-	2.7	6.8	9.5
2015/9/15	녹차	-	-	1.7	1.7
2015/9/24	엽차	-	-	3.8	3.8
2015/10/20	녹차	-	-	1.9	1.9
2016/9/21	녹차	-	-	3.51	3.51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2016년 일본 주요 검역 불합격 사례

- 2016년 1월 식품약품관리서는 제보를 통해 「載來有限公司」와 「向虹園貿易有限公司」 회사의 현장조사를 진행, 205개 항목의 일본수입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함. 그 중 밀크 카라멜과 초콜릿 두 제품이 일본 수입금지지역인 후쿠시마 및 이바라키 현 제품인 것으로 나타남. 두 제품은 총 1,163포 수입되었으며, 식품약품관리서는 판매금지 및 전량회수 조치와 더불어 일본 측에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함. 실제 두 항목의 제품은 샘플검사 결과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수입금지지역 제품의 수입이 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신대만달러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처벌 조치함
- 2016년 6월 4일 식품약품관리서는 FDA北字제1052003629호를 통해 2016년 10월 11일부터 2017년 4월 10(수입일 기준)까지 일본산 신선멜론(CCC CODE 08071710002)의 강화샘플링 검사실시를 발표함. 최근 6개월 동안 동 상품의 잔류농약 검출 규정위반 건이 연속 발생, 동법 제 47조 처분 규정에 따름

발표일 (검역일)	품명	CCC CODE	불합격사유	법정 제한 표준	중량	처리
3/15 (2/18)	바질	07099990908	잔류농약 Dinotefuran 0.97ppm, Chlorothalonil 18.3ppm 검출	미허용/5.0ppm	20.41kg	반송 혹은 폐기
3/15 (2/15)	백합 (식용)	07099990908	카드뮴 0.14ppm 검출	0.05ppm	5kg	반송 혹은 폐기
3/29 (2/26)	녹차	09022000005	잔류농약 silafluofen 0.60ppm 검출	미허용	400kg	반송 혹은 폐기
5/5 (4/6)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Boscalid 0.03ppm 검출	0.01ppm	5,000kg	반송 혹은 폐기
6/7 (5/10)	밀감	08052010109	잔류농약 Dinotefuran 0.23ppm, Methidathion 1.5ppm 검출	미허용/1.0ppm	175kg	반송 혹은 폐기
6/21 (5/17)	딸기	08101000008	잔류농약 Tolfenpyrad 0.02 ppm, Spirotetramat 0.02 ppm	0.01ppm/ 미허용	45kg	반송 혹은 폐기
7/5 (6/7)	멜론	08071910002	잔류농약 Iprodione 0.04 ppm	0.01ppm	84kg	반송 혹은 폐기
9/13 (8/17)	상추	07051100005	잔류농약 Chlorfenapyr 0.08 ppm	0.01ppm	9,600kg	반송 혹은 폐기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중국산 식품에 대한 검역 사례

- 식품약물관리서는 중국산 박하(신선 또는 건조)에서 잔류농약 규정 초과 및 이산화황 검출 등 규정위반으로 동 제품에 대하여, 2016년 12월 26일 까지 강화검사 실시를 발표함. 또한 2016년 7월 5일 FDA北字제1052002224A/B호를 통해 2016년 7월 11일부터 2017년 1월 10(수입일 기준)까지 중국산 건조 버섯류와 무(신선 또는 냉장)에 대하여 강화샘플링검사 실시 발표. 최근 6개월 동안 동 상품의 잔류농약 검출 및 중금속 규정 위반 건 발생에 따른 조치임

○ 2016년 중국산 주요 검역 불합격 사례

발표일 (검역일)	품명	CCC CODE	불합격사유	법정 제한 표준	중량	처리
2/2 (1/4)	껍질 콩	07133390000	잔류농약 Propamocarb hydrochloride 0.07 ppm, Fipronil 0.006 ppm 검출	0.05ppm, 0.002ppm	210kg	반송 혹은 폐기
2/16 (1/4)	구기자	12119091102	잔류농약 Propargite 0.18 ppm 검출	미허용	4,393kg	반송 혹은 폐기
3/1 (1/19)	노루버섯	07123990005	잔류농약 Methamidophos 0.08 ppm, Acephate 0.21 ppm 검출	미허용/0.02ppm	4,706kg	반송 혹은 폐기
4/19 (3/21)	민트	12119091610	잔류농약 Lambda-cyhalothrin 0.13 ppm, Carbendazim 0.55 ppm, Chlorantraniliprole 0.06 ppm Pacllobutrazol 0.17 ppm 검출	0.05ppm	1,997kg	반송 혹은 폐기
4/19 (3/16)	밤 (냉동)	08119039005	잔류농약 Trichlorfon 0.03 ppm 검출	0.02ppm	13,500kg	반송 혹은 폐기
5/5 (4/6)	목이버섯	07123300000	잔류농약 Isoprocarb 0.08 ppm 검출	미허용	3,837kg	반송 혹은 폐기
5/10 (4/1)	감초	12119070009	sulphur dioxide 0.98 g/kg 검출	0.03g/kg	777.6kg	반송 혹은 폐기
5/31 (5/3)	고추	07096000001	잔류농약 Hexaconazole 0.04 ppm, Tricyclazole 0.02 ppm, Chlorfenapyr 0.03 ppm Propiconazole 0.03 ppm 검출	0.01ppm/미허용/ 0.01ppm/0.01pp m/0.01ppm	16,800kg	반송 혹은 폐기
5/31 (4/29)	파프리카	07096000001	잔류농약 Tolfenpyrad 0.07 ppm, Etoxazole 0.03 ppm 검출	0.01ppm	13,000kg	반송 혹은 폐기
6/21 (5/24)	무	07069000106	잔류농약 Trichlorfon 0.03 ppm 검출	0.01ppm	26,000kg	반송 혹은 폐기

발표일 (검역일)	품명	CCC CODE	불합격사유	법정 제한 표준	중량	처리
7/5 (6/3)	후추	12119091308	잔류농약 tebuconazole 0.07 ppm, Imidacloprid 0.07 ppm, Acetamiprid 0.10 ppm Propargite 0.17 ppm 검출	0.05 ppm/0.05 ppm/0.05 ppm/미허용	3,000kg	반송 혹은 폐기
7/19 (6/22)	백합	07129010008	sulphur dioxide 1.46 g/kg 검출	0.50g/kg	1,317kg	반송 혹은 폐기
8/9 (7/13)	대추	08134031002	잔류농약 Propargite 0.06ppm 검출	미허용	5,040kg	반송 혹은 폐기
9/13 (8/10)	동충하초	07123990005	잔류농약 Metalaxyl 0.34 ppm, chlorothalonil 0.6 ppm 검출	미허용/0.1ppm	144kg	반송 혹은 폐기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동남아 국가의 검역 사례

- 2015년 홍차 등 차잎에서 검출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 약물관리서는 2016년 수입차잎에 대하여 검역 강화를 실시함
 - 2016년 6월 1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수입차잎에 대하여 검역 실시 결과, 217건의 기준치 초과 제품이 검출됨. (불합격률은 3.76%) 차의 주요 수입국은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으로 전체 수입량의 85.4%를 차지하였으며 차잎의 종류는 홍차가 45.4%로 가장 많았음(베트남과 스리랑카 산) 2위인 녹차는 32.5%를 차지함(베트남 산)
 - 식품약물관리서 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6년 3월까지 총 2만 1,379건이 수입되었으며, 9만 8,523톤으로 확인됨. 불합격율은 인도(8.1%)가 가장 높았으며, 일본(2.6%)과 베트남(4.6%)산 제품 역시 불합격 판정을 받아, 반환 및 전수 폐기됨.
 - 2016년 6월 6일 식품약물관리서는 FDA北字제1052001860A호를 통해 2016년 6월 13일부터 2016년 12월 12(수입일 기준)까지 베트남산 발효차(CCC CODE 09024020007, 포장 3kg 미만)의 강화샘플링검사 실시를 발표함.

○ 2016년 동남아 국가의 주요 검역 불합격 사례

발표일 (검역일)	품명	국가	CCC CODE	불합격사유	법정 제한 표준	중량	처리
2/2 (1/4)	고추 (냉동)	베트남	07108090906	잔류농약 Dichlorvos 0.03 ppm, Trichlorfon 0.05 ppm 검출	0.01ppm/ 미허용	1,476kg	반송 혹은 폐기
3/15 (2/16)	녹차	베트남	09022000005	잔류농약 Carbendazim 2.67 ppm 검출	1.0ppm	3,030kg	반송 혹은 폐기
4/12 (3/11)	배추	베트남	07049010008	잔류농약 Hexaconazole 0.03 ppm, Propiconazole 0.02 ppm, Trichlorfon 0.06 ppm 검출	0.01ppm	22,140kg	반송 혹은 폐기
4/19 (3/18)	샬롯	베트남	07031020004	잔류농약 Abamectin 0.17 ppm 검출	0.01ppm	28,000kg	반송 혹은 폐기
4/19 (3/8)	현미	베트남	10062000008	잔류농약 Acetamiprid 0.03 ppm 검출	0.02ppm	360,000kg	반송 혹은 폐기
6/7 (5/4)	우롱차	베트남	09024020007	잔류농약 Propiconazole 0.07 ppm 검출	0.05ppm	4,086kg	반송 혹은 폐기
9/13 (8/9)	소스	베트남	21039090905	방부제 Propionic Acid 0.6 g/kg 검출	미허용	600kg	반송 혹은 폐기
3/8 (2/4)	참깨	인도	12074000001	잔류농약 Dichlorodiphenyltrichlo roethane 0.03 ppm 검출	미허용	17,964kg	반송 혹은 폐기
3/29 (2/23)	수수	인도	10079000002	잔류농약 Chlorpyrifos 0.73 ppm	0.50ppm	21,500kg	반송 혹은 폐기
5/10 (4/8)	상추	태국	07051900007	잔류농약 Fipronil 0.011 ppm 검출	0.001ppm	3,036kg	반송 혹은 폐기
9/6 (8/12)	아스파 라거스	태국	07092000206	잔류농약 Fipronil 0.005 ppm 검출	0.001ppm	514kg	반송 혹은 폐기
9/13 (8/8)	밤 퓨레 (냉동)	프랑스	20089991901	방부제 Propionic Acid 9.6 g/kg 검출	미허용	270kg	반송 혹은 폐기
6/7 (5/2)	홍차	인도 네시아	21069099903	방부제 benzoic acid .02 g/kg, Salicylic acid 0.03 g/kg 검출	미허용	25kg	반송 혹은 폐기

발표일 (검역일)	품명	국가	CCC CODE	불합격사유	법정 제한 표준	중량	처리
8/30 (7/27)	배추	인도네시아	07049010008	잔류농약 tebuconazole 0.03 ppm 검출	0.01ppm	24,330kg	반송 혹은 폐기
9/13 (8/19)	석반어	인도네시아	03028989414	methyl mercury 0.9 ppm 검출	0.5ppm	32kg	반송 혹은 폐기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3. 최근 위생 검사 관련 이슈

□ 대장균 검출

- 타이베이 위생국은 벌크 형태의 아이스크림 샘플 검사 결과, 생균수 및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미합격률 5.21%) 매년 여름 아이스크림 제품에 대하여 샘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샘플검사 결과 위생표준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2016년 7월 21일 yamnews 보도)
- 타이중 위생국은 시중 판매 음료(홍차, 녹차, 우롱차 등)의 샘플 검사를 실시하여 총 58건의 샘플검사 결과, 5건의 제품이 음료류 위생기준의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미합격률 17.9%) 허용기준치에 따르며, 생균수 및 대장균이 기준치는 10,000CFU/ml과 10MPN/ml 이하여야 하나 98,000CFU/mL(g)와 23MPN/mL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함(2016년 10월 2일 chinatimes 보도)

□ 한국산 조개류 수입 시 위생증명서 첨부

- 식품약물관리서는 2016년 3월 21일부터 한국산 조개류에 대하여 한국 위생주관기관 발행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의무화함
 - 조개류 항목은 다음과 같음

CCC CODE	품 명
03071190008	Otheroysterslive,freshorchilled
03072100005	Scallops (include full shell fish and compoy), live, fresh or chilled
03073100101	Mussels (Mytilus spp., Perna spp.), live
03073100209	Mussels (Mytilus spp., Perna spp.), fresh or chilled
03076010112	Apple snail(Pomacea canaliculata, Pomacea insularum)
03076010194	Other snail, live, other than sea snails
03076010201	Snail, fresh or chilled, other than sea snails
03077120000	Ruditapes philippinarum, live, fresh or chilled
03077130106	Hard clam, (Meretrix lusoria, Ruditapes variegatus, Paphia amabilis, Tapes literatus), live
03077130204	Hard clam, (Meretrix lusoria, Ruditapes variegatus, Paphia amabilis, Tapes literatus), fresh or chilled
03077190103	Clams (include cockles and ark shells), live
03077190210	Giant clams (tridacnidae spp.), live
03077190229	Giant clams (tridacnidae spp.), fresh or chilled
03077190906	Clams (include cockles and ark shells), fresh or chilled
03078121007	Other abalone, live, fresh or chilled, other than Haliotis diversicolor
03078122104	Abalones (Haliotis diversicolor), live
03078122202	Abalones (Haliotis diversicolor), fresh or chilled
03079130102	Top shell, live
03079130200	Top shell, fresh or chilled
03079170103	Locos, live
03079170201	Locos, fresh or chilled
03071910007	Oysters, frozen, but not smoked
03072910005	Scallops (include full shell fish and conpoy), frozen, but not smoked

CCC CODE	품 명
03073910003	Mussels (<i>Mytilus</i> spp., <i>Perna</i> spp.), frozen, but not smoked
03076020003	Snails, frozen, other than sea snails, but not smoked
03077911003	<i>Ruditapes philippinarum</i> , frozen, but not smoked
03077912002	Arcoida (<i>Acridae</i>), frozen, but not smoked
03077913001	Clams (<i>Solenidae</i> , <i>Solecurtidae</i>), frozen, but not smoked
03077914000	Hard clam (<i>Meretrix lusoria</i> , <i>Ruditapes variegatus</i> , <i>Paphia amabilis</i> , <i>Tapes literatus</i>), frozen, but not smoked
03077919103	Giant clams (<i>tridacnidae</i> spp.), frozen, but not smoked
03077919906	Other clams, cockles and ark shells, frozen, but not smoked
03078911001	Abalone, frozen, other than <i>Haliotis diversicolor</i> , but not smoked
03078912000	<i>Haliotis diversicolor</i> , frozen, but not smoked
03079941003	Arcoida (<i>Glycymerididae</i> , <i>Limopsidae</i>), frozen, but not smoked
03079942002	Clams (<i>Cutellidae</i>), frozen, but not smoked
03079943001	Top shell, frozen, but not smoked
03079944000	Locos, frozen, but not smoked
03079945009	Conch, frozen, but not smoked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제2장 라벨링 제도

제1절 식품 라벨링 관련 규정 변경

1.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라벨링 관련 규정 변경

□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제(제15조)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이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제조, 배합, 포장, 운송 저장, 시판, 수출입 증정 및 공개 진열이 불가함
 - 변질 및 부패 식품
 - 미숙성 또는 인체 건강 위해 식품
 - 유독성 및 인체 건강 물질이 발견된 식품 (최근 10년간 발생된 광우병 또는 신종 플루 광우병이 발병된 지역의 쇠고기 및 성장촉진제(베타-아고니스트)가 검출된 육류 등을 포함)
 - 전염병에 감염된 생물 혹은 유행성 바이러스에 중독된 것
 - 잔류농약 및 동물용 약품 함량이 안전기준 허용량을 초과한 식품
 - 방사선 오염 물질, 그 함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식품
 - 위조식품
 - 유효기한 초과 식품
 - 인체 무해증명을 거치지 않은 식품
 - 유관기관의 미인증 첨가물을 첨가한 식품(추가사항)
- 2015년 12월 16일 總統華總一義字第10400146741호 공포 (제15-1조 추가)
 - 사용가능 원료의 제조, 가공, 배합의 방식 및 조건, 식용부위, 사용량, 기타 조건에 대하여 중앙 유관기관이 제정하도록 규정하며, 제한 원료 및 기타 사항 역시 중앙 유관의 공고에 따르도록 함

□ 식품첨가물의 라벨링 상세화(제24조)

- 식품첨가물 및 그 원료의 용기 또는 외포장 상 증문 또는 통용부호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함
 - 품명
 -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첨가물원료」 글자 기입
 - 식품첨가물 명칭: 2종 이상의 혼합물일 경우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함. 그 표기는 제 18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품명 또는 중앙주관기관의 공고에 의거한 통용명칭에 따름
 - 중량, 용량, 수량
 - 제조업체 또는 대만 국내 담당업체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 유효기한
 - 사용범위, 용량표준 및 사용제한
 - 원산지(국)
 - 유전자 개조 식품 첨가물의 원료
 - 기타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사항(추가 사항)
 - 1) 식품첨가물의 원산지등록번호 표기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식품첨가물의 외포장에 반드시 '제품등록번호'의 글자와 그 번호를 표기하여야 함(예: 제품등록번호: TFA0000000000000)
 - 2) 규정 위반 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47조에 의거해, NTD 3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동 법 제 52조에 의거해 제품은 회수하여 개정하도록 함
 - 3) 수입 식품첨가물의 증문 라벨표시 규정에 따라, 수입 이후 추가 라벨표시 인정하지 않음
- 식품첨가물의 원료는 상기 조항 제 3, 7호 및 제 9호의 제한을 받지 않음. 상기 조항 제 3호 식품첨가물의 향료성분 및 제 9목의 표기 준수사항은 중앙주관기관의 공고에 따름
- 제 1항 제 5호의 국내 담당업체 명칭만을 표기하는 경우, 제조상, 위탁제조상 또는 수입상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를 관할 주관기관에 신고해야 함. 주관기관은 기타 주관기관의 공동 조사에 대하여 개방함

□ 식품기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 관련 라벨링 상세화(제26조)

- 중앙당당기관의 공고한 식품기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은 중문 또는 통용부호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표기
 - 품명
 - 재질 명칭 및 내열온도 ; 그 종류가 2개 이상 혼합인 경우 분리표기
 - 중량, 용량, 수량
 - 식품첨가물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 대만 국내 담당업체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 원산지(국)
 - 제조일자 ; 시간적 유효성이 있는 경우 유효기한 또는 유효기간을 추가 명시
 - 사용방법 및 사용주의 또는 경고사항
 - 기타 중앙당당기관이 공고한 사항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6조에 의거해 제정된 「필수 표기 식품기구, 식품용기 및 포장항목(應標示之食品器具 食品容器或包裝品項)」의 수정 발표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터 표기해야할 식품기구 및 식품 용기, 포장 항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
- 중복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류 물병(컵), 젓병, 찬합(밀폐용기포함), 쟁반, 접시, 그릇 등 6종류 제품, 일회용 플라스틱류 식품 기구, 식품용기 및 식품 포장
- 일회용 플라스틱 코팅지 식기, 컵, 그릇, 쟁반, 접시, 찬합 등 5종류 제품
- PVC 또는 PVDC 재질의 경우 고유지(油脂) 또는 고온에 사용 시 식품에 직접 사용해서 안됨' 혹은 동의어 표기. 식품접촉면이 플라스틱 재질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기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은 판매전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6조의 표기를 따라야 함

2. 「식품의 표기, 선전 및 광고의 과장 및 오해 소지 판단 기준

(食品標示宣傳或廣告詞句涉及誇張易生誤解或醫療效能之認定基準)」 개정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8조, 제29조 규정에 의거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용 세척제의 표기, 선전 광고에 대한 세부 기준

□ <식품의 표기, 선전 및 광고의 과장 및 오해 소지 판단 기준>은 2016년 6월 17일 수정 발표되었으며, 아래 문구의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용을 금지함

- 의학적 효능 포함 문구
 - 예방, 개선, 감량, 진단, 질병치료 또는 특정 생리적 현상 등의 선정성 표현
예) 근시치료, 시력회복 등
 - 체내 질병과 관련된 성분을 감소 및 저하시킨다는 표현
예) 간 해독, 간지방 저하, 혈당 농도 억제 등
 - 질병 증상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
예) 소화불량 해소, 간화 감소, 인후염 개선 예) 신장 기능 보강(약재 효능에 대한 표현)
 - 출판물, 서적 인용 또는 타인 명의를 인용한 의료 효능 설명
예) '본초비요' 기재: 동충하초, 혈액염 방지 효능
- 의학적 효능은 포함하지 않으나, 과장 및 오해소지의 문구
 - 생리기능에 대한 언급
예) 세포 기능 강화 등
 - 한약재 효능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장육부 등의 기관에 대한 표현
예) 눈 보호 등
 - 신체외관 변화에 대한 표현
예) 가슴풍만 등
 - 본 위생서 관련 규정 번호만을 언급하고, 그 공문에 대한 의미를 완전하게 인지하지 않은 경우
예) 위생서자호 880012345등
- 허위과장은 아니나, 약효 언급 및 오해소지의 문구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구
예) 치아골격의 정상 발육 및 형성 보조, 소화개선 등
 - 일반영양소에 서술 가능한 생리기능 효용 문구(반드시 해당 영양소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함.
예) 비타민 A는 어두운 곳에서의 시력 유지에 도움을 줌 등

3. 건강식품 라벨링 규정 추가 개정

□ 건강식품 규정 내용

- 건강식품은 건강에 무해함과 보건기능이 증명된 식품으로 그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그 효능에 대한 표기 및 광고를 할 수 있음. 단, 질병 치료 및 교정하는 의료적 효능을 말하는 것은 아님
- 「건강식품관리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외한 일반식품은 건강식품임을 표기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됨
- 제조 및 수입되는 건강식품은 그 성분, 규격, 작용, 효능, 제조과정 개요, 검사규격 및 방법 등의 자료, 라벨 및 샘플을 구비하여 행정원 위생서에 수입허가인증 및 제조허가인증 발급을 신청함. 허가인증을 받은 후 제조 및 허가를 할 수 있음
- 건강식품 포장 및 용기 상에 아래 내용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함
 - 품명
 - 내용물 명칭 및 그 중량, 용량, 수량
 - 식품첨가물의 명칭
 - 유통기한, 보존기간
 - 국내 업체명칭, 주소
 - 허가 비준된 효능
 - 허가인증번호, <건강식품>글자 표기 및 표준마크표기
 -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및 기타 필수적인 경고사항
 - 영양성분 및 함량
 - 기타 관련기관이 공고한 표기 사항
- 건강식품의 표기 및 광고는 허위사실 및 과장, 보건기능 허용 기준량 초과, 의료기능을 표기해서는 안 됨
- 중앙관련기관이 파견한 건강식품 검사 시 고의적으로 거짓 시에는 제조, 가공, 시판 등이 잠정 중단됨
-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3개월 전 유효기간 연장 신청 가능하며 연장 불

가 판단 시 동 허가증은 자동 실효됨. 허가증을 통해 수입 및 제조하였으나 중대한 위해함이 발견되었을 시 허가 인증 폐지 및 제조, 수입을 금지시키고 필요 시 식품 몰수 및 폐기됨 (허가증의 기간 및 만료시점, 연장 부분 추가 언급)

4. 주류 라벨링 검사 규정 추가 제정

□ 주류 라벨링 검사

- 주류 생산 연도(추가제정)
 - 동일한 종류의 과일원료를 함유한 과일주는 적어도 85% 동일한 년도에 원료를 채취하여 제조한 것이어야 함
 - 주령은 주류상품이 병에 주입되기 전 용기에 저장되어 성숙된 시간을 가리키며, 기타 주령의 주류로 제조된 경우 단기간의 주령을 표기함
 - 생산년도 표기 시, 원산국 정부 혹은 공인상공회의소의 생산년도 증명서를 통관 전 제출하여야 함

5. 식품영양표기 세부 규정 개정

□ 시판 포장 비타민 무기질류 알약 및 캡슐형식품의 식품 영양표시 준수사항

- 2015년 1월 23일 「시판포장 비타민무기질류 알약 및 캡슐형식품의 영양표시방식 및 내용기준(市售包裝維生素礦物質類之錠狀膠囊狀食品營養標示方式及內容標準)」이 폐지되고, 「포장 비타민무기질류 알약 및 캡슐형식품의 영양표시 준수사항(包裝維生素礦物質類之錠狀膠囊狀食品營養標示應遵行事項)」이 변경·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영양 표시 격식

영양 표시		
매 1인 분량	알 (개)	
본 포장	분	
	매 분량	일일 섭취량 비율
비타민	mg or ug	%
무기질	mg or ug	%
선언의 영양소 함량	g, mg, ug	%
기타영양소함량	g, mg, ug	%

영양 표시		
매 1인 분량 알 (개, 정), 본 포장 O 분. 매 분량(일일 섭취량 비율) : 비타민 O mg or ug(0%), 무기질 O mg or ug(0%), 선언의 영양소 함량 Og, mg or ug(0% or *), 기타 영양소 함량 Og, mg or ug(0% or *) * 참고치 미제정		

- 영양 표시 오차허용 범위

항 목		오차 허용 범위
비타민 A, 비타민 D		표기치의 80~180%
비타민(비타민 A, 비타민 D 불포함) 무기질(나트륨 불포함)		≥ 표기치의 80%
자의적 표기 가능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열량,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	≤ 표기치의 120%
	기타영양소	≥ 표기치의 80%

6. 「초콜릿 품명 및 표기규정(巧克力之品名及標示規定)」 제정 발표

- 2016년 6월 24일 제정 발표 되었으며, (部授食字제1051301673호)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 제 1항 제 10목 및 제 25조 제 2항 규정에 의거해 제정함

□ 본 규정의 초콜릿은 코코아제품을 원료로 하며 설탕, 유제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제조한 고체형태의(소 불포함) 다크초콜릿, 밀크초콜릿 및 화이트 초콜릿을 지칭함

- 품명이 다크초콜릿인 경우, 코코아버터를 혼합한 코코아 분말, 코코아 페이스트를 원료로 하며, 총 고고아고형물의 함량은 적어도 35%, 코코아버터는 적어도 18%, 무지코코아 고형물은 적어도 14%여야 함
- 품명이 화이트초콜릿인 경우, 코코아버터 및 우유분말을 원료로 하며, 코코아버터 함량이 적어도 20%, 우유고형물이 적어도 14%여야 함
- 품명이 밀크초콜릿인 경우, 코코아버터 및 우유분말을 혼합한 코코아 분말, 코코아 페이스트를 원료로 하며, 총 고고아고형물의 함량은 적어도 25%, 우유고형물은 적어도 12%여야 함
- 초콜릿을 품명으로 하는 경우 그 원료 및 함량은 상기 세 기준으로 제한함
- 식물성오일을 코코아버터의 대체로 첨가한 경우 그 첨가량은 제품 총 중량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라벨에 [대체 코코아버터]를 표기해야 함
- 표기 방식
 - 포장 초콜릿은 상기 규정에 따라 표기하되 글자 크기의 길이 및 넓이가 0.2CM 이하여서는 안 됨
 - 영업허가를 받은 식품판매업자는 벌크초콜릿 판매 시 판매의 장소에 상기 규정 표시 사항을 준수, 카드, 표기(라벨) 또는 표지판, 입간판, 걸이식 또는 기타 방식의 표기를 통해 명확한 판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표기(라벨) 글자 크기의 길이 및 넓이는 0.2CM이하여서는 안되며 기타 표기 형식의 경우 2CM이하여서는 안 됨

7. 「버터, 유지방, 마가린, 유지 스프레드의 품명 및 표기 규정」 제정 발표
(奶油、乳脂、人造奶油與脂肪抹醬之品名及標示規定)」

- 2016년 8월 30일 발표 되었으며, (部授食字第1051302682호)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 제 1항 제 10목 규정에 의거해 제정함

□ 버터 및 유지방 제품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함

- 품명이 [버터]인 경우 유제품 유도체의 유지제품에 한하며, 살균, 혼합, 정제과정을 거쳐 제조된 식용의 버터를 이룸. 유지방 함량 80%이상의 제품
- 품명이 [유지방]인 경우 유제품 중 지방을 물리적 방식으로 분리, 탈지유 형태의 지방으로 제작한 유화 제품을 가리킴. 냉동온도이상에서 액체상태 유지, 유지방 함량 80% 이상의 제품으로 그 품명은 [식용크림], [생버터], [생크림]으로 표기함

□ 마가린 및 유지 스프레드는 식용 유지를 적당히 첨가한 물 및 식품첨가물을 유화, 급냉, 반죽 등의 처리를 거쳤거나 급냉, 반죽 등 처리를 거치지 않고 제조한 가소성을 갖춘 또는 유동상태의 제품을 가리키며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유지함량이 80%이상의 경우 [마가린]으로 표기함
- 유지함량이 10%이상 80% 미만인 경우 [유지 페이스트]로 표기함
식물성 버터를 지칭하는 단어로 상품 외포장에 표기해서는 안됨

8. 식품 품명 표기 규범 정리(食品品名標示規範彙整, 2016. 8. 22) 개정

규정	품명 표기 규정
포장식염제품의 불소 표기 관련 규정(「包裝食用鹽品之氟標 示規定」) (2016년 6월 15일) 部授食字第105130178호	1. 불화칼륨 또는 불화나트륨을 첨가한 포장식염제품은 「불소 소금(氟鹽)」, 「함불소 소금(含氟鹽)」 또는 「불소 추가 소금(加氟鹽)」의 품명 사용 2. 「함불소 소금과 불소 알약을 동시 사용할 경우 치과의사에 자문이 필요함」 및 「가정용 소금에 한하여 사용함」의 문구 표기 - 글자의 크기는 길이와 넓이가 4mm를 초과하여야 하며, 제품의 외포장과 색의 대비를 이루어야 함 3. 「포장식품영양표시준수사항」에 따라 라벨 표시하되, 제품의 총 불소 함량을 표기하여야 함

규정	품명 표기 규정
<p>포장식염제품의 요오드 표기 관련 규정(「包裝食用鹽品之碘標示規定」)</p> <p>(2016년 7월 4일) 部授食字第1051301694호 제정초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 제 1항 제 10목 규정에 의거해 제정함 2. 요오드화 칼륨 또는 요오드산 칼륨을 첨가한 포장식염제품은 그 품명, 경각문구 및 영양표기를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요오드 소금(碘鹽)」, 「함요오드 소금(含碘鹽)」 또는 「요오드 첨가 소금(加碘鹽)」의 명칭 표기 2) 「요오드는 필수영양소로 본 제품은 요오드를 첨가함. 단 갑상선환자의 경우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함」과 같은 경각문구 표기 3) 「포장식품영양표시준수사항」에 따라 영양표시, 제품의 총 요오드량을 추가 표기하여야 함 3. 요오드화 칼륨 또는 요오드산 칼륨 미첨가 포장식염제품은 「요오드는 필수영양소로 본 제품은 요오드를 미첨가함.」과 같은 경각문구 표기 4. 불화 칼륨 또는 불화 나트륨과 동시에 첨가하는 경우, 포장식염제품의 불소 표기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염」, 「함유○○염」 또는 「추가○○염」 등으로 병합하여 명칭 표기- 00는 요오드 불소 또는 불소요오드 5. 경각문구의 글자 크기는 길이와 넓이가 4mm를 초과하여야 하며, 제품의 외포장과 색의 대비를 이루어야 함

- 일반식품의 품명 표기 원칙

유형	설명
<p>함유된 원료성분에 따라 식품 품명을 정할 경우</p>	<p>식품에 함유된 원료성분에 따라 품명을 정할 시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함</p> <p>예 : 1. 「육포(牛肉乾)」가 식품 원료를 함유한 소고기의 경우 「육포(牛肉乾)」로 명명함 2. 「전복(鮑魚)」이 단지 전복 소스 또는 추출을 함유한 것이 아닌(검역 시 전복 DNA 검출 되지 않는 경우), 식품 원료를 함유한 진짜 전복일 경우, 「전복(鮑魚)」으로 명명함 (2011년 1월 17일 FDA食字第1001300123호) 3. 「고구마 분말(地瓜粉)」 식품은 고구마 가루로 만들고 「고구마 분말(地瓜粉)」이라 명명함 (2010년 7월 26일 FDA食字第0991302303호) 4. 「무화과(無花果)」식품이 무화과로 제조된 경우 「무화과(無花果)」로 명명함 (2009년 3월 11일 衛署食字第0980006247호)</p>
<p>원료 품종에 따라 식품 품명을 정할 경우</p>	<p>식품원료의 품종에 따라 식품명을 정할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함</p> <p>예 : 「일본화우(和牛)」는 그 혈통 및 사육 방식이 타국가 품종의 소들과 달라, 화우의 맛과 육질은 독특함을 나타냄 ; 업자는 품종 및 원산지 증명을 구비하여 제공해야 함</p>

유형	설명
식용 부위 통용 명칭에 따라 품명을 정할 경우	식품원료의 식용가능부위의 통용명칭으로 품명을 정할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함 예 : 「항정살(松阪豬)」은 돼지고기 경부의 통칭으로, 그 비계의 분포는 「소갈비(松阪牛)」와 유사하여 명칭을 얻게 됨
생산지 명칭에 따라 품명을 정할 경우	원산지의 원료 및 제조 과정이 독특하여 식품 품명을 원산지에 따라 정할 시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함 예 : 「완란돼지족발(萬巒豬腳)」은 대만 핀둥에서 생산되는 돼지족발로, 특수 가공법으로 제조하여 「완란돼지족발(萬巒豬腳)」라고 명명함
속어에 의해 품명이 명명되거나 국제 통용어를 중문 직역한 품명인 경우	속어에 의해 품명이 명명되어 소비자가 이미 그 식품에 그 원료가 함유되지 않음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 ; 또는 국제 간 통용어가 중문으로 직역된 품명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경우 예 : 1. 「태양빵(太陽餅)」에는 태양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소비자가 알고 있는 속어로 품명을 정함 2. 「소혀쿠키(牛舌餅)」에는 소혀가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소비자가 알고 있는 속어로 품명을 정함 3. 「트리플 초콜릿(松露巧克力)」에는 트리플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소비자가 알고 있는 속어로 품명을 정함 4. 「온천란(溫泉蛋)」은 흰자와 노른자의 응고형태로 인하여 소비자가 알고 있는 속어로 품명을 정함 5. 「파인애플쿠키(鳳梨酥)」에는 동과소가 들어 있으나, 소비자가 알고 있는 속어로 품명을 정함 6. 「초콜릿(巧克力)」은 국제 통용 명칭을 중문으로 직역하여 명명함 7. 「핫도그(熱狗)」는 국제 통용 명칭을 중문으로 직역하여 명명함

- 기타 식품 품명 표기 원칙

유형	설명
식품 내용물(원료) 및 그 성분을 식품 품명으로 정할 경우	식품 내용물(원료) 및 그 성분이 동일하게 식품 품명이 되는 경우, 그 순수 성분이 행정원 위생서 공고의 「식품첨가물 사용규범 및 제한량 표준 (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 규정에 부합하거나 식품 사용이 가능한 원료에 속해야 함 ; 만약 식품 내용물에 직접 첨가한 원료의 순도나 공고한 식품첨가물이 규정 표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 식품 원료 추출물 성분 중 일부이므로 순도 100% 성분 명칭을 직접 사용할 수 없음 예 : 1. DHA는 식품 원료나 식품 첨가물에 속하지 않으며 어유(魚油)의 한

유 형	설 명
	<p>성분이므로 품명은 DHA라고 명칭 할 수 없고, 「어유 DHA」 혹은 동일한 의미의 글자로 명칭해야 함</p> <p>2. 「식품첨가물사용범위 및 제한량 규격 표준」 제 8분류 첨가제 상관 규정의 엽황소에 부합할 경우 「엽황소(葉黃素)」로 명명함. 다만 금산화 추출물 원료만을 첨가하여, 순수 엽황소 함유가 아닌 경우 「금산화 추출물(엽황소 함유) 金盞花萃取物 (含葉黃素)」 또는 동의어로 표기하여야 함</p>
식품의 영문품명 표기방식	<p>식품의 영문 품명은 공급자가 제공한 영문 표기를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게 함</p> <p>의료효능이 있는 상품 혹은 공급자가 영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과거에 사용했던 명칭을 사용 함</p> <p>중문 품명은 반드시 위생관리법의 상관 규정에 부합해야 함</p> <p>예 : 1. 상품 원래 영문명이 「SOY BEAN EXTRACT TABLET」일 경우 중문명 「大豆萃取錠」을 사용하여 오해를 피하도록 하며, 의료 효능 입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 영문 명칭을 써야 함</p> <p>2. 상품 원래 영문명이 「SLIM TABLET」으로 신체 외형 변화를 가리킬 경우 영문명과 중문 직역명 「瘦體錠」을 사용해서는 안됨</p>

제2절 식품 라벨링 이슈사례

1. 라벨링 이슈사례

□ 원산지 라벨 표기 관련 규정 예고

- 식품약품관리서에 따르면 제품 포장에 표기되는 원산지를 최종 제조, 가공 국가 또는 지역에 한정하여 표기하는 법안이 상정될 예정
 - 최근 식품기구, 식품용기 또는 식품용 세정제의 경우 중국, 동남아 제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유럽, 미국, 일본 등으로 표기하여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것이 적발되어 라벨 세탁 문제로 이슈화 됨
 - 이에 따라 식품약품관리서는 이르면 2016년 하반기, 제품의 최종 제조, 가공 국가 또는 지역의 원산지만을 표기하는 법규인 식품안전위생관리법시행세칙(食品安全衛生管理法施行細則)의 일부를 수정, 발표할 예정임. 이에 따라 단순 포장, 라벨 부착, 개별 포장 등의 작업만이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로 표기할 수 없음
 - 상기 규정에 따라 마땅히 표시해야 할 부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신대만달러 3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 라벨표기가 부정확할 경우 신대만달러 4만원에서 400만원 벌금형에 처함

□ 라벨 중문 표시 오류로 인한 통관 거부

-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김치, 배추와 같은 전통 식품의 수입과 더불어 치킨 양념 소스 등 소스류의 수입이 증가함
 - 금년 8월 대만 식품수입업체에 따르면 한국으로부터 등갈비 소스를 수입, 화물이 이미 도착하여 지류세관을 통하여 사전통관작업을 진행하려던 중, 화물박스에 부착되어 있는 shipping mark에 제품 원료성분 중문내용에 오류가 있음이 확인됨
 - 표기되어 있는 감미제 성분의 하나인 芸香苷이 대만 수입금지 품목으로 나타남. 수출업체에 확인한 결과, 실제 제품의 원료는 스테비올배당체를 가공한 효소처리스테비아로, 스테비올배당체(Steviol Glycoside)의 중문인 甜菊糖苷의 경우 제한량

- 기준에 따라 수입이 가능한 원료이나, 중문표기 오류로 인하여 통관진행이 불가해 짐. 통관거부로 판정될 경우, 이후 수입 진행에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 한국으로 재 선적 진행하였으며, 모든 발생 비용은 한국 수출업체에서 지불함
- 상기 감미제 포함 분류 식품첨가제 허용량은 다음과 같음

	품명 (중문/영문)	사용가능 식품범위 및 허용량	사용 제한
001	D-山梨醇 D-Sorbitol	각종 식품에 실제 필요에 따라 적량 사용 가능	1. 식품제조 및 가공에 한하여 필요시 사용 2. 유아용식품에 사용 불가
002	D-山梨醇液70% D-Sorbitol Solution 70%	각종 식품에 실제 필요에 따라 적량 사용 가능	1. 식품제조 및 가공에 한하여 필요시 사용 2. 유아용식품에 사용 불가
003	D-木糖醇 D-Xylitol	각종 식품에 실제 필요에 따라 적량 사용 가능	1. 식품제조 및 가공에 한하여 필요시 사용 2. 유아용식품에 사용 불가
004	甘草素 Glycyrrhizin	각종 식품에 실제 필요에 따라 적량 사용 가능	정제형 대체설탕 및 분말에 사용 불가
005	甘草酸鈉 Trisodium Glycyrrhizinate	각종 식품에 실제 필요에 따라 적량 사용 가능	정제형 대체설탕 및 분말에 사용 불가
006	D-甘露醇 D-Mannitol	각종 식품에 실제 필요에 따라 적량 사용 가능	1. 식품제조 및 가공에 한하여 필요시 사용 2. 유아용식품에 사용 불가
007	糖精 Saccharin	1. 씨앗, 과일절임 및 매실가루에 사용 가능하며, 용량은 Saccharin 2.0g/kg이하하여야 함 2. 탄산음료에 사용 가능하며, 용량은 Saccharin 0.2g/kg 이하하여야 함. 3. 정제형 대체설탕 및 분말에 사용 가능함 4. 특수영양식품에 사용 가능함 5. 캡슐형, 정제형 식품에 사용 가능하며, 용량은 Saccharin 1.2g/kg 이하하여야 함. 6. 액체형 선식, 보양식품에 사용 가능하며, 용량은 Saccharin 0.08g/L 이하하여야 함.	특수영양식품에 사용 시, 사전에 중앙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품명 (중문/영문)	사용가능 식품범위 및 허용량	사용 제한
008	糖精鈉鹽 Sodium Saccharin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씨앗, 과일절임 및 매실가루에 사용 가능하며, 용량은 Saccharin 2.0g/kg이하하여야 함 2. 탄산음료에 사용 가능하며, 용량은 Saccharin 0.2g/kg 이하하여야 함. 3. 정제형 대체설탕 및 분말에 사용 가능함 4. 특수영양식품에 사용 가능함 5. 캡슐형, 정제형 식품에 사용 가능하며, 용량은 Saccharin 1.2g/kg 이하하여야 함. 6. 액체형 선식, 보양식품에 사용 가능하며, 용량은 Saccharin 0.08g/L 이하하여야 함. . 	특수영양식품에 사용 시, 사전에 중앙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009	環己基(代) 磺醯胺酸鈉 Sodium Cyclamate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씨앗, 과일절 및 매실가루에 사용 가능하며, 용량은 Cyclamate 1.0g/kg 이하하여야 함. 2. 탄산음료에 사용 가능하며, 용량은 Cyclamate 0.2g/kg 이하하여야 함. 3. 정제형 대체설탕 및 분말에 사용 가능함. 4. 특수영양식품에 사용 가능함. 5. 캡슐형, 정제형식품에 사용가능하며, 용량은 Cyclamate 1.25g/kg 이하여야 함. 6. 액체형 선식, 보양식품에 사용 가능하며, 용량은 Cyclamate 0.4g/L 이하하여야 함. 	특수영양식품에 사용 시, 사전에 중앙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010	環己基(代) 磺醯胺酸鈣 Calcium Cyclamate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씨앗, 절임 및 매실가루에 사용 가능하며, 용량은 Cyclamate 1.0g/kg 이하하여야 함. 2. 탄산음료에 사용가능하며, 용량은 Cyclamate 0.2g/kg 이하하여야 함. 3. 정제형 대체설탕 및 분말에 사용 가능함. 4. 특수영양식품에 사용 가능함. 5. 캡슐형, 정제형식품에 사용가능하며, 용량은 Cyclamate 1.25g/kg 이하여야 함. 6. 액체형 선식, 보양식품에 사용 가능하며, 용량은 Cyclamate 0.4g/L 이하하여야 함. 	특수영양식품에 사용 시, 사전에 중앙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품명 (중문/영문)	사용가능 식품범위 및 허용량	사용 제한
011	阿斯巴甜 Aspartame	각종식품에 실제 필요에 따라 적량 사용 가능	식품제조 또는 가공에 한하여 필요 시 사용
012	甜菊糖苷 Steviol Glycoside	1. 씨앗, 과일절임 및 매실가루에 필요에 따라 적량 사용 가능 2. 정제형 대체설탕 및 분말에 사용 가능함. 3. 특수영양식품에 사용 가능함. 4. 콩 제품 및 유음료, 발효유 및 그 제품, 아이스크림, 케이크, 껌, 사탕, 디저트 및 곡류 시리얼에 사용 가능하며, 용량은 0.05% 이하여야 함. 5. 음료, 간장, 조미료, 소스 및 절임채소에 사용 가능하며, 용량은 0.1% 이하여야 함	특수영양식품에 사용 시, 사전에 중앙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013	甘草萃 Licorice Extracts	각종식품에 실제 필요에 따라 적량 사용 가능	정제형 대체설탕 및 분말에 사용 불가
014	醋磺内酯钾 Acesulfame Potassium	각종식품에 실제 필요에 따라 적량 사용 가능	1. 특수영양식품에 사용 시, 사전에 중앙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신선 가공육류에 사용 불가
015	甘草酸铵 Ammoniated Glycyrrhizin	각종식품에 실제 필요에 따라 적량 사용 가능	정제형 대체설탕 및 분말에 사용 불가
016	甘草酸一铵 Monoammonium Glycyrrhizinate	각종식품에 실제 필요에 따라 적량 사용 가능	정제형 대체설탕 및 분말에 사용 불가
017	麦芽糖醇 Maltitol	각종식품에 실제 필요에 따라 적량 사용 가능	1. 식품제조 및 가공에 한하여 필요시 사용 2. 유아용식품에 사용 불가
018	麦芽糖醇糖浆(氢化葡萄糖浆) Maltitol Syrup (Hydrogenated Glucose Syrup)	각종식품에 실제 필요에 따라 적량 사용 가능	1. 식품제조 및 가공에 한하여 필요시 사용 2. 유아용식품에 사용 불가
019	异麦芽酮糖醇(巴糖醇) Isomalt(Hydrogenated Palatinose)	각종식품에 실제 필요에 따라 적량 사용 가능	1. 식품제조 및 가공에 한하여 필요시 사용 2. 유아용식품에 사용 불가
020	乳糖醇 Lactitol	각종식품에 실제 필요에 따라 적량 사용 가능	1. 식품제조 및 가공에 한하여 필요시 사용 2. 유아용식품에 사용 불가

	품명 (중문/영문)	사용가능 식품범위 및 허용량	사용 제한
021	單尿酸甘草酸 Monoglucuronyl Glycyrrhetic Acid	각종식품에 실제 필요에 따라 적량 사용 가능	정제형 대체설탕 및 분말에 사용 불가
022	索馬甜 Thaumatin	각종식품에 실제 필요에 따라 적량 사용 가능	식품제조 및 가공에 한하여 필요시 사용
023	赤藻糖醇 Erythritol	각종식품에 실제 필요에 따라 적량 사용 가능	
024	蔗糖素 Sucralose	각종식품에 실제 필요에 따라 적량 사용 가능	특수영양식품에 사용 시, 사전에 중앙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025	紐甜 Neotame	각종식품에 실제 필요에 따라 적량 사용 가능	특수영양식품에 사용 시, 사전에 중앙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일본

1. 신 식품표시 기준에 의한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2. 고추(고춧가루 포함) 잔류농약 기준시 완화 개정
 3. 기능성 표시식품 가이드 라인 변경
 4. 유제품 및 식품첨가물 규격기준 개정
5. 수입식품 글루텐프리 식품의 표시 감시 강화
6. 일본 2015년도 수입식품 검역검사 결과 발표
7. 일본 농림수산물 병원식 JAS 규격 신규 제정
8. 한국산 대일 수출 참외 전수검사 검사명령 대상 지정
9. 대일수출 가능 육류 열처리 가열육 승인업체 리스트



주요 변경사항

- 신 식품표시 기준에 의한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 고추(고춧가루 포함) 잔류농약허용기준 완화
- 기능성 표시식품 가이드라인 변경
- 유제품 및 식품첨가물 규격기준 개정
- 수입 글루텐프리식품 표시사항 감시 강화
- 병원식 JAS 규격 신규 제정
- 한국산 참외 전수검사 명령대상 지정

1

신 식품표시 기준에 의한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 식품에 표기하는 영양성분표시가 종래에는 임의표시사항이었으나 2015.4.1.일부터 시행된 일본 소비자청의 신 식품표시제도에 따라 별도 면제되는 식품이외는 영양성분 표시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 되었기에 주의가 필요시 됨
 - 한국국내에서는 이미 영양성분을 표시토록 하고 있어 대부분 문제가 없으나 식염량을 식염상당량으로 계산하여 표기하여야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주요 변경사항
 - 식염량을 식염상당량으로 환산하여 표기 필요함(식염상당량(g)= 식염량×2.54/1,000)
 - 표시 임의항목은 포화지방산, n-3계 지방산, n-6계 지방산, 식물섬유, 당류, 당질, 콜레스테롤, 비타민, 미네랄류이나, 동항목중 포화지방산, 식물섬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표시를 권장함
- 영양성분 표기 면제대상 품목
 - 원칙적으로 소비자대상으로 판매하는 모든 가공식품 및 첨가물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일부 면제가 되는 상품도 있음.
 - 표시가능면적이 30cm²이하인 것
 - 주류 등 영양공급원으로서 기여도가 작은 것
 - 아주 짧은 단기간에 원재료가 변경되는 것
 - 소비세법 제9조에 의한 소규모사업자(과세 대상 매출액 1천만엔 이하)
- 주의사항
 - 영양성분 표시시 실제 성분치와 비교하여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상품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함
 - 원재료에 대한 규격서등 서류 점검관리가 필요하며 영양성분에 대한 분석치나 계산근기 자료등 정보체계 관리에 주의가 필요시 됨

Ⅱ 영양성분 표시예 Ⅱ

영양성분표시 식품단위당	
열량	Kcal
단백질	g
지질	g
탄수화물	g
식염상당량	g

2

고추(고춧가루 포함) 잔류농약 기준치 완화 개정

-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6.4.4일자 관보 고시를 통해 고추에 사용하는 농약성분인 지페노코나졸에 대한 기준치를 개정 완화 조치함
- 지페노코나졸 성분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기준치 개정요청을 한 바 있어 이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를 해왔던 바, 금번 기준치가 0.01ppm에서 1ppm으로 개정됨으로서 향후 대일수출 고춧가루의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대일수출 한국산 고춧가루(생고추 포함)는 잔류농약 기준치 위반으로 인해 2013.11.7.부터 일본 검역소의 명령검사 상태로 묶여 있어 일본 수출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음
- 지페노코나졸 성분 기준치 개정 내용

품목명	농약성분	한국기준치 (ppm)	일본 기준치(ppm)	
			종전 기준치	금번 개정기준치
기타가지과 야채류 (고추, 고춧가루 포함)	지페노코나졸 (DIFENOCONAZOLE)	1.0	0.01	1

가. 제도시행 후 경과사항

- 2015년 4월 1일부터 시작된 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 제도가 1년을 경과하여 2016.5.10. 현재 308건이 접수됨
 - 1991년에 시작된 특정보건용식품이 현재 허가건수 약1,250건으로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제도개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많은 신청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도 개시 1년이 경과되면서 일부 운영사항에 대한 변경 등이 이루어졌는데 제도 1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인정해 왔던 기 시작된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사전등록을 생략 가능토록 한 특례 인정이 2016년 4월 이후부터 개시되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사전등록이 필요시 됨
- 신청방법도 기존 우송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동시에 등록신청된 상품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DB화 되었음
 - 검색페이지 : <https://www.fld.caa.go.jp/caaks/cssc01/>

나. 가이드라인의 주요 변경내용

- 해당식품 또는 기능성 관여성분이 「의약품 전용으로 사용되는 성분본질(원재료)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및 식품위생법에 대한 저축 여부를 확인할 것
- 기능성 관여성분과 동일한 관여성분이 특정보건용식품에 있어서의 안전성 심사가 실시되었는지 유무등에 대해 신청자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 제출하는 조직도는 신청자의 조직내에 있어서 건강피해정보의 대응 창구부서의 평가가 정확히 명기되어야 함. 또한, 연락도는 행정기관(소비자청, 지자체등(보건소)에 대한 보고 등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등

다. 향후 예정사항

- 2016.1.8.부터 「기능성표시 식품제도에 있어서의 기능성 관여성분의 취급등에 관한 검토회」가 개최되고 있어 11.25 현재 제11회 검토회가 개최되었음
 - 기능성 관여성분에 대한 제3자 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 첨부 등 대책안 마련을 검토 중에 있어 향후 기능성 관여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식품의 취급 등에 대한 검토를 추진 중에 있음
- 건강식품에 대한 경품표시법 및 건강증진법상의 유의사항과 관련,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해 당초 신청한 표시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를 할 경우에는 허위과대표시 등에 해당되어 법규제를 할 방향으로 검토 중임

4

유제품 및 식품첨가물 규격기준 개정

가. 유제품 성분규격 일부 개정

- 유제품의 성분규격에 관한 후생성령이 일부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탈지농축유의 제조관련 단백질 양을 조정하기 위해 유당 및 생유, 우유, 특별우유, 성분조정우유, 저지방우유 또는 무지방우유 등을 여과에 의해 발생한 것을 사용토록 허가함
 - 2) 탈지농축액의 제조기준 관련 탈지분유와 동일한 유지방식을 인정 63℃에서 30분간 가열 또는 동등 이상의 살균효과를 얻는 방법으로 가열 살균 및 공정 중에는 10℃ 이하 또는 48℃를 넘는 온도에서 관리토록 하는 방법을 인정함
 - 3) 탈지농축액의 보존기준에 대해 제조실태에 근거하여 <농축후 바로 10℃ 이하에서 냉각하여 보존 할 것>에서 <농축후(농축후 살균한 경우에는 살균 후) 바로 10℃ 이하에서 냉각하여 보존 할 것>으로 개정함
- 시행일 : 공표일부터 시행(2016.6.8.)

나. 식품 및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일부 개정

-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일부를 2016.6.8.자 아래와 같이 개정함.
 - 1) 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생식용 선어개류, 생식용굴 및 냉동식품(생식용 냉동선어개류에 한함)의 가공기준에 있어서 아염소산수, 하이포 염소산수 및 하이포 염소산나트륨과 수소이온농도조정제(PH조정제) 로서 사용되어지는 염산과 pH 조정제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의 사용을 허가함
 - 2) 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황산아연의 사용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새로이 발포성 주류에 사용하는 것을 인정함
 - 3) 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폴리에틸렌 나프타레트를 주성분으로 한 합성수지제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해 개별 규격을 설정함
- 운용상의 주의사항
 -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생식용 선어개류등에 대해 하이포 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함에 따라 pH 조정제 로서의 사용을 인정하나, 생식용 선어개류등에 대한 가공시 이산화탄소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황산아연은 발포성 주류 제조시 이스트후드 목적으로 발포성 주류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한 것임
 - 황산아연의 사용시에는 적절한 제조공정 관리를 실시하고 식품으로서의 목적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시 되는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수입식품 글루텐프리 식품의 표시 감시 강화

가. 알레르기 표시 적정화를 위한 감시강화 내용

- 일본 소비자청은 식품표시 적정화를 위한 대응방안(2016.6.2.)을 발표한 바, 수입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표시사항에 대해 주의가 필요시 됨

【주요내용】

- 미국 및 EU등의 「글루텐프리 표시」와 일본의 「알레르기 표시」 제도는 서로 기준이 상이함으로 수입식품의 경우 원재료에 포함된 알레르겐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여 이에 맞는 적절한 표시를 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등의 표시기준 : 특정질병 환자들의 상품선택 편의를 돕기위해 글루텐 농도가 20ppm이하일 경우 「글루텐프리 표시」 가능
 - 일본의 알레르기 표시기준 : 식물 알레르기가 아주 미량의 알레르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밀가루 등의 소량의 특정원재료를 포함하는 식품의 경우 사용 의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특정원재료 포함 표시 필요

나. 글루텐프리 식품의 표기 주의사항

- 밀 알레르겐을 포함하는 식품에 대해 「글루텐프리」를 강조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밀 알레르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오인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수입 표기시 충분한 대책이 필요시 됨
- 현재 수입식품 표기시 「동일공장의 제조라인에서 밀가루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라는 혼입가능성 주의 표시를 실시하고 있는 등 문제가 생겼을 경우의 회수등의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도 표시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6

일본 2015년도 수입식품 검역검사 결과 발표

가. 일본 수입식품 검역결과 개요

- 일본 후생노동성은 평성27년도(2015.4.1.~2016.3.31.)에 대한 검역 검사 결과를 발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소개함

【발표개요】

- 식품류 수입건수 및 수입중량 : 2,255,019건 / 31,900천톤
- 검사건수 195,667건(모니터링검사, 수입업체, 자주검사 등 포함)으로 전체 수입건수 대비 8.7%의 검사 실시
 - 검사결과 총858건의 법률위반이 확인되었으며, 수입건수 대비 전국가 위반율은 0.04%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임
 - 검역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검사의 경우 52,211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72건의 법률위반이 확인됨
 - 가공식품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는 11,005건을 실시하였으며, 1건의 위반사례가 미국산 곡류조정품에서 비리미포스메칠이 기준치 초과검출
 -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검사명령제도를 발동하는 바, 2016.3.31. 현재, 전수출대상국의 17품목 및 31개 국가의 69품목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음
- ※ 참고 : 검사명령 최대국가는 중국이 19품목이며, 제2위는 한국으로 현재 양식광어등 13개 품목이 검사명령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음

수입건수	수입중량(톤)	검사건수	비율(%)	위반건수	비율(%)
2,255,019	31,900	195,667	8.7	858	0.04
(전년도 실적) 2,216,012	32,412	195,390	8.8	877	0.04

※ 검사건수는 행정검사, 등록민간검사기관검사, 외국공적검사기관 중복제외
 ※ 비율은 수입건수 대비임

나. 위반형태별 내용

- 대장균군 등 미생물 위반사례 경우 중국이 62건(27.9%), 타이 28건(12.6%), 한국 21건(9.5%) 순으로 차지하고 있음
- 대부분 냉동식품이 많으며, 한국의 경우 위반건수 총21건중 수산물관련제품이 18건으로 위반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함

- 잔류농약 위반사례의 경우 중국이 양파등 34건(25.2%), 베네수엘라 18건(13.3%), 에쿠아도르 16건(11.9%)인데, 베네수엘라와 에쿠아도르는 모두 카카오콩에서 위반됨
 - 한국의 경우 토마토 3건, 고춧가루 1건 계4건이 잔류농약으로 위반됨
- 지정외 첨가물 사용으로 인한 위반사례 한국의 경우 젓갈류 등에 대한 폴리솔리베이트 사용위반 등 계9건 위반됨

다. 한국산 대일수출 식품의 안전성

- 동 기간중 대일수출 한국산 식품류의 식품위반건수는 총39건으로 대일수입 전체 위반 건수인 858건의 4.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은 증가하였으나 농산물 위반은 감소되었음
 - 농산물의 경우 한국정부차원의 일본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치 개정추진 노력 및 검역대책 강화 등의 효과로 인해 위반사례는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수산물을 포함한 냉동식품에 대한 세균수 초과 등의 미생물 위반사례가 많아 향후 한국내 사전검사등 위생관리 주의가 필요시 되며, 고추장류의 솔빈산, 폴리솔리베이트등 지정외 첨가물에 대한 제조시 사전 확인등 주의가 요구됨

7

일본 농림수산업성 병원식 JAS 규격 신규 제정

- 일본 농림수산업성은 고령자층을 위한 간호식에 대한 농림식품규격을 2016.8.17.로 제정하여 해당상품에 대한 JAS마크 표시가 가능하게 됨
 - 2002년 일본 간호식품 업체를 중심으로 설립된 일본간호식품협의회가 식품업체별 구분을 통일하여 UDF특유의 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금번 제정을 통해 고령자층을 위한 개호(간호)식품을 정부가 규격화하여 음식의 딱딱한 정도 등의 먹기 쉬움을 1~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UDF 민간 규격도 사용 가능하나, 2017년 부터는 JAS기준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UDF)」의 시장 동향
 - UDF의 2015년도 생산액은 201억엔, 생산량은 16,000톤 규모임
 - 생산액이 가장 늘어난 것은 잇몸으로 으깬 수 있는 「구분2」의 식품으로, 66%증가한 19억 4000만엔, 일상식에 가장 가까운 「구분1」도 눈에 띄게 증가하여 37%늘어난 생산액 32억 8500만엔 수준임

8 한국산 참외 전수검사 명령대상 지정

-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9.28일자로 한국산 참외에 대해 전수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함
- 한국산 참외는 금년들어 농약성분인 클로르페나필 성분이 연속 2회 검출되어 복수 위반시 검사명령으로 이행하는 일본 감시지도계획에 의거 검사명령이 발동됨
- 잔류농약 위반 내역

품목명	위반확정일	농약성분	한국기준치 (ppm)	일본기준치 (ppm)	위반치 (ppm)
참 외	2016.9.15	클로르페나필 (chlorfenapyr)	0.5	0.01	0.02
참 외	2016.8.23	클로르페나필 (chlorfenapyr)	0.5	0.01	0.02

※ 1차 위반후 모니터링 검사 30% 빈도 강화후 위반사례 재차 발생
2차 위반은 핸드캐리 물건임

년 도	통관신고건수	수입중량(톤)	검사건수	위반건수
2015.4~2016.3월	486	123	15	0
2016.4~9.15일	328	105	19	2

※ 검사건수는 잔류농약 클로르페나필 관련

대일수출 가능 육류 열처리 가열육 승인업체 리스트

- 우리나라는 현재 구제역 발생국으로 인해 소, 돼지 등의 우제류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열처리 사전 승인공장에 한해 대일수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 현재, 대일수출이 가능한 제품은, 돈까츠, 햄, 소세지, 냉동만두 등 육류가 포함된 경우에도 일부 승인제품에 한해서는 수출이 가능함
- 공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로 문의

┃ 일본 농림수산성 승인공장 리스트 ┃

NO	NAME	ADDRESS	육류	햄·소세지·베이컨
404	NATIONALAGRICULTURALCOOPERATIVESFEDERATIONMOGUCHONUMSUNG CHICKEN PROCESSING PLANT	81, DAEGEUM-RO 1278BEON-GIL, GEUMWANG-EUP,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KOREA	○	○
J01511001	DINEJEJUCO.,LTD	26-3, HAGWI-RO 25-GIL, AEWOL-EUP,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
K01513002	FOODWARE CO., LTD.	28-38, SUNDONGSANDAN 1-GIL, GIMJE-SI, JEOLLABUK-DO, KOREA	○	○
M01510004	JANGCHUNGdong WANG JOKBAL, CO., LTD.	232-28, SEONDONG 2-GIL, HYEONDO-MYEON, SEO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	○
M01511004	EUFOODS,INC.	155, CHUKHANG-DAERO 290BEON-GIL, JUNG-GU, INCHEON	○	○
SR1513001	GUSBE CO., LTD.	898,YANGJIN-RO, JINJEOP-EUP, NAMYANGJU-SI, GYEONGGI-DO, KOREA	○	○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

<http://www.maff.go.jp/aqs/tetuzuki/facility/pdf/heatlist-korea.pdf>



2016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I)

인도네시아

제1장 통관검역제도

제2장 통관보류, 역류 등 부적합 사례

제3장 수출현안

주요 변경사항

□ 신선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험실 등록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인도네시아 검역청에 안전성 검사 실험실로 등록되어 한국 신선농산물 수출 가능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을 통해 분석증명서 발급 및 사전신고서 제출 절차

□ 비스킷 SNI 의무화 취소

- 2016년 7월 27일 비스킷 품목의 SNI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행직전 무기한 연기

□ 축산물 유래 가공식품 수입 시 식약청의 SRP 필요

- 축산물 유래 가공식품 수입업자는 축산물 유래 가공식품 수입을 위해 무역부에서 수입동의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 무역부에서 수입동의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식약청 식품인증·검사처(Direktorat Inspeksi dan Sertifikat Pangan)에서 발급한 축산물 유래 식품 추천서(Surat Rekomendasi Pangan Asal Hewan, 이하 'SRP')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선적 전 검사제도

- 선적 전 검사제도는 무역부 장관이 지정한 Surveyor가 선적항에서 수출 물품을 검사하는 제도임
- 검사기관이 물품의 명세와 HS 코드, 선적시기, 선적항, 목적항 등을 기록한 Surveyor Report(LS)를 발행하며, 수입업자는 통관 시 해당 LS를 제출해야 함

제1장 통관검역제도

제1절 선적 전 검사제도

- 선적 전 검사제도는 무역부 장관이 지정한 Surveyor가 선적항에서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제도이다.
- 검사기관이 물품의 명세와 HS 코드, 선적시기, 선적항, 목적항 등을 기록한 Surveyor Report (LS)를 발행하며, 수입업자는 통관 시 해당 LS를 제출해야 한다.
- 이 제도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2009년부터 아동용 완구, 신발류, 가전제품, 의류, 식음료, 철강제 등과 같은 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2009년 이전에 중고 자본재, 섬유제품, 세라믹, 소금, 설탕, 쌀, 나이트로셀룰로스, 광학디스크, 컬러인쇄기 및 복사기 등 제품에 대해 이미 도입되어 있었음)
- 이 제도는 인도네시아 국영 시험인증기관인 PT. SUCOFINDO에서 운영 중으로, PT. SUCOFINDO는 행정 인증과 기술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 인증은 문서 및 허가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검사이고, 기술 인증은 선적항 국가에서 수행하는 물리적 검사이다. 이 외에도 산업전반 분야에서 교육, 연수, 컨설팅, 연구 및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선적 전 검사 신청절차는 하기와 같다.
 - ① 수입업자는 www.app-vpti.com 웹사이트를 통해 인증요청서(Verification Reques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인증요청서를 오전 12시 이전에 제출할 경우, 해당 인증요청서를 기초로 하여 데이터가 정확하고 완전하다면, 인증주문서(Verification Order)가 신청당일에 발급된다. 인증요청서를 오전 12시 이후에 제출할 경우, 인증주문서는 오후 또는 익일에 발급된다.
 - ③ 인증주문서는 검사비용 입금 확인되면, 해당 국가의 KSO 사무소로 보내진다.

- 해외의 KSO 사무소는 정보 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를 수출업자/제품판매자에게 보냄. 검사날짜가 확정되면 해외 KSO 사무소는 조사관을 수출업자가 알려준 장소로 보낸다.
- ④ 해당 국가에서의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해외 KSO 사무소는 Surveyor Report (LS) 발급을 위한 인증결과보고서를 발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최종 서류(수출업자의 Final/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Shipping Details, Lab Test, Certificate of Origin 등)를 받는다. 최종 서류가 구비되지 않으면, Surveyor Report(LS)는 발급되지 않는다.
 - ⑤ Surveyor Report (LS)는 최종 서류가 승인된 이후에 발급된다.
 - ⑥ Surveyor Report (LS) 발급 후, Surveyor Report (LS)는 우편을 통해 수입업자 주소로 보내지거나 자카르타 KSO 사무소에서 수입업자가 직접 찾아간다.

제2절 냉장·냉동식품 수입항 추가

- 법령명 : 냉장·냉동식품 수입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2015년 제84호 개정에 대한 무역부 장관령 2016년 제40호
- 발효일: 2016년 6월 7일 / 시행일: 2016년 8월 7일
- 개정 목적: 냉장·냉동식품 수입을 좀 더 원활하게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 법령 주요 내용
 - 본 개정령에 따라 해상항(Bitung 항구) 1곳이 신 수입항으로 추가된다. (단, 육로항 및 항공항은 추가 없이 기존 법령과 동일함)
 - 제5조에 따르면, 냉장·냉동식품은 다음과 같은 수입항을 통한다.
 - ① 육로항: Cikarang Dry Port (Bekasi)
 - ② 해상항: Belawan 항구(Medan), Tanjung Priok 항구(Jakarta), Merak 항구(Cilegon), Tanjung Emas 항구(Semarang), Tanjung Perak 항구(Surabaya), Soekarno Hatta 항구(Makassar), Batu Ampar 항구

(Batam), Bitung 항구(Bitung)

③ 항공항: 인도네시아 전 국제공항

*괄호 안은 해당 지역명임

- 2016년 7월 27일부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비스킷 SNI 인증 의무화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행 직전 무기한 연기

구분	제 품	HS CODE
1	비스킷(비스킷, 크래커와 파이) 코코아를 포함하지 않은 것	1905.31.10.00
2	비스킷(비스킷, 크래커와 파이) 코코아를 포함한 것	1905.31.20.00
3	와퍼	1905.32.00.00
4	비스킷(비스킷, 크래커와 파이) 기타 달지 않은 것	1905.90.20.00
5	비스킷(비스킷, 크래커와 파이) 기타	1905.90.90.00

제3절 수입관세 납부방법

□ 주요내용

- 수입세 책정을 위해 관세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2010년 160호 개정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2016년 34호가 발효됨에 따른 공지
- 수입관세 납부절차:
 - ① 수입업자/관세납부 대행업체(PPJK)가 신청
 - 제출서류: 인보이스, packing 목록, B/L, 수입허가서
 - ② 수입품 통보서(PIB)
 - PIB는 수입업자/관세납부 대행업체(PPJK)가 관세청이 제공한 모듈을 사용 하여 작성하고 온라인을 통해 제출한다.
 - ③ INSW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한다.
 - ④ 관세청에 접수된 신청서는 하기와 같이 4종류로 분류되어 처리된다.

Red Line: 제품 실물 확인 및 서류 심사

- 위험성이 높은 수입업자 (신규 수입업자, 규정위반이 많은 수입업자 등), 한시적 수입품, 재 수입품 대상
- 총 수입품 중 Red Line에 해당되는 비율은 5.08% 가량
- 수입서류 처리기간: \pm 4.76일

Yellow Line: 서류 심사

- 중간 수입업자 대상
- 총 수입품 중 Yellow Line에 해당되는 비율은 15.84% 가량
- 수입서류 처리기간: \pm 2.42일

Green Line: 제품 통관 후, 서류 심사

- 위험성이 낮은 수입업자, 제조 수입업자 대상
- 총 수입품 중 Green Line에 해당되는 비율은 50.81% 가량
- 수입서류 처리기간: \pm 0.01일

대표 협력사 (MITA)

- 위험성이 낮은 수입업자 대상. 관세청 대표 협력사로 이미 확정된다.
- 총 수입품 중 대표 협력사에 의한 수입이 해당되는 비율은 28.27% 가량
- 수입서류 처리기간: \pm 0.01일

제2장 통관보류, 억류 등 부적합 사례

1. 사설 실험실 분석증명서 제출로 인한 통관 보류

- 신선농산물(FFPO) 수출입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농업부장관령 2015년 4호 법령 미숙지로 인한 통관보류 사례가 발생하였다.
 - 법령 주요 내용 : 사과, 단감, 딸기 등 신선농산물 103품목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17일 이후부터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승인된 국가,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이 등록된 국가로부터만 수입 가능하다.
 - 해당 법령 시행일 2016년 2월 17일 이후에 A업체의 팡이버섯이 인도네시아 항구에 도착하였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증명서(COA)가 아닌 사설 실험실에서 발급받은 분석증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검역청에서는 통관을 보류하였다.
 - 수입업체는 인도네시아 검역청에 신규 법령을 미숙지하였으나 물품선적은 법령 시행일 이전에 선적되었음을 설명하였고, 인도네시아 검역청에서는 수출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을 거쳐 문제없이 통관하였다.

2. 식약청 ML 등록 시 제품 디자인 및 식품성분 상이로 인한 통관 보류

- 식약청에 등록된 디자인과 상이한 점 및 식품 성분 신고 누락으로 인한 통관 보류
 - 한국식품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제품의 디자인을 수시로 변경하여 ML(수입식품등록번호) 등록 시에 신고한 디자인과 현재의 디자인이 상이한 문제로 인해 통관문제가 발생하였다.
 - 또한, 일부 식품의 경우 ML(수입식품 등록번호) 발급 시 신고한 식품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른 것으로 판명되어 통관문제 발생하였다.
 - 식약청 수입식품 등록 시 디자인과 동일하게 스티커 처리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제3장 수출현안

제1절 신선농산물 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

- 안전성검사 실험실이 등록된 국가로부터의 신선농산물 수출 절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도네시아 검역청에 안전성검사 실험실로 등록됨

- 분석 신청(수출업체) 및 시료 수거(농관원 지원·사무소)
 - 농관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검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
 - 안전성 담당자가 신청 시료를 수거하여 지원 분석실로 송부



- 분석결과 통보(농관원 지원)
 - (수출 적합) 지원 품질관리과에서 분석증명서 발급
 - (수출 부적합)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처리

↓(수출 적합한 경우)

- 사전신고(수출업체)
 - 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청(IAQA)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http://www.karantina.deptan.go.id/> 혹은 <https://notice.karantina.pertanian.go.id/>)
 - * 인도네시아 도착 전 경유를 하는 경우, 경유를 위한 사전신고서 함께 신청



- 사전신고서 발급(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청)



- 사전신고서(경유지 사전신고서 포함)와 분석증명서 제출하고 수출



- 제출된 서류의 유효성 심사(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청)
 - (사전신고서) 원산지코드와 바코드 일치여부
 - (분석증명서) 등록된 실험실에서 발행됐는지 여부, 기타 인도네시아 측 식품안전기준 준수여부

↓(유효성 합격)

- 사전신고 정보와 농산물의 일치여부 검사(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청)

↓(규정 준수)

- 검역 통과

제2절 축산물 유래 가공식품 수입 시 식약청의 SRP 필요

- 근거 : 가축의 사육 및 위생에 대한 법률 2009년 제18호(Undang-Undang No.18 Tahun 2009 tentang Peternakan dan Kesehatan Hewan), 가축의 사육·위생법 개정에 대한 법률 2009년 제18호의 개정 법률 2014년 제41호 59조 3항에서 다른 가공식품수입에 관한 규정
- 축산물 유래 가공식품 수입업자는 축산물 유래 가공식품 수입을 위해 무역부에서 수입동의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 무역부에서 수입동의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식약청 식품인증·검사처(Direktorat Inspeksi dan Sertifikat Pangan)에서 발급한 축산물 유래 식품 추천서(Surat Rekomendasi Pangan Asal Hewan, 이하 'SRP')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SRP 발급은 식품의 영양소, 등급, 안전성 측면에 대해 강조한 식품에 대한 법률 2012년 제18호(Undang-Undang No.18 Tahun 2012)를 참조한다.
- SRP를 발급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a. 신청서
 - b. 농업부의 산하기관인 가축사육위생처(Direktorat Jenderal Peternakan dan Kesehatan Hewan)에서 발급한 제품수입추천서(Rekomendasi Pemasukan Produk)
 - c. SRP 신청 제품의 기준에 발급받은 수입내역서(SKI)
 - d. 기준에 수입내역서(SKI)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 제품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생산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또는 자유 판매증명서(Free Sale Certificate)
 - 분석증명서(Sertifikat Analisa)
- 인간 및 가축의 건강과 농장의 환경을 위협하는 가축전염병 위험이 있는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축산물 유래 가공식품은, 식약청의 추천서가 발급되기 전에, 농업부로부터 기술동의서(Persetujuan Teknis)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 * 출처 : 2015년 7월 6일, 인도네시아 식약청 공문(Surat Edaran No. ST.06.533 .07.15.13603), 2016년 3월 15일, 인도네시아 농업부 산하의 가축사육 위생처(Direktorat Jenderal Peternakan dan Kesehatan Hewan) 공문



2016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I)

미국

제1장 제도 변경사항

제2장 수출현안

주요 변경사항

-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규정 개요 및 시행일 변경
- 신선농산물 농약관련 제도
 - EPA, 2006년 8월 잔류농약허용 기준치에 대한 규정을 발표함. 이는 식품에 남아있는 예상 잔류농약허용 기준치와 실제 잔류농약허용 기준치 연구가 반영된 규정임
 - Zero Tolerance, Pesticide Data Program(PDP), Pesticide Program Residue Monitoring
- 영양표시(Nutrition labeling)
 - 2014년 3월, 10년 만에 영양분석표 개정안을 제안한 후 마침내 2016년 5월 27일 최종 개정안이 확정됨. 식품 제조업체들은 2018년 7월 26일까지 모든 식품에 개정된 영양분석표를 부착하여야함. 단, 연매출 1000만달러 미만인 사업체는 2019년 7월 26일이 시행일자임
 - 칼로리 확대 표기
 - 현실적인 1회 제공량 표기
 - 첨가당 표기
 - 일일 권장섭취량 수정 표기
 - 칼슘, 철분, 비타민 D, 칼륨 함유량 의무 표기
- 도널드 트럼프 미 45대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국의 대외정책 불확실성
- 유전자변형식품(GMO) 표기 의무화 법('16년 7월 29일자 오바마 대통령 서명 승인)
- FDA, 가공식품 내 나트륨함량 규제 지침서 초안 발표

제1장 제도 변경사항

제1절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7가지 주요 시행 규정

○ 개요

-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의 식품안전현대화법 서명 후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식품안전시스템에 대한 전명적인 개혁이 이루어짐.
- FDA에서 발표한 각각의 식품안전현대화법 7가지 시행 규정에는 식품 공급체계의 사후 대처하는 수동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사전 식품 오염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 산업에 더 많은 책임을 묻는 새로운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FDA의 식품안전현대화법 7가지 주요 시행 규정의 중요한 부분과 시행일자는 아래와 같음.

○ 주요 시행 규정 내용

1&2 항목) 식품과 동물사료에 관한 예방적 통제 규정(Preventive Controls rules; Human Food and Animals Food)

- 제안일자 : 2013년 1월(식품), 2013년 10월(동물사료)
- 발효일자 : 2015.9.19
- 단속일자
 - 2016년 9월19일 → 일반기업
 - 2017년 9월18일 → 중소기업(500명 미만의 정규 직원)
 - 2018년 9월19일 → 소기업(연매출 \$1백만 미만)
- 살균유법령(Pasteurized Milk Ordinance)이 적용되는 사업체
- 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식품안전계획을 성립해서 운영하여야 하고 그 핵심 요소는 식품에 알려져 있거나 또는 예측되는 생물학적,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또 통제하는 안전 계획을 서류화해야 함.

- 각각의 인지된 위험의 경우, 식품 안전 계획에 따라 반드시 예방을 위한 통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만 하며, 또한 위험의 최소화, 또는 예방을 위해 예방 과정을 설명해야함.(위해요소분석)
- Preventive Control Qualified Individual(QI)을 시설별로 배치하고, 식품안전 계획에 따라 각 시설들은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준수해야 함.(사전예방)
- 식품과 동물사료에 관한 예방 통제 규정은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 및 부자재를 포함하여 위험 요소가 발생 시 공급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가능함. 식품과 동물사료 관련 시설들은 동 규정을 준수키 위해 FDA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타사 도구를 통해 공급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
- 현행우수제조관행(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CGMPs)이 보다 명확하게 명시되었으며, 교육 및 훈련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없던 조항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됨.

3항목) 농산물 안전(Produce Safety rule)

- 제안일자 : 2013년 1월
- 발효일자 : 2016년 1월26일
- 단속일자
 - 2018년 1월 26일 → 대기업
 - 2019년 1월 28일 → 중소기업(\$250,000-\$500,000/연평균)
 - 2020년 1월 27일 → 영세업체(\$25,000-250,000/연평균)
- 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에 대하여 과학적인 안전성 기준을 수립함.
- 동 규정은 수확물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키 위해 수질 검사, 방목 지역 검사, 유기질 비료 신청 및 직원 건강, 위생 교육 등의 새로운 요구사항 신설을 통해 농장에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였음. 동 규정은 자주 발생하는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함임.
- ① 농업용수
 - 수질 : 두 가지의 미생물 수질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두 가지 모두 분변 오염을 나타내는 대장균의 유무에 기반 한 기준임.
 - 미생물이 보유된 물은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는 한, 직간접적 농업용수로 사용

이 가능하나, 대장균이 검출될 시, 무조건 물의 사용을 중지하고 교정조치를 취해야 함.

- 농산물에 직접 사용되는 농업용수에 관한 기준은 기하평균(GM)과 임계값(STV)값을 토대로 한 샘플로 결정되며, GM의 경우 100mL당 126CFU, STV의 경우 410CFU 이하여야함.
 - 만약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1년 이내에 교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교정 조치 이후 용수의 사용이 가능함.
- 검사 : 수확기에 가장 근접하며 2 - 4년 사이에 재배된 20개 이상의 샘플로 최초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함. 그 이후 검사는 전 검사와 비교할 수 있는 5개 샘플 조사를 추가적으로 요구함. 결과는 GM/STV의 미생물 수질을 조사하여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함. 지하수의 경우, 최소 4개의 샘플을 사용하여 검사하고, 이후 3개의 샘플을 추가 검사하여 전 검사와 비교 평가함.

② 생물학적 토양 개정

- 두엄(Raw Manure): 오염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엄의 위험분석을 실시함.
- 동 법규에는 두엄 사용 시 곡물과의 접촉이 안되게 하고 사용 후에는 가능한 접촉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할 것을 요구함.

③ 싹(Sprouts)

- 싹을 틔우기 위해 사용되는 씨앗 또는 콩의 표면에 미생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함. 싹에 대해 특정 병원균 감염 여부를 검사함.
- 재배, 수확, 포장, 및 저장 과정에서 리스테리아균의 생식 여부를 검사 하며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교정 조치를 취해야 함.

④ 직원 훈련, 건강 및 위생

- 직원 개인이 건강문제로 농산물이나 식품을 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면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농산물 접촉 시 위생관리절차를 준수하고, 화장실 이용 시 세척과 건조를 의무화 함.
- 농가 직원들과 관리자들은 건강 및 위생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어야 함.

4항목) 해외공급업체 인증 프로그램 규정(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rule)

- 제안일자 : 2013년 7월
- 발효일자 : 2016년 1월 26일
- 단속일자 : 2017년 5월 30일
- FSVP 규정은 수입업체에서는 반드시 해외 공급 업체가 FDA의 규제요구사항에 맞춰 식품을 제조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해외시설인증, 안전시스템운영 등)
- 수출자가 해외공급업체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식품으로 인한 위험 요소와 자사의 식품 안전에 대한 실적을 분석하여야 함.
- 위험 분석
 - 수입자는 수입하는 식품의 질병데이터, 과학연구서, 기타정보를 토대로 위험하거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확인할 책임이 있음.
 - 위험 범위한 기생충 및 박테리아 등 생물학적 잠재 위험과 방사선, 살충제 잔존물, 천연독소, 색소, 알레르기 유발 등 화학적 위험 요소와 유리와 같은 물리적 위험 요소 등임
 - 위험 분석시 고려 요소는 식품의 배합, 수출업체의 시설 설비 상태, 원재료 및 기타 성분, 수확, 재배, 제조, 포장 등 모든 공정 과정, 운송 방식, 포장, 라벨링, 저장, 유통, 의도한 용도,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용도, 직원의 위생 상태를 포함한 전반적 내용이 포함됨.
- 공급 업체 선정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행위는 공급 업체의 연간 현지 시설 검사, 수입 식품의 샘플 접수 및 사전 검사, 공급업체 관련 식품 안전 기록 확보 및 검토를 해야 하며 규정 위반 시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업체와 거래 불가함.
- 면제 기준
 - 수입품의 완제품여부, 재료 및 성분에 따라 면제 기준이 다름
 - 현재 모범 제조 방법(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적용을 받고 있는 수입자는 FSVP가 면제됨.

5항목) 제3자 인증에 대한 최종 규정(Accredited Third-Party Certification rule)

- 제안일자 : 2013년 7월

- 발효일자 : 2016년 1월 26일
- 단속일자 : 의무사항이 아님(자발적 시행)
- 식품안전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해외식품 시설 및 생산된 식품이 FDA의 식품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 후 인증을 하게 함.
- FDA에서 요구하는 공인기관의 승인조건과 제3자 인증기관의 공인 조건
 - 법적권한, 수행능력, 규모, 품질 보증 및 기록, 관리 절차.
 - FDA가 제3자 인증기관을 공인할 수 있음.
 - 인증기관이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시, ISO/IEC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문서 사용을 허용함.
 - FDA는 인증기관을 감시하고 문제 발생 시 취소 할 수 있음.
- 인증기관 요구사항
 - 해외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으로써 FDA 절차를 따르는 기관.
 - 정기 현장조사 및 자격 변경 유무 보고를 통한 업무 성과 모니터링 실시.
 - 자체 업무 평가를 통한 문제 시정.
 - FDA에 모니터 보고서, 평가보고서 및 기타 공지사항 제출.
 - FDA에 보고서 열람 권한 부여 및 접속 방법 제공.

6항목) 식품 및 동물 사료 위생적 운송 최종 규정(Sanitary Transportation of Human and Animal Food rule)

- 제안일자 : 2014년 2월
- 발효일자 : 2016년 6월6일
- 단속일자 : 2017년 4월
 - 소기업(500명 이하 임직원, 연소득 \$27,500,000 이하) : 2018년 4월
- 식품을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식품의 오염을 막고 위생적으로 운송하게 하는 규정으로 선박, 항공을 제외한 모든 운송업 종사자에게 적용됨.
- 적용대상
 - 면제 대상을 제외한 미국 내 차량, 철도 운송과 관련된 종사자 모두
 - 선박, 항공의 경우, 미국 내로 수송, 하역, 출하를 하는 경우는 동 법규에 적용됨
 - 미국 도착 수하물이 미국 내 국경에 도착할 때까지 이 규정의 범위 안에 포함됨.

- 주요 요건

- 차량 및 운송장비 : 식품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차량 및 운송 장비를 설계하고 유지 보수해야함.(예시. 청결, 온도유지 등)
- 운송 작업 : 적절한 온도조절, 즉석 식품의 상태 관리, 비 식품류에 의한 식품 오염 방지 등 운송 도중에 식품 안전을 위한 조치 사항.
- 교육 : 위생관련 운송 관행을 숙지하고 교육하며, 교육 내용을 문서화하고 출고인과 운송인의 책임 분장이 이루어 져야 함.
- 기록 : 식품의 보관 기간 동안 보존하되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 변경 사항

- 관행보다는 안전 위험 유발에 관한 관행에 초점을 둬.
- 서면 계약에 조항을 삽입하지 않는 한 위생 상태 책임은 출고인에게 있음.
- 자동차의 경우 운송업자가 위생에 직접적 관여해야함.
- “하역작업자”가 적용대상으로 추가됨.
- 온도에 관련된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해야함.
- 온도조절에 대한 판단은 출고인에게 있으며, 책임소재 또한 출고인에게 있음
- 식품안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유통 및 판매가 불가함.
- 면제범위 : 연매출 \$500,000이하의 소기업, 농장에서의 운송, 추가 가공을 하지 않는 동물 사료용 식품, 완전 밀봉 제품

7항목) 고의적 식품 보안 규정(Intentional Adulteration Rule)

- 제안일자 : 2013년 12월

- 발효일자 : 2016년 7월 26일

- 단속일자

- 2019년 7월: 일반기업
- 2020년 7월: 중소기업(연매출 \$10,000,000 미만)
- 2021년 7월: 소기업(정규직원 500명 이하)

- 식품 제조 시설물을 FDA에 등록하고 공공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식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산 시설을 검사하고 자체 취약성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요구함.

시행일 연장) 식품안전현대화법 7개 최종규칙 중 4개 규칙에 대한 시행일 연장

- 본 최종규칙 시행일 연장은 식품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체들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규칙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임
- 7개 최종규칙 중 4개 규칙에 대한 변경된 시행일은 다음과 같음
 - 변경 일자는 연방관보 상 소비자 조항의 서명 보증서(Written assurance in the customer provision)만 해당함
 - 해당시설의 위험도 평가시에 고객으로부터 해당 식품이 FSMA의 규정을 준수하여 제조 및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여 받는 서면 보증서만 연기됨.
 - FSVP의 경우는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substances) 수입 관련 또한 연기됨

하위 규칙	업체 규모*	시행일(기존)	시행일(변경)**
식품의 우수제조관리기준(cGMP), 위해요인 분석, 위해기반 예방관리	중소업체	2017. 9. 18	2019. 9. 18
	대기업	2016. 9. 19	2018. 9. 19
사료의 우수제조관리기준(cGMP), 위해요인 분석, 위해기반 예방관리	중소업체	2018. 9. 17	2020. 9. 17
	대기업	2017. 9. 18	2019. 9. 18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FSVP)	수입업체	2017. 5. 30	2019. 5. 28
농산물의 재배 및 수확, 포장, 보관에 관한 기준	영세업체	2020. 1. 27	2022. 1. 26
	중소업체	2019. 1. 28	2021. 1. 26
	대기업	2018. 1. 26	2020. 1. 27

※ 나머지 3개 규칙은 계획대로 시행

* 영세업체: 새싹채소 생산업체 제외한 연소득 \$25,000이상 \$250,000미만

중소업체: 새싹채소 생산업체 제외한 연소득 \$250,000이상 \$500,000미만 및 정규직원 500인 미만

대 기 업: 영세 및 중소기업체를 제외한 연소득 \$1 million 이상(단, 사료 cGMP 및 예방관리 규칙 경우 \$2,500,000이상)

제2절 신선농산물 농약관련 제도

□ 신선농산물 농약관련 제도

- 1996년 8월, 미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FCA)에 포함되어진 식품품질보호법(Food Quality Protection Act; FQPA)에 의거해 EPA는 지난 2006년 8월 잔류농약허용 기준치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식품에 남아있는 예상 잔류농약허용 기준치와 실제 잔류농약허용 기준치 연구가 반영된 규정임
 - 2009년, 감자 및 감귤류에 카보퓨란(carbofuran), 알디카브(aldicarb)농약 사용 및 모든 생산물에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농약 사용을 금지함
 - 2010년, 포도 및 딸기에 메토밀(methomyl)농약 사용 및 모든 제품에 대해 메틸 파라티온(methyl parathion)농약 사용을 금지함
 - 2012년, 콩, 대두, 아몬드에 각각 아세페이트(acephate), 옥사모일(oxamyl), 이 미다클로프리트(imidacloprid)농약 사용을 금지함
 - 2013년, 모든 가정에 대해 메틸파라티온 농약 사용 및, 사과, 배, 복숭아에 포메타 네이트 HCl(formetanate HCl)농약 사용을 금지함
- Zero Tolerance: 미국 내 자국에 허용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에 대해서는 불검출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 Pesticide Data Program(PDP): 1991년에 개발되어 AMS에서 관리하는 농약데이터프로그램인 PDP는 자국, 수입 신선/가공 농산물, 유제품 등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통해 잔류농약허용 기준치를 검출해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잔류농약 검출치, 제품군(유기농, 비유기농) 등 검사결과를 공개하여 농약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검사되는 샘플들의 99%가 EPA 잔류농약허용 기준치 이하를 기록하는 성과를 냄
- Pesticide Program Residue Monitoring: FDA에서 진행하는 잔류농약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를 1987년부터 연간보고서로 발간하여 대중들에게 공개함. 보고서를 통해 식품의 잔류농약 수치가 적절한 식품안전성기준을 기반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줌

제3절 영양표시

□ 영양표시(Nutrition labeling)

- '94년 5월 8일 이후로 표시되는 대부분의 식품에는 New Nutrition label을 의무화해야 함. 2014년 3월, 10년 만에 영양분석표 개정안을 제안한 후 마침내 2016년 5월 27일 최종 개정안이 확정됨. 식품 제조업체들은 2018년 7월 26일까지 모든 식품에 개정된 영양분석표를 부착하여야 함. 단, 연매출 1000만달러 미만인 사업체는 2019년 7월 26일이 시행일자임

Nutrition Facts			
Serving Size 2/3 cup (55g)			
Servings Per Container About 8			
Amount Per Serving			
Calories 230	Calories from Fat 72		
% Daily Value*			
Total Fat 8g			12%
Saturated Fat 1g			5%
Trans Fat 0g			
Cholesterol 0mg			0%
Sodium 160mg			7%
Total Carbohydrate 37g			12%
Dietary Fiber 4g			16%
Sugars 1g			
Protein 3g			
Vitamin A			10%
Vitamin C			8%
Calcium			20%
Iron			45%
* Percent Daily Values are based on a 2,000 calorie diet. Your daily value may be higher or lower depending on your calorie needs.			
	Calories:	2,000	2,500
Total Fat	Less than	65g	80g
Sat Fat	Less than	20g	25g
Cholesterol	Less than	300mg	300mg
Sodium	Less than	2,400mg	2,400mg
Total Carbohydrate		300g	375g
Dietary Fiber		25g	30g

Nutrition Facts	
8 servings per container	
Serving size	2/3 cup (55g)
Amount per serving	
Calories	230
% Daily Value*	
Total Fat 8g	10%
Saturated Fat 1g	5%
Trans Fat 0g	
Cholesterol 0mg	0%
Sodium 160mg	7%
Total Carbohydrate 37g	13%
Dietary Fiber 4g	14%
Total Sugars 12g	
Includes 10g Added Sugars	20%
Protein 3g	
Vitamin D 2mcg	10%
Calcium 260mg	20%
Iron 8mg	45%
Potassium 235mg	6%
* The % Daily Value (DV) tells you how much a nutrient in a serving of food contributes to a daily diet. 2,000 calories a day is used for general nutrition advice.	

- 칼로리 확대 표기: 칼로리 및 1회 제공량, 일일 권장섭취량 등을 굵고 큰 볼드체로 표기하여 가독성을 높임
- 현실적인 1회 제공량 표기: 1회 제공량이 실제 소비자들의 섭취량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예를 들어, 1 Pint 아이스크림 4회분-200칼로리를 2회분-400칼로리로 변경 표기)

- 첨가당 표기: 천연당 이외 첨가당 성분을 표기하여 첨가당 섭취를 줄이고자 함
- 일일 권장섭취량 수정 표기: 칼슘, 식이섬유, 비타민D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 일일 권장섭취량에 몇 %를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표기해야 함
- 칼슘, 철분, 비타민 D, 칼륨 함유량 의무 표기

제2장 수출현안

□ 미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의 대외정책 불확실성

- 보호주의 대외무역정책 기조가 팽배하나 급격한 변화는 어렵고, 로컬푸드 정책심화, 미국중심의 상호주의 강화로 미국 농산물 개방 확대요구 전망
 - 한국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환율효과로 한국농식품의 대미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을 수입바이어들은 전망하나
 - 다만 Shy Trump 소비층의 외국제품에 대한 배타적인 소비성향이 전반적인 Ethnic Food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만의 고유제품 개발 및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 확대 필요
-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시, 한-미 농산물 교역은 지난 5년간 Win-Win 구도로 검토대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한국은 미국 농식품 수출국 중 5번째로 규모로 큰 시장으로, 한미 FTA를 통한 관세철폐와 각종 규제 완화로 미국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
 - 한미 FTA 체결 전후 (11년 대비 15년) 미국의 대한국 농식품 수출 주 증가품목으로는 쇠고기 802백만불(122%), 체리 109백만불 (172.5%), 레몬 30백만불 (241.3%), 탈각한 아몬드 180백만불 (43%), 생치즈 147백만불 (398%), 와인&맥주 33백만불 (83%) 등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상 재검토 시 농산물 분야 중 관세를 재인상 할 경우 대미수출 주요품목의 가격인상을 초래 할 수 있음
 - * 관세인하 품목 : 라면 (6.4% → 0%), 배 (0.2% → 0%), 음료베이스 (6.4 → 0%), 김치 (11.2% → 0%), 단무지 (11.5% → 0%), 과자류 (4.5% → 0%) 등
- 또한, 보호무역 측면에서 FSMA를 통한 수입식품 규제강화, 통관보류 통한 통관 시비관세 장벽 문제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며
- 현재 진행 중인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육을 포함한 가공식품에 대한 검역협상이 미국측의 보수적인 입장으로 지연 될 것으로 전망

□ 유전자변형식품(GMO) 표기 의무화 법('16년 7월 29일자 오바마 대통령 서명 승인)

- 2002년 오레곤, 2012년 캘리포니아, 2013년 워싱턴 주에서 GMO 표기 의무화 법이 연이어 무산되었지만, 마침내 2014년 5월 미국 50개 주 중 2번째로 작은 주인 버몬트에서 GMO 표기 의무화 법안 (ACT 120) 이 최초로 통과되어, 2016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됨
- 그에 이어 미 통합 GMO 표기 의무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S.2609 법안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상, 하원에서 계속 지연되고 부결되어, 기존 자발적인 GMO 표기를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했던 미 농무부 장관 Tom Vilsack이 GMO 의무화 표기를 시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꿈. 그리고 마침내 2016년 7월 7일 상원에서 찬성 63표, 반대 30표, 7월 14일 하원에서 찬성 306표, 반대 117표로 가결되었고, 7월 29일 최종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승인됨
- 미 통합 GMO 표기 의무화 법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기존 버몬트 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던 GMO 표기화 법은 효력을 잃게 되었음. 그리고 GMO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을 대상으로 글자, 심볼, QR코드 중 한 가지로만 표기하는 등 버몬트에서 시행되었던 기준과 비교해 상당히 간소화되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며 특히 QR 코드의 경우,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3이 저소득층인 만큼 스마트폰과 컴퓨터 미사용 계층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현재 USDA는 향후 2년 내 미 통합 GMO 표기 의무화 관련 세부 시행 규정을 수립할 예정임

□ FDA, 가공식품 내 나트륨함량 규제 지침서 초안 발표

- 지난 2016년 6월 1일, FDA는 가공식품 내 나트륨함량 규제사항이 담긴 지침서 초안을 발표했으며, 미 보건복지부 (Health and Human Services) 장관 Sylvia Burwell은 “많은 미국인 소비자들이 그들의 식단 내 나트륨 섭취량을 줄여 건강관리를 하고자 하지만, 식품유통업체와 레스토랑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과도한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어 이를 어렵게 한다. 그로 인해, 이번 가공식품 내 나트륨 함량 규

제 지침서 초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나트륨 섭취량 조절을 원활히 해 공공보건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이번 지침서의 목적을 설명함

- 나트륨 과다섭취로 미국 전체인구의 1/3 이상이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야기할 수 있는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인구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현재 미국인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약 3,400mg에 달하며 이는 기존 많은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나트륨 섭취량 (2,300mg)을 약 50% 가까이 초과하는 만큼, 이번 지침서 초안을 통해 단기 (2년), 장기 (10년)를 목표로 나트륨 섭취량을 2년간 11.8%, 10년간 23.3%을 추가로 줄인 2,300mg를 최종 권장량으로 결정함
- 주요 규제대상은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등으로 현재 불과 10% 미만의 가공식품이 미국 전체 식품시장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미 전역에 식품을 판매하는 대형 식품제조업체 및 체인 외식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FDA는 지난 6월 2일부터 현재 미국인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인 3,400mg에서 2년간 (단기) 11.8%를 감소를 통한 3,000mg의 나트륨 권장량을 대상으로 90일, 10년간 (장기) 23.3% 추가 감소를 통한 2,300mg의 나트륨 권장량을 대상으로는 150일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기간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게 된 다수의 공공의 견을 향후 나트륨함량 규제 지침서 최종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힘



2016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I)

EU

제1장 통관제도

제2장 검역제도

제3장 관세제도

제4장 라벨링제도

제5장 수출현안



주요 변경사항

□ 통관제도 일반

- EU 신관세법(UCC : Union Customs Code) 추진
- EU국가의 부가가치세율 변경
- 원산지 결정기준 변경

□ 품목별 통관제도

-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복합식품 중 수의검사 제외품목에 대한 규정 변경
- 젓갈류 미생물/독성 함유기준 변경
- 건강식품 포지티브 리스트 변경

□ 검역제도

- 위생검역 강화대상 리스트 업데이트

제1장 통관제도

제1절 통관제도 일반

1. 관리 법률체계

□ EU 수입 통관 절차

- 수입 신고를 받은 EU 세관 당국은 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 수입을 허용
- EU로 수입되는 화물들은 EU 내에서 1회의 통관만 거치면 됨
 - 예를 들어 독일에서 수입통관을 마치고 수입된 EU 역외국 물품은 독일에서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기타 EU 국가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
- EU는 역내 수입 및 EU를 경유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전자신고 관리 시스템인 ICS(Import Control System)를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함. EU 집행위 규정 1875/2006에 따른 수입물품 사전 전자신고제도(ENS: Entry Summary Declaration) 도입이 핵심으로, EU로 수입되는 물품의 위험도 사전 평가를 통해 고위험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저위험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목적으로 함
 - EU 도착국 세관당국으로 ENS 정보 전송
 - 수입물품 도착
 - 통관 혹은 검사
 - 역내 운송 허가(또는 역류)
- 세부 절차
 - 해운사 또는 항공사는 수출입업자 혹은 대리인(포워딩 업체)에게 전송받은 물품 정보를 도착 세관당국에 ENS로 전송
 - 세관 당국은 사전 심사를 결정하거나 물품 도착 허가 통지(Arrival Notice)를 내리며, 고위험 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선적 금지 조치도 가능

- 세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관이 직접 육안으로 검사, ENS로 제출된 정보와 물품을 육안으로 대조·검사함(물품 선별 검사)
- 검사 여부 및 현장 출석에 대해 이메일로 통지. 통지를 받은 수출입업자 혹은 대리인은 세관에서 요청하거나 소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 최대한 빨리 세관에 출두해 검사 현장에 출석해야 함
-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역내 운송 허가 통지를 내림 (Release for free circulation)

□ EU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UCC) 추진 개요

- EU 신관세법, 2016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EU는 기존의 유럽공동체관세법(Community Customs Union; CCC)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해놓고 시행을 보류하고 있던 현대적유럽공동체관세법(Modernized Customs Union; MCC)을 대체키로 하고, 2013년 10월 30일부터 신관세법을 발효시킴. 이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952/2013을 통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됨
- 규정 952/2013에서는 UCC의 기본 골자 및 개념만을 밝혔을 뿐 전면 시행은 추후 세부 집행 규정 제정 때까지로 유보했으며, 그때까지는 기존 세부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 EU 전체에 적용되는 세관 행정을 EU 집행위에 상당 부분 위임키로 하고, 리스본 조약에 의한 위임규정(Delegated Act; DA), 실행규정(Implementing Act; IA)을 EU 집행위에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자율성을 위해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및 회원국 간 통관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함. 물품 통관지와 AEO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도 소재지 관할 세관 당국에 통관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역내 EU 세관 행정을 통일성을 높여 통관절차 진행의 수월성을 높임
 -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등 사법절차는 회원국 소관 사항으로 함
- 2014년 4월 EU 집행위 실행 규정 2014/255/EU를 통해 연도별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계획(Work Programme)을 발표함. 참고로 EU는 UCC 도입에 맞춰 2020년 말까지 역내 전자통관시스템을 전면 실시(Paperless Environment for

customs and trade)할 예정

-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계획

□ EU 신관세법 세부 실행 규정 주요 내용

- UCC는 기존 CCC를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관계로 아래와 같은 EU 통관행정 전 분야에 걸쳐 변화가 있을 것으로 현지 업계는 관측하고 있음
 - 통관 절차 일반(Customs Procedure)
 - 종합인증 우수업체 및 통관 담보(AEO, Customs Guarantee)
 - 자진신고납세(Self Assessment)
 - 중앙집중식 통관(Centralised Clearance)
 - 역내·역외가공(Inward/Outward Processing)
 - 단일운송계약(Single Transport Contract)
 - 가통관(Temporary Admission)
 - 장치(Temporary Storage)
- 이 가운데 장치(Temporary Storage)에 관한 변경사항은 업계에 일부 알려짐
 - 현재 해상운송물품은 최대 45일, 기타 운송물품은 최대 20일까지 장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최대 90일까지 장치가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할 예정임
 - 장치 도중 동일 AEO 간에는 통과운송(Transit) 절차를 밟지 않아도 운송이 가능하고, 이 경우 장치기간을 90일 연장할 수 있음. 만약 다른 AEO 간 운송 시 통과 운송 절차를 밟지 않으려면 C 또는 F 타입 AEO 간 운송이어야 함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계획

	항목	내용	시한 (YYMMDD)
1	등록 수출업체 관리 시스템 (Registered Exporter System; REX)	EU↔GSP 국가 각 수출업체 지원시스템 구축	2017.1.1
2	BTI, 2+ 감독 시스템 (BTI/Surveillance 2+)	품목 분류 사전 심사제도 (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 및 감독 시스템 업그레이드	1차: 2017.3.1 2차: 2018.10.1
3	통관 결정(Customs Decisions)	EU 단일의 통관 검사 시스템 구축	2017.10.2
4	세관정보시스템 (Uniform user management & digital signature)	BTI/Surveillance 2+, Customs Decisions 등의 세부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성 강화	2017.10.2
5	EU 수출입업자 등록 시스템 (Proof of Union Status; PoUS)	기존 T2L 서류를 전자적으로 대체	2017.10.2
6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AEO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2018.3.1
7	3단계 감독 시스템(Surveillance 3)	Surveillance 2+ 고도화	2018.10.1
8	통과운송 관리 시스템(New Computerised Transit System; NCTS)	기존 NCTS 시스템을 UCC에 맞게 고도화	2018.10.1
9	자동화된 수출 시스템 (Automated Export System; AES)	기존 수출통제시스템(Export Control System)을 전면 전자화	2019.3.1
10	특별 통관절차 정보 제공 (Information Sheets-INF for Special Procedures)	특별 통관 절차에 대한 전자적 정보 제공	2019.10.1
11	특별 통관절차(Special Procedures)	특별 통관 절차에 대한 표준화된 모델 제공 (단 데이터 생성은 주로 각 회원국에 관할)	2019.10.1
12	도착 통지, 물품 제시, 장치 (Notification of Arrival, Presentation Notification, Temporary Storage)	도착 통지, 물품 제시, 장치에 관한 정보 및 절차의 회원국 간, 회원국-EU당국 간 교류 시스템 구축	2020.3.2
13	중앙집권화된 수입 통관 (Centralised Clearance for Import; CCI)	EU 차원의 중앙집권화된 수입 통관시스템 구축	2020.10.1
14	보증 관리(Guarantee Management)	복수 회원국 관련 통관 보증의 효율적 관리	2020.3.2
15	안전, 보안, 위험 관리 (Safety, Security and Risk Management)	항공 운송을 중심으로 운송 중 안전, 보안, 위험에 대한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기존 수입통제 시스템(Import Control System; ICS)과 위험관리시스템 대체 예정	추후 확정
16	분류(Classification)	관세 분류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사용자 편의의 단일 플랫폼 개발	추후 확정

- 장치도 정규 통관절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해 과거와 달리 ENS의 MRN(운송관리번호; Movement Reference Number), 운송서류 증빙, 장치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함. 이때 세관은 해당 물품의 ENS 증빙과 장치시설에 관한 신고서류 또는 적하목록(Manifest, 단, ENS, 장치시설 정보를 식별할 수 있을 경우)을 택해 통관시킬 수 있음
 - AEO의 장치에 관한 담보 제공이 의무화됨
 - 경과 규정에 따라 2018년 말까지는 기존 절차 및 승인에 따른 장치 시설 운영이 가능함(기존 절차 및 승인 의 연장은 불가능)
- EU는 UCC와 더불어 2013년 발표한 Customs Union 2020 계획을 통해 2020년 말까지 EU 세관 행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통합할 예정임
- Customs Union 2020은 전자통관환경 조성, 세관 인력 경쟁력 강화, 위험도 평가 개선을 위한 EU 세관 행정 중장기(2013~2020년) 종합 계획인데, 특히 IT를 통한 범유럽 세관 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를 위해 2020년 말까지 전자 통관을 전면 실시(Paperless Environment for customs and trade)하겠다는 것이 핵심임
 - UCC도 전자통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음
 - 2014년에는 EU집행위 산하에 유럽세관정보포털 (European Customs Information Portal; ECIP, ec.europa.eu/ecip)를 구축해 통관정책과 회원국 세관의 주요 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EU 세관 행정의 완전 통합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음

2. 화물의 통관

□ 부가가치세

■ 유럽연합 국가의 부가가치세율('16.01) ■

(단위 : %)

국가명	표준부가가치세율	감면부가가치세율
벨기에	21	6 / 12
불가리아	20	9
체코	21	10 / 15
덴마크	25	
독일	19	7
에스토니아	20	9
그리스	23	6 / 13
스페인	21	10
프랑스	20	5.5 / 10
크로아티아	25	5 / 13
아일랜드	23	9 / 13.5
이태리	22	5 / 10
사이프러스	19	5 / 9
라트비아	21	12
리투아니아	21	5 / 9
룩셈부르크	17	8
헝가리	27	5 / 18
몰타	18	5 / 7
네덜란드	21	6
오스트리아	20	10 / 13
폴란드	23	5 / 8
포르투갈	23	6 / 13
루마니아	20	5 / 9
슬로베니아	22	9.5
슬로바키아	20	10
핀란드	24	10 / 14
스웨덴	25	6 / 12
영국	20	5

출처 : European Commission

3. 원산지 결정기준

□ 실질변형기준

- 세번 변경 기준
 - 세번 변경기준은 제품 및 원재료에 대한 HS Code의 관리 중요, 이는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하거나 분류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를 통해 그 증빙을 구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 부가가치기준
 -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원산지 물품의 자격을 인정토록 하는 기준으로 계산 방법에 따라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및 MC법의 유형이 있음
- 가공공정기준
 - 역내에서 협정이 정한 공정을 거친 경우 원산지물품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주로 석유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섬유제품 등에 채택되어 있다. 가공공정기준은 실제로 그 공정을 거쳐 생산을 하였다는 증빙자료가 뒷받침 되어야하므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목록 및 생산일지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제2절 품목별 통관제도

1. 동물성 가공식품

□ '17년 EU 수입제도 변경 내용

- 2017년 1월 수입분 부터 유지방 등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복합식품 중 수의검사 제외품목에 대한 규정을 변경함
 - 관련규정 : 「EU Commission Decision 2016/1196」 동물성 성분 포함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통관 가능여부와 검사증 필요유무에 대한 규정
- [변경요약] 수의검사 제외품목 변경내역
 - 육류추출물, 육즙 : 수의검사 제외에서 폐지
 - 유지방, 계란 : 전체 20% 미만 포함일 경우만 가능
- 규정 변경으로 가공육 포함 복합식품은 정식 수의검사 통관을 거쳐야 수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성 재료 원산지와 복합식품 제조국이 동일하여야 하며 EU 혹은 승인된 제3국의 승인된 시설로부터 와야 한다는 일반조건이 있어 육류추출물 포함제품의 정식통관 가능여부 및 방법은 추가조사를 통해 추후 공유예정

■ 수의검사 제외규정 변경내용 원문 ■

현재의 면제 대상 품목 - Decision 2007/275 - 2016년 말까지 적용	새로운 면제 대상 품목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6/1196에 의해 개정된 문구 -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CN 코드	설명
비스킷 빵 케이크	1905 10, 1905 20, 1905 31, 1905 32, 1905 40, 1905 40 10, 1905 90 10, 1905 90 20, 1905 90 30, 1905 90 45, 1905 90 55, 1905 90 60, 1905 90 90 제외	빵, 케이크, 비스킷, 와플 및 웨하스, 러스크, 구운 빵 및 유사 구운 제품; 2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1905 90은 잘 부서지는 건조식품만 해당
초콜릿	1704, 1806 20, 1806	과자류(사탕류 포함) 및 초콜릿;

현재의 면제 대상 품목 - Decision 2007/275 - 2016년 말까지 적용	새로운 면제 대상 품목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6/1196에 의해 개정된 문구 -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CN 코드	설명
과자류 (사탕류 포함)	31, 1806 32, 1806 90 11, 1806 90 19, 1806 90 31, 1806 90 39, 1806 90 50	5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충전되지 않은 젤라틴 캡슐		
적은 양의 동물 가공식품 (글루코사민, 코드로이친, 치토산 포함)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식품 보충제	2106 10 제외 2106 90 제외	적은 양(20% 미만)의, 육류 제품을 제외한, 동물 가공식품(글루코사민, 코드로이친, 치토산 포함)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식품 보충제
육류 추출물 및 육류 농축물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2001 90 65 제외, 2005 70 00 제외 1604 제외	20% 미만의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20% 이상의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육류 제품과 혼합되거나 육류 제품으로 채워지지 않은 파스타 및 면류	1902 19, 1902 30, 1902 40	육류 가공제품과 혼합 되거나 육류 가공 제품으로 채워지지 않은 파스타 및 면류; 5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육류 추출물, 육류 농축물, 동물 지방, 혹은 생선 기름, 분말, 혹은 추출물이 함유된 최종 소비자용 육수 및 감미료	2104 10 제외 2104 20 제외	50% 미만의 생선 기름, 생선분말, 생선 추출물을 함유하고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된** 최종 소비자용 육수 및 감미료

붙임 1 : 영국 Port Health 공문 수의학적 검사 면제 대상 식품 목록 변경사항

새롭게 개정된 규정으로 인해 기존에는 수의학적 검사 면제 대상이었던 식품들이 새로운 수입조건을 만족 시켜야 함

변경된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도착하는 수화물에 적용됨

변경내용 및 수입조건을 확인하여 비용과 손실을 미리 방지해야 할 것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

유럽연합결정 Commission Decision 2007/275 (이하 결정 'Decision')는 국경검 사소(Border Inspection Post)에서 수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들을 규정하고 있음. 해당 결정(Decision) Annex II 에 나와있는 식품 목록을 제외한 모든 육류 및 육류제품은 수의학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임.

최근 Annex II 는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6/1196으로 대체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도착하는 수화물에 적용될 예정임.

어떤 제품이 영향을 받는가?

전체 변경 내용: <http://ahvla.defra.gov.uk/documents/bip/ovs-notes/2016-20.pdf>

다음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제품들임

육류 추출물, 육류 농축물, 육류 분말 및 이를 함유하는 제품 (예: 면류 및 육수류)

- 육류 추출물, 육류 농축물, 육류 분말은 육류 제품에 포함될 것임.
- 이는 특히 육류 추출물, 육류 농축물 혹은 육류 분말을 함유하고 있는 인스턴트 면류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면과 함께 혼합되어 있는 형태(복합식품)과 별도의 포장을 동봉하고 있는 형태(복합식품 혹은 육류 제품) 모두 해당 됨
- 해당 제품 수입을 위해서는 육류제품 혹은 복합식품 증명서 및 수입조건을 만족 시켜야 함
- **필요조치:** 변경사항에 해당될 경우, 육류제품 및 복합식품 수입조건을 만족시키도

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현재 수입되는 면류, 육수 및 육류 분말 중 육류제품 및 복합식품 수입조건을 만족시키는 제품은 없음

충전되지 않은 젤라틴 캡슐

- 충전이 되지 않은 젤라틴 캡슐(젤라틴에 동물성일 경우)은 수의학적 검사 대상에 포함될 것임.
- 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젤라틴 수입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승인된 제 3국가의 승인된 젤라틴 업체에서 생산되어야 함
 - 요구된 표기사항에 맞게 표기를 해야 함
 - 수입 시 젤라틴에 대한 보건 증명서(health certificate)가 동봉되어야 함
 - 기타 수입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경고사항:** 현재 중국에는 승인된 젤라틴 업체가 없음으로, 중국은 해당 규정이 발효 되면 사람이 섭취할 목적의 동물성 성분 젤라틴 캡슐 수입이 불가능할 것임
- **필요조치:** 아래 유럽연합 홈페이지에서 승인된 업체 목록 확인
(http://ec.europa.eu/food/safety/international_affairs/trade/non-eu-countries_en)

충전된 젤라틴 캡슐

- 충전된 젤라틴은 동물성 가공제품(예. 어류 기름 캡슐은 어류 제품으로 분류) 혹은 함유성분에 따라 복합식품으로 평가함
- 수입하고자 하는 충전된 젤라틴 캡슐의 젤라틴이 EU 승인 업체에서 생산되지 않았을 경우, 동식물 건강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에 연락하여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조건에 명시된 모든 조항을 만족시켜야 함
- **필요조치:** 아래 동식물 건강국 국제무역센터 (APHA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에 연락처 정보 확인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91835/contacts-international-trade.pdf

기타 식품 보충제/첨가제

-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동물성 유기 화합물은 처음으로 수의학적 검사 대상이 될 것임. 특히 크레아틴(creatine), 시스테인(cysteine), 시스틴(cystine)이 언급됨
- **필요조치:**
 - 본 결정 'Decision' 제 29장에 명시된 요구조건 세부사항 확인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6D1196&from=EN#page=12>
 - 기타 규제품목에 대한 수입조건 확인은 동식물 건강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에 문의
적은 양(총 20% 미만)의 동물 가공식품(글루코사민, 코드로이친, 치토산 포함)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식품 보충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의학적 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반면 제품에 함유된 동물성 성분은 EU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글루코사민, 코드로이친, 치토산 및 유사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소매용 식품 보충제

- 함유하고 있는 동물성 성분(캡슐의 동물성 성분 포함) 총량이 20% 이상일 경우, 수의학적 검사 대상임. 해당제품은 유럽연합규정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759에 명시되어 있는 고(高)정제 제품 보건 증명서(the health certificate for highly-refined products)를 동봉해야 함
- **필요조치:** 고정제 제품 수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 참조
<http://www.porthhealth.eu/import-process-highly-refined-products>

알코올성 음료

- 달걀, 크림 등 동물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알코올 음료는 복합식품일 가능성이 높음. 복합식품의 수입 요구조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 확인이 필요함
- 수의학적 검사 대상이 아닌 품목이 함량하고 있는 달걀 및 유제품도 달걀 및 유제품 성분에 대한 잔류량 지침 승인을 받은 국가의 생산품이어야 함

Annex II 수의학적 검사 면제 대상 품목 목록 변경사항

아래는 기존과 개정된 Annex II의 비교표임. 개정본의 CN코드별 제품 구분과 수의학적 검사 면제 대상 범위 확인 필요

** 즉. 완전히 조리되었거나 혹은 성분 전체가 열처리 되어 모든 원재료가 변성된 제품.

Decision 2007/275/EC의 Article 6(1)(a)(i) 참조

현재의 면제 대상 품목 - Decision 2007/275 - 2016년 말까지 적용	새로운 면제 대상 품목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6/1196에 의해 개정된 문구 -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CN 코드	설명
비스킷 빵 케이크	1905 10, 1905 20, 1905 31, 1905 32, 1905 40, 1905 40 10, 1905 90 10, 1905 90 20, 1905 90 30, 1905 90 45, 1905 90 55, 1905 90 60, 1905 90 90 제외	빵, 케이크, 비스킷, 와플 및 웨하스, 러스크, 구운 빵 및 유사 구운 제품; 2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1905 90은 잘 부서지는 건조식품만 해당
초콜릿 과자류 (사탕류 포함)	1704, 1806 20, 1806 31, 1806 32, 1806 90 11, 1806 90 19, 1806 90 31, 1806 90 39, 1806 90 50	과자류(사탕류 포함) 및 초콜릿; 5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충전되지 않은 젤라틴 캡슐 적은 양의 동물 가공식품 (글루코사민, 코드로이친, 치토산 포함)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식품 보충제	2106 10 제외 2106 90 제외	적은 양(20% 미만)의, 육류 제품을 제외한, 동물 가공식품(글루코사민, 코드로이친, 치토산 포함)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식품 보충제
육류 추출물 및 육류 농축물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2001 90 65 제외, 2005 70 00 제외 1604 제외	20% 미만의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20% 이상의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육류 제품과 혼합되거나 육류 제품으로 채워지지 않은 파스타 및 면류	1902 19, 1902 30, 1902 40	육류 가공제품과 혼합되거나 육류 가공 제품으로 채워지지 않은 파스타 및 면류; 5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육류 추출물, 육류 농축물, 동물 지방, 혹은 생선 기름, 분말, 혹은 추출물이 함유된 최종 소비자용 육수 및 감미료	2104 10 제외 2104 20 제외	50% 미만의 생선 기름, 생선분말, 생선 추출물을 함유하고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된** 최종 소비자용 육수 및 감미료

동물성 식품

복합식품(composite product)이란?

식물재료와 결합된 동물성 가공농산품을 함유하는 인체 섭취용 식품을 일컬어 **복합식품**이라 한다.

복합식품은 아래 과정을 통해서 제조될 수 있다:

- 미리 가공된 육류에 식물재료를 결합한다(예를 들면, 비프 샌드위치); 또는
- 복합식품을 제조하는 동안 동물성 재료를 가공한다(예를 들면, 조리된 새우 스프링클).

동물성 원재료를 함유하고 있거나 인체 섭취용이 아니라면 이러한 식품은 복합식품이라고 할 수 없다.

경고 - 식물재료를 함유하고 있는 육가공품과 복합식품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일부 육가공품은 식물재료를 함유하고 있다 - 동물성 가공식품은 식물재료를 함유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식물재료가 동물성 식품의 *제조과정의 일부*로 요구되거나 이러한 동물성 식품에 *어떤 특성을* 부여할 경우 복합식품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는 농후제로 작용하거나 장식용이나 토핑으로 제공되는 설탕이나 풍미의 가미가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식물성 기름이나 토마토 소스의 참치는 가공 수산물로 간주되지만 복합식품은 아니다. 왜냐하면 식물성 기름이나 토마토 소스는 참치 통조림 *제조공정의 일부*(가공하기 전에 캔에 액체를 채워야 할 필요가 있음)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떤 특성(특히, 맛과 점도)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이용 가능한 추가 지침이 있고 아래에서 몇 가지 예를 찾을 수 있다.

가공 육제품은 복합식품과는 수입요건이 다르다.

복합식품이 수의검역을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

일반적으로 동물성 재료를 함유하는 모든 식품은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는 한 수의검역으로 보호된다. 복합식품은 위원회 결정 2007/275/EC의 제6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이 결정의 부록 II에 수록되어 있을 경우 수의검역에서 면제된다(위원회 결정 2007/275의 부록 II를 클릭하면 Europa 웹사이트가 열린다).

주(註) - 냉동 복합식품

최종 복합식품은 분명히 육제품과 식물재료의 결합 후 동물성 성분을 **변화**(물리적 변화)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조리되었거나 열처리된 것이다.

저온살균과 같은 가벼운 열처리는 동물성 성분의 성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

동물성 내용물의 성질이 변했는지 육안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다면 시간과 중심온도 추이에 따른 조리과정을 보여주는 생산자 도면과 같은 증거가 요구된다.

면제 복합식품 - 제6조

복합식품이 아래의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면 수의검역에서 면제된다:

1. 어떠한 육제품 조각도 발견되지 않는다.
2. 전체 동물성 내용물이 중량으로 50% 미만이다.
3. 생산품이 주위온도에서 저장 안정성을 나타내거나 냉동시 제조과정에서 재료 전체를 완전히 익히거나 열처리했기 때문에 미가공 제품의 성질이 변했다.
4. 복합식품이 인체 섭취용이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5. 복합식품이 깨끗한 용기에 안전하게 포장되거나 밀폐 처리되었다.
6. 복합식품이 상업문서를 수반하고 회원국의 공식언어로 표시되었으며 이러한 상업문서와 표시가 복합식품과 그 성분의 성질, 수량, 포장 수, 원산지 및 제조업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록 II에 수록된 면제제품

수의검역 면제 제품은 아래와 같다:

- 비스킷
- 빵
- 케이크 - 카스텔라, 과일케익 등(아래 '주' 참조)
- 초콜릿
- 과자(사탕 포함)
- 소량의 육제품을 함유하는 최종 소비자를 위해 포장된 식품보충제 및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또는 키토산을 포함하는 식품보충제(캡슐형 순수 어유는 면제되

지 않음)

- 어육으로 채워진 올리브
- 육제품과 혼합하지 않았거나 육제품으로 채우지 않은 파스타와 국수
- 고기추출물, 고기농축물, 동물성 지방, 또는 어류 오일이나 분말이나 추출물을 함유하는 최종 소비자용으로 포장된 국 건더기와 향료.

주: 케이크를 구운 후 축산물(예를 들면, 크림)이 첨가되면 최종제품은 더 이상 수의검역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비스킷, 빵, 케이크, 과자 등이 수의검역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굽는 과정이 동물이나 공중보건 위험요소를 억제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구운 후 축산물이 첨가되면 복합식품은 수의검역을 받아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재평가를 필요로 한다.

유제품을 함유하는 복합식품

유제품을 함유하는 생산물은 조항 6(2)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검역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것은 유제품이 승인된 제3자로부터 공급되고 명시된 열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 규정(EU) 605/2010(발표 당시 최신 통합버전으로 연결되는 링크)에는 현행 목록이 들어 있다.

수의검역 대상이 아닌 복합식품의 수입

당기관에서는 탁송물이 수의검역 대상인지 결정하기 위해 수입식품을 검사한다. 이에 따라 송장 사본, 포장목록 및 선하증권 사본이 요구된다. 해당 복합식품이 부록 II에 수록되어 있는지(따라서 수의검역에서 제외되는지) 불확실할 경우에는 비율과 원산지를 포함해서 각 동물성 재료의 상세정보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동물성 재료의 첨가 및 뒤이은 열처리 시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복합식품(이상적으로는 공정흐름도 형식) 제조과정의 세부정보(특히, 상세한 적용시간과 온도 및 달성된 중심온도)도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수출업자나 제조업자가 제공해야 하고 해당 탁송물에 관한 것 이어야 한다.

수의검역 대상이 아닌 복합식품이라 할지라도 모든 동물성 재료는 EU 회원국이나 EU에 동물성 생산물 자체를 공급하도록 승인을 받은 비회원국의 것 이어야 한다. 이것은

각 동물성 재료가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관련 제3국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동물성 재료의 승인된 잔류농약 계획을 수립한 EU 비회원국에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17년부터는 동물성 재료는 EU 승인 시설의 것이어야 한다. 승인된 잔류농약 관리 계획을 수립한 국가 목록은 위원회 시행결정 2015/1338[PDF]에 수록되어 있다.

수의검역 밖의 복합식품의 경우, 재료의 원천과 관련된 요건을 점검하는 일은 국내 지방당국의 책임이다.

수의검역을 받는 복합식품의 수입요건

규정 28/2012의 요건이 적용되는 수의검역 대상 **복합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위생 증명서

복합식품이 아래 요소를 함유할 경우 Regulation 468/2012에 규정된 위생증명서가 요구된다:

- 가공육
- 가공 유제품(냉동을 요함)
- 저장기간이 안정적인 경우 50% 이상의 유제품
- 50% 이상의 가공 수산물
- 50% 이상의 가공 난제품.

이 식품이 50% 이상의 기타 축산물(예를 들면, 젤라틴, 꿀, 콜라겐)을 함유할 경우, 순 제품에 적용되는 EU 위생증명서가 요구된다.

위에 언급되지 않은 가공육제품 내용물은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승인된 잔류농약관리계획이 있는 승인된 제3국의 승인된 시설로부터 와야한다는 일반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성분

규정 28/2012에 의하면 동물성 재료는 복합식품을 제조한 국가와 동일한 국가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이 낮은 동물위생위험 국가가 다른 저위험 제3국이나 EU의

육제품이나 유제품을 사용해서 복합식품을 제조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예외가 존재한다.

그 원칙은 아래와 같다:

- 저위험국은 EU를 포함한 다른 저위험국의 육제품이나 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 저위험국은 고위험국의 육제품이나 유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 고위험국은 다른 나라의 육제품이나 유제품은 사용할 수 없고 EU의 육제품이나 유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 **육제품 함유**와 관련하여 복합식품 원산지 국가가 EU에 *처리 A*(위원회 결정 2007/777 부록 II 파트 2 참조. *처리 A*는 저위험국을 의미함)를 거친 육제품만 수출할 수 있을 경우, 이러한 복합식품은 *처리 A*를 거친 육제품만 EU에 수출하도록 승인된 다른 국가나 EU에서 공급된 육류로 제조할 수 있다(*처리 A*의 의미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 2007/777 부록 II 파트 4 참조).
- **유제품 함유**와 관련하여 복합식품의 원산지 국가가 EU에 유제품을 수출하도록 승인되었고 위원회 규정 605/2010의 칼럼 A(날것)나 칼럼 B(저온살균)에 속하는 경우, 이러한 복합식품은 같은 칼럼의 다른 국가나 EU의 유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다. 복합식품 제조국이 칼럼 C에만 속할 경우, 이러한 유제품 함유물은 복합식품이 제조되는 동일국가나 EU에서 들어온 것이어야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들어올 수 없다. 예를 들면, 태국(규정 605/2010의 칼럼 C에만 속함)에서 공급되고 수의검역을 받는 복합식품이 칼럼 A에 속하는 뉴질랜드의 분유로 제조되었다면 수입이 불가능하나 EU산 분유로 제조되었다면 수입이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우유분말과 식물성 기름으로 제조되는 아이스크림 과자를 수입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품은 복합식품입니까? 그리고 이 제품은 수의검역 대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제품은 복합식품에 해당하므로 수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최종 복합식품은 냉동을 요하기 때문에 수의검역에서 면제되기 위해서는 최종 복합식품은 요리되었거나 우유분말의 성질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열처리를 거쳤어야 합니다. 아이스크림 과자의 경우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최종 혼합물의 저온살균은 동물성 성분의 성질을 변화시키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수의검역을 받는 복합식품의 몇 가지 예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 육류파이(조리된 육류 함유)
- 통조림 참치 샐러드(샐러드를 만들기 위해 채소를 곁들인 참치 함유)
- 닭고기 카레(소스에 채소와 조리된 닭고기의 결합)
- 50% 이상 조리된 새우를 함유한 새우 스프링롤
- 비조리 저온살균 치즈를 함유하는 피자(냉동과 조리되지 않은 최종 생산품을 요함)
- 저온살균 크림층이 있는 과자(냉동과 비조리 크림 가미 최종 생산품을 요함)

수의검역을 받지 않는 복합식품의 몇 가지 예를 보여주시겠습니까?

- 50% 미만의 치즈와 비육류를 함유하는 완전 조리 피자
- 50% 미만의 새우를 함유하는 완전 조리 새우 스프링롤
- 50% 미만의 저온살균 계란을 함유하는 마요네이즈

복합식품이 아니면서 식물재료 함유 육가공품인 식물재료를 함유하는 식품의 몇 가지 예를 보여주시겠습니까?

- 미가공 육류를 함유하는 비조리 육류파이(날고기이므로 복합식품이 아님)
- 빵가루를 묻힌 생새우(새우가 날것이기 때문에 복합식품이 아님)
- 견과류를 가미한 꿀(꿀이 날것이기 때문에 복합식품이 아님)
- 기름에 담근 참치 통조림(제조에 필수적인 식물재료)

- 칠리 마리네이드에 담근 조리된 참치 살코기(마리네이드로 참치에 풍미와 질감 등의 특성 가미)
- 조리된 빵가루 묻힌 새우(빵가루로 새우에 특성 부여; 새우 비율과는 관계없이 적용)
- 연육/계맛살(때때로 소량의 식물재료를 첨가함으로써 어육에 특성을 부여함)
- 빵가루를 묻힌 조리된 해덕(빵가루를 묻힘으로써 어육에 질감 등의 특성을 부여함)
- 반죽 치킨 너겟(반죽으로 치킨에 풍미와 질감 등의 특성을 부여함)
- 포도당이나 소량의 양파가 함유된 다진 쇠고기(포도당/양파로 다진 쇠고기에 특성을 부여함)
- 딸기 요구르트(딸기로 요구르트에 풍미, 질감 등과 같은 특성을 부여함)
- 과일 고명이 있는 우유 디저트(과일 고명으로 우유 디저트에 향미, 질감 등과 같은 특성을 가미함)
- 반죽된 조리 치즈(예를 들면, ‘파니르 파피’) (반죽으로 치즈에 질감 등의 특성을 부여함; 치즈 비율과는 관계없이 적용)
- 어육 함유율이 10%이고 기타 재료로 설탕과 물을 사용한 생선 소스. 이러한 제품은 수산물이다(이러한 제품을 복합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관련 식물재료가 없음). 수산물로 수의검역을 받는다. 50% 규칙은 복합식품에만 적용된다.
- 물과 2% 탈지분유 및 설탕을 함유하는 아쿠르트와 같은 요구르트 음료. 이러한 제품은 유제품이다. 이러한 제품을 복합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관련 식물재료도 없다.
- 인도산 굴랍자문, 라스굴라 및 기타 유사 통조림 제품. 이러한 제품은 캔의 시럽과 코티지 치즈볼(@5%)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떠한 관련 식물재료가 없는 유제품이므로 인도에서 수입할 수 없다.

2. 젓갈류

▣ 젓갈류 미생물/독성 함유 기준 (규정 제1019/2013호) ▣

구분	검사대상 미생물 및 독성물질	표본개수		허용치		검사방법	검사시점
		n	c	m	M		
'1.27 Fishery products, except those in food category 1.27a, which have undergone enzyme maturation treatment in brine, manufactured from fish species associated with a high amount of histidine (17)	Histamine	9(18)	2	200 mg/kg	400 mg/kg	HPLC (19)	판매 유효기간 까지 수시
'1.27a Fish sauce produced by fermentation of fishery products	Histamine		1		400 mg/kg	HPLC (19)	판매 유효기간 까지 수시

(17) 고등어(Scombridae), 청어(Clupeidae), 멸치(Engraulidae) 등 포함

(18) 샘플 크기는 소매판매용 단위포장 기준

(19) 측정법 : biogenic amines involved in fish decomposition

* 약어 : n(표본 추출개수), c (최소 유효표본수), m (최소허용치), M (최대허용치)

3. 건강식품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록된 카피문구 예

○ 영양(nutrition)관련 대표적인 허용 단어는 아래와 같음

주요 허용단어	설 명
low energy	40kcal(170KJ)/100g 이하의 일반식품 20kcal(80KJ)/100ml 이하의 음료(액체) 식품
Energy-free	4kcal(170KJ)/100g 이하의 식품 0.4kcal(1.7KJ), 6g 대략 한 티스푼 이하의 감미료 함유
Low fat	3g/100g 이하의 지방 함유 (일반식품) 1.5g/100ml 이하의 지방 함유 (음료/ 액체 식품)
Fat-Free	0.5g/100g 또는 100ml 의 지방 함유 식품

주요 허용단어	설명
Low Saturated fat	1.5g/100g 이하의 포화지방 함유 (일반식품) 0.75g/100ml 이하의 포화지방 함유 (음료/ 액체 식품)
Saturated fat-Free	0.1g/100g 또는 100ml 이하의 포화지방(트랜스 지방) 함유 식품
Low Sugars	5g/100g 또는 100ml 이하의 설탕 함유 식품
Sugars-Free	0.5g/100g 또는 100ml 이하의 설탕 함유 식품
Low Sodium/Salt	0.12g/100g 또는 100ml 이하의 나트륨(소금) 함유 식품
Sodium-Free or Salt-Free	0.005g/100g 이하의 나트륨(소금) 함유 식품
Source of fibre	최소 3g/100g 또는 1.5g/100kcal 의 섬유질 포함 식품
High protein	제품의 최소 20% 이상의 단백질이 포함 식품
그 외	High XXX, Contains XXX, Reduced XXX => 영양소의 이름을 뒤에 넣어 사용가능 (예: High of Vitamin)

제3절 통관시 유의사항

- EU 등 전 세계적으로 Allergen 관련 식품 규제 더욱 강화 예정
 - 유럽 내 알레르기와 건강을 위한 글루텐 성분에 관한 관심 증대, 글루텐 성분 포함/ 불포함 정보 필요함(된장, 고추장, 된장, 당면 등)

제2장 검역제도

□ EU, 위생검역 강화대상 리스트 업데이트

- 2016.03 유럽위원회에서는 EU에 수입된 채소 및 과일류에 대한 2015년 border check 결과 (각 회원국의 세관, 검역소에서 검역, 위생 등의 문제로 수입 불허 또는 보류된 건들 결과 정리)에 대해 발표하며 위생검역 강화 대상 아이টে을 추가 또는 해지함
- 농약 과다 검출, 곰팡이 및 세균 검출 등의 문제가 반복 또는 위험 물질(재료) 포함된 식품의 경우 위생검역 강화 대상으로 지정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음
- 기존의 검역대상 리스트에 있었던 식품 중 해지 및 추가된 품목은 아래와 같음

검역대상 리스트에서 해지된 품목	검역대상 리스트에서 추가된 품목 (2016년 3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터멜론과 가지 (도미니카 공화국) : 과거 농약 검출 - 와인포도 (페루) : 과거 농약 검출 - 건포도 (우즈베키스탄) : ochratoxin A - 베틀후추 (태국) : 과거 농약 검출 - 민트 (모로코) : 과거 농약 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팜오일 (가나) : 합성화학색료(Sudan dyes) - 땅콩 (마다가스카르) : aflatoxins - 레몬 (터키) : 농약 - 땅콩 (감비아) : aflatoxins - 냉동 라즈베리 (세르비아) : 노로바이러스(norovirus)

- EU에서는 식품의 농약 잔류치, 식품 첨가물, 세균(해충)에 대한 검역이 엄격히 행해지고 있으므로 한국산 농산물 수입 시 사전에 제품별 요구하는 내용(예: 최대 농약 허용치)에 대해 확인해야 함
- 최근 참깨의 살모넬라균 및 아이스크림의 증금속 오염으로 리콜된 사례가 있음

제3장 관세제도

제1절 관세제도 일반

- 2016년 7월 한-EU FTA 체결된 지 5주년이 지남. 모든 품목 (양허 제외인 특정 농산물 제외)에 관세 장벽이 사라지게 됨
-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에 대한 대비 필요

Ⅰ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Ⅰ

() : 관세율 %

양허유형	한국 양허	EU 양허
즉시	자동차부품(8), 기타정밀화학원료(1~8), 계측기(8), 직물제의류(8~13), 스키부츠(8,13), 인쇄기계(8), 칼라TV(8), 냉장고(8), 선박(5), 타이어(8), 광학기계(8), 화하기계(8), 전구(8), 섬유기계(5~8), 식품포장기계(8), 컴퓨터 부품(8), 항공기부품(3~8), 계측기부품(8) 등	자동차부품(4.5), 무선통신기기부품(2~5), 스웨터(12), 편직물(8), 냉장고(1.9), 에어컨(2.7), 라디오(9~12), 스키부츠(8~17), 폴리에스테르 직물(8), 진공청소기(2.2), 아세탈수지(6.5), 천연색음극선관(14), 남성셔츠(12), 연축전지(3.7), 리튬전지(4.7) 등
3년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8), 기타정밀화학제품(5~8), 펌프(8), 선박용 엔진및 그부품(8), 무선통신 기기부품(8), 안경(8), 의약품(6.5), 화장품(8), 철도차량(5), 철도차량부품(5), 선박용부품(8), 안경(8), 변환 및안정기(8), 식품가공기계(8) 등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10), 베어링(8), 타이어(2.5~4.5), 합성수지(6.5), 고무벨트(6.5), 복사기(6), 전자레인지(5), 주방용도자기제품(12), 항공기(7.5~7.7), 기타신발(16.8), 자전거(15) 등
5년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8), 하이브리드카(8), 밸브(8), 베어링(8), 시멘트(8), 윤활유(7), 기초 화장품(8), 접착제(6.5), 합성고무(8), 제재목(5), 원동기(8), 펌프(8), 화물자동차(10), 의료용전자기기(8), 기타요업제품(8) 등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10), 하이브리드카(10), 칼라TV(14), TV카메라및수상기(14), 카스테레오(10), 광학기기부품(6.7), 순모직물(8), 모사(3.8), 영상기록재생용기기(14), 화물자동차(22) 등

양허유형	한국 양허	EU 양허
7년	순모직물(13), 모사(8), 동조가공품(8), 수산 화나트륨(8), 건설중장비(8), 인쇄기계(8), 금속절삭가공기계(8), 기타기계류(16), 합판(8~12), 섬유판(8), 파티클보드(8), 표면활정제(8), 밸브(8), 베어링(8), 의료용전자기기(8), X선빔방사선기기(8), 합성고무(8) 등	없음

- 유럽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포함한 유럽산 농산물 수출품에 적용되는 복잡한 승인 절차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공연권과 지리적 표시제 등 한-EU FTA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갱신 요구됨

제2절 품목별 관세제도

□ 수산물

■ 양측 수산물 양허수준 ■

양허 유형	한·EU FTA			
	한국 양허		EU 양허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즉시 (A)	12.3%	6.8%	40.8%	25.3%
3년 (B)	31.9%	20.3%	31.8%	69.7%
3년내 (A)+(B)	44.2%	27.1%	72.6%	95.0%
5년 (C)	23.0%	50.9%	27.4%	5.0%
5년내 (A)+(B)+(C)	67.2%	78.0%	100.0%	100.0%
7년	4.4%	0.2%		
10년	27.2%	6.2%		
10년초과	0.5%	15.4%		
현행관세	0.7%	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제4장 라벨링제도

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

1. 일반사항

- EU 신규 식품 라벨링법 주요 내용
 - 나노기술을 응용한 식품 성분 목차 제시
 - 식품 샘플(이미테이션 푸드)의 대체 성분 표시

제2절 라벨링 문제 사례(한국산 사례는 없음)

- 유럽연합 식품 및 사료 긴급 경보 시스템 RASFF에 따르면 2016년 현재까지 한국 산에 대한 라벨링 문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2016년 9월 말 기준, 라벨링의 정보 미비, 부정확한 정보 기입 등으로 올해 총 15건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음

날 짜	검역국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08/19	영국	독일	우유와 콩이 포함된 영양음료에 대한 불충분한 표기	판매 중지 및 수거
07/26	프랑스	캐나다	캐나다산 매운 연어 필렛(filet)의 정확하지 않은 표기 (냉동에 관한 불완전한 제품 정보)	판매중지 및 수거
06/30	이탈리아	중국	중국산 냉동대구에 대한 부정확한 표기	판매중지 및 수거

날 짜	검역국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6/14	오스트리아	체코	체코산 해초가루의 권장 복용량 정보 미기입	판매중지 및 수거
03/22	네덜란드	네덜란드	베이컨 롤라드(roulade) 콩 성분에 대한 부정확한 기입	제품 파기
03/10	아일랜드	터키	영국에서 포장된 터키산 오가닉 살구씨에 대해 안전사용에 대한 정보 미기입	반송조치
2/22	노르웨이	미국	미국산 영양보충제의 불충분한 표기와 허가되지 않은 요힘빈(yohimbin) 함유	판매중지 및 수거
02/09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산 초코렛 향 머랭의 콩 성분에 대한 잘못된 정보 기입	소비자 정보 제공
01/29	이탈리아	이탈리아	유아용 쌀크림에 대한 신고하지 않은 글루텐 함유와 부정확한 정보 기입	반송조치
01/25	아일랜드	영국	영국산 칠리 베이컨에 대한 부정확한 유통기한 기입	반송조치

- 제 3의 국가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EU 회원국내 수출·입 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라벨링 문제 사례는 종종 발견되고 있음
- 라벨의 정보 불충분 및 실제 제품과의 불일치, 잘못된 정보 기입(예: 유통기한)의 이 유가 많았으며 EU 회원국들은 이러한 정보를 즉시 서로 공유하여 수입 불허, 반송 조치, 판매 금지와 같은 신속한 조치를 내리고 있음

제5장 수출현안

제1절 수출현안

유럽연합 통관 시스템 현대화

- 본 법안은 위임법령(delegated act)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며, 그 후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관세법위원회(Customs Code Committee)에서 관련 절차의 세부 실행법안 채택 후 2016년 5월 1일부터 적용됨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 규정을 위한 조사

- 2016년 이후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새로운 규정 또는 지침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함
 - 2015년 3월까지 새로운 연구가 진행된 상황이며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
 - 아크릴아마이드의 신경계 장애 위험 요인이 연구됨
 - 아크릴아마이드는 잠재적인 위해요소이기에 하루제한용량을 정할 수 없지만 기준복용량 신뢰제한Benchmark Dose Lower Confidence Limit (BMDL10)을 건강주의수준으로 제시
 - 종양 : 0.17mg/kg bw/day
 - 기타 신경계질환 : 0.43 mg/kg bw/day
- * mg/kg bw/day = milligrams per kilogram of body weight per day (몸무게 당 하루제한용량)

농약 Chlormequat chloride(CCL)의 최대잔류량 논의

- 유럽연합은 EU에 수입되는 포도의 농약 잔류량 허용치를 조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시함

- 본 법안이 표결되면 대 EU 최대 포도 수출국 중 하나인 인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 EU집행위에서 작성한 조정안은 식물의 성장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농약 chlormequat chloride(CCL)의 최대잔류량(MRL)을 현행 0.05ppm에서 0.01ppm으로 감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CCL은 유해하지 않은 식물 성장 조절제로 포도 농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식품안전청에서는 1.06ppm 정도는 인체에 안전하다고 규정함
- 최근까지 EU에서 사용하는 농약 잔류량 검사 기계는 최대 0.05ppm 까지 검출이 가능했으나 점차 기술이 발전되면서 0.01ppm까지 조사되는 수준까지 발전하여 앞으로는 정밀하고 엄격한 검사가 각 EU 국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지난 2015-2016년 인도산 포도는 약 60,000톤이 EU에 수출되었으며, 가장 많이 수입한 EU 국가로는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독일이 차지함
- 올해 하반기 CCL의 잔류량 허용치에 대한 결정이 나올 예정으로 논의 및 변동의 여지가 많은 농약에 관한 지속적인 숙지가 필요함

□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주의사항

1. L-트레오닌

- 최근 유럽연합집행위는 가축 및 동물용 사료를 만들 때 대장균(E-coli) 발효에 의해 제조 및 첨가된 L-트레오닌의 사용을 승인함
- L-트레오닌은 모든 동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으로 가축용 사료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단백질의 섭취를 높이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첨가물임
- 지난 2015년 3월 유럽연합식약청에서는 동물용 사료를 만들 때 만들어지는 변형 대장균이 발효되면서 생성되는 L-트레오닌의 첨가는 동물뿐만 아니라 그 동물을 섭취하는 소비자 및 환경에도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발표함

- 그러나 EU집행위에서는 과학적인 의견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L-트레오닌에 대한 추가의 연구를 요청, 마침내 EU식약청에서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L-트레오닌은 인간을 포함, 어떠한 종에도 유전자 조작과 같은 위험을 끼치는 요소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지음
- 특히 소와 같은 반추동물에게는 L-트레오닌은 매우 유용한 물질로 반추위(한번 삼킨 먹이를 다시 입 앞으로 토하여 잘 씹은 후 삼킬 수 있는 특수한 위)의 활동이 저하되는 것을 보호하는데 매우 필요하다고 언급함

2. 글루텐프리(gluten-free) 식품

- 밀가루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글루텐 민감성’을 가진 소비자를 위한 글루텐 프리 식품은 유럽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현재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음
-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에서는 글루텐 함량이 20ppm이하, 즉 1kg 당 20mg 이하여야 글루텐 프리 식품으로 표기할 수 있음
- 유럽에서 글루텐은 인체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은 라벨링을 통해 글루텐 정보를 기입하고 있음
- 각 회원국의 식약청에서는 다양한 글루텐 프리 제품에 대한 글루텐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샘플 조사를 실시, 글루텐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리콜 등의 후속 절차를 실행함
 - (독일)유기농 쌀로 만든 과자 : 글루텐 함량 137mg/kg-ppm으로 전량 회수
 - (독일)쿠키 ‘Reiszerge’ : 글루텐 초과 함량(85mg/kg-ppm), 소비자 리콜실시
 - (독일)글루텐 프리 시리얼 : 글루텐 초과 함량(60.6mg/kg-ppm), 소비자 리콜실시
- 건강을 중시하고 세계적인 ‘웰빙’ 추세에 따라 글루텐 프리 식품이 주목받고 있으나 글루텐 함량에 대한 검사를 통해 폐기 또는 리콜되는 제품이 각 국가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함



2016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I)

러시아

제1절 통관제도

제2절 검역제도

제3절 관세제도

제4절 라벨링제도

제5절 수출현안

주요 변경사항

□ 통관제도

- 항공운송 반입상품 사전통보 의무 도입
- 동물용 사료 관련 첨부서류 발급절차 변경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 2017년 적용

□ 검역제도

- 관세동맹 식물검역 절차 개정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검역식물위생요건 2017.7월 발표
- 유제품 및 육류제품에 대한 기술규제 과도기 '15.12.31 만료
-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기술규제」 개정안 마련

□ 관세제도

- 일부 농산물 수입관세율 변경
- 쌀 관련 유라시아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 및 공통관세율 개정
- WTO 양허세율 범위 내 수입관세율 조정

□ 라벨링제도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공통 유통마크 적용 절차 개정
- 러시아, 유기농에 대한 통합규정 도입

제1절 통관제도

□ 항공운송 반입 상품 의무적인 사전 통보 도입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No.158('15.12.1) '항공운송 반입 상품에 대한 의무적인 사전 통보'에 따라, 2017년 4월 1일부터 항공운송 반입 상품에 대한 사전 통보가 의무화됨
- 사전정보는 상품 반입을 이행하는 운송인 혹은 운송인의 대리인이 상품 도착지 세관 기관에 제공해야 함
- 사전정보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a) 항공기 및 비행경로 정보:
 - 항공기 국적마크 및 등록마크
 - 항공기 운행사 명칭
 - 출발 항공편 번호
 - 출발지점 및 출발공항 명칭
 - 도착지공항 이전 공항의 실제출발시간
 - 도착지점 및 목적지공항 명칭
 - 예정된 도착시간
 - 중간착륙지점 명칭(있는 경우에 한함)
 - 항공기 내에 EEU 관세영역으로 반입 금지 또는 제한되는 상품, 무기, 탄약 존재 유무에 관한 정보; 항공기 내에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존재 유무에 관한 정보(있는 경우에 한함)
 - b) 운송서류 기재 반입 상품 정보(각각의 서류에 기재):
 - 서류 번호
 - 상품명
 - 상품 선적지점 및 하역지점 명칭
 - 수량(quantity of places)
 - 상품 총중량(kg)

- 상품 순중량(kg) 또는 부피(정보가 있을 시에)
- EEU HS코드에 따른 첫 6자리 이상의 상품코드(정보가 있을 시에)
- 상품 발송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 사전정보를 전부 다 제공하지 않은 경우, 구조 및 양식, 특정기술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사전정보 심사수락거부에 관한 전자메시지가 정보제공자에게 발송됨
 - 이 경우 사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사전정보 심사수락거부 사항 보안 후 세관기관에 다시 사전정보 제공가능
- 세관기관에서 운송 고유식별번호를 받은 사전정보에 기재된 정보와 운송서류에 기재된 정보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사전정보 제공자가 발견할 경우, 사전정보 제공자는 항공기 도착 전에 사전정보를 세관기관에 다시 제공해야 함
 - 이 경우 다시 제공된 사전정보는 새로운 운송 고유식별번호를 받게 됨
- 유러시아경제위원회 권고 No5('16.4.12) '항공운송 반입 상품 사전정보 제공 시, 전자 상호작용'에 의하여, 항공운송 반입 상품에 대한 사전정보 구조 및 양식이 정해짐

□ 동물용 사료에 대한 동물관련(veterinary) 첨부서류 발급절차 변경

- 식물성 성분을 함유하는 사료 및 사료첨가물을 러시아로 반입할 시, 사료 사용을 허가하는 동물관련(veterinary)첨부서류는 GMO 존재여부 또는 GMO 품종식별에 대한 실험실검사 결과를 받은 후에만 통관 장소에서 작성 및 발급이 가능함
- 수출국의 동물관련 서류 없이 반입된 사료에 대한 첨부서류 작성 및 발급은 품질증명서, 실험실검사결과에 기초하며 수출국의 전염병상황과 동식물검역국의 제한조치를 고려해서 이루어짐
- 화학합성 및 미생물합성의 사료첨가물의 경우, 동물관련 첨부서류 작성이 요구되지 않음
- 시사점 : 사료에서 GMO 검출 경우와 러시아 국가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GMO 품종 검출 경우가 빈번해짐으로 인해 동식물검역국의 감독이 강화될 수 있음

□ 2017년 적용되는 유라시아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기존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CU HS코드)를 보완, 변경하여 유라시아경제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일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를 개발, 전환 중에 있음
 - 현재 EEU HS코드 0302 99와 0303 99의 하부품목 10자리를 통합하는 작업 진행 중
- 아래 표는 2012년 CU HS코드와 상응하는 2017년 EEU HS코드를 나타냄

2012년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CU HS코드)	2017년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
0102 29 710 0	0102 29 910 0
0102 29 790 0	0102 29 990 0
0102 90 990 0	0102 29 050 0 0102 90 990 0
0210 99 800 0	0210 99 850 0
0301 93 000 0	of 0301 93 000 0
0301 99 188 0	0301 99 182 0
0301 99 189 0	of 0301 93 000 0 0301 99 186 0
0302 11 100 0	0302 11 100 0 of 0302 99 000 1
0302 11 800 0	0302 11 800 0 of 0302 99 000 1
0302 13 000 0	0302 13 000 0 of 0302 99 000 1
0302 14 000 0	0302 14 000 0 of 0302 99 000 1
0302 19 000 0	0302 19 000 0 of 0302 99 000 9
0302 21 100 0	0302 21 100 0 of 0302 99 000 3

2012년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CU HS코드)	2017년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
0302 21 300 0	0302 21 300 0 of 0302 99 000 3
0302 21 900 0	0302 21 900 0 of 0302 99 000 3
0302 22 000 0	0302 22 000 0 of 0302 99 000 3
0302 23 000 0	0302 23 000 0 of 0302 99 000 3
0302 24 000 0	0302 24 000 0 of 0302 99 000 3
0302 29 100 0	0302 29 100 0 of 0302990003
0302 29 800 0	0302 29 800 0 of 0302 99 000 3
0302 31 900 0	0302 31 900 0 of 0302 99 000 4
0302 32 900 0	0302 32 900 0 of 3029 9000 4
0302 33 900 0	0302 33 900 0 of 0302 99 000 3
0302 34 900 0	0302 34 900 0 of 0302 99 000 9
0302 35 190 0	0302 35 190 0 of 0302 99 000 9
0302 35 990 0	0302 35 990 0 of 0302 99 000 9
0302 36 900 0	0302 36 900 0 of 0302 99 000 9
0302 39 800 0	0302 39 800 0 of 0302 99 000 9
0302 41 000 0	0302 41 000 0 of 0302 99 000 4

2012년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CU HS코드)	2017년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
0302 42 000 0	0302 42 000 0 of 0302 99 000 9
0302 43 100 0	0302 43 100 0 of 0302 99 000 3
0302 43 300 0	0302 43 300 0 of 0302 99 000 3
0302 43 900 0	0302 43 900 0 of 0302 99 000 3
0302 44 000 0	0302 44 000 0 of 0302 99 000 4
0302 45 100 0	0302 45 100 0 of 0302 99 000 9
0302 45 300 0	0302 45 300 0 of 0302 99 000 9
0302 45 900 0	0302 45 900 0 of 0302 99 000 9
0302 46 000 0	0302 46 000 0 of 0302 99 000 9
0302 47 000 0	0302 47 000 0 of 0302 99 000 9
0302 51 100 0	0302 51 100 0 of 0302 99 000 6
0302 51 900 0	0302 51 900 0 of 0302 99 000 6
0302 52 000 0	0302 52 000 0 of 0302 99 000 6
0302 53 000 0	0302 53 000 0 of 0302 99 000 5
0302 54 110 0	0302 54 110 0 of 0302 99 000 9
0302 54 150 0	0302 54 150 0 of 0302 99 000 9

2012년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CU HS코드)	2017년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
0302 54 190 0	0302 54 190 0 of 0302 99 000 9
0302 54 900 0	0302 54 900 0 of 0302 99 000 9
0302 55 000 0	0302 55 000 0 of 0302 99 000 9
0302 56 000 0	0302 56 000 0 of 0302 99 000 9
0302 59 100 0	0302 59 100 0 of 0302 99 000 9
0302 59 200 0	0302 59 200 0 of 0302 99 000 9
0302 59 300 0	0302 59 300 0 of 0302990009
0302 59 400 0	0302 59 400 0 of 0302990009
0302 59 900 0	0302 59 900 0 of 0302 99 000 9
0302 71 000 0	0302 71 000 0 of 0302 99 000 9
0302 72 000 0	0302 72 000 0 of 0302 99 000 9
0302 73 000 0	of 0302 73 000 0 of 0302 99 000 9
0302 74 000 0	0302 74 000 0 of 0302 99 000 3
0302 79 000 0	0302 79 000 0 of 0302 99 000 9
0302 81 200 0	0302 81 100 0 of 0302 92 000 0 of 0302 9 9000 2

2012년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CU HS코드)	2017년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
0302 81 500 0	0302 81 200 0 of 0302 92 000 0 of 0302 99 000 2
0302 81 600 0	0302 81 300 0 of 0302 92 000 0 of 0302 99 000 2
0302 81 900 0	0302 81 900 0 of 0302 92 000 0 of 0302 99 000 2
0302 82 000 0	0302 82 000 0 of 0302 99 000 9
0302 83 000 0	0302 83 000 0 of 0302 99 000 9
0302 84 100 0	0302 84 100 0 of 0302 99 000 9
0302 84 900 0	0302 84 900 0 of 0302 99 000 9
0302 85 100 0	0302 85 100 0 of 0302 99 000 9
0302 85 300 0	0302 85 300 0 of 0302 99 000 9
0302 85 900 0	0302 85 900 0 of 0302 99 000 9
0302 89 108 0	0302 89 106 0 of 0302 99 000 9
0302 89 109 0	of 0302 73 000 0 0302 89 107 0 of 0302 99 000 9
0302 89 210 0	0302 49 110 0 0302 89 210 0

2012년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CU HS코드)	2017년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
0302 89 290 0	0302 49 190 0 0302 89 290 0 of 0302 99 000 9
0302 89 310 0	0302 89 310 0 of 0302 99 000 6
0302 89 390 0	0302 89 390 0 of 0302 99 000 6
0302 89 400 0	0302 89 400 0 of 0302 99 000 9
0302 89 500 0	0302 89 500 0 of 0302 99 000 9
0302 89 600 0	0302 89 600 0 of 0302 99 000 9
0302 89 900 1	0302 49 900 1 of 0302 99 000 5
0302 89 900 9	0302 49 900 9 0302 89 900 0 of 0302 99 000 9
0302 90 000 0	0302 91 000 0
0303 11 000 0	0303 11 000 0 of 0303 99 000 1
0303 12 000 0	0303 12 000 0 of 0303 99 000 1
0303 13 000 0	0303 13 000 0 of 0303 99 000 2
0303 14 100 0	0303 14 100 0 of 0303 99 000 2
0303 14 900 0	0303 14 900 0 of 0303 99 000 2
0303 19 000 0	0303 19 000 0 of 0303 99 000 2

2012년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CU HS코드)	2017년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
0303 23 000 0	0303 23 000 0 of 0303 99 000 9
0303 24 000 0	0303 24 000 0 of 0303 99 000 9
0303 25 000 0	of 0303 25 000 0 of 0303 99 000 9
0303 26 000 0	0303 26 000 0 of 0303 99 000 7
0303 29 000 0	0303 29 000 0 of 0303 99 000 9
0303 31 100 0	0303 31 100 0 0303 99 000 8
0303 31 300 0	0303 31 300 0 of 0303 99 000 9
0303 31 900 0	0303 31 900 0 of 0303 99 000 6
0303 32 000 0	0303 32 000 0 of 0303 99 000 7
0303 33 000 0	0303 33 000 0 of 0303 99 000 9
0303 34 000 0	0303 34 000 0 of 0303 99 000 7
0303 39 100 0	0303 39 100 0 of 0303 99 000 7
0303 39 300 0	0303 39 300 0 of 0303 99 000 7
0303 39 500 0	0303 39 500 0 of 0303 99 000 1
0303 39 850 0	0303 39 850 0 of 0303 99 000 7
0303 41 900 0	0303 41 900 0 of 0303 99 000 9

2012년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CU HS코드)	2017년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
0303 42 900 0	0303 42 900 0 of 0303 99 000 9
0303 43 900 0	0303 43 900 0 of 0303 99 000 7
0303 44 900 0	0303 44 900 0 of 0303 99 000 7
0303 45 180 0	0303 45 180 0 of 0303 99 000 7
0303 45 990 0	0303 45 990 0 of 0303 99 000 7
0303 46 900 0	0303 46 900 0 of 0303 99 000 7
0303 49 850 0	0303 49 850 0 of 0303 99 000 7
0303 51 000 0	0303 51 000 0 of 0303 99 000 3
0303 53 100 0	0303 53 100 0 of 0303 99 000 9
0303 53 300 0	0303 53 300 0 of 0303 99 000 9
0303 53 900 0	0303 53 900 0 of 0303 99 000 9
0303 54 100 0	0303 54 100 0 of 0303 99 000 3
0303 54 900 0	0303 54 900 0 of 0303 99 000 3
0303 55 100 0	0303 55 100 0 of 0303 99 000 4
0303 55 300 0	0303 55 300 0 of 0303 99 000 9
0303 55 900 1	0303 55 900 2 of 0303 99 000 4

2012년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CU HS코드)	2017년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
0303 55 900 9	0303 55 900 8 of 0303 99 000 9
0303 56 000 0	0303 56 000 0 of 0303 99 000 9
0303 57 000 0	0303 57 000 0 of 0303 99 000 6
0303 63 100 0	0303 63 100 0 of 0303 99 000 6
0303 63 300 0	0303 63 300 0 of 0303 99 000 6
0303 63 900 0	0303 63 900 0 of 0303 99 000 6
0303 64 000 0	0303 64 000 0 of 0303 99 000 6
0303 65 000 0	0303 65 000 0 of 0303 99 000 6
0303 66 110 0	0303 66 110 0 of 0303 99 000 1
0303 66 120 0	0303 66 120 0 of 0303 99 000 1
0303 66 130 0	0303 66 130 0 of 0303 99 000 1
0303 66 190 0	0303 66 190 0 of 0303 99 000 1
0303 66 900 0	0303 66 900 0 of 0303 99 000 1
0303 67 000 0	0303 67 000 0 of 0303 99 000 7
0303 68 100 0	0303 68 100 0 of 0303 99 000 3
0303 68 900 0	0303 68 900 0 of 0303 99 000 7

2012년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CU HS코드)	2017년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
0303 69 100 0	0303 69 100 0 of 0303990007
0303 69 300 0	0303 69 300 0 of 0303990001
0303 69 500 0	0303 69 500 0 of 0303 99 000 7
0303 69 700 0	0303 69 700 0 of 0303 99 000 7
0303 69 800 0	0303 69 800 0 of 0303 99 000 7
0303 69 900 0	0303 69 900 0 of 0303 99 000 9
0303 81 100 0	0303 81 100 0 of 0303 92 000 0 of 0303990009
0303 81 500 0	0303 81 200 0 of 0303 92 000 0 of 0303 99 000 9
0303 81 600 0	0303 81 300 0 of 0303 92 000 0 of 0303 99 000 9
0303 81 900 0	0303 81 900 0 of 0303 92 000 0 of 0303 99 000 9
0303 82 000 0	0303 82 000 0 of 0303 99 000 9
0303 83 000 0	0303 83 000 0 of 0303 99 000 9
0303 84 100 0	0303 84 100 0 of 0303 99 000 6
0303 84 900 0	0303 84 900 0 of 0303 99 000 6

2012년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CU HS코드)	2017년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
0303 89 108 0	0303 89 106 0 of 0303 99 000 9
0303 89 109 0	of 0303 25 000 0 0303 89 107 0 of 0303 99 000 9
0303 89 210 1	0303 59 210 1 0303 89 210 3
0303 89 210 2	0303 59 210 2 0303 89 210 4
0303 89 210 9	0303 59 210 9 0303 89 210 8
0303 89 290 0	0303 59 290 0 0303 89 290 0 of 0303 99 000 4
0303 89 310 0	0303 89 310 0 of 0303 99 000 5
0303 89 390 0	0303 89 390 0 of 0303 99 000 5
0303 89 400 0	0303 89 400 0 of 0303 99 000 7
0303 89 450 0	0303 59 100 0 of 0303 99 000 7
0303 89 500 0	0303 89 500 0 of 0303 99 000 7
0303 89 550 0	0303 89 550 0 of 0303 99 000 9
0303 89 600 0	0303 89 600 0 of 0303 99 000 7
0303 89 650 0	0303 89 650 0 of 0303 99 000 7
0303 89 700 0	0303 89 700 0 of 0303 99 000 7

2012년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CU HS코드)	2017년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
0303 89 900 1	0303 59 900 1 of 0303 99 000 9
0303 89 900 2	0303 89 900 3 of 0303 99 000 1
0303 89 900 8	0303 59 900 9 0303 89 900 7 of 0303 99 000 9
0303 90 100 0	0303 91 100 0
0303 90 900 0	0303 91 900 0
0304 39 000 0	of 0304 39 000 0
0304 49 109 0	of 0304 39 000 0 0304 49 108 0
0304 49 900 0	0304 47 000 0 0304 48 000 0 0304 49 800 0
0304 51 000 0	of 0304 51 000 0
0304 59 100 0	of 0304 51 000 0 0304 59 200 0
0304 59 900 0	0304 56 000 0 0304 57 000 0 0304 59 800 0
0304 69 000 0	of 0304 69 000 0
0304 89 109 0	of 0304 69 000 0 0304 89 108 0
0304 89 510 0	0304 88 100 0
0304 89 550 0	0304 88 200 0
0304 89 590 0	0304 88 500 0
0304 89 900 0	0304 88 900 0 0304 89 800 0
0304 93 100 0	of 0304 93 200 0
0304 93 900 0	of 0304 93 800 0

2012년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CU HS코드)	2017년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
0304 95 500 0	0304 95 500 0 of 0304959000
0304 95 900 0	of 0304 95 900 0
0304 99 100 0	of 0304 93 200 0 0304 96 100 0 0304 97 100 0 0304991100
0304 99 210 0	of 0304 93 800 0 0304992200
0304 99 990 0	0304 96 900 0 0304 97 900 0 0304 99 980 0
0305 31 000 0	of 0305 31 000 0
0305 39 909 0	of 0305 31 000 0 0305 39 908 0
0305 44 900 0	of 0305 44 800 0
0305 49 809 0	of 0305 44 800 0 0305 49 808 0
0305 59 100 0	0305 53 100 0
0305 59 300 0	0305 54 100 0
0305 59 500 0	0305 54 200 0
0305 59 800 0	0305 52 000 0 0305 53 900 0 0305 54 900 0 0305 59 900 0
0305 64 000 0	of 0305 64 000 0
0305 69 800 0	of 0305 64 000 0 0305 69 700 0
0306 11 900 0	0306 11 050 0 0306 11 900 0
0306 12 100 0	0306 12 050 1 0306 12 100 0

2012년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CU HS코드)	2017년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
0306 12 900 0	0306 12 050 9 0306 12 900 0
0306 21 100 0	0306 91 100 0
0306 21 900 0	0306 31 000 0 0306 91 900 0
0306 22 100 0	0306 32 100 0
0306 22 300 0	0306 92 100 0
0306 22 910 0	0306 32 910 0 0306 92 910 0
0306 22 990 0	0306 32 990 0 0306 92 990 0
0306 24 100 0	0306 93 100 0
0306 24 300 0	0306 33 100 0 0306 93 910 0
0306 24 800 0	0306 33 900 0 0306 93 990 0
0306 25 100 0	0306 94 100 0
0306 25 900 0	0306 34 000 0 0306 94 900 0
0306 26 100 0	of 0306 95 100 0
0306 26 310 0	of 0306 35 100 0 of 0306 95 910 0
0306 26 390 0	of 0306 35 100 0 of 0306 95 910 0
0306 26 900 0	0306 35 900 0 of 0306 95 990 0
0306 27 100 0	of 0306 95 100 0
0306 27 910 0	0306 36 100 0 of 0306 95 990 0
0306 27 950 0	0306 36 200 0 of 0306 95 910 0

2012년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CU HS코드)	2017년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
0306 27 990 0	0306 36 900 0 of 0306 95 990 0
0306 29 050 0	0306 99 100 0
0306 29 810 0	0306 39 100 0 0306 99 910 0
0306 29 890 0	0306 39 900 0 0306 99 990 0
0307 19 100 0	0307 12 100 0 0307 19 910 0
0307 19 900 0	0307 12 900 0 0307 19 990 0
0307 29 050 0	0307 22 100 0 0307 29 200 0
0307 29 100 0	0307 22 910 0
0307 29 900 0	0307 22 990 0 0307 29 800 0
0307 39 050 0	0307 32 100 0 0307 39 200 0
0307 39 100 0	0307 32 910 0 0307 39 910 0
0307 39 900 0	0307 32 990 0 0307 39 990 0
0307 41 100 0	0307 42 110 0
0307 41 910 0	0307 42 910 0 0307 42 920 0
0307 41 990 0	0307 42 930 0
0307 49 050 0	of 0307 43 100 0 of 0307 49 050 0
0307 49 090 0	0307 43 110 0
0307 49 110 0	0307 43 130 0
0307 49 180 0	0307 43 150 0
0307 49 310 0	0307 43 310 0

2012년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CU HS코드)	2017년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
0307 49 330 0	0307 43 330 0
0307 49 350 0	0307 43 350 0
0307 49 380 0	0307 43 380 0
0307 49 510 0	0307 43 500 0
0307 49 590 0	0307 43 600 0
0307 49 910 0	0307 49 910 0
	0307 49 920 0
0307 49 990 0	0307 49 930 0
0307 59 050 0	0307 52 100 0
	0307 59 200 0
0307 59 100 0	0307 52 900 0
0307 59 900 0	0307 59 800 0
0307 79 100 0	0307 72 100 0
	0307 79 110 0
0307 79 900 1	0307 72 990 0
0307 79 900 9	0307 79 800 0
0307 89 100 0	0307 83 100 0
	0307 87 100 0
0307 89 900 1	0307 83 900 0
0307 89 900 9	0307 87 900 0
0307 91 000 0	0307 42 190 0
	0307 42 990 0
	0307 82 000 0
	0307 91 000 0
0307 99 100 0	of 0307 43 100 0
	of 0307 49 050 0
	0307 84 100 0
	0307 88 100 0
	0307 92 100 0
	0307 99 100 0
0307 99 110 0	0307 43 700 0
0307 99 130 0	0307 72 910 0

2012년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CU HS코드)	2017년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
	0307 43 190 0
0307 99 170 0	0307 43 900 0
	0307 84 900 0
	0307 92 900 0
	0307 49 800 0
0307 99 800 0	0307 49 980 0
	0307 88 900 0
	0307 99 700 0
0308 19 100 0	0308 12 100 0
	0308 19 200 0
0308 19 300 0	0308 12 900 0
0308 29 100 0	0308 22 100 0
	0308 29 200 0
0308 29 300 0	0308 22 900 0
0402 21 170 0	of 0402 21 180 0
0402 21 190 0	of 0402 21 180 0
0406 10 200 2	0406 10 500 1
0406 10 200 3	0406 10 500 2
0406 10 200 9	0406 10 300 0
	0406 10 500 9
0406 20 100 0	of 0406 20 000 0
0406 20 900 0	of 0406 20 000 0
0406 90 130 1	of 0406 90 130 0
0406 90 130 9	of 0406 90 130 0
0406 90 190 0	of 0406 90 890 0
0406 90 270 0	of 0406 90 920 0
0406 90 870 0	0406 90 740 0
	of 0406 90 890 0
0406 90 880 0	of 0406 90 920 0
0602 20 900 0	0602 20 200 0
	0602 20 300 0
	0602 20 800 0

2012년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CU HS코드)	2017년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
0602 90 490 0	0602 90 460 0 0602 90 470 0 0602 90 480 0
0603 19 800 0	0603 19 200 0 0603 19 700 0
0714 10 910 0	0714 10 000 1
0714 10 980 1	0714 10 000 2
0714 10 980 9	0714 10 000 9
0714 30 100 0	of 0714 30 000 0
0714 30 900 0	of 0714 30 000 0
0714 40 100 0	of 0714 40 000 0
0714 40 900 0	of 0714 40 000 0
0714 50 100 0	of 0714 50 000 0
0714 50 900 0	of 0714 50 000 0
0714 90 120 0	of 0714 90 200 0
0714 90 180 0	of 0714 90 200 0
0805 20 100 0	0805 22 000 0
0805 20 300 0	of 0805 21 000 0 of 0805 29 000 0
0805 20 500 0	of 0805 21 000 0 of 0805 29 000 0
0805 20 700 0	of 0805 21 000 0
0805 20 900 0	of 0805 29 000 0
0812 90 100 0	of 0812 90 250 0
0812 90 200 0	of 0812 90 250 0
1005 10 110 0	1005 10 180 1
1005 10 190 0	1005 10 180 9
1103 19 100 0	of 1103 19 200 0
1103 19 300 0	of 1103 19 200 0
1103 20 100 0	of 1103 20 250 0
1103 20 200 0	of 1103 20 250 0
1104 22 200 0	of 1104 22 400 0

2012년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CU HS코드)	2017년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
1104 22 300 0	of 1104 22 400 0
1104 22 900 0	of 1104 22 950 0
1104 22 980 0	of 1104 22 950 0
1104 23 100 0	of 1104 23 400 0
1104 23 300 0	of 1104 23 400 0
1104 23 900 0	of 1104 23 980 0
1104 23 990 0	of 1104 23 980 0
1104 29 010 0	of 1104 29 040 0
1104 29 030 0	of 1104 29 040 0
1104 29 070 0	of 1104 29 080 0
1104 29 090 0	of 1104 29 080 0
1104 29 110 0	of 1104 29 170 0
1104 29 180 0	of 1104 29 170 0
1209 29 100 0	of 1209 29 450 0
1209 29 350 0	of 1209 29 450 0
1209 91 100 0	of 1209 91 800 0
1209 91 900 0	of 1209 91 800 0
1211 20 000 0	of 1211 20 000 0
1211 30 000 0	of 1211 30 000 0
1211 40 000 0	of 1211 40 000 0
1211 90 300 0	of 1211 90 400 0
1211 90 850 1	of 1211 90 860 1
1211 90 850 9	of 1211 50 000 0 of 1211 90 860 9
1302 19 800 0	1302 14 000 0 1302 19 900 0
1404 90 000 9	of 1211 30 000 0 of 1211 40 000 0 of 1211 50 000 0 of 1211 90 400 0 of 1211 90 860 9 1404 90 000 8

2012년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CU HS코드)	2017년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
1602 31 300 0	of 1602 31 800 0
1602 31 900 0	of 1602 31 800 0
1602 39 400 0	of 1602 39 850 0
1602 39 800 0	of 1602 39 850 0
1602 90 720 0	of 1602 90 910 0
1602 90 740 0	of 1602 90 950 0
1602 90 760 0	of 1602 90 910 0
1602 90 780 0	of 1602 90 950 0
1604 14 110 0	1604 14 210 0 1604 14 310 0 1604 14 410 0
1604 14 160 0	1604 14 260 0 1604 14 360 0 1604 14 460 0
1604 14 180 0	1604 14 280 0 1604 14 380 0 1604 14 480 0
1604 19 979 0	1604 18 000 0 1604 19 978 0
1605 54 000 0	of 1605 54 000 0
1605 59 000 0	of 1605 54 000 0 1605 59 000 0
2001 90 600 0	of 2001 90 920 0
2001 90 910 0	of 2001 90 920 0
2005 99 400 0	of 2005 99 800 0
2005 99 900 0	of 2005 99 800 0
2008 19 110 0	2008 19 120 0 2008 97 030 0
2008 19 910 1	2008 19 920 1
2008 19 910 9	2008 19 920 9 2008 97 050 0
2008 50 940 0	of 2008 50 980 0

2012년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CU HS코드)	2017년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
2008 50 990 0	of 2008 50 980 0
	of 1211 20 000 0
2008 99 990 0	of 1211 90 860 1
	of 1211 90 860 9
	2008 99 980 0
2009 41 100 1	of 2009 41 920 1
2009 41 100 9	of 2009 41 920 9
	of 2009 41 920 1
2009 41 910 0	of 2009 41 920 9
2009 79 930 0	2009 79 980 1
2009 79 990 1	2009 79 980 2
2009 79 990 9	2009 79 980 9
2202 90 100 1	2202 91 000 0
	2202 99 110 0
2202 90 100 9	2202 99 150 0
	2202 99 190 0
2202 90 910 0	2202 99 910 0
2202 90 950 0	2202 99 950 0
2202 90 990 0	2202 99 990 0
	2204 22 100 0
2204 29 100 0	2204 29 050 0
	2204 22 110 0
2204 29 110 9	2204 29 110 8
	2204 22 120 0
2204 29 120 9	2204 29 120 8
	2204 22 130 0
2204 29 130 9	2204 29 130 8
	2204 22 170 0
2204 29 170 9	2204 29 170 8
	2204 22 180 0
2204 29 180 9	2204 29 180 8

2012년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CU HS코드)	2017년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
2204 29 420 9	2204 22 420 0 2204 29 420 8
2204 29 430 9	2204 22 430 0 2204 29 430 8
2204 29 440 9	2204 22 440 0 2204 29 440 8
2204 29 460 9	2204 22 460 0 2204 29 460 8
2204 29 470 9	2204 22 470 0 2204 29 470 8
2204 29 480 9	2204 22 480 0 2204 29 480 8
2204 29 580 9	2204 22 580 0 2204 29 580 8
2204 29 790 9	2204 22 790 0 2204 29 790 8
2204 29 800 9	2204 22 800 0 2204 29 800 8
2204 29 810 9	2204 22 810 0 2204 29 810 8
2204 29 820 9	2204 22 820 0 2204 29 820 8
2204 29 830 9	2204 22 830 0 2204 29 830 8
2204 29 840 9	2204 22 840 0 2204 29 840 8
2204 29 850 9	2204 22 850 0 2204 29 850 8
2204 29 860 9	2204 22 860 0 2204 29 860 8
2204 29 870 9	2204 22 870 0 2204 29 870 8

2012년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CU HS코드)	2017년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
2204 29 880 9	2204 22 880 0 2204 29 880 8
2204 29 890 9	2204 22 890 0 2204 29 890 8
2204 29 900 9	2204 22 900 0 2204 29 900 8
2204 29 910 9	2204 22 910 0 2204 29 910 8
2204 29 920 9	2204 22 920 0 2204 29 920 8
2204 29 930 9	2204 22 930 0 2204 29 930 8
2204 29 940 9	2204 22 940 0 2204 29 940 8
2204 29 950 9	2204 22 950 0 2204 29 950 8
2204 29 960 9	2204 22 960 0 2204 29 960 8
2204 29 970 9	2204 22 970 0 2204 29 970 8
2204 29 980 9	2204 22 980 0 2204 29 980 8
2309 90 950 0	2309 90 960 1
2309 90 990 0	2309 90 960 9

제2절 검역제도

목재포장재 관리 강화

- 최근 유럽연합 수입 목재포장재(HS코드 4415)에서 소나무재선충(*Brusaphelenchus*

xylophilus) 검출이 빈번해진 관계로, 러시아 동식물검역국은 러시아 산림과 생태 환경 보존 및 수출잠재력 보존을 위해 목재포장재 관리를 강화함

- 독립적인 상품으로서 목재포장재(EEU HS코드 4415) 반입 시, 국경검문소는 실제 관리(검역식물위생관리)를 위해 상품을 동식물검역국에 발송
- 상품의 패키지로서 목재포장재 반입 시, 발송국가 및(또는) 원산지국가가 소나무재선충 확산국가(중국,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일본, 한국, 대만)인 경우, 국경검문소는 실제관리(검역식물위생관리)를 위해 상품을 동식물검역국에 통보 혹은 발송
- 세관은 상품의 검사(육안검사) 관련 작업 시행 시,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ISPM) No.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 따른 표시가 없는 목재포장재를 발견할 경우에 실제관리(검역식물위생관리)를 위해 상품을 동식물검역국에 발송
- 동식물검역국은 소나무재선충(*Brusaphelenchus xylophilus*)에 대한 검역식물위생관리 시행 시, “2010년 12월 1일자 전러시아식물검역센터 표준 STO VNIKR 6.003-2010”을 지침으로 삼고 동식물검역국 사이트 시범동영상 “유해생물체 유입의 원천으로서 목재포장재” 정보를 이용
 - 표준 STO VNIKR:
<http://www.fsvps.ru/fsvps-docs/ru/news/files/17683/list.pdf>
 - 시범동영상: <http://www.fsvps.ru/fsvps/news/17669.html>
- 소나무재선충은 러시아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입 확산되는 경우 직간접적인 손실은 연간 470억~1,120억 루블(한화 약 8,272억~1조9,71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감염원은 크리스마스트리의 나뭇가지, 재식재료, 침엽수류의 목재(톱밥, 삭편상의 목재 등의 목재의 웨이스트 포함), 목재포장재임
- 기주식물은 거의 모든 침엽수 종(*Pinus*, *Picea*, *Abies*, *Cedrus*, *Larix*, *Chamaecyparis*, *Pseudotsuga*)이 해당되며, 현재 소나무재선충은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대만, 한국, 멕시코, 일본에 등록되어있음

- 참고: 일반 러시아 목재포장재 식물위생요건
 -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No.318(10.06.18) “관세동맹의 관세국경과 관세동맹의 관세영역에서 검역식물위생관리(감독)를 받아야 하는 규제제품(규제화물, 규제물질, 규제상품) 목록”에 따르면, HS코드 4415(나무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나무로 만든 케이블드럼, 나무로 만든 팻릿·박스팻릿, 그 밖의 깔판류와 나무로 만든 팻릿칼러 / 독립적인 상품이거나 따로 신고하는 것에 한함)에 속하는 규제제품은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규제제품으로 분리됨
 - 러시아연방 농업부령 No.456(10.12.29) “러시아연방 영토로 규제제품 반입, 보관, 운송, 가공, 사용 시 식물검역규정”에 따르면, 러시아 영토로 반입되는 목재포장재(수리된 목재포장재의 부분 포함)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독 처리되어야 하며 인증 표시가 있어야 함
 -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식물위생관리(감독) 시행 시, 식물위생증명서 제출은 요구되지 않음
 - 동식물검역국의 공무원들은 목재포장재 검사 시, 국제기준(ISPM No.15)에 따른 표시가 있는지 확인함. 표시 부재 시, 목재포장재의 반입은 검역식물위생관리 결과에 따라 허용되고 있음
 - 소독처리, 반환 또는 폐기되어야 하는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이 발견된 순간부터 적합한 식물위생조치들이 적용되기 전까지 병해충이 확산될 수 없는 조건 하에 보관되어야 함
 - 목재포장재의 러시아연방 반입 허가는 상품첨부서류에 날짜와 함께 인장 및 서명이 들어간 스탬프를 찍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시사점: 6월 말, 목재포장재 관리강화에 관한 동식물검역국의 지시가 처음 내려졌으나 지역동식물검역국과 지역세관에 지시사항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으며, 늦은 발표와 공문 표현이 모호하여 아직 제대로 숙지되지 못함
 - 한국은 소나무재선충 확산국가에 해당하므로 한국에서 수출할 경우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식물위생관리(검사)를 받게 되니 이번 조치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 러시아 측에서 한국 수출업체에 목재포장재에 대한 식물위생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러시아연방 농업부령 No.456에 따라 독립적인 상품이 아닌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식물위생관리(감독) 시행 시, 식물위생증명서 제출이 요

구되지 않는 점과 ISPM No.15 표식으로 같음되는 점을 러시아 측에 상기시켜줄 필요 있음

□ 관세동맹 식물검역 절차 개정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No.318('10.06.18)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관세동맹에서의 식물검역 절차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 식물위생검역관리(감독)를 받아야 하는 규제제품(규제화물, 규제재료, 규제상품) 목록에서 개정 사항 : 일부 하위품목 코드를 더 세부적으로 서술 (예를 들어, HS코드 '3203 00중에서'라는 단어 대신에 '3203 00 100 9중에서'라는 단어로 교체)
 - 관세동맹의 관세국경에서 식물위생검역관리(감독) 절차에 관한 조항과 관세동맹의 관세영역에서 식물위생검역관리(감독) 절차에 관한 조항에서 개정 사항 : 용어 정의 부분 개정, 일부 표현 및 단어 등 수정 (예를 들어, '관세동맹'이라는 단어 대신에 '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 교체, '관세동맹(CU) HS코드'라는 단어 대신에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HS코드'로 교체 등)
- 본 결정 No.8('16.02.12)은 공보 게재일로부터 30일 후 발효될 예정으로, 2016년 3월 18일 공보 게재되어 4월 17일부터 발효

□ 러시아 국경 검문소에서 국가검역식물위생관리 신규 규정 승인

-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창설과 관련하여, 러시아 국경 검문소 국가검역식물위생관리(감독) 규정 갱신
- 신규 규정은 2014년 7월 21일자 식물검역연방법 No.206-FZ를 이행하기 위해 러시아 농업부가 준비함
- 국가검역식물위생관리는 검역식물위생관리(감독)를 받아야 하는 규제제품에 대해 검문소에서 시행됨
- 국가검역식물위생관리는 동식물검역국과 지역동식물검역국, 세관기관이 수행함. 검

문소에서 규제제품에 대한 서류검사는 세관기관이 수행함

- 규제제품 반입 시, 세관에서 운송인이 제출하는 서류 목록은 변경되지 않음
- 정밀검사는 식물위생에 대한 위험이 높은 규제제품에 대해 실시됨
- 식물위생에 대한 위험이 낮은 규제제품과 그 패키지에 대한 육안검사 시, 검역대상(병해충)과 유사한 생물체, 병징 또는 검역대상(병해충)에 의한 규제제품 피해 표조가 발견되는 경우 식물위생에 대한 위험이 낮은 규제제품과 그 패키지에 대해서도 정밀검사가 실시됨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검역식물위생요건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국경과 관세영역 규제제품 및 규제대상의 통합검역식물위생요건 승인’ 결정안 통과
- 본 명령 No.151(16.09.27)은 2016년 9월 30일 공보 게재되어 10일 경과 후 발효
- 이는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 중 통합요건 제20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제20항은 토양을 함유하는 영양혼합물 및 토양덩어리가 있는 식물, 토양기질이 있는 화분식물 반입 및 영토 내 이동은 검역대상 무발생 생산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부터 허용된다는 조항임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검역대상목록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검역대상목록 승인’ 결정안 통과
- 본 명령 No.150(16.09.27)은 2016년 9월 30일 공보 게재되어 10일 경과 후 발효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검역대상목록 승인’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검역식물위생요건 발효일(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검역대상목록 〉

I. 유라시아경제연합 영토에 부재하는 검역유해생물체

곤충 및 응애

1. *Acleris gloverana* (Walsingham)
2. *Acleris variana* (Fernald)
3. *Agrilus anxius* Gory
4. *Nemorimyza maculosa* (Malloch)
5. *Anoplophora chinensis* (Forster)
6. *Anoplophora glabripennis* (Motschulsky)
7. *Bactrocera cucurbitae* (Coquillett)
8. *Blissus leucopterus* (Say)
9. *Callosobruchus* spp.
10. *Caulophilus latinasus* (Say)
11. *Ceroplastes rusci* (Linnaeus)
12. *Choristoneura fumiferana* (Clemens)
13. *Choristoneura occidentalis* Freeman
14. *Chrysodeixis eriosoma* (Doubleday)
15. *Conotrachelus nenuphar* (Herbst)
16. *Corythucha arcuata* (Say)
17. *Dendroctonus brevicomis* Le Conte
18. *Dendroctonus ponderosae* Hopkins
19. *Dendroctonus rufipennis* (Kirby)
20. *Dendroctonus valens* Le Conte
21. *Diabrotica barberi* Smith & Lawrence
22. *Diabrotica virgifera virgifera* Le Conte
23. *Drosophila suzukii* (Matsumura)
24. *Echinothrips americanus* Morgan
25. *Epitrix cucumeris* Harris
26. *Epitrix tuberis* Gentner
27. *Frankliniella fusca* (Hinds)
28. *Frankliniella insularis* (Franklin)
29. *Frankliniella tritici* (Fitch)
30. *Frankliniella schultzei* (Trybom)
31. *Frankliniella williamsi* Hood

-
32. *Halymorpha halys* St I
 33. *Helicoverpa zea* (Boddie)
 34. *Ips calligraphus* (Germar)
 35. *Ips grandicollis* (Eichhoff)
 36. *Ips pini* (Say)
 37. *Ips plastographus* (Le Conte)
 38. *Leptoglossus occidentalis* Heidemann
 39. *Liriomyza huidobrensis* Blanchard
 40. *Liriomyza langei* Frick
 41. *Liriomyza nitzkei* Spencer
 42. *Liriomyza sativae* Blanchard
 43. *Liriomyza trifolii* (Burgess)
 44. *Margarodes vitis* (Philippi)
 45. *Megaselia scalaris* (Loew)
 46. *Monochamus alternatus* Hope
 47. *Monochamus carolinensis* (Olivier)
 48. *Monochamus clamator* Le Conte
 49. *Monochamus marmorator* Kirby
 50. *Monochamus mutator* Le Conte
 51. *Monochamus notatus* (Drury)
 52. *Monochamus obtusus* Casey
 53. *Monochamus scutellatus* (Say)
 54. *Monochamus titillator* (Fabricius)
 55. *Pantomorus leucoloma* Boheman
 56. *Pectinophora gossypiella* (Saunders)
 57. *Premnotrypes* spp.
 58. *Pseudaulacaspis pentagona* (Targioni-Tozzetti)
 59. *Pseudococcus citriculus* Green
 60. *Rhagoletis mendax* Curran
 61. *Rhagoletis pomonella* Walsh
 62. *Rhizoecus hibisci* Kawai & Takagi
 63. *Saperda candida* Fabricius
 64. *Scirtothrips citri* (Moulton)
 65. *Scirtothrips dorsalis* Hood
-

-
66. *Spodoptera eridania* (Cramer)
 67. *Spodoptera frugiperda* (Smith)
 68. *Spodoptera littoralis* (Boisduval)
 69. *Spodoptera litura* (Fabricius)
 70. *Tecia solanivora* (Povolny)
 71. *Tetranychus evansi* Baker and Pritchard
 72. *Thrips hawaiiensis* Morgan
 73. *Thrips palmi* Karny
 74. *Trogoderma granarium* Everts
 75. *Tuta absoluta* (Povolny)
 76. *Zygogramma exclamationis* (Fabricius)
- 선충
77. *Bursaphelenchus xylophilus* (Steiner & Buhner) Nickle
 78. *Globodera pallida* (Stone) Behrens
 79. *Meloidogyne chitwoodi* Golden, O'Bannon, Santo & Finley
 80. *Meloidogyne fallax* Karszen
- 진균
81. *Atropellis pinicola* Zeller & Goodding
 82. *Atropellis piniphilla* (Weir.) Lohman & Cash
 83. *Ceratocystis fagacearum* (Bretz.) Hunt
 84. *Chalara fraxinea* T. Kowalski
 85. *Ciborinia camelliae* Koch
 86. *Cochliobolus carbonum* R.R. Nelson
 87. *Diaporthe vaccinii* Shear
 88. *Glomerella gossypii* (South) Edgerton
 89. *Monilinia fructicola* (Winter) Honey
 90. *Mycosphaerella dearnessii* M.E. Bar
 91. *Phymatotrichopsis omnivora* (Duggar) Hennebert
 92. *Phytophthora alni* Brasier & S.A. Kirk
 93. *Phytophthora kernoviae* Brasier
 94. *Phytophthora ramorum* Weres et al.
 95. *Puccinia pelargonii-zonalis* Doidge
 96. *Thecaphora solani* Thirum et O'Breien
 97. *Tilletia indica* Mitra
-

-
- 98. *Sirococcus clavigignenti-juglandacearum* Nair, Kostichka & Kunt
 - 99. *Stenocarpella macrospora* (Earle) Sutto
 - 100. *Stenocarpella maydis* (Berkeley) Sutton
세균 및 파이토플라즈마
 - 101. *Acidovorax citrulli* (Shaad et al.)
 - 102. *Rathayibacter tritici* (Carlson & Vidaver) Zgurskaya et al.
 - 103. *Pantoea stewartii* subsp. *stewartii* (Smith) Mergaert et al.
 - 104. *Candidatus Phytoplasma vitis*
 - 105. *Xylophilus ampelinus* (Panagopoulos) Willems et al.
 - 106. *Xanthomonas axonopodis* pv. *allii*(Roumagnacetal.,2004a)
 - 107. *Xanthomonas oryzae* pv. *oryzae* (Ishiyama) Swings et al.
 - 108. *Xanthomonas oryzae* pv. *oryzicola* (Fang et al.) Swings et al.
 - 109. *Ralstonia solanacearum* (Smith) Yabuuchi et al.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 110. Cherry rasp leaf cheravirus
 - 111. Peach latent mosaic viroid
 - 112. Peach rosette mosaic nepovirus
 - 113. Andean potato latent tymovirus
 - 114. Andean potato mottle comovirus
 - 115. Potato T tepovirus
 - 116. Potato yellowing alfamovirus
 - 117. Tomato yellow leaf curl begomovirus
식물
 - 118. *Bidens pilosa* L.
 - 119. *Euphorbia dentata* Michx.
 - 120. *Helianthus californicus* DC.
 - 121. *Helianthus ciliaris* DC.
 - 122. *Ipomoea hederacea* L.
 - 123. *Ipomoea lacunosa* L.
 - 124. *Iva axillaris* Pursh.
 - 125. *Solanum carolinense* L.
 - 126. *Solanum elaeagnifolium* Cav.
 - 127. *Striga* spp.
-

II. 유라시아경제연합 영토에 제한적으로 확산되어있는 검역유해생물체

곤충

128. *Agrilus mali* (Motschulsky)
129. *Agrilus planipennis* Fairmaire
130. *Bemisia tabaci* Gennadius
131. *Carposina niponensis* Wsingham
132. *Ceratitis capitata* (Wiedemann)
133. *Ceroplastes japonicus* Green
134. *Chrysodeixis chalcites* (Esper)
135. *Corythucha ciliata* Say
136. *Dendrolimus sibiricus* Chetverikov
137. *Dendroctonus micans* (Kugelmann)
138. *Epilachna vigintioctomaculata* Motschulsky
139. *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ande
140. *Grapholita molesta* (Busck)
141. *Hyphantria cunea* Drury
142. *Lopholeucaspis japonica* (Cockerell)
143. *Lymantria dispar asiatica* Vnukovskij
144. *Monochamus galloprovincialis* (Olivier)
145. *Monochamus impluviatus* Motschulsky
146. *Monochamus nitens* Bates
147. *Monochamus saltuarius* Gebler
148. *Monochamus sutor* Linnaeus
149. *Monochamus urussovii* (Fischer v. Waldheim)
150. *Myiopardalis pardalina* (Bigot)
151. *Numonia pyrivorella* (Matsumura)
152. *Phthorimaea operculella* (Zeller)
153. *Polygraphus proximus* Blandford
154. *Popillia japonica* Newman
155. *Pseudococcus comstocki* (Kuwana)
156. *Quadraspidiotus perniciosus* Comst.
157. *Viteus vitifoliae* Fitch.

선충

158. *Globodera rostochiensis* (Wollenweber) Behrens

진균

- 159. *Cercospora kikuchii* (T. Matsu & Tomoyasu) Gardn.
- 160. *Colletotrichum acutatum* Simmonds (= *C.xanthii*Halsted)
- 161. *Diaporthe helianthi* Munt.-Cvet. et al.
- 162. *Didymella ligulicola* (K.F. Baker, Dimock & L.H. Davis) von Arx
- 163. *Phytophthora fragariae* Hickman
- 164. *Puccinia horiana* Henn.
- 165. *Synchytrium endobioticum* (Schilbersky) Percival

세균 및 파이토플라즈마

- 166. Candidatus *Phytoplasma mali*
- 167. *Erwinia amylovora* (Burrill) Winslow et al.
- 168. Candidatus *Phytoplasma pyri*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 169. Beet necrotic yellow vein benyvirus
- 170. *Impatiens necrotic spot tospovirus*
- 171. Plum pox potyvirus
- 172. Potato spindle tuber viroid
- 173. Tobacco ringspot nepovirus
- 174. Tomato ringspot nepovirus

식물

- 175. *Acroptilon repens* DC
- 176. *Ambrosia artemisiifolia* L.
- 177. *Ambrosia psilostachya* DC.
- 178. *Ambrosia trifida* L.
- 179. *Cenchrus longispinus* (Hack.) Fern
- 180. *Cuscuta* spp.
- 181. *Solanum rostratum* Dun.
- 182. *Solanum triflorum* Nutt.

동식물검역국 권한에 관한 조항 개정

- 러시아정부, 정부결의 No.327(04.06.30)에 의해 승인된 동식물검역국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동식물검역국의 권한을 더 명확하게 함

- 동식물검역국의 권한
 - 해항과 어선단 선박에서의 생산 활동에 대한 국가식물위생검역관리(감독) 실현
 - 감독 대상인 화물 운송 시에 화물에 대한 증명서와 재수출식물위생허가서(증명서) 발급
 - 러시아연방 영토의 식물위생검역상태 모니터링
 - 전산화된 식물위생검역지역들에 대한 개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규제제품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검역대상들의 확산이 밝혀진 외국에서부터 러시아로 반입된 규제제품의 파종 및 재식 관리
 - 식물위생 위험 분석 실시
 - 긴급 식물위생검역조치 도입, 변경, 폐지
 -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협약들에 의거하여, 규제제품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검역대상들의 확산이 밝혀진 곳에서 파종 및 재식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러시아연방으로 반입되는 규제제품의 외국 영토 내 생산(가공) 장소, 선적 장소에서 현장관리
 - 식물위생서류 발급 및 등록, 식물검역분야 실험실검사 결과, 식물위생검역 소독처리 업무 수행권리 라이선스 등 연방국가정보시스템 관리
 - 검역대상들의 생존력을 상실시키는 기술을 사용하는 규제대상들을 등록부에 등재
 - 검역식물위생지역 설정 및 폐지, 검역식물위생체제 도입 및 취소, 검역대상 발생지 제한 및 검역대상 개체군 박멸을 위한 조치 실현
- 본 결의 No.99(06.02.13)는 2016년 2월 25일 발효

□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에 관한 유라시아경제연합 기술규제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 기술규제’ 결정안 승인
-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 기술규제’는 2017년 9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해당 결정 중 동물성장촉진제(호르몬제 포함) 및 동물의약품(항미생물제 포함) 등의 잔류함량, 동물성식품에서 클로람페니콜(테트라사이클린 그룹과 바시트라신) 관련 조항은 해당 발효일에서 제외. 테스트 방법 및 규정에 대한 국가간 표준을 개발한 후에 발효할 계획

- 본 명령 No.53('16.04.19)은 유라시아경제연합 공식홈페이지 게재일로부터 발효될 예정임

□ 유제품 및 육류제품에 대한 기술규제 과도기 만료

- 관세동맹의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기술규제(TR CU 033/2013)'와 '육류 및 육류제품 안전 기술규제(TR CU 034/2013)'에 적용되던 과도기가 2015년 12월 31일 만료
- 관세동맹의 법률 또는 회원국들의 법에 의해 2014년 5월 1일 이전에 정립된 강제요건들에 입각하여 관세동맹의 관세영역에서 제품을 생산 및 유통하는 것은 2016년 1월 1일부터 허용되지 않음
 - 상기 기술규제의 발효일 이전에 발행 및 채택된 제품 적합성 평가(확인)에 관한 문서들은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 상실
- 2016년 1월 1일부터 관세동맹의 관세영역에서 유통되는 모든 유제품 및 육류제품은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기술규제(TR CU 033/2013)'와 '육류 및 육류제품 안전 기술규제(TR CU 034/2013)'에 의해 정립된 강제요건들에 부합해야 함
- 기술규제 요건들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은 관세동맹 회원국들의 시장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품 유통마크 'EAC'로 라벨링 표기를 해야 함

□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기술규제' 개정안

- 러시아연방 농업부는 환원우유 정의를 위한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기술규제(TR CU 033/2013)' 개정안 마련
- 개정안 문서에 대하여 2016년 4월 29일~7월 13일간 공개토론 진행
- 주요 개정 내용
 - 환원우유가 소비자 용기에 포장된 유제품에 해당, 환원우유에 대한 조건 승인
 - 기술규제에 첨부되어있는 다음의 4개 별첨 수정
 - 별첨 No.1 '우유가공품을 식별하는 물리-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지표'

- 별첨 No.3 '우유가공품을 식별하는 감각기관에 의하여 알아내는 지표'
 - 별첨 No.8 '유통 시 우유가공품에서 미생물 함량 허용치'
 - 별첨 No.13 '미취학 및 취학 아동을 위한 우유를 기반으로 하는 어린이식품을 식별하는 물리-화학적 지표'
 - '드링킹우유'라는 단어는 '드링킹우유, 환원우유'로 대체
- 개정안이 승인될 경우, 채택일로부터 6개월 후 발효 예상

□ 적합성신고 필수 주스제품 목록 수정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No.76('14.05.26) 개정
 - '과실 및 채소 주스제품 기술규제(TR CU 023/2011)'에 따라 세관신고 시 적합성평가(확인)서류 제출이 필요한 제품 목록 승인
- 해당 개정에 관한 결정 No.70은 2016년 6월 15일 발표되어 7월 15일 발효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결정문 제목에서 '확인'이라는 단어 삭제
 - '또는 그와 같은 서류에 관한 정보'라는 표현 추가 : 세관 관리 시, 적합성평가서류 자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서류 정보를 제출해야 함이 명확해짐
 - 감귤류 세포(cells), 과실 및 채소 과육, 과실 및 채소 껍데의 경우, EEU HS코드 수 증가
- 주스제품 적합성평가서류 형태는 변경되지 않음: 적합성신고서(Conformity declaration)
- 세관에서 TR CU 023/2011에 따라 적합성평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주스제품 목록이 아래표(개정판)에 기술되어 있음
 - 과실-채소 혼합피레(EEU HS코드 2104 20 009 0중에서)가 목록에 추가됨
 - 유라시아경제연합 영토 내 유통 과실 및 채소 주스제품은 적합성평가서류 제출이 필요하나 가정에서 개인 생산 주스제품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새로운 형태의 주스제품과 전문식품에 해당되는 주스제품은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 양식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함

- 이와 같은 주스, 넥타, 모르스(Mors)¹⁾, 푸레의 경우, 전문식품 통합 등록부/새로운 형태의 식품 통합 등록부에 충분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따로 적합성신고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음

■ 적합성평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제품목록 ■

품명	EEU HS코드	제출서류	참조
1	2	3	4
과실 및(또는) 채소 주스(토마토 제외): 압착주스, 환원주스, 농축주스, 침출주스(농축침출주스 포함) 포함	of 2009	적합성신고서	○ 전문식품으로 분리되는 주스는 국가 전문식품등록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적합성신고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음 ○ 새로운 형태의 식품으로 분리되는 주스는 새로운 형태의 식품으로 국가등록이 되어있으면 적합성신고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음
과실 및(또는) 채소 넥타	of 2202 90 100 9	적합성신고서	
과실 및(또는) 채소 주스함유음료	of 2202 90 100 9	적합성신고서	
모르스(Mors: non-carbonated Russian fruit drink)	of 2202 90 100 9	적합성신고서	
농축 모르스	of 2009 of 2106 90 980 9	적합성신고서	
과실 및(또는) 채소 푸레(토마토 제외), 농축 과실 및(또는) 채소 푸레(토마토 제외)	of 2004 90	적합성신고서	
	of 2005 10 009 0		
	of 2005 80 000 0		
	of 2005 99 100 0		
	of 2005 99 400 0		
	of 2005 99 500 0		
	of 2005 99 900 0		
	of 2007 10 109 0		
	of 2007 10 919 0		
	of 2007 10 999 0		
of 2007 91			
of 2007 99 100 0			
of 2007 99 310 0			
of 2007 99 330 0			
of 2007 99 350 0			
of 2007 99 390 1			
of 2007 99 500 1			
of 2007 99 500 2			
of 2007 99 930 0			
of 2007 99 970 1			
of 2007 99 970 2			

1) 러시아 전통 과실주스

품명	EEU HS코드	제출서류	참조
토마토주스, 토마토피레, 농축토마토 피레(페이스트)	of 2002 90 2009 50	적합성신고서	
농축천연향 과실 또는 채소 물질	of 2106 90 200 0 of 2106 90 980 9 of 3302 10 100 0 of 3302 10 210 0 of 3302 10 290 0 of 3302 10 400 0	적합성신고서	
감귤류 cells ²⁾ , 과실 및(또는) 채소 과 육 ³⁾	of 2002 of 2004 of 2005 of 2008 20 510 0 - 2008 20 900 0 of 2008 30 510 0 - 2008 30 900 9 of 2008 40 510 0 - 2008 40 900 0 of 2008 50 610 0 - 2008 50 990 0 of 2008 60 500 1 - 2008 60 900 0 of 2008 70 610 0 - 2008 70 980 9 of 2008 80 500 0 - 2008 80 900 0 of 2008 93 910 0 - 2008 93 990 0 of 2008 97 510 0 - 2008 97 980 0 of 2008 99 410 0 - 2008 99 990 0 of 2106 90 980 9	적합성신고서	
과실-채소 혼합피레	of 2104 20 009 0	적합성신고서	

2) 감귤류과실의 세포(cells)는 수많은 박막으로 덮인 구조들을 말함. 이것은 즙을 함유하거나 또는 즙을 함유하지 않으며, 감귤류과실의 먹을 수 있는 부분의 내부 구성성분을 형성하며 감귤류과실의 표피세포와 아표피(subepidermal) 세포로 구성됨. 감귤류과실의 세포는 명칭이 동일한 주스, 과실넵타 및(또는) 채소넵타에 첨가 가능하며, 감귤류과실로 만든 동일 명칭 주스를 사용하여 생산한 과실 및(또는) 채소 주스함유음료에 첨가 가능함

3) 과실 및(또는) 채소 과육은 가공 과정에서 과실 또는 채소의 분쇄된 식물성조직의 용해되지 않고 부유하는 입자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말함. 감귤류과실의 과육은 감귤류과실의 세포를 함유할 수 있음

□ '식품 안전 기술규제' 개정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명령 No.76('16.06.07)에 따라 '식품 안전 기술규제(TR CU 021/2011)' 개정
 - 오류 제거 등 기술규제의 개별 조항 수정
- 주요 개정 내용
 - 별첨 No.2 '미생물 안전기준'에 나오는 표1에서 제1.3항의 기존 명칭 '곡물(종자), 밀가루-곡물제품 및 베이커리제품'을 '밀가루-곡물제품 및 베이커리제품'으로 변경, 제1.6항의 기존 명칭 '기름원료 및 유지제품'을 '유지제품'으로 변경
 - '1.10. 임산부 및 수유여성을 위한 식품'과 '1.13. 어린이, 미숙아, 저체중 어린이를 위한 식이치료용 전문식품' 부분 삭제
 - 밀가루-곡물제품 및 베이커리제품에 대한 위생안전요건은 별첨 No.3 제4항에 기술
 - 별첨 No.7의 제1.1항 '항정신성, 마약성의 강하거나 독성이 있는 물질을 함유하는 식물 및 식물가공품'을 위해 새로운 항목 도입

□ 유전자변형 동식물의 재배 및 번식 금지

- 유전공학분야 국가규제에 관한 연방법 No.86-FZ('96.07.05)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환경방출에 대한 관리 도입
 - GMO 및 GMO 사용품 또는 GMO 함유제품의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 러시아 내 유전자변형 동식물의 재배 및 번식 금지. *감정 및 학술연구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외
 - GMO 및 관련제품의 수입업체는 반드시 등록절차를 통과해야 함. 러시아정부는 GMO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GMO 및 GMO 제품 반입을 금지할 수 있음
 -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이 요구되는 경우 국가등록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국가등록증명서(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 유효기간이 종료된 GMO 및(또

는) GMO 사용품 또는 GMO 함유제품에 대해 벌금부과 : 공무원 1만~5만 루블, 업체(법인) 10만~50만 루블

- 허가된 종과 사용 조건을 위반한 GMO 사용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제재가 있음

○ 본 연방법 No.358-FZ('16.07.03)은 2016년 7월 4일 발효

- 벌금에 관한 조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시사점: 최근 아르헨티나(대두박), 브라질(대두박), 독일(대두박), 중국(식물성사료)의 일부 업체들에서 생산된 사료 및 사료첨가물에 샘플 검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GMO성분이 검출됨. 첨부서류에 GMO 함량에 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한시적 수입제한조치

□ 사료첨가물

○ 2016년 7월 9일, '수의관리(감독)를 받아야 하는 상품에 제기되는 통합수의(위생)요건 개정 No.67'이 발효됨

○ 주요 개정 내용

- 사료첨가물 관련 조항 추가보완

- 다음의 HS코드(of 1518 00, of 2102, of 2309, of 2936, of 3002, of 3203 00, of 3302, of 3504 00, of 3507, of 3808, of 3824)로 반입되는 동물성 성분 함유 사료첨가물과 수의학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은 수의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HS코드	품명	첨부서류	반입허가	제3국의 업체명단
of 1518 00, of 2102, of 2309, of 2936, of 3002, of 3203 00, of 3302, of 3504 00, of 3507, of 3808, of 3824	사료첨가물	동물성분 함유 상품과 수의학용 상품(동물용 사료에서도 포함)을 위한 수의증명서	YES	반입허가서와 수의증명서에 관리대상상품을 출하하는 업체명 및(또는) 넘버를 기재해야 함

- 화학합성 및 미생물합성의 사료첨가물은 제조업체에 의해 발급되는 품질안전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수의증명서 없이 반입 및 운송 가능함
 - 이 조항은 상기 HS코드에도 해당함
- 러시아연방과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전권기관들은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No.317 ('10.06.18)에 의해 승인된 수의관리(감독)를 받아야 하는 통합상품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상품에 명시된 HS코드(of 2102, of 29, of 3507 포함)로 제3국에서부터 러시아연방 및 카자흐스탄 영토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해 수의 관리를 실시하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상품들은 관세동맹 회원국 전권기관들의 반입허가와 수의증명서 없이도 러시아연방 및 카자흐스탄으로 반입 가능함
- HS코드 of 2102, of 29, of 3507인 상품, 동물성, 화학합성 및 미생물합성의 사료첨가물의 반입 절차는 변경되지 않음
- 식물성 사료첨가물의 유라시아경제연합 반입 조건은 회원국의 전권기관들과 함께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 논의 중임

□ 체리 및 양벚에 대한 새로운 기준 도입

- 2017년 1월 1일부터 국가간 기준 GOST 33801-2016 '신선 체리 및 양벚. 기술조건(Fresh cherries and sweet cherries. Specifications)' 도입
- 본 기준은 신선한 형태로 공급 및 판매되는 재배품종 및 교잡종의 신선 체리 및 양벚의 과실에 적용
 - 품질과 수확방법에 따라 신선 체리 및 양벚의 과실을 분류하고 있음
- 본 기준은 체리 및 양벚의 상품품질관리 및 판매문제를 규제하는 유엔유럽경제위원회 기준 UNECE standard FFV - 13:2010에 기초를 둠
- 본 기준은 1976년부터 시행되었던 2가지 기준 - GOST 21921-76 '신선 체리. 기술조건(Fresh cherries. Specifications)'과 GOST 21922-76 '신선 양벚. 기술조건(Fresh sweet cherries. Specifications)'을 대체할 것임

- GOST 33801-2016은 국가간 기준으로, 러시아연방 이외에도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이 기준을 채택하기로 승인함

□ 공공조달을 위해 허가가 제한되는 외국산 식품

- 외국에서 생산된 일부 식품들은 공공조달이 제한됨
- 국내시장 보호 및 러시아 생산자 지원을 위해 일부 외국산 식품들은 공공조달에서 제한됨. 이는 정부 및 지방자치 필요 식품에만 적용되며, 상점, 소매체인, 상업적인 요식업체에 납품되는 식품공급, 상업적 구매는 적용되지 않음
- 러시아 정부는 공공조달 제한 식품 목록을 승인함. 가공 및 저장처리된 어류, 어란 및 어란 대용물, 갑각류 및 연체동물, 쇠고기, 송아지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식용설육, 우유 및 유제품, 정미, 설탕, 소금 등이 목록에 포함됨
- 공공조달을 위한 구매 시, 주문자는 공급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2개 이상의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외국(유라시아경제연합 제외)에서 생산된 식품 공급을 제안하는 모든 신청서를 거부할 수 있음

▮ 공공조달 제한 외국산 식품 목록 ▮

경제활동 종류별 전러시아 제품분류 코드 (OK 034-2014)	식품명
10.20.1	어류제품(신선, 냉장 또는 냉동)
10.20.2	기타 방식으로 제조 또는 저장처리된 어류; 어란 및 어란 대용물
10.20.3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무척추동물(냉동, 가공 또는 저장처리)
10.84.30.120	식용의 증발염
10.84.30.130	요오드 첨가된 식용의 식탁염
10.11.11.110	쇠고기(방금 정육한 것, 식은 것, 또는 냉장)
10.11.11.120	송아지고기(방금 정육한 것, 식은 것, 또는 냉장)
10.11.12	돼지고기(방금 정육한 것, 식은 것, 또는 냉장, 어린이식품용 포함)
10.11.20.110	소 식용설육(방금 정육한 것, 식은 것, 또는 냉장)
10.11.31	소의 육(쇠고기, 송아지고기)(냉동, 어린이식품용 포함)

경제활동 종류별 전러시아 제품분류 코드 (OK 034-2014)	식품명
10.11.32	돼지고기(냉동, 어린이식품용 포함)
10.12.1	가금육(냉장, 어린이식품용 포함)
10.12.40.120	가금류의 식용설육(냉동)
10.51.2	우유 및 크림(건조, 승화시킨 것)
10.51.30.100	버터
10.51.30.110	버터
10.51.30.200	오일 페이스트
10.51.30.210	오일 페이스트
10.51.4, 10.51.40.120	치즈, 치즈제품, 커티지치즈 제외
10.51.51	우유 및 크림(응축 또는 설탕 첨가 또는 기타 감미료 첨가한 것, 건조하지 않은 것)
10.61.11.000	쌀(정미)
10.81.12	향미 또는 색소첨가물이 없는 고체 형태의 화학적으로 깨끗한 자당과 사탕무 또는 사탕수수로 만든 백설탕
10.81.13	향미 또는 색소첨가물이 있는 사탕무 또는 사탕수수로 만든 정제설탕; 메이플 슈거 및 메이플 시럽

제3절 관세제도

일부 농산품 수입관세율 변경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일부 농산품에 대한 유라시아경제연합 공통 수입관세율을 특정 기간동안 변경할 예정
 - 현행 수입관세율에 달린 주석에 따라 변경 기간 및 수입관세율이 달라짐
 - 주석 68C)의 경우, 결정 No.25 발효일로부터 '17.05.31일까지 수입관세율 5%
 - 주석 69C)의 경우, 결정 No.25 발효일로부터 '19.05.31일까지 수입관세율 5%
 - 주석 70C)의 경우, 결정 No.25 발효일로부터 '19.05.31일까지 수입관세율 0%

○ 본 결정 No.25('16.03.22)은 4월 22일부터 발효

EEU HS코드	품목	현행 수입 관세율(%)	변경 수입관세율(%)	
			'16.4.22 ~'17.5.31	'16.4.22 ~'19.5.31
0704 10 000 0	- 꽃양배추, 브로콜리	11 ^{68C)}	5	-
0704 20 000 0	- 방울양배추	13 ^{69C)}	-	5
0802 51 000 0	- 피스타치오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 ^{70C)}	-	0
0802 52 000 0	- 피스타치오 껍데기를 벗긴 것	5 ^{70C)}	-	0
0804 10 000 0	- 대추야자	5 ^{70C)}	-	0
0806 20 100 0	- 건포도 korinka	5 ^{70C)}	-	0
0806 20 300 0	- 건포도 sultana	5 ^{70C)}	-	0
0806 20 900 0	- 건포도 기타	5 ^{70C)}	-	0

□ 열대수종 목재 수입관세율 확정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일부 열대수종 목재에 대한 유라시아경제연합 공통 수입관세율 확정
 - 해당 품목은 유라시아경제연합 HS코드 4408 39 850 9로, 2016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수입관세율 0%
 - 2016년 5월 31일까지 부과된 현행 제로관세율을 2019년 5월 31일까지 연장
- 본 결정 No.20('16.03.01)은 2016년 6월 1일부터 발효

EEU HS코드	품목	현행 수입 관세율	제로관세율 연장
			'16.6.1~'19.5.31
4408 39 850 9	- 열대산 목재(이 류의 소호주 제2호의 목재로 한정하며 앞에서 열거한 것은 제외함)의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한 것을 제외함),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하지 않은 것으로서 두께가 1mm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0%	0%

□ 쌀 관련 유라시아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 및 공통관세율 개정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장폭비 3이상의 장립종 정미쌀’에 대한 유라시아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 및 공통관세율 개정 결정안 승인
- 본 명령 No.38(16.03.29)은 유라시아경제연합 공식홈페이지 게재일로부터 10일 후 발효

HS코드	품명	변경사항
1006 30 670 0	장폭비 3이상(장립종 정미쌀 반숙미)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에서 삭제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에서 수입관세율 변경을 결정하는 민감품목 목록에서 삭제
1006 30 980 0	장폭비 3이상(장립종 정미쌀, 반숙미가 아닌 것)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에서 삭제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에서 수입관세율 변경을 결정하는 민감품목 목록에서 삭제
1006 30 670	장폭비 3이상(장립종 정미쌀 반숙미)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에 포함
1006 30 670 1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해당 소호 부가해설 1에 따름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에 포함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에서 수입관세율 변경을 결정하는 민감품목 목록에 포함 - 수입관세율 0% - 장폭비 3이상의 장립종 정미쌀 포함 - 유라시아경제연합과 3자 간의 국제협약에 의해 할당관세(tariff quota) 부과 *전권기관에서 발급한 라이선스가 있을 시에 한함
1006 30 670 9	기타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에 포함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에서 수입관세율 변경을 결정하는 민감품목 목록에 포함 - 수입관세율 10%(최소 0.03유로/kg)
1006 30 980	장폭비 3이상(장립종 정미쌀, 반숙미가 아닌 것)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에 포함
1006 30 980 1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해당 소호 부가해설 1에 따름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에 포함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에서 수입관세율 변경을 결정하는 민감품목 목록에 포함 - 수입관세율 0% - 장폭비 3이상의 장립종 정미쌀 포함 - 유라시아경제연합과 3자 간의 국제협약에 의해 할당관세(tariff quota) 부과 *전권기관에서 발급한 라이선스가 있을 시에 한함

HS코드	품명	변경사항
1006 30 980 9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에 포함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에서 수입관세율 변경을 결정하는 민감품목 목록에 포함 - 수입관세율 10%(최소 0.03유로/kg)

□ WTO 양허세율 범위 내 수입관세율 조정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WTO 양허세율 범위의 일부 품목 수입관세율(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관세율) 조정' 결정안 승인
- 해당 품목들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
- 주석 1C)가 표시되어있는 HS코드 0301919000, 0301991100의 경우, 별도로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제로 관세율 적용
- 본 명령 No.36(16.03.29)은 유라시아경제연합 공식홈페이지 게재일로부터 10일 후 발효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0301 91 900 0	그 밖의 활어: 송어(SALMO TRUTTA, ONCORHYNCHUS MYKISS, ONCORHYCHUS CLARCI, ONCORHYNCHUS AQUABONITA, ONCORHYNCHUS GILAE)	0	10 ^{1C)} *18.4.30일까지 제로관세율
0301 99 110 0	그 밖의 활어, 민물의 것: 태평양연어 (ONCORHYNCHUS NERKA, ONCOR. GORBUSCHA, ONCOR. KETA, ONCOR. TSCHAWYTSCHA, ONCOR. KISUTCH, ONCOJR. MASOU, ONCOR. RHODURUS), 대서양연어(SAMO SALAR), 다뉴브연어(HUCHO HUCHO)	0	10 ^{1C)} *18.4.30일까지 제로관세율
0302 11 100 0	ONCORHYNCHUS APACHE 또는 ONCORHYNCHUS CHRYSOGASTER종의 송어, 신선 또는 냉장,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어란 제외	5.8	4.4
0302 11 200 0	ONCORHYNCHUS MYKISS종의 송어, 신선 또	5.8	4.4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 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는 냉장,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머리와 아가미가 있고 내장이 없는 1.2kg 이상의 것 혹은 머리와 아가미, 내장이 없는 1kg 이상의 것		
0302 11 800 0	기타 송어, 신선 또는 냉장,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어란 제외	5.8	4.4
0302 13 000 0	태평양연어(ONCORHYNCHUS NERKA, ONCORHYNCHUS GORBUSCHA, ONCORHYNCHUS KETA, ONCORHYNCHUS TSCHAWYTSCHA, ONCORHYNCHUS KISUTCH, ONCORHYNCHUS MASOU, ONCORHYNCHUS RHODURUS), 신선 또는 냉장,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어란 제외	5.8	4.4
0302 14 000 0	대서양연어(SALMO SALAR)와 다뉴브연어(HUCHO HUCHO), 신선 또는 냉장,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어란 제외	5.8	4.4
0302 51 100 0	GADUS MORHUA종의 대구, 신선 또는 냉장,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어란 제외	7	6
0302 51 900 0	기타 대구, 신선 또는 냉장,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어란 제외	7	6
0302 90 000 0	간과 어란, 신선 또는 냉장	8.2	6.6
0303 13 000 0	대서양연어(SALMO SALAR)와 다뉴브연어(HUCHO HUCHO), 냉동,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어란 제외	4.8	3
0303 14 100 0	ONCORHYNCHUS APACHE 또는 ONCORHYNCHUS CHRYSOGASTER종의 송어, 냉동,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어란 제외	4.8	3
0303 14 200 0	ONCORHYNCHUS MYKISS종의 송어, 머리와 아가미가 있고 내장이 없는 1.2kg 이상의 것 혹은 머리와 아가미, 내장이 없는 1kg 이상의 것, 냉동,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4.8	3

HS코드	품 명	현행 수입 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어란 제외		
0303 14 900 0	기타 송어, 냉동,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어란 제외	4.8	3
0303 31 100 0	검정납치(REINHARDTIUS HIPPOGLOSSOIDES), 냉동,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어란 제외	7	5.8
0303 31 300 0	대서양납치(HIPPOGLOSSUS HIPPOGLOSSUS), 냉동,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어란 제외	7	6
0303 31 900 0	태평양납치(HIPPOGLOSSUS STENOLEPIS), 냉동,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어란 제외	7	6
0303 33 000 0	서대(SOLEA SPP.), 냉동,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어란 제외	7	6
0303 42 120 0	황다랑어(TRUNNUS ALBACARES), 냉동, 손질하지 않은 것, 제1604호의 제품 생산용으로 각각 10kg을 초과하는 것,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어란 제외	6	5
0303 42 180 0	10kg 이하의 기타 다랑어, 냉동, 손질하지 않은 것, 제1604호의 제품 생산용,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어란 제외	6	5
0303 42 420 0	황다랑어(TRUNNUS ALBACARES), 냉동, 손질한 것, 제1604호의 제품 생산용으로 각각 10kg을 초과하는 것,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어란 제외	6	5
0303 42 480 0	황다랑어(TRUNNUS ALBACARES), 냉동, 손질한 것, 제1604호의 제품 생산용으로 각각 10kg 또는 그 이하의 것,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어란 제외	6	5
0303 63 100 0	GADUS MORHUA종의 대구, 냉동,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어란 제외	7	6
0303 63 300 0	GADUS OGAC종의 대구, 냉동, 제0304호의 어	7	6

HS코드	품 명	현행 수입 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어란 제외		
0303 63 900 0	GADUS MACROCEPHALUS종의 대구, 냉동, 제 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어란 제외	7	6
0303 64 000 0	해덕(MELANOGRAMMUS AEGLEFINUS) 냉동,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어란 제외	7	6
0303 65 000 0	검정대구(POLLACHIUS VIRENS) 냉동,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어란 제외	7	6
0303 81 100 0	SQUALUS ACANTHIAS종의 상어, 냉동, 제 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어란 제외	7	6
0303 84 100 0	유럽농어(Dicentrarchus labrax), 냉동,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어란 제외	7	6
0303 84 900 0	기타 농어, 냉동,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어란 제외	7	6
0303 89 390 0	기타 볼락, 냉동,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간과 어란 제외	7, 최소 0.035유로/kg	6.8, 최소 0.034유로/kg
0304 41 000 0	태평양연어(ONCORHYNCHUS NERKA, ONCORHYNCHUS GORBUSCHA, ONCORHYNCHUS KETA, ONCORHYNCHUS TSCHAWYTSCHA, ONCORHYNCHUS KISUTCH, ONCORHYNCHUS MASOU, 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연어(SALMO SALAR), 다뉴브연어(HUCHO HUCHO) 피레트, 신선 또는 냉장	5	4
0304 42 100 0	400그램 이상의 Oncorhynchus mykiss 종의 송어 피레트, 신선 또는 냉장	5	4
0304 42 900 0	기타 송어 피레트, 신선 또는 냉장	5	4

HS코드	품 명	현행 수입 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0304 43 000 0	넙치류(Pleuronectidae, Bothidae, Cynoglossidae, Soleidae, Scophthalmidae, Citharidae) 피레트, 신선 또는 냉장	6.3	5
0304 44 900 0	기타 피레트, 신선 또는 냉장	6.3	5
0304 45 000 0	황새치(Xiphias gladius) 피레트, 신선 또는 냉장	6.3	5
0304 46 000 0	이빨고기(Dissostichus spp.) 피레트, 신선 또는 냉장	6.3	5
0304 49 900 0	기타 붉은볼락 피레트, 신선 또는 냉장	6.3	5
0304 93 100 0	틸라피아(OREOCHROMIS SPP.), 메기(PANGASIU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잉어(CYPRINUS CARPIO, CARASSIU CARASSIU,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ANGUILLA SPP.), 나일 퍼치(LATES NILOTICUS), 가물치(CHANNA SPP.)의 연육(surimi)	6	5
0304 94 100 0	명태 연육	6	5
0304 95 100 0	BREGMACEROTIDAE, EUCLICHTHYIDAE, GADIDAE, MACROURIDAE, MELANONIDAE, MERLUCCIIDAE, MORIDAE, 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연육 (명태(THERAGRA CHALCOGRAMMA) 제외)	6	5
0304 99 100 0	기타 어류 연육	6	5
0402 29 150 0	밀크와 크림,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 지방함유량이 중량의 27% 이상인 것, 포장에서 순중량 2.5kg 이하인 것, 젓먹이 아이용의 밀크 제외	17.5	15
0402 29 190 0	밀크와 크림,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 지방함유량이 중량의 27% 이하인 것, 포장에서 순중량 2.5kg 이하인 것, 젓먹이 아이용의 밀크 제외	17.5	15
0402 29 910 0	밀크와 크림,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 지방함유량	17.5	15

HS코드	품 명	현행 수입 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이 중량의 27% 이상인 것, 포장에서 순중량 2.5kg 이하인 것		
0402 29 990 0	밀크와 크림,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 지방함유량이 중량의 27% 이상인 것, 포장에서 순중량 2.5kg 이하가 아닌 것	17.5	15
0402 91 100 0	밀크와 크림, 농축한 것, 가루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가 아닌 것, 지방함유량이 중량의 8% 이하인 것,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16.3	15
0402 91 300 0	밀크와 크림, 농축한 것, 가루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가 아닌 것, 지방함유량이 중량의 8% 이상-10% 이하인 것,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16.3	15
0402 91 510 0	밀크와 크림, 농축한 것, 지방함유량이 중량의 10%-45%인 것, 포장에서 중량 2.5kg 이하인 것,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16.3	15
0402 91 590 0	밀크와 크림, 농축한 것, 지방함유량이 중량의 10%-45%인 것, 포장에서 순중량 2.5kg 이하가 아닌 것,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16.3	15
0402 91 910 0	밀크와 크림, 농축한 것, 지방함유량이 중량의 45% 이상인 것, 포장에서 순중량 2.5kg 이하인 것,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16.3	15
0402 91 990 0	밀크와 크림, 농축한 것, 지방함유량이 중량의 45% 이상인 것, 포장에서 순중량 2.5kg 이하가 아닌 것,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16.3	15
0402 99 100 0	밀크와 크림, 농축한 것, 지방함유량이 중량의 9.5% 이하인 것,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	16.3	15
0402 99 310 0	밀크와 크림, 농축한 것, 지방함유량이 중량의 9.5% 이상-45% 이하인 것, 포장에서 순중량 2.5kg 이하인 것,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	16.3	15
0402 99 390 0	기타 밀크와 크림, 농축한 것, 지방함유량이 중	16.3	15

HS코드	품 명	현행 수입 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량의 9.5% 이상-45% 이하인 것, 포장에서 순 중량 2.5kg 이하가 아닌 것,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		
0402 99 910 0	밀크와 크림, 농축한 것, 지방함유량이 중량의 45% 이상인 것, 포장에서 중량 2.5kg 이하인 것,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	16.3	15
0402 99 990 0	밀크와 크림, 농축한 것, 지방함유량이 중량의 45% 이상인 것, 포장에서 순중량 2.5kg 이하가 아닌 것,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	16.3	15
0406 90 130 1	에멘탈 치즈, 지방함유량이 중량의 45% 또는 그 이상인 것, 3개월 또는 그 이상 처리한 것	16, 최소 0.32유로 /kg	15, 최소 0.3유로/kg
0406 90 130 9	기타 에멘탈 치즈	17.5, 최소 0.35유로 /kg	15, 최소 0.3유로/kg
0408 91 200 0	기타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새의 알, 건조한 것, 껍질이 붙지 않은 것	13.8	10
0408 91 800 0	기타 새의 알, 건조한 것, 껍질이 붙지 않은 것	12	11
0602 30 000 0	철쭉과 진달래, 접목 여부 불문	9	7
0602 40 000 0	장미, 접목 여부 불문	9	7
0706 10 000 1	당근, 신선 또는 냉장	12.8	12
0808 10 100 0	사과술 생산용 사과, 벌크,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0.115유로 /kg	0.088유로/kg
0808 10 800 1	신선 사과, 사과술 생산용이 아닌 것,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0.042유로/kg	0.036유로/kg
0808 10 800 2	신선 사과, 사과술 생산용이 아닌 것,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0.042유로/kg	0.031유로/kg
0808 10 800 3	신선 사과, 사과술 생산용이 아닌 것,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0.042유로/kg	0.036유로/kg
0808 10 800 5	골덴 딜리셔스 또는 그레니 스미스 품종의 신선 사과, 사과술 생산용이 아닌 것,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0.115유로 /kg	0.088유로/kg

HS코드	품 명	현행 수입 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0808 10 800 6	기타 신선 사과, 사과술 생산용이 아닌 것,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0.076유로/kg	0.068유로/kg
0808 10 800 7	골덴 딜리셔스 또는 그레니 스미스 품종의 신선 사과, 사과술 생산용이 아닌 것,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09유로/kg	0.055유로/kg
0808 10 800 8	기타 신선 사과, 사과술 생산용이 아닌 것,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076유로/kg	0.054유로/kg
1006 10 100 0	파종용 벼	14	12
1006 10 940 0	벼, 반숙미가 아닌 것, 중립종, 파종용이 아닌 것	33.2	32
1108 11 000 0	밀전분	14, 최소 0.042유로/kg	12, 최소 0.036유로/kg
1108 12 000 0	옥수수전분	16, 최소 0.048유로/kg	13, 최소 0.039유로/kg
1108 13 000 0	감자전분	14, 최소 0.042유로/kg	12, 최소 0.036유로/kg
1512 21 100 0	목화씨유, 조유(고시폴(gossypol) 제거여부 불문), 기술용 또는 산업용의 것, 식용의 식료품 제조 제외	12	11
1512 21 900 0	기타 목화씨유, 조유(고시폴(gossypol) 제거여부 불문), 산업용이 아닌 것	12	11
1704 90 100 0	감초엑스, 자당 함유량이 중량의 10% 이상인 것, 기타 첨가제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14, 최소 0.18유로/kg	14, 최소 0.17유로/kg
1704 90 510 0	마지판(marzipan)을 포함하여 페이스트와 덩어리, 포장에서 순중량 1kg 또는 그 이상,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14, 최소 0.18유로/kg	14, 최소 0.17유로/kg
1704 90 610 0	표면에 설탕을 바른 상품들,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14, 최소 0.18유로/kg	14, 최소 0.175유로/kg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 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1704 90 650 0	검과 젤리 형태의 과자제품, 설탕 과자 형태의 과실페이스트 포함,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14, 최소 0.18유로/kg	14, 최소 0.175유로/kg
1704 90 710 0	꿀인 단 과자, 속을 채운지 여부 불문,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14, 최소 0.18유로/kg	14, 최소 0.175유로/kg
1704 90 750 0	토피, 캐러멜, 이와 유사한 단 과자,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16, 최소 0.13유로/kg	14, 최소 0.13유로/kg
1704 90 810 0	압축된 드롭프스,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14, 최소 0.18유로/kg	14, 최소 0.175유로/kg
1806 20 950 0	기타 조제품, 코코아를 함유하는 것, 중량이 2kg 이상의 블록상, 슬래브상 또는 바상의 것 또는 용기에 들거나 포장된 것으로서 중량이 2kg 이상의 액상, 입상, 페이스트상, 분말상 또는 기타 벌크상의 것	6.3	5
1806 31 000 0	기타 제품, 코코아를 함유하는 것, 블록상, 슬래브상 또는 바상의 것, 속을 채운 것	0.3유로/kg	0.2유로/kg
1806 32 100 0	기타 조제식료품, 코코아를 함유하는 것, 속을 채우지 않은 것, 곡물·과실 또는 견과류를 첨가한 것, 블록상, 슬래브상 또는 바상의 것	0.3유로/kg	0.2유로/kg
1806 32 900 0	기타 조제식료품, 코코아를 함유하는 것, 속을 채우지 않은 것, 블록상, 슬래브상 또는 바상의 것	0.3유로/kg	0.2유로/kg
1806 90 110 0	초콜릿상품, 속을 채운 것, 알코올 함유	0.36유로/kg	0.28유로/kg
1806 90 190 0	기타 초콜릿상품, 속을 채운 것 또는 속을 채우지 않은 것, 알코올을 함유하는 초콜릿상품 제외	0.36유로/kg	0.28유로/kg
1806 90 310 0	기타 초콜릿과 그것으로 만든 제품, 속을 채운 것	0.36유로/kg	0.28유로/kg
1806 90 390 0	기타 초콜릿과 그것으로 만든 제품, 속을 채우지 않은 것	0.36유로/kg	0.28유로/kg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 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1806 90 500 1	설탕 과자제품과 그 대용물, 끓인 단 과자, 속을 채운 것 또는 속을 채우지 않은 것, 코코아를 함유하는 것	0.36유로 /kg	0.28유로/kg
1806 90 500 2	과자제품, 토피, 캐러멜, 이와 유사한 단 것, 코코아를 함유하는 것	0.36유로 /kg	0.28유로/kg
1806 90 500 9	기타 과자제품, 코코아를 함유하는 것	0.36유로 /kg	0.28유로/kg
1806 90 600 0	페이스트, 코코아를 함유하는 것	0.36유로 /kg	0.28유로/kg
1806 90 700 0	조제품, 코코아를 함유하는 것, 음료 제조를 위한 것	0.36유로 /kg	0.28유로/kg
1905 90 900 0	기타 베이커리제품과 패스트리제품	10, 최소 0.095유로/kg	10, 최소 0.09유로/kg
2008 19 990 0	기타 견과류, 땅콩, 기타 종자, 혼합 여부 불문, 포장에서 순중량 1kg 이하인 것,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 첨가 여부 불문	11.3	10
2008 20 110 0	파인애플,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주정 함유, 설탕 함유량이 중량의 17% 이상인 것, 포장에서 순중량 1kg 이상인 것	8.3	6
2008 20 190 0	기타 파인애플,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주정 함유, 설탕 함유량이 중량의 17% 이하인 것, 포장에서 순중량 1kg 이상인 것	8.3	6
2008 20 310 0	파인애플,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주정 함유, 설탕 함유량이 중량의 19% 이상인 것, 포장에서 순중량 1kg 이하인 것	8.3	6
2008 20 390 0	파인애플,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주정 함유, 설탕 함유량이 중량의 19% 이하인 것, 포장에서 순중량 1kg 이하인 것	8.3	6
2008 20 510 0	파인애플,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주정 첨가하지 않은 것, 설탕 첨가, 설탕 함유량이 중량의 17% 이상인 것, 포장에서 순중량 1kg 이상인 것	8.3	6

HS코드	품 명	현행 수입 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2008 20 590 0	파인애플,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주정 첨가하지 않은 것, 설탕 첨가, 설탕 함유량이 중량의 17% 이하인 것, 포장에서 순중량 1kg 이상인 것	8.3	6
2008 20 710 0	파인애플,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주정 첨가하지 않은 것, 설탕 첨가, 설탕 함유량이 중량의 19% 이상인 것, 포장에서 순중량 1kg 이하인 것	8.3	6
2008 20 790 0	파인애플,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주정 첨가하지 않은 것, 설탕 첨가, 설탕 함유량이 중량의 19% 이하인 것, 포장에서 순중량 1kg 이하인 것	8.3	6
2008 20 900 0	기타 파인애플,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주정과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것	8.3	6
2008 97 120 0	열대과실 혼합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주정 함유, 설탕 함유량이 중량의 9% 이상인 것, 주정농축이 중량의 11.85% 이하인 것 (열대과실이 중량의 50% 또는 그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 포함)	8.3	6
2008 97 140 0	기타 혼합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제200819호의 혼합물 제외, 주정 함유, 설탕 함유량이 중량의 9% 이상인 것, 주정농축이 중량의 11.85% 이하인 것	8.3	6
2008 97 160 0	열대과실 혼합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주정 함유, 설탕 함유량이 중량의 9% 이상인 것, 주정농축이 중량의 11.85% 이상인 것 (열대견과류 및 열대과실이 중량의 50% 또는 그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 포함)	8.3	6
2008 97 180 0	타 과실·견과류 혼합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주정 함유, 설탕 함유량이 중량의 9% 이상인 것, 주정농축이 중량의 11.85% 이상인 것	8.3	6
2008 97 320 0	열대과실 혼합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주정 함유, 설탕 함유량이 중량의 9% 미만인 것, 주정농축이 중량의 11.85% 이하인 것	8.3	6

HS코드	품 명	현행 수입 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것 (열대견과류 및 열대과실이 중량의 50% 또는 그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 포함)		
2008 97 340 0	기타 과실·견과류 혼합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주정 함유, 설탕 함유량이 중량의 9% 미만인 것, 주정농축이 중량의 11.85% 이하인 것	8.3	6
2008 97 360 0	열대과실 혼합물(열대견과류가 중량의 50% 또는 그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 포함),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주정 함유, 설탕 함유량이 중량의 9% 미만인 것, 주정농축이 중량의 11.85% 이상인 것	8.3	6
2008 97 380 0	기타 과실·견과류 혼합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주정 함유, 설탕 함유량이 중량의 9% 미만인 것, 주정농축이 중량의 11.85% 이상인 것	8.3	6
2008 97 510 0	열대과실 혼합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주정 첨가하지 않은 것, 설탕 첨가, (열대견과류 및 열대과실이 중량의 50% 또는 그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 포함), 포장에서 순중량 1kg 이상인 것	8.3	6
2008 97 590 0	기타 과실·견과류 혼합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주정 첨가하지 않은 것, 설탕 첨가, 포장에서 순중량 1kg 이상인 것, 제 2008925100호의 혼합물 제외	8.3	6
2008 97 720 0	열대과실로 만든 과실-베리 혼합물(각각의 성분 비중이 전중량의 50% 초과하지 않음), 열대견과류 및 열대과실이 중량의 50% 또는 그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 포함,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포장에서 순중량 1kg 미만인 것	8.3	6
2008 97 740 0	기타 과실-베리 혼합물(각각의 성분 비중이 전중량의 50% 초과하지 않음), 열대견과류 및 열대과실이 중량의 50% 또는 그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 포함,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포장에서 순중량 1kg 미만인 것	8.3	6
2008 97 760 0	기타 열대과실 혼합물, 열대견과류 및 열대과실이	8.3	6

HS코드	품 명	현행 수입 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중량의 50% 또는 그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 포함,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주정 첨가하지 않은 것, 설탕 첨가		
2008 97 780 0	기타 과실·견과류 혼합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주정 첨가하지 않은 것, 설탕 첨가	8.3	6
2008 97 920 0	열대과실 혼합물, 열대견과류 및 열대과실이 중량의 50% 또는 그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 포함,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주정 첨가하지 않은 것, 설탕 첨가하지 않은 것, 포장에서 순중량 5kg 또는 그 이상인 것	8.3	6
2008 97 930 0	과실·견과류·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기타 혼합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주정 첨가하지 않은 것, 설탕 첨가하지 않은 것, 포장에서 순중량 5kg 또는 그 이상인 것	8.3	6
2008 97 940 0	열대과실 혼합물, 열대견과류 및 열대과실이 중량의 50% 또는 그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 포함,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주정 첨가하지 않은 것, 설탕 첨가하지 않은 것, 포장에서 순중량 4.5kg 또는 그 이상, 5kg 미만인 것	8.3	6
2008 97 960 0	과실·견과류·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기타 혼합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주정 첨가하지 않은 것, 설탕 첨가하지 않은 것, 포장에서 순중량 4.5kg 또는 그 이상, 5kg 미만인 것	8.3	6
2008 97 970 0	열대과실 혼합물, 열대견과류 및 열대과실이 중량의 50% 또는 그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 포함,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주정 첨가하지 않은 것, 설탕 첨가하지 않은 것, 포장에서 순중량 4.5kg 미만인 것	8.3	6
2008 97 980 0	과실·견과류·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기타 혼합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주정 첨가하지 않은 것, 설탕 첨가하지 않은 것, 포장에서 순중량 4.5kg 미만인 것	8.3	6
2009 71 200 1	사과주스,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설탕	12, 최소	12, 최소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 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첨가, 가격이 순중량 100kg당 18유로를 초과하는 것, 포장에서 용량 0.35리터 이하인 것, 어린이용	0.06유로 /리터	0.056유로/리터
2009 79 110 0	사과주스, 가격이 순중량 100kg당 22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것, 브릭스 값이 67을 초과하는 것	12, 최소 0.06유로 /리터	12, 최소 0.056유로/리터
2009 81 190 3	크랜베리주스, 브릭스 값이 67을 초과하는 것(가격이 순중량 100kg당 3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주스 제외), 농축주스, 용량 40kg 이하의 통, 탱크, 플렉시탱크에 들은 것	10, 최소 0.05유로 /리터	10
2009 81 310 3	크랜베리주스,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가격이 순중량 100kg당 30유로를 초과하는 것, 설탕 첨가, 농축주스, 용량 40kg 이하의 통, 탱크, 플렉시탱크에 들은 것	10, 최소 0.046유로/리터	10
2009 89 380 3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과실류 또는 채소류의 한 가지 종류로 만든 주스, 브릭스값이 67을 초과하는 것(가격이 순중량 100kg당 3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주스 제외), 농축주스, 용량 40kg 이하의 통, 탱크, 플렉시탱크에 들은 것	10, 최소 0.05유로 /리터	10
2009 89 790 3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과실류 또는 채소류의 한 가지 종류로 만든 주스, 브릭스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가격이 순중량 100kg당 30유로를 초과하는 것, 설탕 첨가, 농축주스, 용량 40kg 이하의 통, 탱크, 플렉시탱크에 들은 것	10, 최소 0.046유로/리터	10
2009 90 290 3	주스 혼합물, 브릭스 값이 67을 초과하는 것(사과주스 및 배주스 혼합물 제외, 가격이 순중량 100kg당 3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주스 제외), 농축주스, 용량 40kg 이하의 통, 탱크, 플렉시탱크에 들은 것	10, 최소 0.05유로 /리터	10
2009 90 510 4	따로 분류되지 않은 주스들의 기타 혼합물, 설탕 첨가, 가격이 순중량 100kg당 30유로를 초과하는 것(포장용량 0.35리터 이하의 어린이용 주스 제외), 농축주스,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용량 40kg 이하의 통, 탱크, 플렉시탱크에 들은 것	10, 최소 0.05유로 /리터	10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2009 90 590 3	따로 분류되지 않은 주스들의 기타 혼합물, 설탕 첨가하지 않은 것, 가격이 순중량 100kg당 30유로를 초과하는 것, 농축주스,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용량 40kg 이하의 통, 탱크, 플렉시탱크에 들은 것	10, 최소 0.05유로/리터	10
2102 10 100 0	배양효모, 활성효모	15	14
2102 10 310 0	제빵효모, 건조한 것, 활성효모	16.7	14.6
2102 10 900 0	그 밖의 활성효모	15	14

□ WTO 양허세율 범위 내 수입관세율 조정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WTO 양허세율 범위의 일부 품목 수입관세율(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관세율) 조정
 -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은 과도기 동안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관세율과 다른 수입관세율 적용
 - 카자흐스탄은 WTO 가입 조건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관세율보다 낮은 수입관세율 적용
- 아래 표에 나오는 품목의 수입관세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
- 본 결정 No.26(16.03.29)은 2016년 4월 30일부터 발효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0210 19 810 0	그 밖의 돼지고기 절단한 것, 뼈가 없는 것,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	15, 최소 0.39유로/kg	15, 최소 0.29유로/kg
0305 20 000 0	어류의 간과 어란(건조한 것, 훈제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14	12
0305 41 000 0	태평양연어(Oncorhynchus nerka, Oncorhynchus gorbusha, Oncorhynchus keta, Oncorhynchus tshawytscha, Oncorhynchus kisutch, Oncorhynchus	12.8, 최소 2.56유로/kg	10.4, 최소 2.08유로/kg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masou, 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연어(Salmo salar), 다뉴브연어(Hucho hucho)(훈제한 것, 피레트 포함, 어류식용설육 제외)		
0305 42 000 0	청어(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훈제한 것, 피레트 포함, 어류식용설육 제외)	6.3	5
0305 62 000 0	대구(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염장한 것, 염수장한 것, 건조하지 않거나 훈제하지 않은 것, 어류식용설육 제외)	6.3	5
0306 14 900 0	그 밖의 훈제하지 않은 냉동 게	6	5
0306 15 100 0	노르웨이 랍스터(훈제한 것, 껍데기가 붙어있는지 여부 불문, 훈제 전 또는 훈제 중에 열처리 여부 불문)	17, 최소 1.7유로/kg	16, 최소 1.6유로/kg
0306 19 050 0	그 밖의 냉동 갑각류(훈제한 것, 껍데기가 붙어있는지 여부 불문, 훈제 전 또는 훈제 중에 열처리 여부 불문)	17, 최소 1.7유로/kg	16, 최소 1.6유로/kg
0306 21 100 0	냉동하지 않은 유럽 랍스터와 그 밖의 랍스터(PALINURUS SPP., PANULIRUS SPP., JASUS SPP.)(훈제한 것, 껍데기가 붙어있는지 여부 불문, 훈제 전 또는 훈제 중에 열처리 여부 불문)	17, 최소 1.7유로/kg	16, 최소 1.6유로/kg
0306 22 100 0	랍스터 살아있는 것	6	5
0306 22 300 0	냉동하지 않은 랍스터(훈제한 것, 껍데기가 붙어있는지 여부 불문, 훈제 전 또는 훈제 중에 열처리 여부 불문)	11, 최소 1.4유로/kg	8, 최소 1.2유로/kg
0306 22 910 0	냉동하지 않은 랍스터, 훈제하지 않은 것, 손질하지 않은 것	6	5
0306 25 100 0	냉동하지 않은 노르웨이 랍스터(훈제한 것, 껍데기가 붙어있는지 여부 불문, 훈제 전 또는 훈제 중에 열처리 여부 불문)	17, 최소 1.7유로/kg	16, 최소 1.6유로/kg
0306 29 050 0	냉동하지 않은 그 밖의 갑각류(훈제한 것, 껍데기가 붙어있는지 여부 불문, 훈제 전 또는 훈제	17, 최소 1.7유로/kg	16, 최소 1.6유로/kg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중에 열처리 여부 불문)		
0307 19 100 0	굴(훈제한 것, 껍데기가 붙어있는지 여부 불문, 훈제 전 또는 훈제 중에 열처리 여부 불문)	9.8	8
0307 29 050 0	가리비과의 조개(여왕가리비과 조개 포함)(훈제한 것, 껍데기가 붙어있는지 여부 불문, 훈제 전 또는 훈제 중에 열처리 여부 불문)	9.8	8
0307 31 100 0	홍합(MYTILUS SPP.)(살아있는 것, 신선 또는 냉장)	6.3	5
0307 31 900 0	홍합(PERNA SPP.)(살아있는 것, 신선 또는 냉장)	7	6
0307 39 050 0	홍합(MYTILUS SPP., PERNA SPP.)(훈제한 것, 껍데기가 붙어있는지 여부 불문, 훈제 전 또는 훈제 중에 열처리 여부 불문)	9.8	8
0307 49 050 0	갑오징어(SEPIA OFFICINALIS, ROSSIA MACROSOMA, SEPIOLA SPP.)와 오징어(OMMASTREPHES SPP., LOLIGO SPP., NOTOTODARUS SPP., SEPIOTEUTHIS SPP.)(훈제한 것, 훈제 전 또는 훈제 중에 열처리 여부 불문)	9.8	8
0307 59 050 0	문어(훈제한 것, 훈제 전 또는 훈제 중에 열처리 여부 불문)	9.8	8
0307 60 100 0	달팽이(바다달팽이 제외)(훈제한 것, 껍데기가 붙어있는지 여부 불문, 훈제 전 또는 훈제 중에 열처리 여부 불문)	9.8	8
0307 71 000 0	클램, 새조개, 피조개(ARCIDAE, ARCTICIDAE, CARDIIDAE, DONACIDAE, HIATELLIDAE, MACTRIDAE, MESODESMATIDAE, MYIDAE, SEMELIDAE, SOLECURTIDAE, SOLENIDAE, TRIDACNIDAE, VENERIDAE)(살아있는 것, 신선 또는 냉장)	7	6
0307 79 100 0	클램, 새조개, 피조개(ARCIDAE, ARCTICIDAE, CARDIIDAE, DONACIDAE,	9.8	8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HIATELLIDAE, MACTRIDAE, MESODESMATIDAE, MYIDAE, SEMELIDAE, SOLECURTIDAE, SOLENIDAE, TRIDACNIDAE, VENERIDAE)(훈제한 것, 껍데기가 붙어있는지 여부 불문, 훈제 전 또는 훈제 중에 열처리 여부 불문)		
0307 81 000 0	전복(HALIoTIS SPP.)(살아있는 것, 신선 또는 냉장)	7	6
0307 89 100 0	전복(HALIoTIS SPP.)(훈제한 것, 껍데기가 붙어있는지 여부 불문, 훈제 전 또는 훈제 중에 열처리 여부 불문)	9.8	8
0307 91 000 0	그 밖의 연체동물(살아있는 것, 신선 또는 냉장)	7	6
0307 99 100 0	그 밖의 연체동물(훈제한 것, 껍데기가 붙어있는지 여부 불문, 훈제 전 또는 훈제 중에 열처리 여부 불문)	9.8	8
0308 11 000 0	해삼(STICHOPUS JAPONICUS, HOLOTHURIOIDEA) (살아있는 것, 신선 또는 냉장)	7	6
0308 19 100 0	해삼(STICHOPUS JAPONICUS, HOLOTHURIOIDEA) (훈제한 것, 훈제 전 또는 훈제 중에 열처리 여부 불문)	9.8	8
0308 21 000 0	성게(STRONGYLOCENTROTUS SPP., PARACENTROTUS LIVIDUS, LOXECHINUS ALBUS, ECHICHINUS ESCULENTUS)(살아있는 것, 신선 또는 냉장)	7	6
0308 29 100 0	성게(STRONGYLOCENTROTUS SPP., PARACENTROTUS LIVIDUS, LOXECHINUS ALBUS, ECHICHINUS ESCULENTUS) (훈제한 것, 훈제 전 또는 훈제 중에 열처리 여부 불문)	9.8	8
0308 30 100 0	해파리(RHOPILEMA SPP.)(살아있는 것, 신선 또는 냉장)	7	6
0308 30 300 0	해파리(RHOPILEMA SPP.)(훈제한 것, 훈제 전	9.8	8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또는 훈제 중에 열처리 여부 불문)		
0308 90 100 0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살아있는 것, 신선 또는 냉장)	7	6
0308 90 300 0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 또는 연체동물 제외), 훈제한 것, 훈제 전 또 훈제 중에 열처리 여부 불문	9.8	8
0406 90 230 0	에담 치즈	16, 최소 0.32유로/kg	15, 최소 0.3유로/kg
0406 90 250 0	틸지트 치즈	16, 최소 0.32유로/kg	15, 최소 0.3유로/kg
0406 90 270 0	Butterkaze 치즈	17.5, 최소 0.35유로/kg	15, 최소 0.3유로/kg
0406 90 350 0	Kefalotyri 치즈	17.5, 최소 0.35유로/kg	15, 최소 0.3유로/kg
0406 90 370 0	핀란드 치즈	17.5, 최소 0.35유로/kg	15, 최소 0.3유로/kg
0406 90 390 0	Yaarlsberg 치즈	17.5, 최소 0.35유로/kg	15, 최소 0.3유로/kg
0406 90 630 0	피오레 사르도, 페코리노 치즈	17.5, 최소 0.35유로/kg	15, 최소 0.3유로/kg
0406 90 690 0	그 밖의 치즈	17.5, 최소 0.35유로/kg	15, 최소 0.3유로/kg
0406 90 730 0	프로볼로네 치즈	17.5, 최소 0.35유로/kg	15, 최소 0.3유로/kg
0406 90 750 0	아시아고, 카치오카발로, 몬타스, 라구자노 치즈	17.5, 최소 0.35유로/kg	15, 최소 0.3유로/kg
0406 90 760 0	댄비, 폰탈, 폰티나, 핀보, 아바르타, 마리보, 삼소 치즈	17.5, 최소 0.35유로/kg	15, 최소 0.3유로/kg
0406 90 790 0	에스롬, 이탈리아코, 케른겜, 세인트 벡테르, 세인트 폴린, 탈레조 치즈	17.5, 최소 0.35유로/kg	15, 최소 0.3유로/kg
0406 90 810 0	캥, 체셔, 웬슬리다일, 랭커셔, 더블 글로스터, 블라르네이, 콜비, 몬테레이 치즈	17.5, 최소 0.35유로/kg	15, 최소 0.3유로/kg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0406 90 850 0	케팔로그라비에라, 카세르 치즈	17.5, 최소 0.35유로/kg	15, 최소 0.3유로/kg
0406 90 860 0	그 밖의 치즈(탈지물질에서 수분 함량이 전중량의 47% 초과~52% 이하인 것)	16, 최소 0.32유로/kg	15, 최소 0.3유로/kg
0406 90 870 0	그 밖의 치즈(탈지물질에서 수분 함량이 전중량의 52% 초과~62% 이하인 것)	15, 최소 0.32유로/kg	15, 최소 0.3유로/kg
0406 90 880 0	그 밖의 치즈(탈지물질에서 수분 함량이 전중량의 62% 초과~72% 이하인 것)	17.5, 최소 0.35유로/kg	15, 최소 0.3유로/kg
0406 90 930 0	그 밖의 치즈(탈지물질에서 수분 함량이 전중량의 72%를 초과하는 것)	16, 최소 0.32유로/kg	15, 최소 0.3유로/kg
0406 90 990 1	소젖으로 만든 화이트 치즈, 염수장	12.8, 최소 0.23유로/kg	12, 최소 0.2유로/kg
0406 90 990 9	그 밖의 치즈(소젖으로 만든 화이트 치즈 제외)	16, 최소 0.32유로/kg	15, 최소 0.3유로/kg
0511 91 901 9	부화용 어란(철갑상어알 제외)	0	8 ^{1C)}
0704 10 000 0	꽃양배추와 브로콜리(신선 또는 냉장)	5	11 ^{2C)}
0704 20 000 0	방울양배추(신선 또는 냉장)	5	13 ^{3C)}
0706 10 000 9	순무(신선 또는 냉장)	12.8	12
0709 60 100 2	Sweet peppers(신선 또는 냉장), 10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7.5	5
0712 90 050 0	감자(원상의 것 또는 절단한 것, 더 이상 처리하지 않은 것)	11.3	10
0712 90 110 0	스위트콘(ZEA MAYS VAR. SACCHARATA), 파종용, 건조한 것,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의 것, 더 이상 처리하지 않은 것	11.3	10
0713 10 100 0	건조한 완두, 파종용	12	11
0713 10 900 9	그 밖의 건조한 완두, 파종용이 아닌 것	12	11
0713 31 000 0	Vigna mungo (L.) Hepper 또는 Vigna radiata (L.) Wilczek종의 콩, 건조한 것	12	11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0713 32 000 0	팥(Phaseolus 또는 Vigna angularis), 건조한 것	12	11
0713 34 000 1	밤바라콩(VIGNA SUBTERRANEA 또는 VOANDZEA SUBTERRANEA), 건조한 것, 파종용	12	11
0713 35 000 1	동부콩, 파종용	12	11
0713 39 000 1	그 밖의 건조한 콩, 파종용	12	11
0713 40 000 0	렌즈콩, 건조한 것	12	11
0713 60 000 1	비둘기콩, 건조한 것, 파종용	12	11
0713 90 000 1	그 밖의 건조한 채두류, 파종용	12	11
0802 51 000 0	피스타치오,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신선 또는 건조)	0	5 ^{4C)}
0802 52 000 0	피스타치오, 껍데기를 벗긴 것(신선 또는 건조)	0	5 ^{4C)}
0804 10 000 0	대추야자(신선 또는 건조)	0	5 ^{4C)}
0806 20 100 0	건포도 Korinka	0	5 ^{4C)}
0806 20 300 0	건포도 Sultana	0	5 ^{4C)}
0806 20 900 0	그 밖의 건포도	0	5 ^{4C)}
0902 10 000 1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kg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함, 가향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 1회용 포장	14, 최소 0.34유로/kg	12, 최소 0.34유로/kg
0902 10 000 9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kg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함, 가향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 1회용 포장인 것	14, 최소 0.28유로/kg	12, 최소 0.24유로/kg
0902 30 000 1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kg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함, 가향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 1회용 포장	14.4, 최소 0.58유로/kg	12.5, 소 0.5유로/kg
1510 00 100 0	그 밖의 원유(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	12	11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1516 20 960 1	수소 첨가한 면실유	14.3	13
1516 20 960 2	포도씨유	14	12
1516 20 960 9	그 밖의 유(면실유와 포도씨유 제외)	14, 최소 0.14유로/kg	14, 최소 0.12유로/kg
1516 20 980 9	그 밖의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14	12
1605 30 100 0	랩스터 오일 또는 랩스터 페이스트, 스프, 소스를 제조하기 위해 열처리한 랩스터의 육	11, 최소 1.4유로/kg	8, 최소 1.2유로/kg
1605 30 900 0	열처리하지 않은 그 밖의 랩스터의 육	11, 최소 1.4유로/kg	8, 최소 1.2유로/kg
1605 40 000 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갑각류	17, 최소 1.7유로/kg	16, 최소 1.6유로/kg
1605 51 000 0	조제하거나 존처리한 굴	9.8	8
1605 52 000 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가리비과의 조개(여왕가리비과 조개 포함)	9.8	8
1605 53 100 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홍합, 밀폐용기에 넣은 것	9.8	8
1605 53 900 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홍합	9.8	8
1605 54 000 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오징어와 오징어	9.8	8
1605 55 000 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문어	9.8	8
1605 56 000 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클램, 새조개, 피조개	9.8	8
1605 57 000 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전복	9.8	8
1605 58 000 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	9.8	8
1605 59 000 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연체동물	9.8	8
1605 61 000 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해삼	9.8	8
1605 62 000 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성게	9.8	8
1605 63 000 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해파리	9.8	8
1605 69 000 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	9.8	8
1702 90 710 0	캐러멜당(건조상태에서 전중량의 50% 이상의	0.161유로	0.138유로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자당을 함유하는 것)	/kg	/kg
1702 90 750 0	분말상의 캐러멜당(건조상태에서 전중량의 50%의 과당을 함유하는 것)	14	12
1702 90 790 0	그 밖의 캐러멜당(건조상태에서 전중량의 50%의 과당을 함유하는 것, 분말 형태가 아닌 것)	0.161유로/kg	0.138유로/kg
1702 90 950 0	기타(건조상태에서 전중량의 50%의 과당을 함유하는 것)	14	12
1803 10 000 0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하지 않은 것)	0	3 ^{5C)}
1804 00 000 0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0	5 ^{5C)}
2001 90 100 0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망고 chutni	12.5, 최소 0.063유로/kg	11.7, 최소 0.058유로/kg
2001 90 500 0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	12, 최소 0.05유로/kg	11.8, 최소 0.05유로/kg
2002 10 100 0	껍질벗긴 토마토(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11.3, 최소 0.056유로/kg	10, 최소 0.05유로/kg
2002 10 900 0	껍질벗기지 않은 토마토(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11.3, 최소 0.056유로/kg	10, 최소 0.05유로/kg
2002 90 310 0	그 밖의 토마토, 내용물의 건조중량이 전중량의 12% 이상~30% 이하인 것, 내용물의 무게가 1kg을 초과하는 것으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에 한함,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조제한 것	11, 최소 0.055유로/kg	11, 최소 0.054유로/kg
2002 90 390 0	그 밖의 토마토, 내용물의 건조중량이 전중량의 12% 이상~30% 이하인 것, 내용물의 무게가 1kg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에 한함,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조제한 것	11, 최소 0.055유로/kg	11, 최소 0.054유로/kg
2002 90 910 0	그 밖의 토마토, 내용물의 건조중량이 전중량의 30%를 초과하는 것, 내용물의 무게가 1kg을 초	11, 최소 0.055유로	11, 최소 0.054유로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과하는 것으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에 한함,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조제 또는 보존처리한 것	/kg	/kg
2002 90 990 0	그 밖의 토마토, 내용물의 건조중량이 전중량의 30%를 초과하는 것, 내용물의 무게가 1kg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에 한함,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조제 또는 보존처리한 것	11, 최소 0.055유로/kg	11, 최소 0.054유로/kg
2003 90 900 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버섯(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	11.3	10
2005 60 000 0	아스파라거스(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 냉동하지 않은 것)	11.3, 최소 0.056유로/kg	10, 최소 0.05유로/kg
2005 99 100 0	Capsicum속의 열매(sweet peppers와 fragrant pepper 제외)(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 냉동하지 않은 것)	12, 최소 0.06유로/kg	11, 최소 0.055유로/kg
2103 10 000 0	간장	10.8	9.5
2103 30 900 0	조제한 겨자	12	11
2103 90 100 0	액상의 망고 chutni	7.5	6
2103 90 900 1	마요네스	8.3	6
2103 90 900 9	소스와 조제한 소스, 가미제, 혼합조미료 조제를 위한 그 밖의 제품	8.3	6
2105 00 100 0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 여부 상관없음, 유지방을 함유하지 않거나 전중량의 3% 미만의 유지방을 함유한 것)	11.3	10
2105 00 910 0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 여부 상관없음, 전중량의 3% 이상~7% 미만의 유지방을 함유한 것)	11.3	10
2105 00 990 0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 여부 상관없음, 전중량의 7% 이상의 유지방을 함유한 것)	11.3	10
2106 10 200 0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유	7.5	5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지방, 자당, 포도당-과당시럽, 포도당 또는 전분을 함유하지 않거나 전중량의 1.5% 미만의 유지방을 함유하거나 전중량의 5% 미만의 자당 또는 포도당과당시럽을 함유하거나 전중량의 5% 미만의 포도당 또는 전분을 함유하는 것)		
2106 10 800 0	그 밖의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7.5	5
2106 90 300 0	포도당-과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	9.8	8
2106 90 510 0	유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	9.8	8
2106 90 550 0	포도당시럽, 말토덱스트린 시럽	9.8	8
2106 90 590 0	그 밖의 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	11.3	10
2106 90 980 1	설탕(자당) 첨가하지 않은 껌 및/또는 설탕대용 물을 사용한 껌	14, 최소 0.84유로/kg	12, 최소 0.72유로/kg
2106 90 980 2	설탕 첨가하지 않은 껌(반가공품)	10, 최소 0.4유로/kg	9.5, 최소 0.38유로/kg
2201 10 190 0	천연광천수(탄산수가 아닌 것은 제외함,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에 한정함)	15, 최소 0.07유로/리터	14, 최소 0.066유로/리터
2203 00 010 0	맥주, 병에 포장된 것, 10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0.203유로/리터	0.07유로/리터
2203 00 090 0	그 밖의 맥주, 10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병 포장 제외	0.203유로/리터	0.07유로/리터
2203 00 100 0	맥주, 10리터를 초과하는 용기에 넣은 것	0.203유로/리터	0.07유로/리터
2204 21 060 0	포도주(발포성 포도주 제외),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14.4	12.5
2204 21 070 0	포도주(발포성 포도주 제외),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14.4	12.5
2204 21 080 0	그 밖의 품종의 포도주	14.4	12.5
2204 21 090 0	그 밖의 포도주(발포성 포도주 제외)	14.4	12.5
2204 21 110 0	알자스 백포도주,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14.4	12.5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용량을 가지는 것		
2204 21 120 0	보르도 백포도주,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130 0	부르고뉴 백포도주,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170 0	발드루아루(루아르 밸리) 백포도주,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180 0	모젤자르루베르 백포도주,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190 0	팔츠 백포도주,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220 0	라인헤센 백포도주,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230 0	토카이 백포도주,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240 0	라치오 백포도주,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260 0	토스카 백포도주,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270 0	트렌티노, 알토아디제, 프리울리 백포도주,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280 0	베네토 백포도주,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320 0	비뉴베르드 백포도주,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340 0	페네데스 백포도주,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360 0	리오이아 백포도주,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370 0	발렌시아 백포도주,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2204 21 380 0	그 밖의 백포도주,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420 0	보르도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430 0	부르고뉴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440 0	보졸레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460 0	꼬뜨뤼론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470 0	랑그독루시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480 0	발드루아루(루아르 밸리)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620 0	피에몬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660 0	토스카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670 0	트렌티노, 알토아디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680 0	베네토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690 0	타오, 베르라다, 두로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710 0	하바라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740 0	페네데스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760 0	리오이야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2204 21 770 0	발데페니아스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780 0	그 밖의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790 0	EU에서 생산된 백포도주,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800 0	EU에서 생산된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810 0	그 밖의 품종의 EU에서 생산된 백포도주,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820 0	그 밖의 품종의 EU에서 생산된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830 0	EU에서 생산된 그 밖의 백포도주,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840 0	EU에서 생산된 그 밖의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전용량의 1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850 0	마데이라, Setubal muscatel, 전용량의 15% 초과~22%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860 0	세리, 전용량의 15% 초과~22%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870 0	마르살라, 전용량의 15% 초과~22%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880 0	Samos, Muscat de Lemnos, 전용량의 15% 초과~22%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890 0	포트, 전용량의 15% 초과~22%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900 0	그 밖의 포도주, 전용량의 15% 초과~22%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2204 21 910 0	그 밖의 포도주, 전용량의 15% 초과~22%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PDO와 PGI 제외	14.4	12.5
2204 21 920 0	전용량의 22%를 초과하는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4 21 930 0	백포도주, EU에서 생산된 것 제외	14.4	12.5
2204 21 940 0	그 밖의 포도주, EU에서 생산된 것 제외	14.4	12.5
2204 21 950 0	그 밖의 품종의 백포도주, EU에서 생산된 것 제외	14.4	12.5
2204 21 960 0	그 밖의 품종의 포도주, EU에서 생산된 것 제외	14.4	12.5
2204 21 970 0	그 밖의 백포도주, EU에서 생산된 것 제외, 2리터 이하의 용기	14.4	12.5
2204 21 980 0	그 밖의 포도주, 백포도주 제외, EU에서 생산된 것 제외, 2리터 이하의 용기	14.4	12.5
2204 29 100 0	220410호에 언급된 포도주 제외, 2리터를 초과하는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110 1	토카이 백포도주,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110 9	토카이 백포도주,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120 1	보르도 백포도주,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120 9	보르도 백포도주,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130 1	부르고뉴 백포도주,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130 9	부르고뉴 백포도주,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170 1	발드루아루(루아르 벨리) 백포도주,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170 9	발드루아루(루아르 벨리) 백포도주,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180 1	그 밖의 백포도주,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180 9	그 밖의 백포도주,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14.4	12.5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용기에 넣은 것		
2204 29 420 1	보르도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420 9	보르도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430 1	부르고뉴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430 9	부르고뉴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440 1	보졸레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440 9	보졸레포도주(백포도주제외),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460 1	꼬뜨뒤론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460 9	꼬뜨뒤론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470 1	랑그독루시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470 9	랑그독루시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480 1	발드루아루(루아르 밸리)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480 9	발드루아루(루아르 밸리)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580 1	그 밖의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580 9	그 밖의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790 1	EU에서 생산된 백포도주,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2204 29 790 9	EU에서 생산된 백포도주,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800 1	EU에서 생산된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800 9	EU에서 생산된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810 1	그 밖의 품종의 EU에서 생산된 백포도주,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810 9	그 밖의 품종의 EU에서 생산된 백포도주,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820 1	그 밖의 품종의 EU에서 생산된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820 9	그 밖의 품종의 EU에서 생산된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830 1	EU에서 생산된 그 밖의 백포도주,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830 9	EU에서 생산된 그 밖의 백포도주,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840 1	EU에서 생산된 그 밖의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840 9	EU에서 생산된 그 밖의 포도주(백포도주 제외),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850 1	마데이라, Setubal muscatel,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850 9	마데이라, Setubal muscatel,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860 1	셰리,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2204 29 860 9	세리,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870 1	마르살라,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870 9	마르살라,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880 1	Samos, Muscat de Lemnos,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880 9	Samos, Muscat de Lemnos,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890 1	포트,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890 9	포트,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900 1	그 밖의 포도주,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900 9	그 밖의 포도주,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910 1	그 밖의 포도주, 전용량의 15% 초과~22%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PDO와 PGI 제외,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910 9	그 밖의 포도주, 전용량의 15% 초과~22%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PDO와 PGI 제외,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920 1	전용량의 22%를 초과하는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920 9	전용량의 22%를 초과하는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930 1	백포도주, EU에서 생산된 것 제외,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930 9	백포도주, EU에서 생산된 것 제외,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940 1	그 밖의 포도주, EU에서 생산된 것 제외,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940 9	그 밖의 포도주, EU에서 생산된 것 제외, 2리터	14.4	12.5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2204 29 950 1	그 밖의 품종의 백포도주, EU에서 생산된 것 제외,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950 9	그밖의품종의백포도주, EU에서 생산된 것 제외,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960 1	그 밖의 포도주, 백포도주 제외, EU에서 생산된 것 제외,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960 9	그 밖의 포도주, 백포도주 제외, EU에서 생산된 것 제외,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970 1	그 밖의 백포도주, EU에서 생산된 것 제외,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970 9	그 밖의 백포도주, EU에서 생산된 것 제외,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980 1	그 밖의 포도주, 백포도주 제외, EU에서 생산된 것 제외, 227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4 29 980 9	그 밖의 포도주, 백포도주 제외, EU에서 생산된 것 제외, 2리터 초과~227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14.4	12.5
2205 10 100 0	베르무트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함), 2리터 이하의 용기, 전용량의 18%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	12
2205 10 900 0	베르무트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 2리터 이하의 용기, 전용량의 18%를 초과하는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	12
2205 90 100 0	그 밖의 베르무트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함), 2리터를 초과하는 용기, 전용량의 18%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	12
2205 90 900 0	그 밖의 베르무트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	14	12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함), 2리터를 초과하는 용기, 전용량의 18%를 초과하는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2206 00 100 0	그 밖의 발효주(예를 들어, 사과술, 배술 등),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과실발효주	14.4	12.5
2206 00 310 0	발포성 사과술, 배술	14.4	12.5
2206 00 390 1	그 밖의 발포성 음료 또는 발효주의 혼합물(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전용량의 7%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6 00 390 9	그 밖의 발포성 음료 또는 발효주의 혼합물(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전용량의 7%를 초과하는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6 00 510 0	비발포성 사과술, 배술, 2리터 이하의 용기	14.4	12.5
2206 00 590 1	그 밖의 비발포성 발효주 또는 발효주의 혼합물(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2리터 이하의 용기, 전용량의 7%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206 00 810 0	비발포성 사과술, 배술, 2리터를 초과하는 용기	14.4	12.5
2206 00 890 1	그 밖의 비발포성 음료 또는 발효주의 혼합물(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2리터를 초과하는 용기, 전용량의 7%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	14.4	12.5
2309 10 110 0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함, 포도당, 포도당시럽, 말토덱스트린 또는 말토덱스트린시럽을 함유하는 것, 전분을 함유하지 않거나 전분량의 10% 이하의 전분을 함유하는 것, 유제품을 함유하지 않거나 전분량의 10% 미만의 유제품을 함유하는 것)	12.5, 최소 0.1유로/kg	10, 최소 0.08유로/kg
2309 10 130 0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함, 포도당, 포도당시럽, 말토덱스트린 또는 말토덱스트린시럽을 함유하는 것, 전분을 함유하지 않거나 전분	12.5, 최소 0.1유로/kg	10, 최소 0.08유로/kg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량의 10% 이하의 전분을 함유하는 것, 전중량의 10% 이상~50% 미만의 유제품을 함유하는 것)		
2309 10 150 0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함, 포도당, 포도당시럽, 말토덱스트린 또는 말토덱스트린시럽을 함유하는 것, 전분을 함유하지 않거나 전중량의 10% 이하의 전분을 함유하는 것, 전중량의 50% 이상~75% 미만의 유제품을 함유하는 것)	12.5, 최소 0.1유로/kg	10, 최소 0.08유로/kg
2309 10 190 0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함, 포도당, 포도당시럽, 말토덱스트린 또는 말토덱스트린시럽을 함유하는 것, 전분을 함유하지 않거나 전중량의 10% 이하의 전분을 함유하는 것, 전중량의 75% 이하의 유제품을 함유하는 것)	12.5, 최소 0.1유로/kg	10, 최소 0.08유로/kg
2309 10 310 0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함, 포도당, 포도당시럽, 말토덱스트린 또는 말토덱스트린시럽을 함유하는 것, 전중량의 10% 초과~30% 이하의 전분을 함유하는 것, 유제품을 함유하지 않거나 전중량의 0% 미만의 유제품을 함유하는 것)	12.5, 최소 0.1유로/kg	10, 최소 0.08유로/kg
2309 10 330 0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함, 포도당, 포도당시럽, 말토덱스트린 또는 말토덱스트린시럽을 함유하는 것, 전중량의 10% 초과~30% 이하의 전분을 함유하는 것, 전중량의 10% 이상~50% 미만의 유제품을 함유하는 것)	12.5, 최소 0.1유로/kg	10, 최소 0.08유로/kg
2309 10 390 0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함, 포도당, 포도당시럽, 말토덱스트린 또는 말토덱스트린시럽을 함유하는 것, 전중량의 10% 초과~30% 이하의 전분을 함유하는 것, 전중량의 50% 이상의 유제품을 함유하는 것)	12.5, 최소 0.1유로/kg	10, 최소 0.08유로/kg
2309 10 510 0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함, 포도당, 포도당시럽, 말토덱스트린 또는 말토덱스트린시럽을 함유하는 것, 전중량의 30% 초과하는 전분을 함유하는 것, 유제품을 함유하지 않거나 전	12.5, 최소 0.1유로/kg	10, 최소 0.08유로/kg

HS코드	품명	현행 수입관세율(%)	'16.9.1일부터 수입관세율(%)
	중량의 10% 미만의 유제품을 함유하는 것)		
2309 10 530 0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함, 포도당, 포도당시럽, 말토덱스트린 또는 말토덱스트린시럽을 함유하는 것, 전중량의 30%를 초과하는 전분을 함유하는 것, 전중량의 10% 이상~50% 미만의 유제품을 함유하는 것)	12.5, 최소 0.1유로/kg	10, 최소 0.08유로/kg
2309 10 590 0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함, 포도당, 포도당시럽, 말토덱스트린 또는 말토덱스트린시럽을 함유하는 것, 전중량의 30%를 초과하는 전분을 함유하는 것, 전중량의 50% 이상의 유제품을 함유하는 것)	12.5, 최소 0.1유로/kg	10, 최소 0.08유로/kg
2309 10 700 0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함, 포도당, 포도당시럽, 말토덱스트린 또는 말토덱스트린시럽, 전분을 함유하지 않는 것, 유제품을 함유하는 것)	12.5, 최소 0.1유로/kg	10, 최소 0.08유로/kg
2309 10 900 0	그 밖의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함)	12.5, 최소 0.1유로/kg	10, 최소 0.08유로/kg
2402 10 000 0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함)	22.2, 최소 2.22유로 /1000개	19.6, 최소 1.96유로 /1000개
2402 90 000 0	그 밖의 쉘런(담배대용물)	22.5, 최소 2.25유로 /1000개	20, 최소 2유로 /1000개

□ 밀 수출관세율 제로관세 도입

- 러시아정부 결의 No.966(16.09.26)에 의하여, 관세동맹 협정국 경계 밖으로 반출되는 상품에 대한 수출관세율 개정
- 밀(HS코드 1001 99 000 0) 수출관세율은 2015년 10월 1일부터 50% -6.5천 루블/톤(최소 10루블/톤)이나, 2016년 9월 23일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제로관세율 적용

제4절 라벨링제도

□ 공통 유통마크 적용 절차 개정

- 2016년 2월 18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No.711 (‘11.07.15) 개정 결정안’에 관한 지령 No.15를 공식 발표함
- 이전에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No.711은 관세동맹 회원국들의 시장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품 유통마크에 관한 조항을 채택한 바 있음
 - 개정 내용 : 마크 자체와 마크 적용 규정을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현행규범에 부합하도록 할 것임. 관세동맹위원회의 모든 결정에 표기되어있는 ‘관세동맹(CU)’이라는 단어를 ‘유라시아경제연합(EEU)’으로 교체함
 -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 마크의 형태는 변경되지 않음
 - 사각형의 형태로 밝거나 대조가 뚜렷한 배경에다가 3개의 철자 ‘E’, ‘A’, ‘C’를 결합하여 ‘EAC’로 표시 * ‘EAC’는 ‘유라시아 적합성(Eurasian Conformity)’을 의미함
 - 공통으로 적용되는 유통마크는 생산제품이 관세동맹의 기술 규제에 정립되어있는 안전요건에 적합하다는 검증 절차를 통과했을 경우에만 적용
- 지령 No.15는 2월 17일 채택되어 2월 18일 발효
 - 승인된 결정안은 유라시아경제연합 이사회 회의를 거친 후 이사회 결정 공보게재일 30일 경과 후 개정사항 발효 예정



□ 러시아시장에서 유기농에 대한 통합규정 도입

- 2017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준 GOST R 57022-2016 ‘유기농제품. 자율인증 절차(Organic production. The procedure of voluntary certification of organic production)’ 도입
 - 도입 목적은 유기농제품에 자율인증에 대한 단일규정을 정립하는데 있음
 - 현재 식품첨가물, 합성비료,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미사용 제품 표시 라벨링 및

인증서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GOST R 57022-2016 라벨링은 해당 제품이 안전성 및 모든 필수 검사항목을 통과했음을 인증함
- 본 기준은 유기농 생산, 라벨링, 제품관리에 대한 유기농제품 라벨링 및 유기농생산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No834/2007 이행절차에 관한 조항과 함께 2008년 9월 5일자 유럽연합위원회 규정 No889/2008(2008년 9월 18일자 유럽연합 공식통보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기준 ‘유기식품의 생산·가공·표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GL 32-1999, REV. 1-2001)’,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의 기본 기준들에 의거하여 개발됨
- 본 기준은 이전에 승인된 국가기준 GOST R 56104-2014 ‘유기식품. 용어와 정의’, GOST R 56508-2015 ‘유기농제품. 생산·보관·운송 규정’과 상호 연관되어 있음

제5절 수출현안

□ 러시아 식품금수조치 2017년 말까지 연장

- 러시아 정부, 올해 8월 6일 종료될 예정인 식품금수조치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2014년 8월 러시아는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국가들(미국, EU,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의 식품 수입을 1년간 제한함
 - 견과류(캐슈, 아몬드, 개암, 호두, 피스타치오 등), 육류, 소시지, 어류 및 해산물, 채소류, 과일류, 유제품 등이 금지됨
- 이후 식품금수조치는 2016년 8월 6일까지 연장됨. 제재대상 국가목록도 확대되어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도 포함함
- ‘식품금수조치: 2015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EU와 미국(터키와 우크라이나 제외)에 금수조치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국가들은 93억 달러(한화 약10조

8,438억 원)의 손실을 봄

- 최근 러시아정부는 국내 어린이식품 생산을 촉진할 목적으로 어린이식품 생산원료(육류, 채소류 등)를 금수조치목록에서 제외시킴(러시아 정부령 No472('16.5.27)). 단, 러시아 농업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농업부가 승인한 반입허가물량 범위 내에서 반입되는 상품의 용도를 농업부가 확인한다는 조건에 한함

□ 제재제품 폐기 기간 2017년 말까지 연장

- 러시아정부, 금수조치 해당 식품 폐기 기간을 2017년 말까지 연장
- 2015년 8월 푸틴 대통령은 금지 상품 폐기에 관한 칙령에 서명함.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로 다량 들어오는 밀수품 반입을 감소시켜줌
- 일 년간 식물성제품 7.3천 톤과 동물성제품 228.6톤이 폐기됨

□ 식품금수조치 목록에 소금 포함

- 러시아정부, 정부결의 No.778('14.08.07) '러시아연방 대통령 칙령 구현을 위한 조치' 별첨 개정
- 기존 금지제품 이외에 HS코드 2501 00에 해당하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 포함), 순염화나트륨(수용액 여부 및 고결방지제 또는 유동제의 첨가여부 불문), 해수'도 목록에 첨가됨
- 본 결의 No.897('16.09.10)은 2016년 11월 1일부터 발효
- 러시아농업부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매년 3.6백만 톤의 소금을 채취하며 연간 6.1백만 톤까지 채취량을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음
-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식염 생산량 880.6천 톤(연간 소비량의 68.1%에 해당)이며, 2016년 1~7월 생산량은 448.7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함
 - 2015년 국내 공업염 생산량 약 2.8백만 톤(연간 소비량의 67.8%에 해당)이며, 2016년 1~7월 생산량은 1.4백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0.3% 증가함

- 러시아 연간 소비량은 식염의 경우 약 1.3백만 톤, 공업염의 경우 약 4.0백만 톤임
- 2015년 기준 러시아시장에서 러시아산 소금 비중은 식염의 68.1%, 공업염의 67.7%를 차지함 (수입산 소금 비중은 각각 33.1%, 32.6% 차지)
- 러시아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식염 수입은 2015년 427.9천 톤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하였고, 2016년 1~7월 수입량은 249.7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2.8% 증가
 - 공업염 수입은 2015년 1,329.5천 톤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고, 2016년 1~7월 수입량은 577.8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8.6% 감소
- 2015년 기준 주요 식염 공급국은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으로 전체 수입량의 69.7% 차지(298.2천 톤)
 - 주요 공업염 공급국은 우크라이나로 전체 수입량의 63.1% 차지
- 농산물 및 식품 수입제한조치가 도입된 국가들의 비중은 식염의 경우 총 공급량의 17.8% 차지, 공업염의 경우 63.9% 차지
- 러시아 농업부 관측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소금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러시아 국내 소비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부족량은 국내생산량을 증가하거나 공급국을 다른 국가들로 대체할 계획임

□ 일부 터키산 과실류 반입 허가

- 10월에 러시아 정부는 터키산 반입금지 품목에서 일부 과실류를 제외시킴
 - 신선 또는 건조 오렌지, 신선 또는 건조 귤(탄제린 및 온주밀감 포함), 클레멘타인, 월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교잡종, 신선 살구, 신선 복숭아(넥타 포함), 신선 자두 및 가시자두의 반입을 허가함
 - 포도, 사과, 배, 딸기, 토마토, 양파, 샬롯양파, 꽃양배추, 브로콜리, 오이, 닭과 칠면조의 이분도체 및 식용설육, 소금, 카네이션은 여전히 금지 품목임
- 러시아는 양국 관계 위기로 인해 이전에 도입한 터키산 농산품 제한조치를 점차적으로 해제하고 있음
 - 러시아는 철저한 안전성 검사 후에 금지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임
- 동식물검역국은 현지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채소류 허가여부도 추후 결정할 계획임



2016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I)

통관문제사례

한국산 농식품 對중국 통관사례문제

한국산 농식품 對홍콩 통관사례문제

한국산 농식품 對대만 통관사례문제

한국산 농식품 對일본 통관사례문제

한국산 농식품 對미국 통관사례문제

한국산 농식품 對EU 통관사례문제

■ 한국산 농식품 對중국 통관사례문제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1	0401200000	241010002	112	강소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 불합격	반송
201601	0401200000	241010002	55	강소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 불합격	반송
201601	0401200000	241010002	55	강소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대장균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1	0401200000	241010002	55	강소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 불합격	반송
201601	0401200000	241010002	112	강소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 불합격	반송
201601	0401200000	241010002	55	강소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 불합격	반송
201601	0401200000	241010002	112	강소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 불합격	반송
201601	0401200000	241010002	55	강소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 불합격	반송
201601	0401200000	241010002	112	강소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 불합격	반송
201601	1704900000	161090000	346	강소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 불합격	반송
201601	1901100000	169010017	19	강소	라벨링	라벨링/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201601	2008993100	421010003	125	강소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1	2008993100	421010003	185	강소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라벨 불합격	소각
201601	2202900099	159990000	15	강소	라벨링	라벨링/라벨 불합격	소각

발생원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kg)	검역소	문제시유	문제시유(상세)	조치사항
201601	1211209900	155910002	2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및유해물질)/ 동(輔)성분기준치초과	반송
201601	2101300000	169130000	4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라벨 불합격	소각
201601	2106909090	169140000	564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및유해물질)/ 동(輔)성분기준치초과	소각
201601	2101120000	151110009	2	상해	라벨링	라벨링/라벨 불합격	소각
201601	2101120000	151110009	2	상해	라벨링	라벨링/라벨 불합격	소각
201601	2101120000	151110009	2	상해	라벨링	라벨링/동(輔)성분기준치초과	소각
201601	2202900099	159990000	6	상해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 기준치 초과	소각
201602	1806320000	152130003	890	심천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및유해물질)/식품첨가 제레몬황(柠檬黄) 성분기준치초과	소각
201602	2008993100	421010003	726	심천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201602	2106909090	169140000	3840	하문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3	1901100000	169010017	370	북경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비타민B1,비타민D,비타민A합량 국가기준치 미달	반송
201603	1901100000	169010017	370	북경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비타민B1,비타민D,비타민A합량 국가기준치 미달	소각
201603	1901100000	169010017	280	북경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비타민B1,비타민D,비타민A합량 국가기준치 미달	소각

발생월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kg)	검역소	문제시유	문제시유(상세)	조치사항
201603	1901100000	169010017	280	북경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비타민B1함량 국가기준치 미달	반송
201603	1901100000	169010017	280	북경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비타민D, 비타민A 함량 국가기준치 미달	반송
201603	2008993100	421010003	96	섬서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3	2008993100	421010003	573	섬서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3	2106909090	169140000	1600	요녕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4	1604209990	411906906	1235	산둥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식품첨가제 AlNaO6Si2 기준치 초과	소각
201604	1902200000	162990001	16	산둥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201604	1902200000	162990001	16	산둥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201604	1902200000	162990001	16	산둥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201604	1902200000	162990001	16	산둥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201604	1902309000	162990004	4200	산둥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수분 기준치 초과	소각
201604	2008993100	421010003	120	산둥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4	2008999000	116995999	480	산둥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곰팡이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4	2008999000	116995999	480	산둥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곰팡이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4	2106909090	169140000	22	산둥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201604	1902309000	162990004	336	안휘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4	1902309000	162990004	84	안휘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4	1902309000	162990004	144	안휘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4	1902309000	162990004	168	안휘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발생원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kg)	검역소	문제시유	문제시유(상세)	조치사항
201604	1902309000	162990004	96	안휘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4	1902309000	162990004	288	안휘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4	2008993100	421010003	461	요녕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201605	2008993100	421010003	69	산둥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201605	2101120000	151110009	20	상해	기타	기타/유통기한 초과	소각
201605	2008993100	421010003	171	심천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5	2008993100	421010003	264	심천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5	2008993100	421010003	188	하문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5	2101200000	169120001	1392	하문	포장	포장/포장 불합격	반송
201605	2106909090	169140000	1740	하문	포장	포장/포장 불합격	반송
201606	2208700000	157550090	1500	상해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식품첨가제 아스파탐 초과 사용	소각
201606	2008993100	421010003	108	심천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본치 초과	반송
201607	2008199990	116995903	24	산둥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곰팡이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7	2008199990	116995903	42	산둥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곰팡이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7	2008199990	116995903	45	산둥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곰팡이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7	2008199990	116995903	24	산둥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곰팡이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7	2008199990	116995903	42	산둥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곰팡이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7	2008199990	116995903	45	산둥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곰팡이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7	2106909090	169140000	365	충칭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201607	2106909090	169140000	365	충칭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201608	2008993100	421010003	80	북경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대장균 기준치 초과	소각
201608	2201102000	159110001	10	북경	포장	포장/포장 불합격	소각

발생월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8	1704900000	161090000	432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 아디프산 사용범위 초과	반송
201608	1704900000	161090000	45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 에리트로신 사용량 초과	소각
201608	1902200000	162990001	800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 인식향산 사용범위 초과	반송
201608	1902200000	162990001	160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 인식향산 사용범위 초과	반송
201608	1902303000	162310000	144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i) - 주석산 사용범위 초과	반송
201608	1902303000	162310000	480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 이산화유황사용량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1902303000	162310000	280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 이산화유황사용량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1902303000	162310000	274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 이산화유황사용량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1902303000	162310000	198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 이산화유황사용량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1905310000	161220005	559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i) - 주석산 사용범위 초과	소각

발생원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kg)	검역소	문제시유	문제시유(상세)	조치사항
201608	1905310000	161220005	108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L (+)-주석산 사용범위 초과	반송
201608	1905310000	161220005	140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L (+)-주석산 사용범위 초과	반송
201608	1905310000	161220005	466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L (+)-주석산 사용범위 초과	소각
201608	1905310000	161220005	270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L (+)-주석산 사용범위 초과	소각
201608	1905310000	161220005	184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수분 기준치 초과	소각
201608	1905310000	161220005	317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수분 기준치 초과	소각
201608	1905900000	161290001	246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L 이산화황사용량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008993100	421010003	45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008993100	421010003	805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008993100	421010003	3480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008993100	421010003	1312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008993100	421010003	176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대장균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008993100	421010003	183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대장균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008993100	421010003	158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대장균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008993100	421010003	109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발생월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kg)	검역소	문제시유	문제시유(상세)	조치사항
201608	2008993100	421010003	56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008993100	421010003	174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대장균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008993100	421010003	108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201608	2008993100	421010003	127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201608	2008993100	421010003	214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008993100	421010003	214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008993100	421010003	834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대장균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008993100	421010003	3728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008993100	421010003	516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008993100	421010003	147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008993100	421010003	288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008993100	421010003	4451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008993100	421010003	600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대장균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008993100	421010003	583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008993100	421010003	4172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008993100	421010003	216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008993100	421010003	732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대장균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008993100	421010003	207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103901000	143090000	63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 이산화유황사용량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106909090	169140000	10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총비소량 기준치 초과	소각

발생월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kg)	검역소	문제시유	문제시유(상세)	조치사항
201608	2106909090	169140000	10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총비소량 기준치 초과	소각
201608	2201101000	159110001	5670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비소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202100090	159110004	2250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호모균 기준치 초과	소각
201608	2202100090	159110004	1875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호모균 기준치 초과	소각
201608	2202900099	159990000	2400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 아질산나트륨 사용범위 초과	소각
201608	2206009000	157390000	270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 아스타팜 사용범위 초과	소각
201608	2206009000	157390000	900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 아스타팜 사용범위 초과	소각
201608	2206009000	157390000	360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 아스타팜 사용범위 초과	소각
201608	1704900000	161090000	40	상해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영양강화제비타민B2 사용범위초과	소각
201608	1905310000	161220005	68	상해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식품첨가제 황색색소 사용범위 초과	소각
201608	2106909090	169140000	50	상해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영양강화제비타민B2 사용범위초과	소각
201608	2008993100	421010003	600	심천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8	2106909090	169140000	3060	심천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9	1704900000	161090000	480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1.균락총수 기준치초과 2.대장균기준치초과	소각

발생월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kg)	검역소	문제시유	문제시유(상세)	조치사항
201609	1902309000	162990004	425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9	1902309000	162990004	425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9	1901900000	169020000	19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곰팡이 기준치 초과	소각
201609	2202900099	159990000	136	산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카페인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9	2202900099	159990000	129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카페인 기준치 초과	반송
201609	2008993100	421010003	36	하남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01610	1704900000	161090000	11	광둥	라벨링	라벨링/라벨 불합격	소각
201610	1704900000	161090000	13	광둥	라벨링	라벨링/라벨 불합격	소각
201610	1806900000	152130004	9	광둥	라벨링	라벨링/라벨 불합격	소각
201610	1905900000	161290001	2	광둥	라벨링	라벨링/라벨 불합격	소각
201610	1905900000	161290001	2	광둥	라벨링	라벨링/라벨 불합격	소각
201610	2106909090	169140000	173	광둥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대장균 기준치 초과	소각
201610	2008993100	421010003	28	닝보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201610	2202900099	159990000	49920	사천	라벨링	라벨링/라벨 불합격	폐기 또는 반송
201610	1901900000	169020000	5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곰팡이 발견	소각
201610	1901900000	169020000	5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곰팡이 발견	소각
201610	1901900000	169020000	5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곰팡이 발견	소각
201610	1901900000	169020000	5	산동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곰팡이 발견	소각
201610	1905310000	161220005	129	해남	라벨링	라벨링/라벨 불합격	반송

■ 한국산 농식품 對 홍콩 對 관사례문제 ■

발생월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kg)	검역소	문제시유	문제시유(상세)	조치사항
201607		159990000	500(ml)		라벨링	라벨링/라벨 불합격	

■ 한국산 농식품 對대만 통관사례문제 I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kg)	검역소	문제시유	문제시유(상세)	조치사항
201601	19059030009	161290001	2	타이베이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감미제 saccharin 0.15g/kg 검출	폐기 또는 반송
201603	21039090905	143990000	80	타이베이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방부제 Ethyl p-hydroxybenzoate 검출	폐기 또는 반송
201603	07049010008	121020100	16170	타이중	성분(진류농약)	/진류농약 Dimethoate 0.03ppm 검출	폐기 또는 반송
201605	07096000001	121610100	9600	타이베이	성분(진류농약)	/진류농약 Tetraconazole 0.09ppm 검출	폐기 또는 반송
201605	07049010008	121020100	16170	타이베이	성분(진류농약)	/진류농약 tebufenozide 0.02ppm 검출	폐기 또는 반송
201607	07031010006	121410100	24000	타이베이	성분(진류농약)	/진류농약 Fluazinam 0.03ppm 검출	폐기 또는 반송
201607	07049010008	121020100	16170	타이베이	성분(진류농약)	/진류농약 Flufenoxuron 0.16ppm 검출	폐기 또는 반송
201607	07049010008	121020100	16170	타이베이	성분(진류농약)	/진류농약 diniconazole 0.02ppm 검출	폐기 또는 반송
201607	08071910002	121330103	6400	타이베이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진류농약 Spirodiclofen 0.05ppm 검출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진류농약 Spirodiclofen 0.05ppm 검출	폐기 또는 반송
201607	07051100005	121120100	10925	타이중	성분(진류농약)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진류농약 Indoxacarb 0.16ppm, Flufenoxuron 0.18ppm 검출	폐기 또는 반송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8	20059990996	121795902	131	타이베이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잔류농약)/김미제 saccharin 0.44 g/kg 검출	폐기 또는 반송
201610	07049010008	121020100	15750		성분(잔류농약)	성분(잔류농약)/잔류농약 Fionicamid 0.07ppm 검출	폐기 또는 반송
201610	07049010008	121020100	15750		성분(잔류농약)	성분(잔류농약)/잔류농약 Fionicamid 0.04ppm 검출	폐기 또는 반송
201610	20059990996	121795902	1200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김미제 saccharin 0.65g/kg 검출	폐기 또는 반송
201611	07049010008	121020100	15750		성분(잔류농약)	성분(잔류농약)/잔류농약 Etofenprox 0.01ppm 검출, Fionicamid 0.03ppm 검출	폐기 또는 반송
201611	07049010008	121020100	16170		성분(잔류농약)	성분(잔류농약)/잔류농약 Fionicamid 0.04ppm 검출	폐기 또는 반송
201611	07049010008	121020100	15750		성분(잔류농약)	성분(잔류농약)/잔류농약 Fionicamid 0.03ppm 검출	폐기 또는 반송
201611	07061000005	121230100	22400		성분(잔류농약)	성분(잔류농약)/잔류농약 Metconazole 0.05ppm 검출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농식품 對일본 통관사례문제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1		413110600		후쿠오카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첨가제 폴리솔리베이트 80 0.75g/kg 검출	기타
201602		158120102		관서공항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씨안화합물 31mg/kg 검출	폐기 또는 반송
201602		412130300		센다이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세균수 초과검출 1.8×10^5 /g	폐기 또는 반송
201603		413040300		시모노세키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세균수 2.5×10^6 /g, 대장균군 양성	폐기 또는 반송
201604		121795905		도쿄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폴리솔리베이트류 0.055g/kg 검출	폐기 또는 반송
201604		143990000		시모노세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솔닌산 0.02g/kg 검출 (원료 고추장에 사용)	폐기 또는 반송
201604		411906905		시모노세키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 성분규격부적합(대장균군 양성)	폐기 또는 반송
201605		413040300		시모노세키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 성분규격부적합(세균수 3.9×10^5 /g)	폐기 또는 반송
201607		121055900		시모노세키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대장균 0103 양성	기타
201608		121055900		시모노세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위생(미생물)/대장균 0103 양성	폐기 또는 반송

발생원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시유	문제시유(상세)	조치사항
201608		159010003		요코하마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성분 규격 부적합 (세균 수 8.3×10^3 /g)	폐기 또는 반송
201608		121330103		시모노세키	성분(잔류농약)	성분(잔류 농약)/잔류 농약 클로르 후에나 필 0.02ppm 검출	폐기 또는 반송
201609		121330103		오사카	성분(잔류농약)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크로르페나필 0.02ppm 검출)	기타
201609		411490301		시모노세키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대장균양성	폐기
201610		413030300		시모노세키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대장균양성	폐기
201611		412130300		시모노세키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세균수 1.6×10^6 /g	폐기
201611		412130300		시모노세키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세균 수 6.0×10^5 /g	폐기
201611		121795902		오사카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대장균 군 양성	폐기
201611		121795902		오사카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대장균 군 양성	폐기
201611		411710311		요코하마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대장균 군 양성	폐기
201611		412130300		시모노세키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세균 수 2.1×10^5 /g	폐기
201611		155240001		시모노세키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세균 수 6.4×10^5 /g	폐기

■ 한국산 농식품 對미국 통관사례문제 ■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1	655-1923789 -9/1/1	441310003		뉴욕	기타	기타	
201601	655-1923789 -9/1/2	441310003		뉴욕	기타	기타	
201601	551-1963667 -4/1/1	159110003		시애틀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알레르기 원인물질 함유	
201601	551-1963667 -4/1/2	159110003		시애틀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알레르기 원인물질 함유	
201601	551-1963667 -4/1/3	159110003		시애틀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알레르기 원인물질 함유	
201601	EJA-5065833 -7/2/10	116915100		로스앤젤레스	기타	기타	
201601	ATE-025080 6-5/27/1	411906906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첨가물 함유	
201601	ATE-025080 6-5/28/1	411906906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첨가물 함유	
201601	BWR-008635 6-9/1/1/A	169		뉴욕	라벨링	라벨링/허위건강관련문구	
201601	BWR-008635 6-9/1/1/B	155240001		뉴욕	기타	기타	
201601	BWR-008635 6-9/5/1	155240001		뉴욕	기타	기타	
201602	EH3-1574486 -0/7/1	161030099		뉴욕	라벨링	라벨링/허위 라벨링	

발생원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2	EH3-1574486 -0/1/1	155930000		뉴욕	라벨링	라벨링/재료 라벨 없음	
201602	ATE-0251336 -2/17/1	159110003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색소 함유	
201602	9N6-000336 8-2/33/1	161030099	뉴욕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색소 함유	
201602	9N6-000336 8-2/34/1	161030099	뉴욕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색소 함유	
201602	U47-0628643 -0/1/1	411360400	로스앤젤레스	비위생적제조	비위생적제조	비위생적제조/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	
201602	U47-0628643 -0/2/1	411360400	로스앤젤레스	비위생적제조	비위생적제조	비위생적제조/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	
201602	U47-0628643 -0/3/1	411360400	로스앤젤레스	비위생적제조	비위생적제조	비위생적제조/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	
201602	U47-0628643 -0/4/1	411360400	로스앤젤레스	비위생적제조	비위생적제조	비위생적제조/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	
201602	U47-0628287 -6/1/1	411360400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오염, 부패물질 함유	
201602	U47-0628287 -6/2/1	411360400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오염, 부패물질 함유	
201602	U47-0628287 -6/3/1	411360400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오염, 부패물질 함유	
201602	U47-0628287 -6/4/1	411360400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오염, 부패물질 함유	
201602	U47-0628287 -6/5/1	411360400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오염, 부패물질 함유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2	U47-0628298 -3/1/1	411360400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오염, 부패물질 함유	
201602	U47-0628298 -3/2/1	411360400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오염, 부패물질 함유	
201602	U47-0628298 -3/3/1	411360400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오염, 부패물질 함유	
201602	U47-0628298 -3/4/1	411360400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오염, 부패물질 함유	
201603	ATE-0251651 -4/8/1	161030001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오염, 부패물질 함유	
201603	EJA-5071328 -0/2/4	116915100		로스앤젤레스	기타	기타	
201603	EJA-5071328 -0/2/5	116915100		로스앤젤레스	기타	기타	
201603	EJA-5069665 -9/1/3	159110004		뉴욕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색소 함유	
201603	ATE-025092 0-4/17/1	155930000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색소 함유	
201603	ATE-025092 0-4/48/1	161030099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색소 함유	
201603	ATE-025092 0-4/25/1	161030001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영양분식표 라벨 없음	
201603	EJA-5071099 -7/17/4	161220003		미국 남서부 수입처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첨가물 함유	
201603	EJA-5071097 -1/5/1	421010001		미국 남서부 수입처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독성물질 검출	

발생원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3	GJ8-0123252 -2/6/1	333040002		로스앤젤레스	비위생적제조	비위생적제조/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	
201603	E7T-1026151- 6/14/1	421010001		뉴욕	라벨링	라벨링/잘못된 라벨링	
201603	BDN-0125659 -8/1/1	169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잘못된 라벨링	
201603	BDN-0125659 -8/2/1	169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잘못된 라벨링	
201603	BDN-0125659 -8/3/1	169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잘못된 라벨링	
201603	ATE-0251651 -4/1/1	161030001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색소 함유	
201603	ATE-0251651 -4/7/1	161030001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색소 함유	
201603	EPM-0129565 -4/15/1	431020200		로스앤젤레스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리스테리아균 검출	
201603	EPM-0130311 -0/8/1	431020200		로스앤젤레스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리스테리아균 검출	
201604	ASW-009826 2-8/1/2	169		로스앤젤레스	기타	기타	
201604	U47-0626777 -8/27/1	121795902		시애틀	라벨링	라벨링/재로 라벨 없음	
201604	E8L-1035561 -3/56/1	116995100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무게 및 크기 표시 라벨 없음	
201604	E8L-1035561 -3/23/1	116995100		로스앤젤레스	기타	기타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4	ASW-009913 7-1/26/1	116210100		로스앤젤레스	성문(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문(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살충제 검출	
201604	AZE-0082974 -2/2/1/A	144990000		볼티모어	라벨링	라벨링/잘못된 라벨링	
201604	EPM-0129822 -9/1/3	159110003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제조과정 자료 없음	
201604	EPM-0129822 -9/1/4	159110003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제조과정 자료 없음	
201604	EPM-0129822 -9/1/5	159110003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제조과정 자료 없음	
201604	EPM-0129822 -9/1/6	159110003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제조과정 자료 없음	
201604	EPM-0131093 -3/2/1	159110003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제조과정 자료 없음	
201604	EPM-0127687 -8/9/1	121210100		로스앤젤레스	기타	기타	
201604	EPM-0131093 -3/2/2	155930000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제조과정 자료 없음	
201604	EPM-0131093 -3/2/3	116915100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제조과정 자료 없음	
201604	EPM-0131093 -3/2/4	116915100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제조과정 자료 없음	
201604	EPM-0131093 -3/2/5	116915100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제조과정 자료 없음	
201604	ASW-009928 0-9/1/1	159110004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제조자 정보 없음	

발생원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4	ASW-009928 0-9/1/2	159110004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제조자 정보 없음	
201604	HE8-0159786 -6/2/1	121760200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살충제 검출	
201604	U47-0629847 -6/23/1	158150000		시애틀	라벨링	라벨링/허위 라벨링	
201604	U47-0629847 -6/28/1	158150000		시애틀	라벨링	라벨링/허위 라벨링	
201605	E8L-1036429 -2/8/1	411990199		로스앤젤레스	비위생적제조	비위생적제조/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	
201605	ATE-0252728 -9/25/1	161030099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인공색소 라벨링 없음	
201605	ATE-0252728 -9/26/1	161030001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인공색소 라벨링 없음	
201605	U47-0629847 -6/31/1	143020000		시애틀	라벨링	라벨링/허위 라벨링	
201605	9N6-0003647 -9/8/1	411906906		뉴욕	비위생적제조	비위생적제조/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	
201605	9N6-0003763 -4/35/1	121760100		뉴욕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살충제 검출	
201605	98K-2189956 -4/11/1	159110003		볼티모어	라벨링	라벨링/영문라벨 없음	
201605	98K-2189956 -4/5/1	116915100		볼티모어	라벨링	라벨링/주스함량 미표시	
201605	98K-2189956 -4/7/1	159110003		볼티모어	라벨링	라벨링/주스함량 미표시	

발생월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5	98K-2189956 -4/9/1	116915100		블티모어	라벨링	라벨링/주스함량 미표시	
201605	98K-2189956 -4/12/1	159110003		블티모어	라벨링	라벨링/영문라벨 없음	
201605	EPM-0131632 -8/12/1	166120100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제조자 정보 없음	
201605	EJA-5073214 -0/6/1	411360400		로스앤젤레스	비위생적제조	비위생적제조/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	
201606	EPM-0131719 -3/19/1	333110001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아황산염물질 표기 누락	
201606	TJE-1604047 -9/1/1	143040000		뉴욕	라벨링	라벨링/영문라벨 없음	
201606	EPN-0103370 -8/48/1	411906906		로스앤젤레스	비위생적제조	비위생적제조/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	
201606	EPM-0132037 -9/29/1	121760400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살충제 검출	
201606	EPM-0132037 -9/18/1	111011001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살충제 검출	
201606	EPM-0132037 -9/21/1	110992005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살충제 검출	
201606	EPM-0132037 -9/24/1	113991001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살충제 검출	
201606	EPM-0132130 -2/35/1	161220003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첨가물 함유	
201606	EPM-0132250 -8/6/1	431020200		로스앤젤레스	위생(미생물)	위생(미생물)/리스테리아균 검출	

발생원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6	ASW-009978 3-2/11/1	116210100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살충제 검출	
201607	9N6-0003817 -8/38/1	121760200		뉴욕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살충제 검출	
201607	ATE-0253078 -8/57/1	159990000		로스앤젤레스	기타	기타	
201607	ATE-0253078 -8/12/1	159110003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색소 함유	
201607	ATE-0253078 -8/64/1	159110004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색소 함유	
201607	ATE-0253078 -8/33/1	161030001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영문라벨 없음	
201607	ATE-0253078 -8/12/2	159110003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색소 함유	
201607	ATE-0253078 -8/13/1	116915100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색소 함유	
201607	ATE-0253078 -8/13/2	116915100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색소 함유	
201607	ATE-0253078 -8/14/1	116915100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색소 함유	
201607	ATE-0253078 -8/11/1	159110003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영문라벨 없음	
201607	E8L-1036589 -3/1/1	159110003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허위건강적효능	
201607	U47-0633308 -3/13/1	161290001		시애틀	라벨링	라벨링/잘못된 라벨링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7	U47-0633308 -3/14/1	161290001		시애틀	라벨링	라벨링/잘못된 라벨링	
201607	U47-0633308 -3/8/1	333110002		시애틀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살충제 검출	
201607	EPM-0132613 -7/16/1	131050005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첨가물 함유	
201607	EPM-0132613 -7/39/1	121350100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살충제 검출	
201607	9N6-000389 0-5/6/1	161030099		뉴욕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색소 함유	
201607	9N6-000389 0-5/7/1	161030099		뉴욕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색소 함유	
201607	9N6-0003817 -8	121790100		뉴욕	성분(잔류농약)	금지성분 검출(기준치초과)/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B);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에 Section 346(a)가 정의하는 안전하지 않은 잔류농약이 함유 되었을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 -FDA는 위반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7	ATE-0253078 -8	159990000		로스엔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효물질)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금지성분 검출(기준치초과)/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c); 색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 의약품, 의료 장비 및 화장품의 색소 목록과 증명서에 대한 법률인 Section 379e에 규정된 유효한 색소가 포함된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 -FDA는 위반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01607	ATE-0253078 -8	159990000		로스엔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효물질)	금지성분 검출(기준치초과)/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c); 색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 의약품, 의료 장비 및 화장품의 색소 목록과 증명서에 대한 법률인 Section 379e에 규정된 유효한 색소가 포함된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 -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01607	ATE-0253078 -8	116915100		로스엔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금지성분 검출(기준치초과)/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c); 색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 의약품, 의료 장비 및 화장품의 색소 목록과 증명서에 대한 법률인 Section 379e에 규정된 유해한 색소가 포함된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 -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발생원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7	ATE-0253078 -8	116915100		로스엔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p>금지성분 검출(기준치초과)/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c); 색소 관련 규정에 의거</p> <p>-식품, 의약품, 의료 장비 및 화장품의 색소 목록과 증명서에 대한 법률인 Section 379e에 규정된 유해한 색소가 포함된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p> <p>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p> <p>-FDA는 위반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p> <p>[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201607	ATE-0253078 -8	116915100		로스엔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p>금지성분 검출(기준치초과)/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c); 색소 관련 규정에 의거</p> <p>-식품, 의약품, 의료 장비 및 화장품의 색소 목록과 증명서에 대한 법률인 Section 379e에 규정된 유해한 색소가 포함된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p> <p>FD&C Act Chapter VIII: Imports</p>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 -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01607	ATE-0253078 -8	116915100		로스엔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금지성분 검출(기준치초과)/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c); 색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 의약품, 의료 장비 및 화장품의 색소 목록과 증명서에 대한 법률인 Section 379e에 규정된 유효한 색소가 포함된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 -FDA는 위반 사항 발견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01607	ATE-0253078 -8	161030099		로스엔젤레스	라벨링	라벨링/포장문제/21 CFR 101.15(C)에 의거	

발생원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7	ATE-0253078 -8	116915100		로스엔젤레스	라벨링	<p>-라벨링의 진술 및 다양한 정보는 영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영어 이외의 다른 공용어를 사용하는 푸에르토리코 연방은 예외가 될 수 있음.</p> <p>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f); 라벨 정보의 현저성 관련 규정에 의거</p> <p>-라벨 또는 라벨링에 기재된 진술 및 다양한 정보가 현저하게 두드러지지 않거나 일반인이 구입 및 사용의 관습 조건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없을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p> <p>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p> <p>-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p>라벨링/포장문제/21 CFR 101.15(C)에 의거</p> <p>-라벨링의 진술 및 다양한 정보는 영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영어 이외의 다른 공용어를 사용하는 푸에르토리코</p>	

발생원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p>연방은 예외가 될 수 있음.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f); 라벨 정보의 현저성 관련 규정에 의거</p> <p>-라벨 또는 라벨링에 기재된 진술 및 다양한 정보가 현저하게 두드러지지 않거나 일반인이 구입 및 사용의 관습 조건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없을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p> <p>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p> <p>-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201607	ATE-0253078 -8	113011030		로스엔젤레스	비위생적제조	<p>표준 미준수/21 CFR 108.25(c)(1); 산성 식품 등록 관련 규정에 의거 -FDA-2541(Food Canning Establishment Registration)에 등록할 것.</p> <p>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4);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p>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7	E8L-1036589 -3	159110003		로스엔젤레스	라벨링	<p>-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준비, 포장 보관됨으로써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거나 건강에 해를 주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p> <p>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p> <p>-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p>라벨링/포장문제/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r)(1)(A), (B); 영양 수준 및 건강 강조 표시 관련 규정에 의거</p> <p>-영양 수준 및 건강 강조 표시가 (q)(1) 또는 (q)(2)에서 요구하는 식품 유형별 영양 수준에서 라벨 또는 라벨링의 강조 표시가 Subparagraph(2)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q)(1) 또는 (q)(2)에서 요구하는 식품 영양 관계에서 질병 및 건강 관련 조건의 라벨 또는 라벨링의 강조 표시가 Subparagraph(3) 또는 (5)(D)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정표기</p>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7	U47-0633308 -3	333110002		시애틀	성분(잔류농약)	<p>식품으로 간주함. 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p> <p>-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p>금지성분 검출(기준치초과)/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B);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p> <p>-식품에 Section 346(a)가 정의하는 안전하지 않은 잔류농약이 함유 되었을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p> <p>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p> <p>-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7	U47-0633308 -3	161090000		시애틀	라벨링	라벨링/포장문제/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Section 4(a); 품목 유형 관련 규정에 의거 -제품의 주 표시면에는 구체적인 라벨링 표기를 해야 함 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 -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01607	U47-0633308 -3	161090000		시애틀	라벨링	라벨링/포장문제/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Section 4(a); 품목 유형 관련 규정에 의거 -제품의 주 표시면에는 구체적인 라벨링 표기를 해야 함 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 -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발생월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7	EJA-5072406 -3	144990000		로스엔젤레스	서류	<p>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p>표준 미준수/FD&C Act Chapter V: Drugs and Devices, Section 505(a); 유효성 승인 신청의 필요성 관련 규정에 의거</p> <p>-신청서 제출 내용에 관한 법률인 505(b)와 신약 약식 신청에 관한 법률인 505(j)에 따라 신청서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특정 신약의 주간(州間) 통상은 금지됨.</p> <p>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p> <p>-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p> <p>[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201607	EPM-0132613 -7	131050005		로스엔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p>금지성분 검출(기준치초과)/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C)(i);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p> <p>-Section348에서 규정된 안전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p>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7	EPM-0132613 -7	121350100		로스엔젤레스	성분(잔류농약)	<p>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p> <p>-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p>금지성분 검출(기준치초과)/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B);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p> <p>-식품에 Section 346(a)가 정의하는 안전하지 않은 잔류농약이 함유 되었을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p> <p>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p> <p>-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201607	9N6-000389 0-5	161030099		뉴욕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효물질)	<p>금지성분 검출(기준치초과)/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c);</p>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p>색소 관련 규정에 의거</p> <p>-식품, 의약품, 의료 장비 및 화장품의 색소 목록과 증명서에 대한 법률인 Section 379e에 규정된 유효한 색소가 포함된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p> <p>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p> <p>-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201607	9N6-000389 0-5	161030099		뉴욕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효물질)	<p>금지성분 검출(기준치초과)/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c); 색소 관련 규정에 의거</p> <p>-식품, 의약품, 의료 장비 및 화장품의 색소 목록과 증명서에 대한 법률인 Section 379e에 규정된 유효한 색소가 포함된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p> <p>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p>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7	EPM-0131786 -2	162110000		로스엔젤레스	서류	<p>-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p>서류미비/21 CFR Part 108에 의거 -식품과 의약품의 비상 허가 통제(Emergency Permit Control)에 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비허가 기간 중 제조, 가공, 포장된 모든 식품은 FDA의 서면화 된 승인이 없을 경우, 주간(週間) 통상이 금지됨. 해당 식품이 위험한 미생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승인이 허가됨. 제조자, 가공자, 포장자는 위원회에 공중위생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결정 및 평가 관련한 검토사항을 제출해야 함.</p> <p>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4);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준비, 포장 보관됨으로써 오염 물질에 의해 오염되거나 건강에 해를 주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p>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7	EPM-0131786 -2	162110000		로스엔펠레스	서류	<p>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p> <p>-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p>서류미비/21 CFR Part 108에 의거</p> <p>-식품과 의약품의 비상 허가 통제(Emergency Permit Control)에 대한 법률을 준수할 것.</p> <p>-비허가 기간 중 제조, 가공, 포장된 모든 식품은 FDA의 서면화 된 승인이 없을 경우, 주간(日間) 통상이 금지됨.</p> <p>해당 식품이 위험한 미생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승인이 허가됨. 제조자, 가공자, 포장자는 위원회에 공중 위생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결정 및 평가 관련한 검토사항을 제출해야 함.</p> <p>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4);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p> <p>-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준비, 포장 보관됨으로써 오염 물질에 의해</p>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7	EPM-0131786 -2	162110000		로스엔젤레스	서류	오염되거나 건강에 해를 주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 -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서류미비/21 CFR Part 108에 의거 -식품과 의약품의 비상 허가 통제(Emergency Permit Control)에 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비허가 기간 중 제조, 가공, 포장된 모든 식품은 FDA의 서면화 된 승인이 없을 경우, 주간(週間) 통상이 금지됨. 해당 식품이 위험한 미생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승인이 허가됨. 제조자, 가공자, 포장자는 위원회에 공중 위생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결정 및 평가 관련한 검토사항을 제출해야 함.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4); 독성 및 비위생적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p>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p> <p>-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준비, 포장 보관됨으로써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거나 건강에 해를 주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p> <p>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p> <p>-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201607	9N6-0003817 -8/38/1	121790100		뉴욕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살충제 검출	
201607	ATE-0253078 -8/12/1	159110003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색소 함유	
201607	ATE-0253078 -8/64/1	159110004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색소 함유	
201607	ATE-0253078 -8/12/2	159110003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색소 함유	
201607	ATE-0253078 -8/13/1	116915100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색소 함유	
201607	ATE-0253078 -8/13/2	116915100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색소 함유	

발생원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7	ATE-0253078 -8/14/1	116915100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색소 함유	
201607	U47-0633308 -3/8/1	333110002		시애틀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살충제 검출	
201607	EPM-0132613 -7/16/1	131050005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첨가물 함유	
201607	EPM-0132613 -7/39/1	121350100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살충제 검출	
201607	9N6-000389 0-5/6/1	161030099		뉴욕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색소 함유	
201607	9N6-000389 0-5/7/1	161030099		뉴욕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색소 함유	
201607	ATE-0253078 -8/33/1	161030001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영문라벨 없음	
201607	ATE-0253078 -8/11/1	159110003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영문라벨 없음	
201607	E8L-1036589 -3/1/1	159110003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허위건강적효능	
201607	U47-0633308 -3/13/1	161290001		시애틀	라벨링	라벨링/잘못된 라벨링	
201607	U47-0633308 -3/14/1	161290001		시애틀	라벨링	라벨링/잘못된 라벨링	
201607	ATE-0253078 -8/57/1	159990000		로스앤젤레스	기타	기타	
201608	597-0181865 -6/8/1	159110003		샌프란시스코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알레르기 원인물질 함유	

발생월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8	E8L-1038614 -7/17/1	121775102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영문라벨 없음	
201608	ATE-0253585 -2/7/1	243030001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색소 함유	
201608	ATE-0253585 -2/13/1	161030001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유해색소 함유	
201608	AQZ-0388531 -9/8/1	412110500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영문라벨 없음	
201608	AQZ-0388531 -9/7/1	412110500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불명확한 라벨링	
201608	U47-0650961 -7/42/1	158130100		시애틀	라벨링	라벨링/재료 라벨 없음	
201608	U47-0650961 -7/43/1	158130100		시애틀	라벨링	라벨링/재료 라벨 없음	
201608	U47-0650961 -7/44/1	158130100		시애틀	라벨링	라벨링/재료 라벨 없음	
201608	E8L-1037377 -2/1/1	169		미국 남서부 수입처	라벨링	라벨링/잘못된 라벨링	
201608	E8L-1037377 -2/1/2	169		미국 남서부 수입처	라벨링	라벨링/잘못된 라벨링	
201608	E8L-1037377 -2/1/3	169		미국 남서부 수입처	라벨링	라벨링/잘못된 라벨링	
201608	597-0181865 -6	159990000		샌프란시스코	라벨링	라벨링/포장문제/FD&C Act Chapter IV: Food, 403(w); 주요 식품 알레르겐 요구 조건 관련 규정에 의거 -성분 문구에 주요 식품 알레르겐	

발생원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8	ATE-0253585 -2	161030099		로스엔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원료의 명칭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성분 목록에 주요 식품 알레르겐의 통용 명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부정표시로 간주함. 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 -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금지성분 검출(기준치초과)/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402(c); 색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 의약품, 의료 장비 및 화장품의 색소 목록과 증명서에 대한 법률인 Section 379e에 규정된 유해한 색소가 포함된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 -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01608	E8L-1038614 -7	121775101		로스엔젤레스	라벨링	라벨링/포장문제/21 CFR 101.15(C)에 의거 -라벨링의 진술 및 다양한 정보는 영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영어 이외의 다른 공용어를 사용하는 푸에르토리코 연방은 예외가 될 수 있음.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f); 라벨 정보의 현저성 관련 규정에 의거 -라벨 또는 라벨링에 기재된 진술 및 다양한 정보가 현저하게 두드러지지 않거나 일반인이 구입 및 사용의 관습 조건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없을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 -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8	AQZ-0388531 -9	412110500		로스엔젤레스	라벨링	<p>위반하는 경우]</p> <p>라벨링/포장문제/21 CFR 101.15(C)에 의거</p> <p>-라벨링의 진술 및 다양한 정보는 영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영어 이외의 다른 공용어를 사용하는 푸에르토리코 연방은 예외가 될 수 있음.</p> <p>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f); 라벨 정보의 현저성 관련 규정에 의거</p> <p>-라벨 또는 라벨링에 기재된 진술 및 다양한 정보가 현저하게 두드러지지 않거나 일반인이 구입 및 사용의 관습 조건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없을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p> <p>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p> <p>-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201608	AQZ-0388531 -9	412110500		로스엔젤레스	라벨링	<p>라벨링/포장문제/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q); 영양 정보</p>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8	U47-0650961 -7	159020000		시에틀	라벨링	<p>관련 규정에 의거 -라벨 또는 라벨링이 아래와 같은 영양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p> <p>(A) 1회 권장 섭취량(만약 1회 권장 섭취량으로 표현되지 않을 경우 일반 기구 단위 척도로 표기해야 함)</p> <p>(B) 총 분량(~회분) 및 기타 단위 척도</p> <p>(C) 총 칼로리량</p> <p>(D) 성분량</p> <p>(E) 라벨 및 라벨링에 요구되는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성분</p> <p>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 -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분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p>라벨링/포장문제/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i)(2); 제품 기준과 정의를 나타내지 않은 라벨 관련 규정에 의거 -두 개 이상의 성분으로 가공되었거나, 식품이 채소나 과일 즙을 포함한</p>	

발생원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8	U47-0650961 -7	159020000		시애틀	문제사유	<p>음료일 때, 식품에 포함된 채소, 과일 즙의 총 비율의 정보표를 눈에 띄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p> <p>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p> <p>-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p>라벨링/포장문제/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i)(2); 제품 기준과 정의를 나타내지 않은 라벨 관련 규정에 의거</p> <p>-두 개 이상의 성분으로 가공되었거나, 식품이 채소나 과일 즙을 포함한 음료일 때, 식품에 포함된 채소, 과일 즙의 총 비율의 정보표를 눈에 띄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p> <p>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p>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8	U47-0650961 -7	159020000		시애틀	라벨링	<p>-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p>라벨링/포장문제/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i)(2); 제품 기준과 정의를 나타내지 않은 라벨 관련 규정에 의거</p> <p>-두 개 이상의 성분으로 가공되었거나, 식품이 채소나 과일 즙을 포함한 음료일 때, 식품에 포함된 채소, 과일 즙의 총 비율의 정보표를 눈에 띄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p> <p>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p> <p>-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201608	9G5-4137411 -8	411360400		로스엔젤레스	비위생적제조	<p>식품 특성 변질/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4); 독성 및</p>	

발생원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준비, 포장 보관됨으로써 오염 물질에 의해 오염되거나 건강에 해를 주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 -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01608	EJA-5073972 -3	143990000		로스엔젤레스	서류	서류미비/21 CFR Part 108에 의거 -식품과 의약품의 비상 허가 통제(Emergency Permit Control)에 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비허가 기간 중 제조, 가공, 포장된 모든 식품은 FDA의 서면화 된 승인이 없을 경우, 주간(州間) 통상이 금지됨. 해당 식품이 위험한 미생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승인이 허가됨. 제조자, 가공자, 포장자는 위원회에 공중 위생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결정 및 평가 관련한 검토사항을 제출해야 함.	

발생월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4);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준비, 포장 보관됨으로써 오염 물질에 의해 오염되거나 건강에 해를 주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 -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01608	597-0181865 -6/8/1	159110003		샌프란시스코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알레르기 원인물질 함유	
201608	ATE-0253585 -2/7/1	243030001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유해색소 함유	
201608	ATE-0253585 -2/13/1	161030001		로스앤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유해색소 함유	
201608	E8L-1038614 -7/17/1	121775102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영문라벨 없음	
201608	AQZ-0388531 -9/8/1	412110500		로스앤젤레스	라벨링	라벨링/영문라벨 없음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8	AQZ-0388531 -9/7/1	412110500		로스엔젤레스	라벨링	라벨링/불명확한 라벨링	
201608	U47-0650961 -7/42/1	158130100		시애틀	라벨링	라벨링/재료 라벨 없음	
201608	U47-0650961 -7/43/1	158130100		시애틀	라벨링	라벨링/재료 라벨 없음	
201608	U47-0650961 -7/44/1	158130100		시애틀	라벨링	라벨링/재료 라벨 없음	
201608	E8L-1037377 -2/1/1	169220640		미국 남서부 수입처	라벨링	라벨링/잘못된 라벨링	
201608	E8L-1037377 -2/1/2	169220640		미국 남서부 수입처	라벨링	라벨링/잘못된 라벨링	
201608	E8L-1037377 -2/1/3	169220640		미국 남서부 수입처	라벨링	라벨링/잘못된 라벨링	
201609	EPM-0132701 -0	159990000		로스엔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효물질)	금지성분 검출(기준치초과)/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C)(i);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Section348에서 규정한 안전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 -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발생월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01609	EPM-0132701 -0	159990000		로스엔젤레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금지성분 검출(기준치초과)/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C)(i);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Section348에서 규정한 안전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 -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01609	9NX-000072 0-6	116020100		로스엔젤레스	성분(잔류농약)	금지성분 검출(기준치초과)/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B);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에 Section346(a)가 정의하는 안전하지 않은 잔류농약이 함유되었을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 -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01609	9NX-000072 0-6	116020100		로스엔젤레스	성분(진류농약)	금지성분 검출(기준치초과)/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B);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에 Section 346(a)가 정의하는 안전하지 않은 잔류 농약이 함유되었을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 -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9	9NX-000072 0-6	116020100		로스엔젤레스	성분(잔류농약)	<p>금지성분 검출(기준치초과)/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B);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p> <p>-식품에 Section 346(a)가 정의하는 안전하지 않은 잔류 농약이 함유되었을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p> <p>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p> <p>-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p> <p>[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201609	9NX-000072 0-6	116020100		로스엔젤레스	성분(잔류농약)	<p>금지성분 검출(기준치초과)/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B);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p> <p>-식품에 Section 346(a)가 정의하는 안전하지 않은 잔류농약이 함유되었을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p> <p>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p>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9	9NX-000072 0-6	116020100		로스엔젤레스	성분(잔류농약)	-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금지성분 검출(기준치초과)/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B);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에 Section 346(a)가 정의하는 안전하지 않은 잔류 농약이 함유되었을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201609	9NX-000072 0-6	116020100		로스엔젤레스	성분(잔류농약)	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 -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금지성분 검출(기준치초과)/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B);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에 Section 346(a)가 정의하는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p>안전하지 않은 잔류농약이 함유되었을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p> <p>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p> <p>-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201609	AEK-240980 6-0	169010015		신시내티	라벨링	<p>라벨링/포장문제/21 CFR 101.15(C)에 의거</p> <p>-라벨링의 진술 및 다양한 정보는 영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영어 이외의 다른 공용어를 사용하는 푸에르토리코 연방은 예외가 될 수 있음.</p> <p>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f); 라벨 정보의 현저성 관련 규정에 의거</p> <p>-라벨 또는 라벨링에 기재된 진술 및 다양한 정보가 현저하게 두드러지지 않거나 일반인이 구입 및 사용의 관습 조건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없을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p>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9	EPM-0132399 -3	159990000		샌프란시스코	라벨링	<p>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p> <p>-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p>라벨링/포장문제/21 CFR 101.15(C)에 의거</p> <p>-라벨링의 진술 및 다양한 정보는 영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영어 이외의 다른 공용어를 사용하는 푸에르토리코 연방은 예외가 될 수 있음.</p> <p>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f); 라벨 정보의 현저성 관련 규정에 의거</p> <p>-라벨 또는 라벨링에 기재된 진술 및 다양한 정보가 현저하게 두드러지지 않거나 일반인이 구입 및 사용의 관습 조건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없을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p> <p>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p>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9	M42-1288220 -1	411990305		샌프란시스코	라벨링	<p>-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p>라벨링/포장문제/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f); 라벨 정보의 시각적 두드러짐 관련 규정에 의거</p> <p>-라벨링에 요구되는 단어, 문장, 각 정보가 다른 정보에 비해 눈에 띄게 위치해야하고 사용이나 구입시 일반사용자가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문구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p> <p>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p> <p>-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201609	M42-1288220 -1	411620301		샌프란시스코	라벨링	<p>라벨링/포장문제/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q); 영양 정보</p>	

발생원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9	M42-1288220 -1	411620301		샌프란시스코	라벨링	<p>관련 규정에 의거 -라벨 또는 라벨링이 아래와 같은 영양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A) 1회 권장 섭취량(만약 1회 권장 섭취량으로 표현되지 않을 경우 일반 기구 단위 척도로 표기해야 함) (B) 총 분량(~회분) 및 기타 단위 척도 (C) 총 칼로리량 (D) 성분량 (E) 라벨 및 라벨링에 요구되는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성분</p> <p>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 -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부정분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p>라벨링/포장문제/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q); 영양 정보 관련 규정에 의거 -라벨 또는 라벨링이 아래와 같은 영양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p>	

발생원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p>(A) 1회 권장 섭취량(만약 1회 권장 섭취량으로 표현되지 않을 경우 일반 가구 단위 척도로 표기해야 함)</p> <p>(B) 총 분량(~회분) 및 기타 단위 척도</p> <p>(C) 총칼로리량</p> <p>(D) 성분량</p> <p>(E) 라벨 및 라벨링에 요구되는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성분</p> <p>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p> <p>-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p> <p>[위반사항: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 한국산 농식품 對EU 통관사례문제 ■

발생일	통관번호	품목 (AG code)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문제사유(상세)	조치사항
201602		413110300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중금속 함량 규정 위반(카드뮴 2.9 ppm 검출)	기타
201603		413110300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중금속 함량 규정 위반(카드뮴 4.8 ppm 검출)	기타

2016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I)

기획 및 작성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정보부

발행연도 2016

발행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061-931-1114 <http://www.at.or.kr>

자료문의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www.kati.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